한국 조세정책 50년

제 I 권 조세정책의 평가
- 第1篇 時代別 租稅政策
- 第2篇 稅目別 租稅政策

제 II 권 총괄 자료집
제 III 권 소득세 자료집
제 IV 권 법인세 자료집
제 V 권 소비과세 자료집
제 VI권 재산과세 자료집

한국 조세정책 50년

한국조세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TEL:3460-2114(代), FAX:574-9183

9 788981 910952 94320
ISBN 89-8191-095-2
ISBN 89-8191-096-0 (전6권)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VI卷
財産課稅
資料集

KIPF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 VI 卷 · 財産課稅 資料集

KIPF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 第1部 稅法改正의 內容
第1章 相續 · 贈與稅

● 第2部 統計資料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Ⅵ卷 · 財産課稅 資料集

한국조세연구원

發 刊 辭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50여년 동안 괄목할 만한 經濟成長을 이룩하였으며 동시에 經濟·社會構造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해방 이후 격변기의 經濟再建 時代에서 출발하여, 1960년대의 경제개발 초기단계와 1970년대 및 1980년대의 高度成長期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租稅政策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방 이후 50년이 되던 1995년부터 많은 분야에서 그간의 정책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시도되었다.

韓國租稅硏究院에서도 1995년부터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韓國租稅政策 50年'이란 명칭하에 조세정책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해방 이후 50년 동안 조세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조세 관련 政策立案者와 學界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조세정책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과거 50년 동안 조세정책이 우리의 경제 및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반세기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조세정책 50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광복 이후 50년간의 조세정책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時代別 및 稅目別로 나누어 정책의 흐름을 평가하였다. 둘째, 광복 이후 50년간의 조세정책의 변화와 關聯統計를 수집하여 稅目別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광복 이후 50년을 시대 및 세목별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조세정책을 평가한 논문을 편집한 한 권의 책과 세목별로 조세정책의 변화와 관련통계를 수록한 다섯 권의 자료집 등 총 여섯 권으로 나타났다.

본 작업은 전임 원장인 崔 洸 박사와 本院의 玄鎭權 박사가 중심이 되고 본원의 연구위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車幹權 명예교수께서 본 작업이 시작하는 단계부터 많은 조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租稅政策을 評價한 제 I 권에는 본원의 硏究委員 및 외부의 財政學者들이 참여하였는데, 집필진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稅目別 資料集인 제 II 권에서 제 VI 권까지의 총 다섯 권의 자료집은 본원의 많은 연구진과 외부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노고가 매우 크다. 編者들은 특히

방대한 자료작업에 오랫동안 참여하였던 본원의 姜信惠·金龍大·夫東植·李宗書 硏究員과 자료 입력에 수고한 李賢暎·吳美順·崔祉香 硏究助員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다. 남아 있는 모든 오류는 저자들의 책임이며 본 논문에서 표명된 의견들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7年 12月

韓國租稅硏究院

院長 金 仲 秀

일러두기

1. 전체 구성

○ '韓國 租稅政策 50年'은 한 권의 정책평가 논문집과 다섯 권의 세목별 자료집으로 다음과 같이 총 여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 I 권 : 租稅政策의 評價
- 第1篇 時代別 租稅政策
- 第2篇 稅目別 租稅政策

제 II 권 : 總括 資料集
- 國稅基本法, 國稅徵收法, 租稅犯處罰法, 租稅減免規制法

제 III 권 : 所得稅 資料集

제 IV 권 : 法人稅 資料集

제 V 권 : 消費課稅 資料集

제 VI 권 : 財產課稅 資料集

2. 자료집의 구성

○ 各 資料集은 稅法改正의 要約, 稅法改正內容, 關聯 統計資料 순서로 나열되어 있음.

○ 稅法改正內容에는 실려 있지 않고, 統計資料에만 실려있는 稅目이 다수 있음.

○ 原資料의 統計 自體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原資料를 그대로 入力한 후 '註'를 表記하여 追加的인 說明을 하였음.

○ 同一한 項目이 여러 연도판 『國稅統計年報』에 실려 있을 경우 가장 最近 資料를 基準으로 整理했음. 그 結果 合計欄의 수치와 細部項目의 '實際' 合計間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980년대 초까지만 集計된 資料는 '천원', 그 이후까지 集計된 資料는 '백만원' 단위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히 혼용했음.

○ 본 統計表 중의 符號는 原則的으로 다음에 의거하고 있음.

「0」: 單位未滿

「-」: 해당 數字 없음

○ 각 資料集에 收錄된 統計資料는 添附된 CD에 모두 收錄되어 있는데, 그 使用方法은 CD설명서를 참조.

目　　次

發刊辭

第 1 部　稅法改正의 內容 ····· 13

第 1 章　相續·贈與稅 ····· 15

第 1 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15
第 2 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22
1950년 : 相續稅法과 贈與稅法의 制定 ····· 22
1951년 ····· 30
1952년 ····· 30
1956년 ····· 35
1960년 ····· 38
1966년 ····· 45
1967년 ····· 46
1969년 ····· 51
1971년 ····· 52
1973년 ····· 57
1974년 ····· 58
1975년 ····· 63
1976년 ····· 64
1977년 ····· 70
1978년 ····· 71
1979년 ····· 76
1981년 ····· 81
1982년 ····· 90
1986년 ····· 101
1987년 ····· 108
1988년 ····· 110
1990년 ····· 123
1992년 ····· 144

1993년 ····· 154
1994년 ····· 172
1995년 ····· 187
1996년 ····· 203

第2部 統計資料 ····· 245

1. 상속세
[표 1- 1] 연도별 상속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247
[표 1- 2] 연도별 상속세 월별 징수 ····· 248
[표 1- 3] 연도별 상속세 시도별 징수 ····· 249
[표 1- 4] 연도별 상속세 부과 ····· 250
[표 1- 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 251
[표 1- 6] 연도별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 269
[표 1- 7] 연도별 상속세 부과액 계급별 인원수 ····· 271
[표 1- 8] 연도별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 272
[표 1- 9] 연도별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분 ····· 273
[표 1-10] 연도별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 274
[표 1-11] 연도별 상속세 세무소송 실적 ····· 275
[표 1-12] 연도별 상속세 감사실적 ····· 276
2. 증여세
[표 2- 1] 연도별 증여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277
[표 2- 2] 연도별 증여세 월별 징수 ····· 278
[표 2- 3] 연도별 증여세 시도별 징수 ····· 279
[표 2- 4] 연도별 증여세 부과 ····· 280
[표 2- 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 281
[표 2- 6] 연도별 증여재산 내역 ····· 301
[표 2- 7] 연도별 증여세 부과액 계급별 인원수 ····· 303
[표 2- 8] 연도별 증여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 304
[표 2- 9] 연도별 증여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분 ····· 305
[표 2-10] 연도별 증여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 306
[표 2-11] 연도별 증여세 세무소송 실적 ····· 307
[표 2-12] 연도별 증여세 감사실적 ····· 308

3. 토지초과이득세
[표 3- 1]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309
[표 3- 2]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1년단위 과세지역(지가급등지역지정)현황 ··· 309
[표 3- 3]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현황 ····· 310
[표 3- 4]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 310
[표 3- 5]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 311
[표 3- 6]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세무소송 실적 ····· 311
4. 부동산투기억제세
[표 4- 1]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312
[표 4- 2]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월별 징수 ····· 313
[표 4- 3]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시도별 징수 ····· 314
[표 4- 4]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 ····· 315
[표 4- 5]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국세심사 사무처리실적 : 재조사분 ····· 316
[표 4- 6]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국세심사 사무처리실적 : 심사분 ····· 316
[표 4- 7]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국세심사 사무처리실적 : 재심사분 ····· 317
[표 4- 8]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세무소송 실적 ····· 317
[표 4- 9]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감사실적 ····· 318
5. 지방세
가. 지방세 총괄
[표 5- 1]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 319
[표 5- 2] 연도별 지방세 시도별 분포상황 ····· 326
[표 5- 3]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 ····· 330
[표 5- 4] 연도별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 ····· 333
[표 5- 5] 연도별 지방세 담당공무원 수 ····· 336
[표 5- 6]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 337
나. 도 세
(1) 취득세
[표 5- 7] 연도별 취득세 징수실적 ····· 342
[표 5- 8] 연도별 취득세 부과실적 ····· 343
[표 5- 9] 연도별 취득세 납액별 인원 현황 ····· 345
[표 5-10] 연도별 취득세 사치성 재산 과세현황 ····· 353
[표 5-11] 연도별 취득세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과세상황 ····· 354

[표 5-12] 연도별 취득세 비과세 감면상황 ····· 355
(2) 등록세
[표 5-13] 연도별 등록세 징수실적 ····· 356
[표 5-14] 연도별 등록세 부과실적 ····· 357
[표 5-15] 연도별 등록세 중과현황 ····· 359
[표 5-16] 연도별 등록세 비과세 감면상황 ····· 360
(3) (경주)마권세
[표 5-17] 연도별 경주마권세 징수실적 ····· 361
[표 5-18] 연도별 경주마권세 부과실적 ····· 362
[표 5-19] 연도별 경주마권세 비과세 감면상황 ····· 363
(4) 면허세
[표 5-20] 연도별 면허세 징수실적 ····· 364
[표 5-21] 연도별 면허세 부과실적 ····· 365
[표 5-22] 연도별 면허세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관한 부과상황 ····· 366
[표 5-23] 연도별 면허세 비과세 감면상황 ····· 367
(5) 소방공동시설세
[표 5-24] 연도별 소방공동시설세 징수실적 ····· 368
[표 5-25] 연도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실적 ····· 369
[표 5-26] 연도별 소방공동시설세 비과세 감면상황 ····· 370
(6) 지역개발세
[표 5-27] 연도별 지역개발세 징수실적 ····· 371
[표 5-28] 연도별 지역개발세 부과실적 ····· 371
[표 5-29] 연도별 지역개발세 비과세 감면상황 ····· 372
다. 시·군세
(1) 주민세
[표 5-30] 연도별 주민세 징수실적 ····· 373
[표 5-31] 연도별 주민세 부과실적 ····· 374
[표 5-32] 연도별 주민세 세액규모별 납세인원 ····· 376
[표 5-33] 연도별 주민세 비과세 감면상황 ····· 388
(2) 재산세
[표 5-34] 연도별 재산세 징수실적 ····· 389
[표 5-35] 연도별 재산세 부과실적 ····· 390

[표 5-36] 연도별 재산세 중과세 상황 ····· 391
[표 5-37] 연도별 재산세 소액 부징수분 과세상황 ····· 392
[표 5-38] 연도별 재산세 납액별 인원현황 ····· 393
[표 5-39] 연도별 재산세 비과세 감면상황 ····· 402
(3) 자동차세
[표 5-40]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실적 ····· 403
[표 5-41] 연도별 자동차세 부과실적 ····· 404
[표 5-42] 연도별 자동차세 승용자동차 과세상황 ····· 405
[표 5-43] 연도별 자동차세 기타자동차 과세상황 ····· 406
[표 5-44] 연도별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상황 ····· 407
(4) 농지세
[표 5-45] 연도별 농지세 징수실적 ····· 408
[표 5-46] 연도별 농지세 부과실적 ····· 409
[표 5-47] 연도별 농지세 세액별 납세인원 ····· 410
[표 5-48] 연도별 농지세 과표 단계별 납세인원 ····· 418
[표 5-49] 연도별 농지세 비과세 감면상황 ····· 421
(5) 도축세
[표 5-50] 연도별 도축세 및 동부가세 징수실적 ····· 422
[표 5-51] 연도별 도축세 및 동부가세 부과실적 ····· 423
[표 5-52] 연도별 도축세 및 동부가세 비과세 감면상황 ····· 424
(6) 담배소비세
[표 5-53] 연도별 담배소비세 징수실적 ····· 425
[표 5-54] 연도별 담배소비세 부과실적 ····· 425
[표 5-55] 연도별 담배소비세 비과세 감면상황 ····· 426
(7) 종합토지세
[표 5-56] 연도별 종합토지세 징수실적 ····· 427
[표 5-57] 연도별 종합토지세 부과실적 ····· 427
[표 5-58] 연도별 종합토지세 개인에 대한 과세상황 ····· 427
[표 5-59] 연도별 종합토지세 법인에 대한 과세상황 ····· 428
[표 5-60] 연도별 종합토지세 기타단체에 대한 과세상황 ····· 428
[표 5-61] 연도별 종합토지세 형태별 과세상황 ····· 429
[표 5-62] 연도별 종합토지세 지목별 과세상황 ····· 430

[표 5-63]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표단계별 과세상황 : 종합합산 ····· 431
[표 5-64]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표단계별 과세상황 : 별도합산 ····· 432
[표 5-65]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표단계별 과세상황 : 분리과세 ····· 433
[표 5-66] 연도별 종합토지세 세액단계별 납세인원 상황 ····· 434
[표 5-67] 연도별 종합토지세 비과세 감면상황 : 총괄 ····· 435
[표 5-68] 연도별 종합토지세 내역별 비과세 감면상황 ····· 436
[표 5-69] 연도별 종합토지세 비과세 감면상황 ····· 437

(8) 도시계획세

[표 5-70] 연도별 도시계획세 징수실적 ····· 438
[표 5-71] 연도별 도시계획세 부과실적 ····· 439
[표 5-72] 연도별 도시계획세 비과세 감면상황 ····· 440

(9) 사업소세

[표 5-73] 연도별 사업소세 징수실적 ····· 441
[표 5-74] 연도별 사업소세 부과실적 ····· 442
[표 5-75] 연도별 사업소세 납액별 인원현황 ····· 443
[표 5-76] 연도별 사업소세 비과세 감면상황 ····· 444

라. 폐지된 세목

(1) 유흥음식세

[표 5-77] 연도별 유흥음식세 및 동부가세 징수실적 ····· 445
[표 5-78] 연도별 유흥음식세 및 동부가세 부과실적 ····· 446

(2) 토지과다보유세

[표 5-79]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징수실적 ····· 447
[표 5-80]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실적 ····· 447
[표 5-81]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과표단계별 과세상황 ····· 448
[표 5-82]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면적별 과세상황 ····· 449
[표 5-83]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지목별 과세상황 ····· 450
[표 5-84]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납액별 인원현황 ····· 451
[표 5-85]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비과세 감면상황 ····· 451

『韓國 租稅政策 50年』 關聯 所藏資料 目錄 ····· 452

第 1 部

稅法改正의 內容

第 1 章　相續·贈與稅

第 1 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1950년 : 相續稅法과 贈與稅法의 制定

(1) 상속세법

①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의 범위, 재산의 소재지, 과세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② 상속재산의 의제와 비과세 및 공제, 과세최저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③ 세율과 면제,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④ 신고의무와 정부결정 및 납부에 관해 규정한다.

⑤ 심사청구, 범칙 및 처벌규정 그리고 기타의 규정을 마련한다.

(2) 증여세법

①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② 비과세 및 과세최저한 그리고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③ 세율을 정하는 한편 기타의 규정은 상속세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1951년

① 상속세법의 벌칙규정을 삭제한다.

1952년

① 증여세법을 폐지하고 상속세법에 통합한다.

② 상속재산의 소재를 정하는 기준을 세분하여 규정한다.

③ 기초공제액, 동거가족 등에 대한 공제액, 과세최저한도액을 인상한다.

④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 또는 유증재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⑤ 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연부연납의 경우에 이자세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⑥ 신탁, 보험 등에 있어 증여의제규정을 신설한다.

1956년

① 세율을 조정한다.
② 친족에의 재산양도 등의 경우 일정한 사항에 관한 증여의제규정을 신설한다.
③ 기초공제액, 연부연납의 허가한도금액, 납세자의 물납신청한도를 인상한다.
④ 재산상속의 과세최저한을 인상한다.

1960년

① 민법상 상속제도의 법정화에 따라 세목을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하여 개편한다.
② 과세최저한도액, 기초공제액을 인상한다.
③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조정한다.
④ 상속세의 기일내 신고에 대한 공제규정을 신설한다.
⑤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1966년

① 일정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1967년

① 기초공제액, 부양가족공제 그리고 면세점을 인상한다.
② 세율을 조정한다.
③ 연부연납 및 물납의 신청한도액을 인상한다.

1969년

① 서식 등을 개정한다.

1971년

① 기초공제액, 부양가족공제 그리고 면세점을 인상한다.
② 상속세에 있어 보험금 등의 비과세한도액을 인상한다.
③ 국가 등이 받는 수증재산 등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1973년

① 주식가액의 평가방법 등을 보완한다.

1974년

① 세율을 조정한다.
② 기초공제액 등 인적공제액을 인상한다.
③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를 증여로 의제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1975년

① 비과세의 범위를 조정한다.

1976년

① 상속세의 각종 공제액 수준을 인상한다.
② 미성년자 공제를 자녀 2인으로 제한한다.
③ 연부연납의 경우 제1회 연납세액에 대하여도 이자세액을 징수한다.
④ 주식평가방법을 개선한다.
⑤ 공익사업 사후관리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세가액을 명확히 한다.
⑥ 물납제도의 수납가액을 명확히 하는 등 물납제도를 개선한다.
⑦ 담보해제시기를 단축하는 등 기타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1977년

① 비과세의 범위를 조정한다.

1978년

① 보험료공제액 및 신탁재산공제액을 인상한다.
② 지정문화재에 대한 상속세액의 징수유예제도를 신설한다.
③ 농지상속공제제도를 신설한다.
④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⑤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⑥ 증여세 과세시 공제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친족공제의 계산방법을 정한다.

1979년

① 상속세의 조사결정 관서를 조정한다.
② 비거주자의 사업상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시 공제하도록 한다.
③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인적공제액을 인상한다.
④ 연부연납의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연부연납제도를 정비한다.
⑤ 합산과세와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⑥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의 이익범위를 조정한다.

1981년

① 상속세율을 인하조정한다.
② 주택상속공제제도,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제도를 신설한다.
③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자진신고공제를 확대한다.
④ 무신고나 신고누락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⑤ 담보제공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를 마련한다.
⑥ 사망에 대비한 재산처분 등의 경우에 대해 의제상속제도를 신설한다.
⑦ 기타의 개정으로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행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한다.

1982년

① 상속재산공제액을 인상한다.
② 3대 이상 대물림 주택 등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및 장례비 개산공제제도를 신설한다.
③ 자진신고 세액공제액의 범위를 조정한다.
④ 상속세의 결정절차, 연부연납의 신청절차, 물납신청절차 등을 개정한다.

1986년

① 특수관계자의 이사취임 제한을 완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요건을 완화한다.
② 소액 외국기증물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③ 평균순손익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등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④ 신주인수권 포기시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명문화한다.

1987년

① 조부모·부모의 장기봉양시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조건을 완화한다.
② 세무행정전산화를 위해 여러 서식을 개정한다.

1988년

① 각종의 공제액을 인상함과 함께, 제반 공제제도를 개선한다.
②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한다.
③ 무신고·누락신고시 과세가액의 산정에 있어 제재를 강화한다.
④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강화한다.
⑤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하는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⑥ 상속세액의 분납시 이자세율을 인하한다.

1990년

① 상속세 신고내용 공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속세의 부담회피 등을 방지한다.
② 기업합병을 이용한 증여 등의 경우, 증여세 과세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한다.

③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보고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를 개선한다.
④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⑤ 제반의 공제액을 인상한다.
⑥ 세율체계를 개선한다.
⑦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기타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1992년

①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을 보완하는 등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② 지배주주 소유주식에 대한 과세기준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비상장주식의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③ 농지상속공제대상 자경농지의 범위확대 등 농민·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④ 배우자·직계존비속간 거래시 증여의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기타 미비점을 보완한다.

1993년

① 상속·증여세의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세제를 보완한다.
② 공익법인에 주식출연시 면세범위축소 등,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상속·증여를 규제한다.
③ 사전상속 및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④ 장례비 개산공제액을 인상하는 등 기타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1994년

① 배우자 상속공제제도를 보완하는 등 상속·증여세의 면제범위를 확대한다.
② 농어민에 대한 상속공제를 보완하는 등 농지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한다.
③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를 단일화한다.
④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한다.
⑤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한다.
⑥ 자영어민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기타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1995년

① 상속·증여세제의 부담을 완화한다.
② 상속·증여세 물납제도를 보완한다.
③ 공익사업의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한다.
④ 장외등록법인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⑤ 상속·증여세 비과세범위를 조정한다.
⑥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기타 세제를 보완한다.

1996년('상속세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의 전면개편)

①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한다.
② 배우자 상속·증여공제제도를 개선한다.
③ 상속·증여공제제도를 개선한다.
④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⑥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를 강화한다.
⑦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⑧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⑨ 납세자 권익을 제고한다.
⑩ 세무행정을 개선한다.

第 2 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이하에서 법이란 상속세법을 말하며, 영이란 상속세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이란 상속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1950년 : 相續稅法과 贈與稅法의 制定

◉ 법　　률 : 1950. 3.22. 법　　률 제114호(시행일 : 1950. 3.22.)
◉ 법　　률 : 1950. 4. 8. 법　　률 제123호(시행일 : 1950. 4. 8.)

〈要　　約〉

○ 상속세법
-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의 범위, 재산의 소재지, 과세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 상속재산의 의제와 비과세 및 공제, 과세최저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 세율과 면제,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 신고의무와 정부결정 및 납부에 관해 규정한다.
- 심사청구, 범칙 및 처벌규정 그리고 기타의 규정을 마련한다.

○ 증여세법
-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 비과세 및 과세최저한 그리고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 세율을 정하는 한편 기타의 규정은 상속세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制定內容〉

〈相續稅法〉

1. 納稅義務者 및 納稅義務의 範圍

相續稅法은 被相續人이 國內에 住所를 둔 경우(無制限納稅義務者)에는 相續財產 全

部에 대해서 相續稅를 賦課키로 하고 被相續人이 國內에 住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制限納稅義務者)에는 國內에 있는 相續財產에 대해서만 相續稅를 賦課키로 하였다.

(1) 無制限 納稅義務者

被相續人이 國內에 住所를 둔 때 : 相續財產 全部

(2) 制限納稅義務者

被相續人이 國內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때 : 國內에 있는 相續財產

2. 財產의 所在

또 財產의 所在는 動產·不動產을 모두 包含하고 動產·不動產의 權利에 대해서는 當該 動產 或은 不動產의 所在에 의하고 船舶의 所在는 船籍의 所在에 의하며 기타 財產의 所在는 權利者의 住所地에 依하는 것으로 規定했다.

(1) 動產 : 所在地

(2) 不動產 : 所在地

(3) 不動產上의 權利 : 所在地

(4) 船舶 : 船籍의 所在地

(5) 其他 : 權利者의 所在地

3. 課稅價額

無制限納稅義務者의 경우 相續稅를 賦課할 相續財產의 價格에서 公課金, 被相續人의 葬禮費用, 債務를 控除한 것을 相續稅 價額으로 하고 制限納稅義務者의 경우 相續稅를 賦課할 相續財產 價額에서 그 財產에 대한 公課, 그 財產을 目的으로 하는 留置權, 先取特權, 質權, 抵當權 또는 典當權으로써 擔保된 債務를 控除한 것을 相續稅 價額으로 하였다.

(1) 無制限納稅義務者

相續稅를 부과할 相續財產의 價額에서 다음 金額을 控除한 것이 相續稅價額임.

① 公課金

② 被相續人의 葬禮費用

③ 債務

(2) 制限納稅義務者

相續稅를 부과할 相續財產價額에서 다음 金額을 控除한 것이 相續稅價額임.

① 그 財産에 대한 公課

② 그 財産을 目的으로 하는 留置權, 先取特權, 質權, 抵當權 또는 典當權으로써 擔保외 債務

4. 相續財産의 擬制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因하여 相續人이 받는 生命保險金으로서 被相續人이 保險料를 支拂한 것은 相續財産으로 看做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相續人이 받은 保險金의 合計額이 10萬圓까지의 金額은 例外로 하였다. 또 被相續人에 支給할 것이 그의 死亡으로 相續人에게 支給되는 退職手當功勞金도 相續財産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나 10萬圓까지의 金額은 例外로 하였다.

(1) 生命保險金

①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因하여 相續人이 받는 生命保險金으로 被相續人이 保險料를 支拂한 것은 相續財産으로 看做함.

② 相續人이 받은 保險金의 合計額이 10萬圓까지의 金額은 例外

(2) 退職手當 功勞金

① 被相續人에 支給할 것이 그의 死亡으로 相續人에게 支給되는 것.

② 10萬圓까지의 金額은 例外

5. 非課稅 및 控除 課稅最低限

1) 非課稅

(1) 戰死 등의 死亡으로 相續이 開始되었을 때는 相續稅를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2) 基礎控除와 扶養家族控除는 다음과 같이 規定되었다.

課稅最低限은 課稅價格 30萬圓 未滿으로 정하였다.

(1) 基礎控除

① 相續人이 直系卑屬 : 100萬圓

② 相續人이 其他 : 70萬圓

(2) 扶養家族控除

(가) 戶主相續으로서 課稅價格 300萬圓 以下인 때 : 各 1人當 20萬圓

① 未成年者(18歲 未滿)

② 年老者(60歲 以上)

③ 不具廢疾者

㈏ 財產相續으로서 課稅價格이 200萬圓 以下인 경우 : 各 1人當 20萬圓

① 不具廢疾者

② 18歲 未滿의 子女

6. 稅 率

相續稅의 稅率은 最低 20%에서 最高 90%에 이르는 15段階 超過累進稅率로 構成되었다.

課稅價額	稅率
30萬圓 未滿	不課稅
30萬圓 以上 50萬圓 未滿	60,000圓+(30萬圓 超過額의 25% 加算)
50 〃 〃 70 〃	110,000 〃 +(50 〃 〃 30% 〃)
70 〃 〃 100 〃	170,000 〃 +(70 〃 〃 35% 〃)
100 〃 〃 150 〃	275,000 〃 +(100 〃 〃 40% 〃)
150 〃 〃 200 〃	475,000 〃 +(150 〃 〃 45% 〃)
200 〃 〃 300 〃	700,000 〃 +(200 〃 〃 50% 〃)
300 〃 〃 400 〃	1,200,000 〃 +(300 〃 〃 55% 〃)
400 〃 〃 500 〃	1,750,000 〃 +(400 〃 〃 60% 〃)
500 〃 〃 700 〃	2,350,000 〃 +(500 〃 〃 65% 〃)
700 〃 〃 1,000 〃	3,650,000 〃 +(700 〃 〃 70% 〃)
1,000 〃 〃 2,000 〃	5,750,000 〃 +(1,000 〃 〃 75% 〃)
2,000 〃 〃 3,000 〃	13,250,000 〃 +(2,000 〃 〃 80% 〃)
3,000 〃 〃 5,000 〃	21,250,000 〃 +(3,000 〃 〃 85% 〃)
5,000 〃 以上	38,250,000 〃 +(5,000 〃 〃 90% 〃)

7. 免除 또는 稅額控除

(1) 短期相續免稅

7年 以內에 再相續이 開始되었을 때에는 前課稅價格 中 相續한 分에 對한 相續稅를 免除하며, 10年 以內에 再相續이 開始되었을 때에는 前課稅價格 中 相續한 分에 對한 相續稅의 半額에 相當한 相續稅를 免除한다.

(2) 在外財產에 對한 稅額控除

外國에 있는 相續財產으로서 外國法에 의하여 納付한 相續稅를 賦課받은 財產은 免除한다.

8. 申告 決定 納付

(1) 相續開始를 한 날로부터 3月 以內에 申告(外國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둔 때는 6月)하도록 하고,

(2) 課稅價格은 政府가 決定하여 納稅義務者에게 通知하며,

(3) 納稅義務者는 申請에 의하여 年賦延納을 하거나 物納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다. 즉, 相續稅額이 20萬圓 以上인 때 擔保을 提供하고 3年 以內에 年賦延納할 수 있고 相續財產 中 不動產과 有價證券의 價額이 全體의 $\frac{1}{2}$ 以上이고 相續稅額이 10萬圓 以上인 경우 物納을 請求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課稅價額을 通知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納稅義務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때는 3月) 申請을 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였다.

※ 納付 要約

(1) 年賦延納

① 相續稅額이 20萬圓 以上인 때 擔保를 提供하고 3年 以內에 年賦延納할 수 있음.

② 申 請

課稅價額 通知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納稅義務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때는 3月)

(2) 物 納

① 相續財產 中 不動產과 有價證券의 價額이 全體의 2分의 1 以上이고 相續稅額이 10萬圓 以上인 境遇 物納을 請求할 수 있음.

② 申 請

課稅價額을 通知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外國에 住所를 둔 때는 3月)

(3) 數人의 相續稅의 納付義務

① 財產占有比率에 의해 各自 相續稅를 納付할 義務가 있음.

② 相續人은 連帶納稅義務가 있음.

9. 審査請求

課稅價額을 通知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納稅義務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때는 3月)에 異議가 있을 경우에는 不服事由를 具備하여 審査請求하도록 하고, 政府가 審査決定하도록 하였다.

10. 行政機關의 協助와 支給調査의 提出義務

(1) 市·邑·面長은 相續의 開始 또는 그 原因이 될 事項에 관한 届書를 受理하였을 때는 稅務署長에게 報告하도록 함.
(2) 國內에서 生命保險金, 退職手當, 功勞金 등을 支給한 者는 支拂調書를 提出하도록 함.
(3) 支拂調書를 提出한 者에 對하여는 交付金을 支給하도록 規定하였다.

11. 犯則 및 處罰

(1) 詐僞·其他 不正의 行爲로 인하여 相續稅를 逋脫한 者는 3倍에 相當하는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함(自首者는 處罰않음).
(2) 其他 秩序犯에 대하여는 5萬圓 以下의 罰金·科料에 處함.
(3) 支拂調書未提出者에 대하여는 5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4) 從事公務員의 祕密漏泄時 10萬圓 以下 罰金에 處하도록 함.

12. 課稅의 原因 및 時期

(1) 課稅의 原因 : 相續
(2) 課稅의 時期 : 相續開始日

13. 相續財產의 評價方法

(1) 相續財產, 公課, 債務 : 相續當時의 現況
(2) 地上權 定期金 : 施行令에 規定
(3) 條件附 權利, 存續期間이 不確定한 權利, 信託의 利益을 받을 權利 : 施行令에 規定

(4) 債務 : 政府가 確實하다고 認定하는 것에 限함.

14. 其 他

道·市·邑 其他公共團體는 相續稅에 附加稅를 賦課할 수 없도록 明文規定(附加稅의 賦課禁止)을 두었다. 그밖에 納稅義務者가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相續稅에 관한 一切의 事務를 擔當하기 위하여 納稅管理人을 選定하도록 하였다.

〈贈與稅法〉

1. 納稅義務者와 連帶納稅義務

他人으로부터 贈與를 받은 居住者를 納稅義務者로 하고, 居住者인 贈與者는 다음의 경우 納稅義務가 있도록 規定하였다.

(1) 受贈者가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한 때

(2) 受贈者가 贈與稅를 納稅할 資力을 喪失하거나, 住所, 居所가 不分明한 때

이와 함께 贈與者는 連帶納稅義務를 지도록 하였다.

2. 非課稅

國家, 公共團體 慈善團體 기타 公益事業에 기부한 財産은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3. 課稅價格

(1) 贈與財産의 價額에서

(가) 그 財産 取得으로 因하여 納付하는 公課

(나) 그 財産 取得에 要하는 登記 登錄 價額을 控除한 殘額을 課稅價格으로 하였다.

(2) 贈與前 3年 以內에 同一人에게 贈與한 財産은 課稅價格에 加算하도록 하였다.

4. 課稅最低額과 稅額控除

課稅價額 10圓 未滿에는 課稅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 課稅價額에 加算된 3年 以內에

贈與받은 財産에 대하여는 旣課稅額을 控除하도록 하였다.

5. 稅 率

贈與稅의 稅率은 다음과 같았다.

課稅價額	稅率
10萬圓 未滿	不課稅
10萬圓 以上 20萬圓 未滿	10,000圓＋(10萬圓 超過額의 15% 加算)
20 〃 〃 30 〃	25,000 〃 ＋(20 〃 〃 20% 〃)
30 〃 〃 50 〃	45,000 〃 ＋(30 〃 〃 25% 〃)
50 〃 〃 70 〃	95,000 〃 ＋(50 〃 〃 30% 〃)
70 〃 〃 100 〃	155,000 〃 ＋(70 〃 〃 35% 〃)
100 〃 〃 150 〃	260,000 〃 ＋(100 〃 〃 40% 〃)
150 〃 〃 200 〃	460,000 〃 ＋(150 〃 〃 45% 〃)
200 〃 〃 300 〃	685,000 〃 ＋(200 〃 〃 50% 〃)
300 〃 〃 400 〃	1,185,000 〃 ＋(300 〃 〃 55% 〃)
400 〃 〃 500 〃	1,735,000 〃 ＋(400 〃 〃 60% 〃)
500 〃 〃 700 〃	2,335,000 〃 ＋(500 〃 〃 65% 〃)
700 〃 〃 1,000 〃	3,635,000 〃 ＋(700 〃 〃 70% 〃)
1,000 〃 〃 2,000 〃	5,735,000 〃 ＋(1,000 〃 〃 75% 〃)
2,000 〃 〃 3,000 〃	13,235,000 〃 ＋(2,000 〃 〃 80% 〃)
3,000 〃 〃 5,000 〃	21,235,000 〃 ＋(3,000 〃 〃 85% 〃)
5,000 〃 以上	38,235,000 〃 ＋(5,000 〃 〃 90% 〃)

6. 相續稅法 準用

다음과 같은 事項에 대하여는 相續稅法을 準用하도록 하였다.

(1) 稅務公務員의 質問檢査權

(2) 課稅價額 決定에 對한 審査請求

(3) 年賦延納 및 物納

(4) 犯則 및 處罰

(5) 附加稅 賦課禁止

1951년

◉ 법　　률 : 1951. 5. 7. 법　　률 제199호(시행일 : 1951. 6. 7.)

〈改正內容〉

○ 상속세법의 벌칙규정을 삭제한다.

1952년

◉ 법　　률 : 1952.11.30. 법　　률 제261호(시행일 : 1952.11.30.)

〈要　　約〉

○ 증여세법을 폐지하고 상속세법에 통합한다.
○ 상속재산의 소재를 정하는 기준을 세분하여 규정한다.
○ 기초공제액, 동거가족 등에 대한 공제액, 과세최저한도액을 인상한다.
○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 또는 유증재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 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연부연납의 경우에 이자세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 신탁, 보험 등에 있어 증여의제규정을 신설한다.

〈改正內容〉

1. 相續財産의 所在地

(1) 動産 : 所在地
(2) 不動産 : 所在地
(3) 不動産上의 權利 : 所在地
(4) 船舶 : 船籍의 所在地
(5) 鑛業權 : 鑛區의 所在地

(6) 漁業權 : 어장에 最近한 沿岸이 屬하는 市邑面
(7) 預金, 積金 : 受入한 金融機關의 所在地
(8) 合同運用信託 : 引受한 營業場의 所在地
(9) 特許權, 商標權 : 登錄한 機關의 所在地
(10) 營業場에 關한 營業上의 權利 : 營業場 所在地
(11) 其他 : 財產의 權利者의 所在地

2. 相續稅 課稅價額

(1) 無制限納稅義務者

相續稅를 부과할 相續財產의 價額에 相續開始前 1年 以內에 被相續人이 한 贈與價額을 加算하고 다음 金額을 控除한 것이 相續稅價額임.

① 公 課
② 被相續人의 葬禮費用
③ 債務(相續開始前 1年 以內에 생긴 贈與債務 除外)

(2) 制限納稅義務者

相續稅를 부과할 相續財產價額에 相續開始前 1年 以內에 被相續人이 國內에 있는 財產에 對하여 贈與한 價額을 加算하고 다음 金額을 控除한 것이 相續稅價額임.

①~② : 前과 같음(1950년 해당 항).
② 그 財產에 關하여 相續開始 1年前에 생긴 贈與債務(新設)

3. 相續財產의 擬制

(1) 生命保險金

①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因하여 相續人과 其他의 者가 받은 것으로 被相續人이 保險料를 支拂한 것은 相續財產으로 看做함.
② 60萬圓까지의 金額은 例外

(2) 退職手當 功勞金

① 被相續人에게 支給할 것이 그의 死亡으로 被相續人과 其他의 者에게 支給되는 것
② 30萬圓까지의 金額은 例外

(3) 다음 境遇의 贈與 또는 歸屬된 財產의 價額이 100萬圓 以上일 때는 戶主相續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財產相續이 開始된 것으로 看做하고 相續稅를 賦課

① 親族에게 贈與한 때

② 絶家로 因하여 親族에게 財産이 歸屬된 때

4. 相續稅의 非課稅 範圍 擴大

課稅價額 不算入 財産(新設)

① 國家, 公共團體 또는 宗敎, 慈善, 學術 其他公益事業에 寄附한 財産

②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財産

5. 相續稅의 諸般控除額 引上

(1) 基礎控除

① 直系卑屬 : 500萬圓

② 其他 : 350萬圓

(2) 扶養家族控除

(가) 戶主相續으로서 課稅價格이 5,000萬圓 以下인 때

①~③ : 各 1人當 100萬圓

(나) 財産相續으로서 課稅價格이 3,000萬圓 以下인 때

① 不具廢疾者 : 各 1人當 100萬圓

② 女子로서 18歲 未滿인 者 : 各 1人當 100萬圓

6. 相續稅의 課稅最低限 金額 引上

課稅價格 100萬圓 未滿

7. 相續稅의 稅率

課 稅 價 額	稅 率
200萬圓 以下	100分의 10
200萬圓 超過	100分의 13
500萬圓 超過	100分의 15
700萬圓 超過	100分의 18
1,000萬圓 超過	100分의 20

課 稅 價 額	稅 率
1,500萬圓 超過	100分의 23
2,000萬圓 超過	100分의 25
3,000萬圓 超過	100分의 30
5,000萬圓 超過	100分의 35
8,000萬圓 超過	100分의 40
1億圓 超過	100分의 45
1億 5千萬圓 超過	100分의 50
2億圓 超過	100分의 55
3億圓 超過	100分의 60
5億圓 超過	100分의 65
7億圓 超過	100分의 70
10億圓 超過	100分의 75

8. 相續稅의 免除 또는 稅額控除 範圍 擴大

(1)~(2) : 前과 같음(1950년 해당조항 참조).

(3) 贈與稅 相當額

相續財產의 價額에 加算한 贈與財產에 對한 贈與稅額을 相續稅額에서 控除

9. 相續稅의 納付

(1) 年賦延納

① 相續稅額이 100萬圓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그 超過額에 對하여 擔保를 提供하고 3年 以內에 年賦延納할 수 있음.

② 申請 : 前과 같음(1950년 해당조항 참조).

(2) 物 納

① 相續財產 中 不動產과 有價證券의 價額이 全體의 2分의1 以上이고 相續稅額이 100萬圓 以上일 때 物納을 請求할 수 있음.

② 申請 : 前과 같음(1950년 해당조항 참조).

10. 支給調書의 提出義務

(1) 前과 같음(1950년 해당조항 참조).
(2) 國內에서 公債, 社債, 大韓金融債券, 株券, 出資證券, 金融組合預金 등의 名義改書 또는 變更을 取扱하는 者는 支拂調書를 提出함.
(3) 支拂調書를 提出한 者에 對하여는 交付金을 支給함.

11. 相續財産의 評價方法

(1) 相續財産과 그에 加算할 贈與의 價格, 公課債務 : 相續當時의 現況
(2)~(4) : 前과 같음(1950년 해당조항 참조).

12. 贈與의 擬制

(1) 信託受益權
信託으로 因하여 委託者가 他人에게 信託의 利益을 받을 權利를 所有케 하는 境遇
(2) 保險金契約者 以外의 者인 保險金 受取人이 받는 生命保險金(但 保險金額이 30萬圓을 超過하는 額)
(3) 郵便年金 契約者 以外의 者인 年金 受取人이 받는 郵便年金(但 年金價額이 30萬圓을 超過하는 額)
(4) 財産의 顯著한 低價讓受의 境遇 時價와의 差額
(5) 債務의 免除
(6) 其他 利益의 享受

13. 贈與稅法의 相續稅法과의 統合에 따른, 贈與稅 關聯 條文의 廢止 또는 削除

(1)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
(2) 증여세의 과세가격
(3) 증여세의 과세최저한
(4) 증여세의 세율
(5) 증여세의 세액공제
(6) 상속세법의 준용

1956년

◉ 법　　률 : 1956.12.31. 법　　률 제418호(시행일 : 1956.12.31.)

〈要　　約〉

○ 세율을 조정한다.
○ 친족에의 재산양도 등의 경우 일정한 사항에 관한 증여의제규정을 신설한다.
○ 기초공제액, 연부연납의 허가한도금액, 납세자의 물납신청한도를 인상한다.
○ 재산상속의 과세최저한을 인상한다.

〈改正內容〉

1. 財產의 所在地

⑴~⑻ 前과 같음(1952년 해당조항 참조).
⑼ 株式, 出資 : 法人의 本店
⑽ 特許權, 商標權 : 登錄한 機關의 所在地
⑾ 營業場에 關한 營業上의 權利 : 營業場 所在地
⑿ 其他 : 財產의 權利者의 所在地

2. 相續稅 課稅價額

⑴ 無制限納稅義務者
相續稅를 부과한 相續財產의 價額에 相續開始前 1年 以內에 被相續人이 相續人과 그 以外의 者에게 한 贈與價額을 加算하고 다음 金額을 控除한 것이 相續稅價額임.
① 公課金
② 被相續人의 葬禮費用
③ 債務(相續開始前 1年 이내에 생긴 贈與債務 除外)
⑵ 制限納稅義務者
相續稅를 부과할 相續財產價額에 相續開始前 1年 以內의 被相續人이 國內에 있는

財産에 對하여 그 親族에게 한 贈與價額을 加算하고 다음 金額을 控除한 것이 相續稅 價額임.

①～③ : 前과 같음(1952년 해당조항 참조).

3. 相續財産의 擬制

(1) 生命保險金

①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因하여 相續人과 被相續人의 親族이 받는 保險金으로서 被相續人이 保險料를 支拂한 것은 相續財産으로 看做

② 6萬圜까지의 金額은 例外

(2) 退職手當 功勞金

① 被相續人에게 支給할 것이 그의 死亡으로 相續人과 被相續人의 親族에게 支給되는 것.

② 3萬圜까지의 금액은 예외

(3) 다음 境遇의 贈與 또는 歸屬된 財産의 價額이 10萬圜 以上일 때는 戶主相續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財産相續이 開始된 것으로 看做하고 相續稅를 賦課

① 親族에게 贈與한 때

② 絶家로 因하여 親族에게 財産이 歸屬된 때

4. 相續稅의 諸控除額 引上

(1) 基礎控除

50萬圜

(2) 扶養家族控除

(가) 戶主相續으로서 課稅價格 : 500萬圜 以下인 때

①～③ : 各 1人當 10萬圜

(나) 財産相續으로서 課稅價格이 300萬圜 以下인 때

① 不具廢疾者
② 18歲 未滿인 子女 } 各 1人當 10萬圜

5. 相續稅의 課稅最低限 引上

課稅價格 10萬圜 未滿

6. 相續稅의 稅率

	第 1 種	第 2 種
10萬圜 以下	100分의 5	100分의 8
10萬圜 超過	100分의 6	100分의 10
20萬圜 超過	100分의 8	100分의 12
50萬圜 超過	100分의 10	100分의 15
100萬圜 超過	100分의 12	100分의 20
200萬圜 超過	100分의 15	100分의 25
300萬圜 超過	100分의 20	100分의 30
500萬圜 超過	100分의 25	100分의 35
1,000萬圜 超過	100分의 30	100分의 40
2,000萬圜 超過	100分의 35	100分의 45
9,000萬圜 超過	100分의 40	100分의 50
1億圜 超過	100分의 45	100分의 55

※ 第1種 稅率：直系尊卑屬配偶者

※ 第2種 稅率：其他

7. 納 付

(1) 年賦延納

① 10萬圜을 초과하는 때：前과 같음.

② 申請：前과 같음(1950년 해당조항 참조).

(2) 物 納

① 相續財產 中 不動產과 有價證券의 價額이 全體의 2分의 1 以上이고 相續稅額의 10萬圜 以上일 때 物納을 請求할 수 있음.

② 申請：前과 같음(1950년 해당조항 참조).

8. 贈與의 擬制

(1) 信託受益權
信託으로 因하여 委託者가 親族에게 信託의 利益을 받을 權利를 所有케 하는 境遇
(2) 保險金契約者의 親族인 受取人이 받는 生命保險金(但 保險金額 3萬圜을 超過하는 額)
(3) 郵便年金契約者의 親族인 年金受取人이 받는 郵便年金(但 保險金額 3萬圜을 超過하는 額)
(4) 親族으로부터 받은 財産의 顯著한 低價讓受境遇 時價와의 差額
(5) 親族으로부터 받는 債務의 免除
(6) 親族으로부터 받는 其他 利益의 享受

1960년

◉ 법　　률 : 1960.12.31. 법　　률 제573호(시행일 : 1961. 1. 1.)
◉ 시행규칙 : 1961. 2. 9. 재무부령 제195호(시행일 : 1961. 1. 1.)

〈要　　約〉

○ 민법상 상속제도의 법정화에 따라 세목을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하여 개편한다.
○ 과세최저한도액, 기초공제액을 인상한다.
○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조정한다.
○ 상속세의 기일내 신고에 대한 공제규정을 신설한다.
○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改正內容〉

※ 改正의 전반적 흐름

從來 우리나라 相續制度는 成文律이 없고 主로 慣習에 의하였으나 1960年 1月 1日

부터 新民法이 發效됨으로 因하여 비로소 相續制度가 法定되었으므로 新制度를 參酌하여 財產權이 繼承되는 原因에 따라 稅目을 相續稅와 贈與稅로 區分하여 改編하였다. 同時에 稅率은 大幅 引下하고 免稅點은 引上하여 諸控除規定의 範圍와 限界를 擴大 또는 調節하는 한편 納稅者의 納付를 勸奬할 수 있는 方途를 講究하여 稅制와 運營方法을 改善하도록 하였다.

가. 稅目(區分)

財產權의 繼承은 死亡을 原因으로 할 때는 相續稅로 하여 課稅하고 親族間의 贈與이거나 其他者間의 贈與를 不問하고 贈與로 因한 것일 때는 贈與稅로 課稅하도록 稅目을 區分 設定하였다.

나. 課稅價格

贈與稅(遺贈과 死因贈與를 除外한다)의 課稅價格은 財產權을 贈與한 때를 時點으로 하여 그 財產權의 價格을 評定하여 賦課하고 3年 以內의 短期間內 贈與에 對하여는 累進課稅하도록 하였다.

다. 基礎控除

戶主相續에 局限하여 控除하는 從前規定을 死亡으로 因한 相續(遺贈과 死因贈與를 包含한다)에 對하여는 全部適用되도록 그 範圍을 擴大하는 한편 從前 50萬圜을 200萬圜으로 引上하고 贈與稅에 있어서는 50萬圜을 控除하도록 하였다.

라. 納稅義務者

相續稅인 경우 相續人 또는 受遺者는 相續稅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財產相續이 數人인 경우에는 相續稅를 連帶하여 納付할 義務를 진다. 한편 贈與稅의 경우는 贈與를 받은 者를 納稅義務者로 하고 贈與者를 連帶納付의 責任者로 規定하였다.

마. 納期內稅額控除

自進納付의 精神을 昂揚하는 措置로 納期內에 納付한 者에 對하여는 納付할 稅額에서 一割을 控除하고 納付할 수 있는 特典規定을 新設하였다.

바. 課稅最低限(免稅點)

國民의 生活基盤安定과 最低生活維持를 考慮하여 免稅點을 50萬圜으로 引上하였다.

사. 稅 率

從前 相續稅率은 相當히 高率이므로 稅率을 大幅 引下하는 同時에 贈與稅에 對하여는 相續稅와 區分하여 別途로 稅率을 策定하였다.

〈相續稅 關聯〉

1. 相續財産의 所在地

(1)~(8) : 前과 같음(1952년 해당조항 참조).
(9) 株式, 出資, 社債 : 法人의 本店
(10) 前과 같음(1956년 해당조항 참조).
(11) 著作權, 出版權 : 發行場所
(12) 營業場에 關한 營業上의 權利 : 營業場 所在地
(13) 其他 : 財産의 權利者인 所在地

2. 相續稅 課稅價額

(1) 無制限納稅義務者 : 前과 같음(1956년 해당조항 참조).
(2) 制限納稅義務者
相續稅를 부과할 相續財産價額에 相續開始前 1年 以內의 被相續人이 國內에 있는 財産에 關하여 相續人과 相續人 以外의 者에게 한 贈與의 價額을 加算하고 다음 金額을 控除한 것이 相續稅 價額임.
① 前과 같음(1952년 해당조항 참조).
② 그 財産을 目的으로 하는 留置權, 質權, 抵當權으로써 擔保된 債務
③ 前과 같음(1952년 해당조항 참조).

3. 相續財産의 擬制

(1) 生命保險金
①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因하여 相續人과 相續人 以外의 者가 받는 保險金으로서 被相續人이 保險料를 支拂한 것은 相續財産으로 看做

② 50萬圜까지의 金額은 例外

(2) 退職手當 功勞金

① 被相續人에게 支給할 것이 그의 死亡으로 相續人과 相續人 以外의 者에게 支給되는 것.

② 50萬圜까지의 金額은 例外

(3) 削除(1956년 해당조항 참조)

4. 相續稅의 非課稅

(1) 前과 같음(1950년 해당조항 참조).

(2) 課稅價格 不算入 財產

①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寄附한 財產

② 民法 第966條에 定한 財產(墳墓에 屬한 禁養林野, 6百坪 以內의 墓土인 農地, 族譜)

③ 公務員年金法에 依한 遺族扶助金과 遺族一時金

5. 相續稅의 諸控除

(1) 基礎控除

500萬圜

(2) 扶養家族控除

① 未成年者
② 年老者(60歲 以上)
③ 不具廢疾者
④ 配偶者

各 1人當 50萬圜

6. 相續稅의 課稅最低限

課稅價格 50萬圜 未滿

7. 相續稅의 稅率

課 稅 價 額	稅 率
100萬圜 以下	100分의 5
100萬圜 超過	100分의 6
200萬圜 超過	100分의 8
300萬圜 超過	100分의 10
500萬圜 超過	100分의 12
700萬圜 超過	100分의 15
1,000萬圜 超過	100分의 18
2,000萬圜 超過	100分의 21
5,000萬圜 超過	100分의 25
1億圜 超過	100分의 30

8. 納 付

(1) 年賦延納

① 相續稅額이 150萬圜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超過額에 對하여 擔保를 提供하고 3年 以內에 年賦延納할 수 있음.

② 申 請

課稅價額을 通知받은 날로부터 30日(納稅義務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때는 3月)

(2) 物 納

① 相續財產 中 不動產과 有價證券의 價額이 全體의 2分의 1 以上이고 相續稅額이 100萬圜 以上일 때 物納을 請求할 수 있음.

② 申 請

課稅價額을 通知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外國에 住所를 둔 때는 3月)

9. 納付稅額 控除

(1) 期間內 納付稅額 控除

政府에서 指定하는 期限內 政府가 決定한 稅額을 納付할 境遇 稅額의 1/10 控除

〈贈與稅 關聯〉

1. 贈與稅의 納稅義務者

(1) 無制限納稅義務者
他人으로부터 贈與를 받은 居住者
(2) 制限納稅義務者
國內에 있는 財產을 贈與받은 非居住者

2. 贈與稅의 非課稅

(1) 國家, 公共團體 또는 宗敎, 慈善, 學術, 其他 公益事業에 寄附한 財產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財產(但 그 財產에서 생기는 利益의 全部 또는 親族에게 歸屬되는 경우는 例外)

3. 贈與의 擬制

(1) 前과 같음(1956년 해당조항 참조).
(2) 保險金 契約者 以外의 者인 保險金 受取人이 받는 生命保險金(但 保險金額 15萬圜을 超過하는 額)
(3) 前과 같음(1956년 해당조항 참조).
(但, 年金價額이 15萬圜을 超過하는 額)
(4)~(6) : 前과 같음(1956년 해당조항 참조).

4. 贈與稅의 課稅價格

(1) 贈與財產의 價額에서 다음을 控除함.
① 그 財產 取得으로 因하여 納付하는 公課金
② 그 財產 取得에 要하는 登記(登錄)價額
(2) 贈與前 3年 以內에 同一人으로부터 받은 贈與價額으로서 50萬圜 以上의 것이 있을 때에 그 贈與의 價額을 加算함.

5. 贈與稅의 諸控除

(1) 基礎控除

親族으로부터의 贈與時 課稅價額에서 50萬圓 控除

6. 贈與稅의 課稅最低限

課稅價額 10萬圓 未滿

7. 贈與稅의 稅率

課 稅 價 額	稅 率
1. 第1種(親族으로부터 받은 贈與)	
100萬圓 以下	100分의 6
100萬圓 超過	100分의 7
200 〃	100分의 9
300 〃	100分의 12
500 〃	100分의 15
700 〃	100分의 18
1,000 〃	100分의 21
2,000 〃	100分의 25
5,000 〃	100分의 30
1億圓 超過	100分의 35
2. 第2種(親族 以外의 者로부터 받은 贈與)	
50萬圓 以下	100分의 15
50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分의 18
100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分의 21
200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分의 25
500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分의 30
1,000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100分의 35

8. 稅額控除

課稅價額에 加算된 3年 以內에 贈與받은 財産에 對한 旣課稅額

9. 相續稅法의 準用

(1) 財產의 所在
(2) 非課稅
(3) 財產의 評價
(4) 課稅價額의 申告
(5) 納稅管理人
(6) 稅務公務員의 質問·檢査權
(7) 課稅價格의 決定
(8) 審査의 請求 및 決定
(9) 納付(年賦延納, 物納)
(10) 期間內 納付稅額 控除

1966년

◉ 법　　률 : 1966. 8. 3. 법　　률 제1807호(시행일 : 1966. 9.17.)
◉ 시행규칙 : 1966. 3.11. 재무부령 제 403호(시행일 : 1966. 3.11.)

〈改正內容〉

一般農地의 所有權移轉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登記名義人으로부터 一般農地의 權利를 이어받은 事實上의 現所有者 또는 時效取得者가 民法 第1000條의 規定에 의한 順位의 相續人이 될 者 名義로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였을 때는 登記價格이 50萬원 以下인 境遇에 限하여 贈與稅를 課하지 않도록 하였다.

1967년

◉ 법　　률 : 1967.11.29. 법　　률 제1971호(시행일 : 1968. 1. 1.)
◉ 시행규칙 : 1968. 3.27. 재무부령 제 519호(시행일 : 1968. 3.27.)

〈要　　約〉

○ 기초공제액, 부양가족공제 그리고 면세점을 인상한다.
○ 세율을 조정한다.
○ 연부연납 및 물납의 신청한도액을 인상한다.

〈改正內容〉

〈相續稅 關聯〉

1. 課稅의 原因 및 時期

(1) 課稅의 原因 : 相續
(2) 課稅의 時期
　相續開始日(但 失踪宣告로 因할 경우는 失踪宣告日)

2. 相續財産의 擬制

(1) 生命保險料
　①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② 15萬원까지의 金額은 例外
(2) 退職手當 功勞金
　①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② 15萬원까지의 金額은 例外

3. 相續財産의 評價方法

(1) 前과 같음(1952년 해당조항 참조).

但 失踪宣告로 因한 境遇는 死亡한 것으로 看做되는 當時의 現況

(2)~(4) : 前과 같음(1950년 해당조항 참조).

4. 相續稅의 諸控除

(1) 基礎控除

150萬원

(2) 扶養家族控除

① 未成年者

20歲에 達하기까지의 年數×5萬원+20萬원

② 年老者(60歲 以上) 1人當 20萬원

③ 不具廢疾者 1人當 20萬원

④ 配偶者 50萬원

5. 相續稅의 課稅最低限

課稅價格 10萬원 未滿

6. 相續稅의 稅率

課 稅 價 額	稅 率
20萬원 以下	10分의 5
20萬원 超過	10分의 10
50萬원 超過	10分의 15
200萬원 超過	10分의 20
500萬원 超過	10分의 30
1,000萬원 超過	10分의 40
3,000萬원 超過	10分의 50
1億원 超過	10分의 60
5億원 超過	10分의 70

7. 免除 또는 稅額控除

(1) 前과 같음(1950년 해당조항 참조).

(2) 在外財産에 對한 稅額控除

外國에 있는 相續財産으로서 外國法에 의하여 賦課받은 相續稅額을 控除

(3) 贈與稅相當額

前과 같음(1952년 해당조항 참조).

8. 申告納付

(1) 前과 같음.

(2) 위 申告期間內 納付할 수 있음.

9. 納付稅額控除

(1) 削除(기간내 납부세액 공제)

(2) 申告納付 稅額控除

申告納付稅額×1/10

10. 決定 및 更正 決定

(1) 申告에 의하여 決定함. 但 申告가 없거나 不當한 境遇 政府가 決定

(2) 課稅價格 決定後 納稅義務者에게 通知

(3) 課稅價格 決定後 脫漏, 誤謬가 있는 것은 發見한 때 즉시 更正 決定함.

11. 審査請求條項

삭제함(1950년 해당조항 참조).

12. 納 付

(1) 年賦延納

① 50萬원을 超過하는 때 :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② 申請 :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2) 物 納

① 相續財產 中 不動產과 有價證券價額 全體의 2分의 1 以上이고 相續稅額이 30萬원 以上일 때 物納을 請求할 수 있음.

② 申請 :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13. 支給調書의 提出義務

(1) 前과 같음(1950년 해당조항 참조).

(2) 國內에서 公債, 社債, 大韓金融債券, 株券, 出資證券, 또는 郵便貯金 또는 金融機關에 對한 預金 등이 名義改書 또는 變更을 取扱하는 者는 支拂調書를 提出함.

(3) 前과 같음(1952년 해당조항 참조).

〈贈與稅 關聯〉

1. 贈與의 擬制

(1) 前과 같음(1956년 해당조항 참조).

(2)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但 保險金額 5萬원을 超過하는 額)

(3) 前과 같음(1956년 해당조항 참조).
(但 年金價額이 5萬원을 超過하는 額)

(4)~(6) : 前과 같음(1956년 해당조항 참조).

2. 贈與稅의 課稅價格

(1)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2) 贈與前, 3年 以內에 同一人으로부터 받은 贈與價額으로서 50萬원 以上의 것이 있을 때에 그 贈與의 價額을 加算함.

3. 贈與稅의 諸控除

基礎控除 : 親族으로부터의 贈與時 課稅價格에서 50萬원 控除

4. 贈與稅의 課稅最低限

課稅價額 5萬원 未滿

5. 贈與稅의 稅率

課 稅 價 額	稅 率
30萬원 以下 金額	100分의 10
3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	100分의 15
1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	100分의 20
3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	100分의 30
7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	100分의 40
2,0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	100分의 50
5,0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	100分의 60
2億원을 超過하는 金額	100分의 70

6. 相續稅法의 準用

(1)~(4) :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5) 支拂調書의 提出義務

(6) 納稅管理人

(7) 稅務公務員의 質問檢査權

(8) 課稅價格의 決定

(9) 審査의 請求 및 決定

(10) 申告納付稅額 控除 1/10

1969년

◉ 시행규칙 : 1969. 7.24. 재무부령 제644호(시행일 : 1969. 7.24.)

〈要　　約〉

○ 서식 등을 개정한다.

〈改正內容〉

상속세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속세법시행규칙

제 1 조 상속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소관세무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 상속재산이 동일지방 국세청관내에 있는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관세무서를 결정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이 2개 이상의 지방국세청관내에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소관세무서를 결정한다.

제 2 조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조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 4 조 상속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 전조의 보고는 신고자의 본적지 여부에 불구하고 신고서를 받은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이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 6 조 세무서장은 제4조의 보고사항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수시로 구청 또는 시·읍·면에 대하여 호적 및 거주에 관한 부서와 대조하여 보고의 적부와 누락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 7 조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불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 8 조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 9 조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법 제16조의 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이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전조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전조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제3조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1971년

◉ 법　　률 : 1971.12.28. 법　　률 제2319호(시행일 : 1972. 1. 1.)
◉ 시 행 령 : 1971. 3.12. 대통령령 제5560호(시행일 : 1971. 3.12.)
　　1971.12.30. 대통령령 제5902호(시행일 : 1972. 1. 1.)
◉ 시행규칙 : 1972. 2.10. 재무부령 제 876호(시행일 : 1972. 1. 1.)

〈要　　約〉

○ 기초공제액, 부양가족공제 그리고 면세점을 인상한다.
○ 상속세에 있어 보험금 등의 비과세한도액을 인상한다.
○ 국가 등이 받는 수증재산 등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改正內容〉

〈相續稅 關聯〉

1. 課稅의 原因 및 時期

(1) 課稅의 原因 : 相續, 遺贈, 死因贈與
(2) 課稅의 時期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참조).

2. 相續稅 課稅價額

(1) 無制限納稅義務者 : 前과 같음(1956년 해당조항 참조).

(2) 制限納稅義務者

相續稅를 부과할 相續財產價額에 相續開始前 1年 以內에 被相續人이 國內에 있는 財產에 對하여 贈與한 價額을 加算하고 다음 金額을 控除한 것이 相續稅 價額임.

①~③ :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3. 相續財產의 擬制

(1) 生命保險金 또는 損害保險金

①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② 100萬원을 超過하는 때에는 그 超過하는 部分에 限함.

(2) 退職手當 功勞金

①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② 100萬원을 超過하는 때에는 그 超過하는 部分에 限함.

4. 相續財產의 評價方法

(1) 前과 같음(1952년 해당조항 참조).

但 失踪宣告로 因한 境遇는 失踪宣告日 當時의 現況

(2)~(4) : 前과 같음(1950년 해당조항 참조).

5. 相續稅의 非課稅

(1) 前과 같음(1950년 해당조항 참조).

(2) 課稅價格 不算入財產

①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寄附한 財產

② 宗敎事業 慈善事業 學術事業 其他 公益事業에 出捐한 財產

③ 民法 第996條에 定하는 財產

④ 公務員年金法에 依한 遺族扶助金과 遺族一時金

(3) 受遺者가 營利法人일 경우 相續稅 免除

6. 相續稅의 諸控除

(1) 基礎控除

300萬원

(2) 扶養家族控除

① 未成年者

20歲에 達하기까지의 年數×5萬원+20萬원

② 年老者(60歲 以上)

1人當 40萬원

③ 不具廢疾者

1人當 40萬원

④ 配偶者 150萬원

7. 相續稅의 課稅最低限

課稅價格 20萬원 未滿

8. 免除 또는 稅額控除

(1)~(2)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참조).

(3) 贈與稅相當額

① 相續財產의 價額에 加算한 贈與財產에 대한 贈與稅額을 相續稅算出稅額에서 控除

② 다만, 相續者가 數人인 境遇는 各自가 納付할 相續稅額에서 控除

9. 納 付

(1) 年賦延納

① 100萬원을 초과하는 때 :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② 申請 :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2) 物 納

① 相續財產 中 不動產과 有價證券의 價額이 全體의 2分의 1 以上이고 相續稅額이 60萬원 以上일 때 物納을 請求할 수 있음.

② 申請 :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3) 前과 같음(1950년 해당조항 참조).

但 各自 取得한 財產의 範圍內에서 連帶納稅義務가 있음.

10. 支給調書의 提出義務

(1) 國內에서 生命保險金, 損害保險金, 退職手當功勞金 등을 支給한 者는 支拂調書를 提出함.

(2) 國內에서 公債, 韓國銀行 및 金融機關이 發行하는 債券, 株券, 出資證券, 또는 郵便貯金 또는 金融機關에 對한 預金 등의 名義改書 또는 變更을 取扱하는 者는 支拂調書를 提出함.

(3) 前과 같음(1952년 해당조항 참조).

〈贈與稅 關聯〉

1. 贈與稅의 納稅義務者

(1)~(2) :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3) 所得稅法에 의하여 所得稅가 賦課되는 때는 贈與稅를 課稅않음.

(4) 法人格없는 社團, 其他 團體는 個人으로 봄.

2. 贈與稅의 連帶納稅義務

贈與者는 贈與를 받은 者의 納付할 稅額에 對하여 連帶하여 納付할 責任이 있음.

3. 贈與의 擬制

(1) 前과 같음(1956년 해당조항 참조).

(2)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但 保險金額 10萬원을 超過하는 額)

(3) 削除(우편연금 계약자의 친족인 연금수입인이 받는 우편연금)

(4) 特殊關係者로부터 받는 財產의 顯著한 低價讓受 境遇 時價와의 差額

(5) 特殊關係者로부터 받는 債務의 免除
(6) 特殊關係者로부터 받는 其他 利益의 享受

4. 贈與稅의 非課稅

(1)~(2) :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3)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로부터 贈與받은 金額
(4)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勤勞者 또는 그 遺家族이 支給받는 保險金

5. 贈與稅의 課稅價格

(1) 贈與財産
贈與를 받은 당시 贈與財産의 價額의 合計額
(2) 贈與前, 3年 以內에 同一人으로부터 받은 贈與價額의 合計額이 200萬원 以上이 될 때에는 그 贈與의 價額을 合算함.

6. 贈與稅의 諸控除

(1) 基礎控除
① 直系尊卑屬 配偶者로부터의 贈與 150萬원
② ① 以外의 親族으로부터의 贈與 100萬원

7. 贈與稅의 課稅最低限

課稅價額 10萬원 未滿

8. 稅額控除

課稅價格에 加算된 3年 以內에 贈與받은 財産에 對한 贈與稅額

1973년

◉ 시 행 령 : 1973. 4.24. 대통령령 제6644호(시행일 : 1973. 4.24.)
1973.10.29. 대통령령 제6914호(시행일 : 1973.10.29.)
◉ 시행규칙 : 1973. 6. 9. 재무부령 제 961호(시행일 : 1973. 6. 9.)

〈要 約〉

○ 주식가액의 평가방법 등을 보완한다.

〈改正內容〉

1. 相續財產 評價

가. 주식가액 평가방법의 개정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left(\frac{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발행주식\ 총수}+\frac{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right)\div 2$$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손실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left(\frac{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발행주식\ 총수}-\frac{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실액}{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right)\div 2$$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1주당\ 가액=\frac{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2) "(1)"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순자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신설)

(3)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

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신설).

나. 기타(상속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신설)

(1)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2) 휴업은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중에 있는 것으로 한다.

(3)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①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1974년

◉ 법　　률 : 1974.12.21. 법　　률 제2691호(시행일 : 1975. 1. 1.)
◉ 시행규칙 : 1974. 3.30. 대통령령 제7100호(시행일 : 1974. 3.30.)
1974.12.31. 대통령령 제7469호(시행일 : 1975. 1. 1.)
◉ 시행규칙 : 1975. 3. 3. 재무부령 제1081호(시행일 : 1975. 1. 1.)

〈要　　約〉

○ 세율을 조정한다.
○ 기초공제액 등 인적공제액을 인상한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를 증여로 의제한다.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改正內容〉

1974年度 稅制改革의 基本方向으로 提示된 所得再分配의 適正化를 위한 財產所得에 대한 課稅強化의 對象으로 또한 高所得層의 相續財產 隱蔽와 變則相續을 防止함과 同時에 稅收確保를 目的으로 相續稅法의 補完的 改正이 斷行되었다.

〈相續稅 關聯〉

1. 相續稅 課稅價額

(1) 無制限納稅義務者

相續稅를 부과할 相續財產價額에 3年 以內에 相續人에게 한 贈與價額과 1年 以內에 相續人 以外의 者에게 한 贈與價額을 加算하고 다음 金額을 控除한 것이 相續稅 價額임.

① 公課金

② 被相續人의 葬禮費用

③ 債務(相續稅開始前 3年 이내에 相續人에게 한 贈與債務와 1年 以內에 相續人 以外의 者에게 한 贈與債務 除外)

(2) 制限納稅義務者

相續稅를 부과한 相續財產價額에 國內에 있는 財產에 對하여 相續開始前 3年 以內에 相續人에게 贈與한 財產과 1年 以內에 相續人 以外의 者에게 贈與한 財產의 價額을 加算하고 다음 金額을 控除한 것이 相續稅價額임.

①~② :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③ 그 財產에 關하여 相續開始 1年前까지 생긴 債務(但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는 3年前)

2. 相續財產의 擬制

(1) 生命保險金 또는 損害保險金

①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② 200萬원을 超過하는 때에는 그 超過하는 部分에 限함.

(2)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3. 相續稅의 非課稅

(1) 前과 같음(1950년 해당조항 참조).

(2) 課稅價格 不算入財產

①~③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④ 國民福祉年金法, 公務員年金法, 私立學校 敎員年金法, 軍人年金法에 의하여 支給되는 遺族年金, 遺族一時金 또는 殉職扶助金, 災害補償金 및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支給되는 遺族補償年金, 遺族補償一時金 遺族特別給與

(3)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4. 相續稅의 諸控除

(1) 基礎控除

600萬원

(2) 扶養家族控除

① 未成年者

20歲에 達하기까지의 年數×10萬원+30萬원

② 年老者(60歲 以上)

1人當 60萬원

③ 不具廢疾者 1人當 60萬원

④ 配偶者 500萬원

5. 相續稅의 稅率

課稅價額	稅率
50萬원 이하	課稅價額의 100分의 10
50萬원 超過 100萬원 이하	5萬원+5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12
100萬원 超過 300萬원 이하	11萬원+1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15
300萬원 超過 500萬원 이하	41萬원+3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20
500萬원 超過 700萬원 이하	81萬원+5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25
700萬원 超過 1,000萬원 이하	131萬원+7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30
1,000萬원 超過 1,500萬원 이하	221萬원+1,0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35
1,500萬원 超過 2,000萬원 이하	396萬원+1,5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40
2,000萬원 超過 3,000萬원 이하	596萬원+2,0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45
3,000萬원 超過 5,000萬원 이하	1,046萬원+3,0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50
5,000萬원 超過 7,000萬원 이하	2,046萬원+5,0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55
7,000萬원 超過 1億원 이하	3,146萬원+7,0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60
1億원 超過 3億원 이하	4,946萬원+1億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65
3億원 超過 5億원 이하	17,906萬원+3億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70
5億원 超過	31,946萬원+5億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75

6. 行政機關의 協助

行政機關의 長이 相續의 開始 또는 그 原因이 될 事項에 關한 申告를 받은 때는 所管稅務署長에게 通知함.

7. 支給調書의 提出義務

(1)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2) 國內에서 公債·社債·債券, 出資持分의 證書, 郵便預金 또는 金融機關에 對한 預金 등의 名義改書 또는 變更을 取扱하는 者는 支給調書를 提出함.
(3) 前과 같음(1952년 해당조항 참조).

〈贈與稅 關聯〉

1. 贈與稅의 納稅義務者

(1)~(3)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4) 法人格 없는 社團, 財團, 其他 團體는 非營利法人으로 봄.

2. 贈與稅의 非課稅

(1)~(4)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5) 우리社株組合에 加入한 者가 當該法人의 株式을 그 組合을 通하여 取得한 경우에 그 組合員이 少額株主에 해당되는 때 그 株主의 取得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으로 인하여 받는 利益에 상당하는 金額

3. 贈與의 擬制

(1)~(2) : 前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3) 配偶者 등의 賣買行爲 否認
配偶者, 直系尊卑屬에게 讓渡한 資產은 贈與로 看做
(4)~(6)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4. 贈與稅의 諸控除

(1) 基礎控除

①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②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但 當該 贈與前 3年 以內의 贈與稅計算에 있어 控除받은 金額과 當該 贈與價額에서 控除받을 金額의 合計額이 위의 金額을 超過할 경우 그 超過하는 部分은 控除하지 아니함.)

5. 贈與稅의 稅率

課 稅 價 額	稅 率
30萬원 이하	課稅價額의 100分의 10
30萬원 超過 50萬원 이하	3萬원＋3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15
50萬원 超過 100萬원 이하	6萬원＋5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20
100萬원 超過 300萬원 이하	16萬원＋1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25
300萬원 超過 500萬원 이하	66萬원＋3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30
500萬원 超過 700萬원 이하	126萬원＋5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35
700萬원 超過 1,000萬원 이하	196萬원＋7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40
1,000萬원 超過 1,500萬원 이하	316萬원＋1千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45
1,500萬원 超過 2,000萬원 이하	541萬원＋15百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50
2,000萬원 超過 3,000萬원 이하	791萬원＋2千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55
3,000萬원 超過 5,000萬원 이하	1,341萬원＋3千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60
5,000萬원 超過 1億원 이하	2,541萬원＋5千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65
1億원 超過 2億원 이하	5,791萬원＋1億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70
2億원 超過	12,791萬원＋2億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75

※ 變則相續의 防止

旣存 相續稅法 未備로 因하여 法網에 抵觸됨이 없이도 相續稅逋脫의 素地가 多分히 內在하였는데 改正法은 이를 防止하기 위한 一聯의 措置를 講究하였다.

(가) 夫婦間, 直系尊卑屬間에 財産을 有償讓渡할 경우 破産宣告處分, 國稅徵收法에 의한 公賣 등의 때를 除外하고는 如何한 讓渡行爲도 贈與로 看做하여 贈與稅를 賦課하도록 하는 規定을 新設하였고

(나) 相續人이 相續開始日 以後에 賦與받은 財産의 相續稅課稅價額 不算入期間을 從前

의 1年 以前에서 相續開始日前 3年 以前으로 延長하였으며

㈐ 大統領令이 定하는 公益事業에 出捐한 財産을 받은 者가 出捐目的外에 使用하거나 出捐目的에 使用하지 않는 경우 그 出捐財産을 贈與로 看做하도록 하는 規定을 新設하였다.

1975년

◉ 시 행 령 : 1975.11.13. 대통령령 제7864호(시행일 : 1975.11.13.)

〈要　　約〉

○ 非課稅의 範圍를 調整한다.

〈改正內容〉

1. 相續稅의 非課稅 範圍 擴大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 다만,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내에 있어서의 사용 또는 수익은 예외로 한다(신설).

1976년

◉ 법　　률 : 1976.12.22. 법　　률 제2922호(시행일 : 1977. 1. 1.)
◉ 시 행 령 : 1976. 4.15. 대통령령 제8091호(시행일 : 1976. 4.15.)
　　1976.12.31. 대통령령 제8341호(시행일 : 1977. 1. 1.)
◉ 시행규칙 : 1977. 2.23. 재무부령 제1235호(시행일 : 1977. 2.23.)

〈要　　約〉

이번 相續稅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財産이 적은 일반대중이 상속하는 경우에 相續稅의 負擔을 덜게 하여 日常生活에 필요한 住宅 등 기본재산을 유지하는 데 곤란을 받지 않도록 相續稅의 각종 控除額을 올리고 其他 現行法令의 未備點을 보완하였다.

○ 相續稅의 각종 控除額 水準을 인상함.
○ 未成年者 控除는 子女 2인으로 제한함.
○ 年賦延納의 경우 第1回 延納稅額에 대하여도 利子稅額을 徵收토록 함.
○ 株式評價方法을 개선함.
○ 公益事業 事後管理에 의하여 課稅하는 경우 課稅價額을 명확히 함.
○ 物納制度의 改善
　— 物納制度의 收納價額을 명확히 함.
　— 物納對象 財産決定에 執行官署의 裁量權을 배제함.
　— 物納申請에 대한 許可拒否權을 제한함.
　— 其他 現行法令의 未備點을 補完함.
　— 擔保解除時期를 단축함.
　— 贈與稅 合算課稅를 배제함.
　— 현저히 저렴한 價額의 基準을 時價보다 30% 이상 낮은 價額으로 함.

〈改正內容〉

1. 相續稅 諸控除額 引上(法 第5條·第7條·第11條第1項)

(單位 : 千원)

區 分	人 員	改 正 前	改 正
基礎控除	1	6,000	8,000
配偶者控除	1	5,000	8,000
未成年者控除	8세 −1 12세 −1	100×20세까지의 年數+300	240×20세까지의 年數
年老者控除	1	600	1,000
不具廢疾者控除	1	(600)	(1,800)
計		14,200	21,800
生命保險金		2,000	5,000
信託財産		(新設)	5,000

가. 위와 같이 相續稅의 각종 控除額이 引上되어 配偶者가 있고 未成年者 2인과 年老者 1인이 있는 경우 約 2,200萬원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전혀 相續稅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相續財産 中 信託會社에 金錢信託이 아닌 財産信託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500萬원을 控除하고 나머지 부분만 課稅價額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2. 未成年者 控除制度(法 第11條第5項, 令 第8條第3項)

人口政策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2子女 갖기 運動을 稅制面에서 支援하기 위하여 被相續人의 子女 中 2인에 한하여 控除받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2인은 처음 출생한 子女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被相續人에게 子女가 셋이 있는 경우 셋 모두 未成年者(20歲 未滿)인 경우에는 첫째 子女와 둘째 子女 둘만이 控除받는 것이며 또한 그중 첫째 子女가 成年이 된 경우에는 둘째 子女 하나만이 控除받게 된다.

다만, 1977. 1. 1 以前에 出生한 子女에 대하여는 改正稅法의 控除制度規定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未成年者인 경우에는 그 數에 제한없이 控除받는다.

3. 第1回 延納稅額에 대한 利子稅額 徵收(法 第28條의2)

相續稅나 贈與稅를 年賦로 延納하는 경우에 第1回 延納分도 延納의 猶豫期間을 주는

한 그 猶豫期間에 상당하는 利子稅額을 징수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한 것은 年賦延納者는 대부분 많은 財產을 相續받거나 贈與받는 高所得者이고 일시에 納付하는 一般納稅者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4. 公益事業事後管理에 의하여 課稅하는 경우에는 課稅要因이 發生할 당시의 價額으로 課稅하도록 함(令 第3條의2第8項)

公益事業에 출연된 財產에 대하여 贈與稅를 非課稅하도록 한 것은 當該財產이 公益事業에 사용되어 그 利益이 一般會社에 歸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公益事業을 運營하는 公益法人이 출연받은 財產을 公益事業에 使用하지 아니하거나 公益事業이 아닌 다른 目的에 使用했을 때에는 그 출연받은 財產에 대하여 贈與稅를 賦課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公益事業出捐財產에 대하여 事後에 贈與稅를 賦課하는 경우 贈與稅의 課稅價額을 처음 出捐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事後 課稅要因이 발생한 당시의 價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從前法規定만 볼 때 明確하지가 아니하다. 그래서 改正稅法에서는 公益事業에 出損된 財產은 반드시 公益事業에 使用되도록 규제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事後 課稅要因이 발생한 당시의 價額과 稅率에 의하여 課稅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例를 들어 1974年에 그 당시의 時價 2,000萬원 相當의 不動產을 出損받은 公益法人이 그 財產을 2年間이나 公益事業에 使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贈與稅를 賦課하는 경우 課稅要因이 발생한 당시(2年後인 1976年)는 出損받는 不動產의 時價가 3,000萬원이 된 때에는 3,000萬원에 대하여 贈與稅를 賦課하는 것이다.

또한 事後에 贈與稅를 賦課하는 경우에도 贈與稅의 對象이 되는 것은 出損받은 財產 그 自體이므로 출연받은 財產에서 분리된 果實은 課稅價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例를 들면 출연받은 財產이 株式인 경우 課稅要因이 발생할 당시까지 그 株式에서 配當金을 받은 것이 있어도 그 配當金은 課稅價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株式評價方法 改善(令 第5條第5項第1號)

가. 非上場株式評價方法

$$\left(\frac{\text{法人의 純資產價額}}{\text{總 株 式 額}} + \frac{\text{최근 3年間 1株當 純利益額}}{\text{1年滿期定期預金利子率}}\right) \div 2 = \text{1株當價額}$$

나. "가"에서 純利益額을 종전에는 法人稅法에 의하여 계산한 法人所得으로 하도록 하

였던 것을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配當可能所得으로 하도록 하였다.

"純 利 益 額" 對 比 表

改 正 前	改 正
法人稅法에 의한 法人所得	法人稅法에 의한 法人所得＋還給받은 法人稅와 同利子額 － 當該事業年度에 徵收不履行으로 納付한 稅額 및 加算稅額 － 罰金, 科料, 加算金 등 － 費用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公課金 － 業務와 무관한 費用 － 株式發行費 등 移延資產 － 寄附金 및 接待費 限度超過額 － 當該事業年度 所得에 대한 法人稅, 住民稅, 防衛稅額
純 利 益 額	純 利 益 額

株式評價額을 다음과 같은 說例에 의하여 1株當 純利益을 비교하여 보면 改正前에는 480원이었던 것이 개정후에는 236원이 되어 54%만큼 낮게 計算된다.

事 例

(單位 : 千원)

○ 稅務計算上法人所得額 … 48,000
  · 當期純利益 …… 42,000
  · 罰金支給額…… 6,000
○ 當該事業年度法人稅額 … 18,400
○ 總發行株式數 …… 100,000

1株當純利益計算例

改 正 前	改 正
$\frac{48,000}{100,000}=480$원	$\frac{48,000-6,000-18,000}{100,000}$ $=236$원

6. 納付制度의 改善

가. 物納財產의 收納價額을 명확히 함(法 第31條)

相續稅 및 贈與稅를 物納하는 경우 物納財產의 收納價額을 從前에는 "相續開始 당시의 現況에 의한다"고 하여 相續開始當時의 價額과 收納當時의 價額에 差異가 있을 때에는 執行上 混亂이 초래되고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 物納財產의 收納價額은 相續稅

課稅價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物價財産이 非上場株式인 경우에 相續開始後 物納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新株를 발행하여 1株當 株式價額을 떨어지게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計算한 價額을 收納價額으로 하도록 하였다.

〈無償株를 발행한 경우〉

$$\frac{\text{舊株式 1株當 相續稅課稅價額}}{1+\text{舊株式 1株當 新株配定額}} = \text{舊株式 1株當收納價額}$$

例를 들어 舊株式 1株當 相續稅 課稅價額이 3,000원이고 舊株式 1株에 대하여 無償株 1株를 配定한 경우 舊株式 1株當 收納價額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1,500원이 된다.

$$\frac{3,000}{1+1} = 1,500\text{원}$$

〈有償株를 발행한 경우〉

$$\frac{\text{舊株式 1株當 相續稅 課稅價額} + \text{新株 1株當 株金納入額} \times \text{舊株式 1株當 新株配定數}}{1+\text{舊株式 1株當 新株配定數}} = \text{舊株式 1株當 收納價額}$$

例를 들어 舊株式 1株當 相續稅 課稅價額이 3,000원이고, 舊株 1株에 대하여 新株 1株씩 額面價額 1,000원으로 引受케 한 경우 舊株式 1株當 收納價額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2,000원이 된다.

$$\frac{3,000+1,000\times 1}{1+1} = \frac{4,000}{2} = 2,000\text{원}$$

나. 物納對象財産의 範圍(令 第30條第2號)

現行 相續稅法上 物納을 할 수 있는 財産은 相續財産으로서 不動産과 有價證券에 한정하고 있다. 이중 有價證券에 대하여 종전에는 國債, 公債를 제외한 其他 有價證券은 稅務署長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정하도록 한 관계로 納稅者가 物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稅務署長의 裁量權을 排除하고 物納할 수 있는 財産을 구체적으로 열거규정하였다.

다. 物納申請에 대한 許可拒否權 制限(令 第33條第1項)

稅務署長은 物納申請한 財産이 管理處分上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종전에는 許可申請을 拒否하거나 物納財産의 變更命令을 택일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改

正稅法에서는 物納申請한 財產이 管理處分上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管理處分이 가능한 다른 物納財產이 있는 경우에는 許可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物納財產의 변경만을 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管理處分이 가능한 다른 物納財產이 없는 경우에만 許可를 拒否할 수 있다.

7. 其他 現行法令의 未備點을 補完

가. 擔保解除(令 第28條)

相續稅의 年賦延納 申請時에 提供된 擔保에 대하여 종전에는 相續稅額을 전부 완납하였을 때만 擔保를 解除하도록 하였으나 改正稅法에서는 각 回分의 延納稅額을 納付할 때마다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즉시 解除하도록 하였다.

나. 贈與稅 合算課稅의 排除(令 第40條의3)

現行 相續稅法은 贈與를 받은 者가 3년전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贈與받은 事實이 있는 경우에는 그 贈與價額을 加算한 價額을 課稅價額으로 하여 算出한 稅額에서 加算한 贈與價額을 贈與받을 때 納付한 贈與稅額을 控除하고 나머지 稅額을 納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贈與稅를 合算課稅하도록 한 것은 分割贈與로 인하여 脫漏된 累進差額을 흡수하고 免稅點制度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번 改正에서는 3年前에 贈與받은 價額에 대하여 納付한 稅額(控除稅額)이 合算課稅한 算出稅額보다 많을 때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다음 事例에서 1976年 贈與價額 200萬원에 3年 以內인 1975年에 200萬원을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事實이 있어 이를 合算課稅하는 경우 控除한 稅額(1,016,400원)이 합산하여 산출한 稅額(960,000원)보다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200萬원에 대해서만 課稅한다.

〈事 例〉

贈與日字	贈與稅	3年 以內 贈與合算額	稅率	算出稅額	旣納付稅額 (控除稅額)	告知稅額
73.6.1	48,0000,000원	원		원	(24,393,600)원	원
74.						
75.6.1	2,000,000	50,000,000	60%	25,410,000	(1,016,400)	
76.6.1	2,000,000	4,000,000	30%	960,000	1,016,400	△56,400

다. 看做贈與의 경우 현저히 저렴한 價額 基準設定(令 第41條第1項)

自己의 親族이나 使用人 등 特殊한 관계에 있는 者에게 財産을 時價보다 현저히 저렴한 價額으로 讓渡한 때에는 時價와 讓渡價額과의 差額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贈與稅를 課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현저히 저렴한 價額"에 대하여 종전에는 時價 以下로 讓渡하는 價額은 모두 저렴한 價額이라고 보아 法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은 感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改正에서는 현저히 저렴한 價額의 基準을 時價보다 30% 이상 낮은 價額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時價 400萬원인 住宅을 親族에게 280萬원을 超過하여 받고 讓渡한 경우에는 贈與問題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280萬원 以下로 讓渡한 경우에만 그 差額(120萬원)을 贈與한 것으로 본다.

1977년

◉ 시 행 령 : 1977. 8.20. 대통령령 제8654호(시행일 : 1977. 7. 1.)

〈要　　約〉

○ 비과세의 범위를 조정한다.

〈改正內容〉

1. 상속세의 비과세 범위 확대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신설)

1978년

◉ 법　　률 : 1978.12. 5. 법　　률 제3101호(시행일 : 1978.12. 5.)
◉ 시 행 령 : 1978.12.30. 대통령령 제9231호(시행일 : 1978.12. 5.)
◉ 시행규칙 : 1979. 2.17. 재무부령 제1384호(시행일 : 1979. 2.17.)

〈要　　約〉

이번 相續稅法을 改正함에 있어서는 相續財產에서 控除하는 保險金 控除額 및 信託財產 控除額을 各各 引上하고 指定文化財에 대한 相續稅額의 徵收猶豫制度와 農地相續人에 대한 農地相續 控除制度를 新設하였으며 其他 現行法令의 未備點을 補完하였다.

○ 保險金控除額 및 信託財產控除額을 引上함.
○ 指定文化財에 대한 相續稅額의 徵收猶豫制度를 新設함.
○ 農地相續 控除制度를 新設함.
○ 公益事業의 範圍를 擴大함.
○ 土地와 建物의 評價方法을 改善함.
○ 非課稅 課稅時 控除對象이 되는 親族의 範圍를 定함.
○ 親族控除의 計算方法을 定함.

〈改正內容〉

1. 保險金控除額 및 信託財產控除額 引上(法 第7條第1項·第3項)

相續財產 價額에서 控除하는 保險金 控除額 및 信託業法 및 證券投資 信託業法에 의한 金錢信託 이외의 信託財產 控除額을 現行 500萬원에서 700萬원으로 各各 引上하였다.

(單位 : 千원)

控除區分	稅率	改正
生命保險金	5,000	7,000
信託財產	5,000	7,000

2. 指定文化財에 대한 相續稅額의 徵收猶豫

은닉되어 있는 文化財를 陽性化하기 위한 稅制의 支援策으로서 指定文化財에 대한 相續稅額의 徵收猶豫制度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였다.

가. 相續稅의 徵收猶豫(法 第8條의3第1項)

相續財産에 文化財保護法의 規定에 의한 指定 文化財가 包含되어 있는 경우에는 相續稅額 中 文化財 價額에 相當하는 相續稅額에 대하여 擔保를 提供하게 하고 그 徵收를 猶豫한다.

나. 徵收猶豫한 相續稅 追徵(法 第8條의3第2項)

指定文化財에 대한 相續稅의 徵收猶豫 制度는 相續人이 相續받은 文化財를 영속적으로 保存함을 前提로 한 것이므로 相續人이 그 文化財를 타인에게 讓渡하는 경우에는 徵收猶豫한 相續稅額을 지체없이 徵收한다.

다. 徵收猶豫한 相續稅의 賦課撤回(法 第8條의3第3項)

指定文化財에 대한 相續稅額의 徵收猶豫 期間 中에 그 文化財에 대하여 다시 相續이 開始된 경우에는 徵收猶豫한 相續稅額의 賦課를 撤回하고 다시 賦課하지 아니한다.

3. 農地相續控除

사실상 被相續人과 相續人의 共同 營農에 의하여 形成된 財産인 農地에 대한 相續稅 負擔을 輕減하기 위하여 農地相續控除制度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였다.

가. 農地相續控除額의 計算(法 第11條의2第1項)

被相續人의 相續財産價額에 農地稅 課稅對象이 되는 農地의 價額이 包含되어 있는 경우에는 120萬원에 相續人이 21세가 되는 해부터 相續이 개시되는 해까지 農耕에 從事한 年數를 곱한 金額을 相續財産價額에서 控除한다.

나. 農地相續控除 對象 相續人의 範圍(法 第8條의2第1項)

農地相續控除를 받을 수 있는 相續人의 相續 開始 當時에 相續財産인 農地를 직접 耕作하는 相續人이다. 따라서 相續人이 過去에 農耕에 從事한 경우라도 相續日 현재

相續農地를 直接 耕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 **農地의 範圍**(令 第8條의2第2項)

農地相續控除 對象이 되는 農地는 田·畓으로서 地籍 公籍上 地目에 關係없이 實地로 耕作되는 土地를 말하며 農地經營에 직접 필요한 農幕·堆肥舍·揚水場·池沼·農道·水路 등을 包含한다.

라. **農耕에 從事한 年數의 計算**(令 第8條의2第3項)

農地相續控除額 計算에 있어서 計算基礎가 되는 農耕에 從事한 年數의 計算은 農地相續控除를 받은 相續人이 21세가 되는 날부터 相續이 開始되는 날까지 總日數에서 相續人이 勤務上·事業上 事由로 農耕에 從事하지 아니한 日數를 差減한 日數를 365로 나누어 計算하며, 이 경우 그 年數가 1年 未滿일 때에는 이를 1年으로 한다.

〈事 例〉

被相續人과의 關係	總 日 數	農耕에 從事하지 아니한 日 數	差減日數	農耕從事 年 數	年控除額	農地相續控除額
長 男	6,785日	2,555日	4,320日	11.8年	120萬원	1,440萬원
次 男	5,350	1,825	3,525	9.6	〃	1,200
計	12,225	4,380	7,845		〃	2,640

農耕從事 年數 計算은 1年 未滿은 1年으로 하므로 長男의 11.8年은 12年으로 次男의 9.6年은 10年으로 計算한다.

4. 公益事業의 範圍擴大(令 第3條의2第2項第13號)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에 의한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管理公團이 運營하는 事業을 公益事業으로 規定하여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管理公團이 運營하는 事業에 出捐하는 財產價額에 대하여는 相續稅 및 贈與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5. 土地와 建物의 評價方法 改善

가. 財產評價의 合理化(令 第5條第2項第1號·第2號)

相續財產의 價額은 相續開始 當時의 時價에 의하게 되어 있으나 相續開始 當時의 時價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土地와 建物은 地方稅法에서 規定하는 課稅時價標準額에 의하여 評價하도록 規定되어 있는 것을 이번 稅法 改正에서는 國稅廳長이 정하는 特定地域에 있는 土地 建物은 倍率方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으로 하고 國稅廳長이 정하는 特定地域 以外의 地域에 대하여는 地方稅法上의 課稅時價標準에 의한 價額으로 評價하도록 하였다.

나. 倍率方法의 意義(令 第5條第6項)

倍率方法이란 地方稅法上의 課稅時價標準額에 一定 地域마다 그 地域에 있는 價格事情이 類似한 土地 및 建物의 賣買實例 價額을 基準으로 하여 國稅廳長이 정하는 倍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에 의하여 評價하는 方法이다.

區 分	改正前	改正
土地 및 建物의 評價	○ 地方稅法上의 課稅時價標準額	○ 特定地域 國稅廳長이 정하는 特定地域은 倍率方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 ○ 其他地域 特定地域 以外의 地域에 대하여는 地方稅法上의 課稅時價標準額

6. 贈與稅 課稅時 控除對象 親族의 範圍(法 第31條第3項, 令 第39條의2)

贈與稅 課稅標準을 計算함에 있어 親族의 範圍에 따라 贈與價額에서 控除되는 親族控除額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現行 相續稅法에서는 親族 範圍에 關한 明文規定이 없어 親族의 範圍가 民法上의 親族인지 國稅基本法上의 親族인지 不分明하였다. 따라서 이번 相續稅法 改正에서는 贈與稅를 課稅함에 있어서 親族控除를 받을 수 있는 親族의 範圍를 國稅基本法施行令 第20條 第1號 내지 第8號의 關係가 있는 者를 親族으로 하는 明文規定을 두었다.

7. 親族控除의 計算方法

現行法上 親族으로부터 贈與를 받는 경우에는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으로부터 贈與받은 경우에는 150萬원, 其他 親族으로부터 贈與받는 경우에는 100萬원을 限度로 하여 3年內에 한번만 控除하고 있다.

그러나 3年內에 數人의 親族으로부터 贈與받는 경우 贈與財産에서 控除할 親族控除의 順序가 없어 贈與稅의 申告決定에 있어 혼란이 있었으므로 親族控除의 方法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였다.

가. 贈與時點을 달리하는 경우(令 第40條第1號)

2 이상의 贈與가 그 贈與時點을 各各 달리하는 경우에는 各各의 贈與 中 最初에 있은 贈與價額에서부터 順序로 控除한다.

나. 同時 贈與의 경우(令 第40條第2號)

2 이상의 贈與가 同時에 있는 경우에는 各各의 贈與價額에서 按分하여 控除한다.

〈事 例〉

區 分	贈與日字	贈與價額	控除額	課稅價額
贈與時點을	79. 1. 1 父	150萬원	150萬원	0
달리하는 경우	79. 6. 1 母	150萬원	0	150萬원
同時贈與의 경우	79. 1. 1 父	150萬원	75萬원	75萬원
	79. 1. 1 母	150萬원	75萬원	75萬원

1979년

◉ 법　　률 : 1979.12.28. 법　　률 제3197호(시행일 : 1980. 1. 1.)
◉ 시 행 령 : 1979.12.31. 대통령령 제9700호(시행일 : 1980. 1. 1.)

〈要　　約〉

稅負擔의 適正化를 위하여 相續稅 및 贈與稅의 稅率構造를 全面改編하고 相續稅의 人的控除額을 引上하였다.

○ 相續稅調査 決定官署 調整
○ 非居住者의 事業上 債務控除
○ 稅率引下 및 人的控除額 引上
○ 年賦延納 調整
　— 年賦延納·物納 許可基準額 引上
　— 年賦延納 利子率 調整
○ 合算課稅와 控除稅額 調整
○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의 利益範圍 調整

〈改正內容〉

1. 相續稅調査 決定 官署調整(令 第1條)

相續稅·贈與稅의 調査決定은 現行令에는 稅務署長으로 되어 있는 것을 地方國稅廳長도 調査 決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非居住者의 事業上 債務控除(法 第4條)

被相續人의 사망당시 國內에 그 事業場이 있는 경우 備置記帳한 帳簿 等에 의하여 확인되는 事業上의 債務를 相續財産 價額에서 控除하여 相續稅 課稅價額을 計算하도록 하였다.

3. 稅率引下 및 人的控除額 引上

가. 稅率引下(法 第14條·第3條의2)

적정한 課稅를 통하여 相續稅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相續稅率을 引下하였으며 이에 따라 贈與稅率도 引下 調整하였다.

○ 相續稅率

從 前		改 正	
15단계		15단계	
500千원 이하	10%	1,000千원 이하	7%
500 〃 초과	12	1,000 〃 초과	10
1,000 〃 〃	15	3,000 〃 〃	13
3,000 〃 〃	20	5,000 〃 〃	17
5,000 〃 〃	25	7,000 〃 〃	21
7,000 〃 〃	30	10,000 〃 〃	25
10,000 〃 〃	35	13,000 〃 〃	29
15,000 〃 〃	40	19,000 〃 〃	33
20,000 〃 〃	45	25,000 〃 〃	37
30,000 〃 〃	50	35,000 〃 〃	42
50,000 〃 〃	55	50,000 〃 〃	47
70,000 〃 〃	60	70,000 〃 〃	52
100,000 〃 〃	65	100,000 〃 〃	57
300,000 〃 〃	70	300,000 〃 〃	62
500,000 〃 〃	75	500,000 〃 〃	67

○ 贈與稅率

14 단 계		14 단 계	
300千원 이하	10%	500千원 이하	7%
300 〃 초과	15	500 〃 초과	11
500 〃 〃	20	1,000 〃 〃	15
1,000 〃 〃	25	3,000 〃 〃	19
3,000 〃 〃	30	5,000 〃 〃	23
5,000 〃 〃	35	7,000 〃 〃	27
7,000 〃 〃	40	10,000 〃 〃	32
10,000 〃 〃	45	13,000 〃 〃	37
15,000 〃 〃	50	16,000 〃 〃	42
20,000 〃 〃	55	22,000 〃 〃	47
30,000 〃 〃	60	30,000 〃 〃	52
50,000 〃 〃	65	40,000 〃 〃	57
100,000 〃 〃	70	60,000 〃 〃	62
200,000 〃 〃	75	100,000 〃 〃	67

나. 人的控除額의 引上(法 第11條)

區 分	從 前	改 正
基礎控除	800萬원	改正前과 같음
配偶者控除	800 〃	1,600萬원
未成年者控除	1年 24 〃	改正前과 같음
年老者控除	100 〃	〃

※ 5人家族基準 人的控除額

未成年者 : 2人 ┌ 12歲　　年老者 : 1人
　　　　　└ 8歲

區 分	從 前	改 正
基礎控除	800萬원	800萬원
配偶者控除	800 〃	1,600 〃
未成年者控除	480 〃	480 〃
年老者控除	100 〃	100 〃
控除額計	2,180 〃	2,980 〃

※ 이러한 稅率引下와 人的控除額의 引上으로 인하여 相續稅 負擔輕減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相續稅 負擔輕減

(單位 : 千원)

區分 / 相續稅 課稅價額	改正前		改正		輕減	
	稅額	負擔率	稅額	負擔率	稅額	輕減率
30,000	1,670	5.6	14	0.1	1,656	99.2
40,000	5,240	13.1	1,550	3.9	3,690	70.4
50,000	9,650	19.3	4,386	8.8	5,264	54.5
60,000	14,560	24.3	7,894	13.2	6,666	45.8
70,000	19,560	27.9	11,854	16.9	7,706	39.4
80,000	24,970	31.2	16,064	20.1	8,906	35.7
100,000	36,380	36.4	25,474	25.5	10,906	30.0
120,000	48,380	40.3	35,874	29.9	12,506	25.8
150,000	67,790	45.2	52,484	35.0	15,306	22.6
200,000	100,290	50.2	80,984	40.5	19,306	19.3
250,000	132,790	53.1	109,484	43.8	23,306	17.6
300,000	165,290	55.1	137,984	46.0	27,306	16.5
400,000	234,200	58.6	198,494	49.6	35,706	15.2
500,000	304,200	60.8	260,494	52.1	43,706	14.4
1,000,000	678,110	67.8	594,004	59.4	84,106	12.4
2,000,000	1,428,100	71.4	1,264,004	63.2	164,106	11.5

① 贈與稅 負擔輕減

(單位 : 千원)

區分 / 相續稅 課稅價額	改正前		改正		輕減	
	稅額	負擔率	稅額	負擔率	稅額	輕減率
3,000	285	9.5	165	5.5	120	42.1
4,000	535	13.4	315	7.9	220	41.1
5,000	810	16.2	485	9.7	325	40.1
6,000	1,100	18.5	675	11.3	435	39.2
7,000	1,435	20.5	885	12.6	550	38.3
8,000	1,785	22.3	1,115	13.9	670	37.5
9,000	2,160	24.0	1,365	15.2	795	36.8
10,000	2,560	25.6	1,635	16.4	925	36.1
15,000	4,735	31.6	3,185	21.2	1,550	32.7
20,000	7,160	35.8	5,035	25.2	2,125	29.7
30,000	12,585	41.9	9,385	31.3	3,200	25.4
50,000	24,510	49.0	19,460	38.9	5,050	20.6
100,000	56,935	56.9	47,885	47.9	9,050	15.9
150,000	91,860	61.2	78,810	52.5	13,050	14.2
300,000	201,785	67.3	176,735	58.9	25,050	12.4
500,000	351,785	70.4	310,735	62.1	41,050	11.7
1,000,000	726,785	72.7	645,735	64.6	81,050	11.2

4. 年賦延納 調整

가. 年賦延納·物納 許可基準額 引上(法 第28條·第29條)

年賦延納이란 相續稅·贈與稅額이 일정액을 超過하는 때에는 稅額을 일시에 賦課한 후 연차적으로 納付하는 制度를 말하며, 物納이란 相續財產·贈與財產 中 不動產과 有價證券의 價額이 전체의 1/2을 초과하고 相續·贈與稅額이 일정액 以上이 되는 경우에는 그 相續·贈與財產에 포함된 不動產과 有價證券으로 相續稅를 納付할 수 있는 制度이다.

이번 改正에 있어서는 이러한 許可基準이 되는 金額을 다음과 같이 調整하였다.

區分	改正前	改正
○ 年賦延納 基準金額	100萬원	400萬원
○ 物納許可 基準金額	60萬원	240萬원

나. 年賦延納 利子率 調整(法 第28條, 令 第27條의2)

年賦延納하는 相續稅 贈與稅에 대하여는 利子를 加算하여 納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종전에는 利子率이 100원에 대하여 日邊 4錢으로 되어 있던 것을 法人稅法에 규정하고 있는 利子稅의 利子率과 衡平을 고려하여 日邊 5錢5厘로 개정하였다.

5. 合算課稅와 控除稅額調整(法 第31條의3, 令 第40條의3)

3年 以內에 同一人으로부터 받은 贈與價額의 합계가 200萬원(친족공제 제외) 以上이 될 때에는 合算하여 課稅하되 加算한 價額에 대한 旣納付하였거나 納付할 稅額을 控除한 것을 稅額으로 賦課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서는 合算하여 課稅하는 경우 合算한 價額에 대한 算出稅額이 기왕에 納付하였거나 納付할 稅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年內 贈與價額을 合算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이러한 경우는 稅率의 引下 人的控除額의 引上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改正 施行令에서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算出된 稅額을 한도로 하여 旣納付하였거나 納付할 稅額을 控除하도록 하고 3年內 贈與價額은 合算課稅하도록 하여 合算課稅排除 규정을 改正하였다.

〈合算課稅時 控除할 稅額限度〉

$$\text{控除稅額限度額} = \begin{matrix}\text{合算課稅}\\ \text{算出稅額}\end{matrix} \times \frac{\text{3年內 贈與價額}}{\text{3年內 贈與價額} + \text{當該贈與價額}}$$

6.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의 利益範圍調整(法 第34條의4, 令 第41條의3)

가. 新株 引受權 課稅

株主가 特殊關係에 있는 者에게 新株引受權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課稅問題가 異論이 있을 수 없으나 株主가 新株引受權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特殊關係者에게 利益을 주는 경우(물론, 特殊關係가 없는 者도 利益을 받음)의 증여세 課稅問題에 대하여는 이번 改正時 명백히 하여 課稅하도록 하였다.

1981년

◉ 법　　률 : 1981.12.31. 법　　률 제 3474호(시행일 : 1982. 1. 1.)
◉ 시 행 령 :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시행일 : 1982. 1. 1.)
◉ 시행규칙 : 1982. 4.19. 재무부령 제 1522호(시행일 : 1982. 4.19.)

〈要　　約〉

相續稅率構造를 全面 改編하여 負擔의 適正化로 正當納稅風土를 造成토록 하고, 中產層의 基本財產을 保護維持하고, 農村後繼者育成을 稅制上 支援하기 위하여 1住宅 相續控除 및 農地·草地·山林地相續控除制度를 新設하고, 相續稅의 誠實申告를 誘導하고, 一部 高額相續者의 變則的인 相續稅의 回避行爲를 規制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講究하였다.

○ 相續稅率의 引下調整
○ 住宅相續控除制度 新設
○ 農地·草地·山林地 相續控除制度 新設
○ 相續稅申告期限의 延長
○ 10% 自進申告控除惠澤의 擴大
○ 相續稅 無申告加算稅 賦課
○ 無申告·申告漏落한 相續財產에 대한 評價特例
○ 擔保提供된 相續財產에 대한 評價特例
○ 死亡에 對備한 財產處分, 債務負擔의 擬制相續制度 新設
○ 特殊關係者를 媒介로 한 贈與規則
○ 直系尊卑屬配偶者에 負擔附贈與 負擔控除 排除
○ 其　他
　— 相續稅의 連帶納付義務
　— 課稅價額·公示送達의 公告期間
　— 相續稅法上 公益事業範圍 擴大

〈改正內容〉

1. 相續稅率의 引下(法 第14條)

所得稅率의 引下調整에 따라 所得稅의 補完稅인 相續稅率을 引下調整하였음. 相續稅 負擔의 適正化로 相續稅 脫漏를 防止하여 正當納稅風土를 誘導하도록 하였다.

稅 率 對 比 表

(單位 : 千원)

改正前			改正		
課標	稅率	稅額	課標	稅率	稅額
1,000 以下	7 %		1,000 以下	7 %	
1,000超過	10	70	1,000超過	9	70
3,000	13	270	3,000	11	250
5,000	17	530	5,000	13	470
7,000	21	870	7,000	15	730
10,000	25	1,500	10,000	17	1,180
13,000	29	2,250	13,000	20	1,690
19,000	33	3,990	19,000	25	2,890
25,000	37	5,970	25,000	30	4,390
35,000	42	9,670	35,000	35	7,390
50,000	47	15,970	50,000	40	12,640
70,000	52	25,370	70,000	45	20,640
100,000	57	40,970	100,000	50	34,140
300,000	62	154,970	300,000	55	134,140
500,000	67	278,970	500,000	60	244,140

輕 減 率

(單位 : 千원)

相續稅 課稅價額	改正前		改正		輕減率(%)
	相續稅	負擔率(%)	相續稅	負擔率(%)	
50,000	4,386	8.8	1,180	2.4	73.1
60,000	7,894	13.2	3,140	5.2	60.2
70,000	11,854	16.9	5,890	8.4	50.3
80,000	16,064	20.1	9,140	11.4	43.1
100,000	25,474	25.5	16,640	16.6	34.7
120,000	35,874	29.9	25,140	21.0	29.9
150,000	52,484	35.0	39,140	26.1	25.4
200,000	80,984	40.5	64,140	32.0	20.8
250,000	109,484	43.8	89,140	35.7	18.6
300,000	137,984	46.0	114,140	38.1	17.3
400,000	198,494	49.6	167,140	41.8	15.8
500,000	260,494	52.1	222,140	44.4	14.7
1,000,000	594,004	59.4	520,140	52.0	12.4
2,000,000	1,264,004	63.2	1,120,140	56.0	11.4

註 : 輕減率은 相續稅率의 引下와 住宅相續控除額(4,000萬원)을 考慮한 것임.

2. 住宅相續控除制度 新設(法 第11條의2)

相續稅納付를 위한 1家口1住宅의 處分을 防止하여 中產層의 基本財產을 保護維持하고 財產形成을 稅制上 支援하기 위하여 住宅控除制度를 新設하였다.

改正前에는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누구나 控除받을 수 있는 基礎控除(800萬원) 以外에 被相續人의 扶養家族構成에 따라 配偶者控除(1,600萬원), 未成年者控除(年 24萬원×20歲까지 年數), 年老者控除(100萬원) 등이 認定되었으나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이러한 相續稅 人的控除 以外에 被相續人의 配偶者·直系尊卑屬 및 兄弟姉妹가 住宅을 相續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住宅의 價額을 追加로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控除토록 하되

控除金額은 課稅公平上 相續稅 人的控除와 합하여 4千萬원으로 限定하였다. 또한 主된 生活根據地로서 控除對象이 되는 住宅은 다음의 順位에 따른 1住宅으로 限定하였다.

가. 相續開始當時 被相續人과 相續人이 함께 居住하는 住宅

나. 相續開始當時 被相續人이 居住하는 住宅

다. 相續開始當時 相續人이 居住하는 住宅

라. 가 내지 다 以外의 住宅으로서 被相續人이 가장 오래 所有한 住宅

3. 農地·草地·山林地의 相續控除制度 新設(法 第11條의3)

우리나라 農村의 相續實態를 고려하고 農村後繼者育成의 必要에서 農地 등의 控除制度를 新設하여 農地·草地·山林地의 所在地와 同一한 市·邑·面 또는 通常 直接 耕作할 수 있는 隣接地域에 居住하면서 相續開始日 2年前부터 계속하여 直接 農業에 從事한 農民이 所有하는 一定規模 以下의 農地·草地·山林地에 대하여는 相續稅 人的控除·住宅控除 以外에 追加로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控除토록 하였다.

區　　分	面　　積	控　除　限　度
農　地	6千坪 以內	人的控除 및 住宅控除를 합하여 5千萬원
草　地 山林地	3萬坪 以內	

이 制度는 農村後繼者育成을 위한 것이므로 農地 등에 대한 投資를 防止하고 이 制度의 實效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控除된 農地·草地·山林地를 相續받은 相續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相續後 5年 이내에 處分하거나, 農業에 從事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相當한 價額을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여 免除받은 相續稅를 追徵토록 하였다.

다만, 農地 등이 收用되거나 營農上 必要에 의하여 交換·分合 代土되거나, 國家·地方自治團體에 讓渡되거나, 相續人이 死亡 또는 海外移住하는 등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相續稅申告期限의 延長(法 第20條)

納稅義務者	改正前	改正
國內에 住所를 둔 者	相續開始日로부터 3月 이내	6月 이내
國外에 住所를 둔 者	相續開始日로부터 6月 이내	9月 이내

相續稅 申告期限의 延長에 따라 贈與稅의 申告期限도 相續稅 申告期限과 同一하게 延長되었다(法 第34條의5).

5. 相續稅無申告加算稅制 導入(法 第26條)

改正前에는 相續稅를 申告期限內 申告하는 경우 10% 自進申告稅額控除가 許容되고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漏落한 때에는 아무런 不利益이 없었다.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相續財產을 申告期限內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漏落한 때에는 相續稅 算出稅額에 申告漏落한 相續財產價額이 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의 10%를 加算稅로서 賦課하도록 하여 誠實申告를 誘導토록 하였다. 다만, 課稅標準에서 申告漏落한 相續財產의 價額이 차지하는 比率은 100分의 100을 限度로 함으로써 相續稅課稅價額에서 控除되는 部分(相續稅 人的控除, 住宅控除 및 農地·草地·山林地 控除에 相當한 金額)에 加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贈與稅의 경우〉

相續稅無申告加算稅에 관한 相續稅法 第26條의 規定은 贈與稅에 대하여 準用되므로 贈與받은 財產을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漏落한 때에는 10% 加算稅가 賦課된다.

6. 10% 自進申告稅額控除 擴大(從前 令 第14條第2項 削除)

改正前에는 自進申告한 相續稅는 10%稅額控除하면서 3年間 年賦延納하는 경우에도 第1回 年賦延納分에 대하여만 10% 稅額控除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相續稅의 誠實申告納付를 誘導하기 위하여 10% 自進申告稅額控除惠澤을 擴大하여 自進申告한 相續稅를 3年間 年賦延納하는 경우에도 第2回·第3回 年賦延納分에 대하여도 10% 稅額控除惠澤을 賦與하도록 하였다.

7. 無申告·申告漏落相續財産의 評價特例(法 第9條第2項)

相續財産의 誠實한 申告를 誘導하기 위하여 申告하지 아니한 相續財産에 대하여는 10% 無申告加算稅를 賦課하는 以外에 相續財産價額도 相續開始當時의 價額에 의하지 아니하고 相續稅賦課當時의 價額에 의하여 評價하도록 함으로써 申告納付遲延으로 인한 物價上昇利益을 租稅로 吸收토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無申告·申告漏落한 財産	相續開始當時의 價額	相續稅賦課當時의 價額

〈贈與稅의 경우〉

相續財産價額의 評價方法에 관한 相續稅法 第9條의 規定은 贈與稅에 準用되므로 贈與받은 財産을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漏落한 경우에도 贈與稅賦課當時의 價額으로 贈與받은 財産價額을 評價하여 贈與稅를 賦課한다.

8. 擔保提供된 相續財産 評價特例(法 第9條第4項)

相續財産의 價額은 原則的으로 相續開始當時의 時價에 의하여 評價하는 것이나 改正稅法에서는 擔保 등으로 提供된 다음의 相續財産에 대하여는 相續開始當時의 價額(또는 相續稅 申告期限內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漏落한 財産으로서 擔保提供한 財産에 대하여는 相續稅賦課當時의 價額)과 當該財産이 擔保하는 債權額 등을 比較하여 큰 金額으로 評價하도록 하였다.

區 分	債 權 額
① 抵當權·質權이 設定된 財産	當該財産이 擔保하는 債權類
② 讓渡擔保財産	〃
③ 根抵當權이 設定된 財産	當該財産이 擔保하는 債權의 最高額
④ 傳貰權이 登記된 財産	登記된 傳貰金
⑤ 賃借權이 登記된 財産	登記된 賃貸保證金 + (1年間賃貸料 / 定期預金利子率)

〈贈與稅의 경우〉

相續財産의 評價方法에 관한 相續稅法 第9條의 規定은 贈與稅에 準用되므로 擔保로 提供된 財産을 贈與받은 경우에는 위의 評價方法에 관한 特例規定이 準用된다.

9. 死亡에 對備한 財產處分·債務負擔에 대한 擬制相續制度 新設(法 第7條의2)

一部 高額相續者가 死亡에 對備하여 財產의 處分이나 債務負擔의 方法으로 相續財產을 分散·隱匿하는 事例가 있으므로 相續稅法에서는 이러한 變則的인 相續稅逋脫을 防止하기 위하여 相續開始日前 1年 以內에 被相續人이 財產을 處分한 代金이 財產種類別(不動產·動產·有價證券·無體財產權·債權·其他財產)로 計算하여 5千萬원 以上이거나, 債務負擔한 金額의 合計額이 5千萬원 以上으로서 다음과 같이 그 代金의 用途가 明白하지 아니한 것은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도록 하였다.

〈例 示〉

① 被相續人 財產을 處分하거나 債務를 負擔하고 받은 金錢 등을 支出한 去來相對方이 去來證憑의 不備 등으로 確認되지 아니하거나
② 去來相對方이 金錢 등의 授受事實을 否認하거나 去來相對方의 財產狀態 등으로 보아 金錢 등의 授受事實이 認定되지 아니한 경우
③ 去來相對方이 被相續人과 特殊關係에 있는 者로서 社會通念上 支出事實이 認定되지 아니한 경우 등

10. 特殊關係者를 媒介로 한 贈與規制(法 第34條第2項)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特殊關係者에게 賣却한 財產을 3年內에 配偶者나 直系尊卑屬이 다시 買入한 경우에는 代價를 支給한 事實에 不拘하고 配偶者나 直系尊卑屬에게 贈與하는 것으로 看做하여 贈與稅를 課稅하도록 함으로써 第3者인 特殊關係者를 利用한 相續財產의 事前分散을 規制토록 하였다.

〈例 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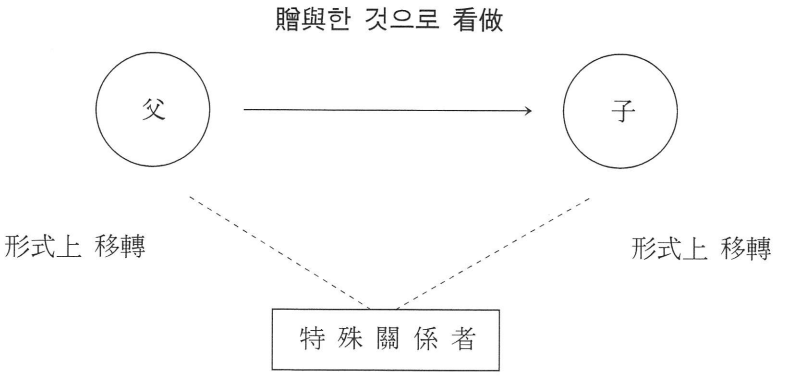

11. 直系尊卑屬·配偶者에 負擔附贈與時 負擔控除排除(法 第29條第2項)

負擔附贈與라 함은 受贈者가 財產을 贈與받은 同時에 一定한 負擔(예컨대, 子가 父로부터 不動產을 贈與받으면서 父의 債務를 引受하는 경우)을 하는 特殊한 形態의 贈與이다.

改正前에는 負擔附贈與의 경우 負擔部分을 控除한 나머지 部分에 대하여 贈與稅를 課稅하였으나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直系尊卑屬·配偶者에 負擔附贈與하는 경우 原則的으로 負擔部分을 控除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職業·年齡·所得 및 財產狀態 등으로 보아 債務를 辨濟할 能力이 있다고 客觀的으로 認定되는 受贈者가 國家·地方自治團體·金融機關의 債務 또는 裁判上 確定된 債務를 引受한 때는 例外的으로 負擔部分을 控除하도록 하였다.

12. 其 他

가. 相續稅의 連帶納稅義務(法 第18條)

改正前에는 相續人은 各自가 받았거나 받을 財產의 占有比率에 따라 相續稅를 納付할 義務가 있고,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경우(相續稅를 滯納하는 경우) 各自가 取得한 相續財產의 範圍內에서 서로 連帶하여 納付할 責任이 있었다.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相續稅의 納稅義務를 連帶納稅義務로 規定하여 相續人이 2人以上인 경우 各 相續人에게 同時 또는 順次로 相續稅의 全部 또는 一部를 賦課할 수 있도록 하고 各自의 相續稅 納付責任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相續財產을 限度로 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國稅基本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면 共有物·共同事業 또는 當該共同事業에 속하는 財產에 關係되는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는 그 共有物 또는 共同事業者가 連帶하여 納付할 義務를 진다고 되어 있는 바 相續財產도 相續人에게 民法上 相續持分대로 分割되기 전에는 相續人의 共有物에 該當하기 때문에 國稅基本法의 趣旨에 맞도록 相續稅納稅義務를 連帶納稅義務로 改正하였다.

差異點 例示

	改 正 前	改 正
○ 告知方法	各自에게 告知書를 送達	代表者 또는 1人에게 告知書 送達 可能
○ 告知稅額	各自 取得한 相續財産의 占有比率로 按分計算한 稅額	稅額의 全部 또는 一部
○ 滯納處分	各自에 告知送達을 納付期限의 超過時	代表者 또는 1人에게 告知送達된 納付期限의 超過時
○ 納付責任의 範圍	各自 取得한 相續財産의 範圍內	左 同

나. 課稅價額 公示送達期間의 延長(法 第25條第3項後段)

改正前에는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한 納稅義務者가 그 納稅管理人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課稅價額의 通知를 公告로 갈음하고 이 경우 公告는 公告의 初日로부터 7日이 經過하였을 때 그 通知를 받은 것으로 看做하였다.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國稅基本法 第11條에 規定한 公示送達의 公告期間과 統一하여 公告의 初日로부터 10日이 經過하였을 때 그 通知를 받은 것으로 看做한다.

다. 相續稅法上 公益事業의 範圍擴大(令 第3條의2第2項)

非營利法人은 原則的으로 相續·贈與稅 納稅義務가 있으나 宗敎事業·慈善事業·學術事業·기타 公益事業으로서 相續稅法에 列擧되어 있는 公益事業에 대하여는 相續·贈與稅를 免除하고 있다.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韓國靑少年聯盟이 運營하는 事業과 各級 새마을運營組織이 運營하는 事業을 公益事業으로 列擧하여 여기에 出捐·寄附·贈與하는 財産에 대하여는 相續·贈與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1982년

◉ 법　　률 : 1982.12.21. 법　　률 제 3578호(시행일 : 1983. 1. 1.)
◉ 시 행 령 :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시행일 : 1983. 1. 1.)
◉ 시행규칙 : 1983. 2.28. 재무부령 제 1557호(시행일 : 1983. 2.28.)

〈要　　約〉

相續財產控除額을 引上함으로써 특히 中產階層의 稅負擔을 緩和하는 등 相續稅負擔을 合理的으로 調整하고, 年賦延納制度 및 贈與擬制 規定과 기타 納稅節次를 改善하여 納稅便宜를 도모하는 한편, 勤勞福祉基金이 받는 贈與에 대하여는 贈與稅를 免除하여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支援하도록 하였음.

〈相 續 稅〉

○ 相續財產控除額의 引上
○ 3代 이상 代물림 住宅 등에 대한 追加控除制度 新設
○ 葬禮費 槪算控除 新設
○ 自進申告稅額控除額의 範圍調整
○ 相續稅 決定節次 등의 改正
○ 年賦延納申請節次 등의 改正
○ 物納申請節次 등의 改正

〈贈 與 稅〉

○ 당초 贈與者에게 贈與資產 返還時 贈與稅 再評價 排除
○ 直系尊卑屬間 不動產 등 相互交換時 贈與擬制 除外
○ 特殊關係者에게 高價讓渡時 贈與擬制
○ 贈與擬制에서 除外되는 信託財產
○ 勤勞福祉基金과 관련한 贈與稅 非課稅

〈改正內容〉

〈相 續 稅〉

1. 相續財產控除額의 引上(法 第5條·第11條·第11條의2 및 第11條의3)

(單位：萬원)

區 分	改 正 前	改 正
一 基 礎 控 除	800	1,000
一 人 的 控 除		
· 配 偶 者 控 除	1,600	2,000
· 年 老 者 控 除	100	300
· 子 女 控 除	—	1人當 500
· 未 成 年 者 控 除	年24萬원×20세까지의 年數	年40萬원×20세까지의 年數
· 不 具 廢 疾 者 控 除	180	800
一 住 宅 相 續 控 除	4,000	6,000
一 農 地·草 地·山 林 地 相 續 控 除	5,000	7,000

註： ① 住宅相續控除는 基礎控除 및 人的控除額을 包含한 限度額임.
② 農地·草地·山林地控除는 基礎控除 및 住宅控除를 包含한 限度額임.
③ 子女控除 및 未成年者控除는 子女2人까지에 한함.

(1) 子女控除 新設

종전에는 相續稅(死亡人)의 子女 중 未成年者에 대하여만 相續財產控除를 許容하였으나, 이번 改正에서는 未成年者여부에 불구하고 子女1人에 대하여 500萬원씩 控除해 주도록 하였다. 그런데 子女가 2人 이상인 때에는 人口政策과 관련하여 出生日時가 빠른 2人까지만 控除해 주도록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子女控除는 1,000萬원을 한도로 控除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未成年者인 子女는 子女控除에 추가하여 未成年者控除도 거듭 받을 수 있다.

(2) 기타 控除額의 引上

基礎控除額 및 人的控除도 각기 引上調整함으로써 5人家族을 基準으로 할 때 相續稅 免稅點은 종전 약 3,000萬원에서 5,100萬원으로 引上되었다. 특히 不具廢疾者控除額은 社會保障이라는 側面에서 180萬원에서 800萬원으로 大幅 引上하였다.

한편 基礎控除 및 人的控除額이 引上調整되는 것에 맞춰 住宅相續控除의 限度額도 4,000萬원에서 6,000萬원으로, 農地·草地·山林地相續控除의 限度額도 5,000萬원에서 7,000萬원으로 각각 引上하였다.

(3) 相續控除對象인 山林 및 山林地의 範圍擴大

(가) 土 地(땅)

山林地에 대하여는 基礎控除·人的控除 및 住宅相續控除額을 包含하여 7,000萬원을 한도로 控除하여 주는 것으로서 控除對象이 되는 山林地의 種類와 面積을 擴大하였다. 즉, 종전에는 營林計劃에 따라 새로이 造林한 期間이 5年 이상인 3萬坪 이내의 山林地를 控除對象으로 하였으나 營林計劃뿐만 아니라 指定開發事業에 의하여 造林한 山林地와 保安林, 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으로서 6萬坪 이내의 山林地로 개정하였다.

이는 指定開發事業이나 保安林 등의 경우는 山主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政府 등의 계획에 따라 開發 또는 管理되기 때문에 이를 控除對象에 包含한 것이며 적정 營林規模와 山地價格을 고려하여 控除對象面積을 「3萬坪에서 6萬坪」까지로 擴大하였다.

(나) 山 林(나무)

營林計劃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期間이 5年 이상인 山林은 全額 相續稅를 課稅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더욱 擴大하여 營林計劃뿐만 아니라 指定開發事業에 의한 山林 및 採種林·保安林·天然保護林도 免除對象인 山林에 추가하였다.

2. 3代 이상 代물림 住宅 등에 대한 追加控除制度 新設(法 第11條의2)

相續財産 중 다음의 住宅이 있는 경우에는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住宅相續控除額 6,000萬원 外에 追加控除하여 주는 制度임.

(1) 控除對象住宅

① 3代 이상 代물림한 住宅

② 5년 이상 被相續人(死亡人)을 同居하면서 奉養한 者가 相續받은 住宅

(2) 追加控除額

(住宅價格－6,000萬원)×90%

한 집안이 3代 이상에 걸쳐 대를 물려 相續된 住宅은 한 집안의 터전으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父母를 모시는 우리의 美風良俗을 기리기 위하여 이와같이

住宅相續追加控除制度를 新設하였다.

㈎ 3代 이상 代물림한 住宅

3代이상에 걸쳐 代를 물려 相續받은 住宅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女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친정부모가 2代 이상 代물림한 住宅을 시집간 딸이 다시 친정부모로부터 相續받는 경우 이는 3代 이상 代물림한 住宅에 해당한다.

〈3代 이상의 事例〉

증조 할아버지	→	할아버지	→	아버지	→	아들, 딸
		1代		2代		3代

외증조할아버지	→	외할아버지	→	어머니	→	아들, 딸
		1代		2代		3代

㈏ 5年 이상 同居·奉養한 者가 相續받은 住宅

5年 이상 被相續人을 同居하면서 奉養한 成年의 直系卑屬(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인 相續人이 相續받은 住宅을 말한다.

「5年 이상 被相續人을 同居하면서 奉養」한다 함은 被相續人의 死亡日로부터 소급하여 被相續人의 直系卑屬 중 1人이(당해 直系卑屬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配偶者와 함께) 계속하여 5年 이상 被相續人을 同居하면서 奉養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결혼한 사람의 경우는 夫婦가 함께 被相續人을 모셔야 한다. 그러나 被相續人을 夫婦가 함께 同居하면서 奉養하던 중 夫婦 중 한사람이 就學·질병의 요양·業務上 형편 등으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夫婦 중 한사람이 계속하여 被相續人을 同居하면서 奉養한 경우에 한하여 그 期間을 同居·奉養期間에 算入한다.

同居·奉養의 立證은 被相續人 또는 相續人의 住民登錄票에 의한다. 따라서 住民登錄票상 同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同居·奉養한 것으로 보나, 同居하지 아니한 사실이 確認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시집간 女子가 친정父母를 모신 경우에도 친정父母로부터 相續받은 住宅은 控除對象이 된다.

㈐ 控除額의 計算

○ 控除額=(住宅價格-6,000萬원)×90%

3代 이상 代물림한 住宅 등에 대하여는 당해 住宅價格 중 住宅相續控除額

6,000萬원을 뺀 金額의 90%를 追加하여 控除한다. 예를 들면 3代 이상 代물림한 住宅이 1億원이라고 하면 먼저 일반적인 住宅相續控除額 6,000萬원을 빼고 그 나머지 4,000萬원에 대하여 90%, 즉 3,600萬원을 다시 뺀 400萬원에 대하여만 相續稅를 물게 된다. 따라서 3代 이상 代물림한 住宅價格이 6,000萬원 이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住宅相續控除額 6,000萬원을 控除하면 남은 金額이 없으므로 이 경우 追加控除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3代 이상 代물림한 住宅 또는 5年 이상 同居·奉養住宅 등이 중첩되거나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住宅價格이 가장 높은 1住宅에 대하여만 適用한다.

〈參 考〉

○ 5年 이상 同居·奉養者와 그렇지 아니한 者의 稅負擔 比較

	5年 以上 同居·奉養한 者	同居·奉養하지 아니한 者
○ 住宅價格	1億원	1億원
○ 住宅相續控除額	6千萬원	6千萬원
○ 追加控除額	3,600萬원 (1億－6千萬원)×90%	
○ 課稅價格	400萬원	4,000萬원
○ 相續稅額	43.2萬원	1,096.8萬원

3. 葬禮費槪算控除 新設(法 第4條)

被相續人(死亡人)의 葬禮費는 相續財産價格에서 控除하고, 相續稅를 課稅하게 되는데 葬禮費控除를 받기 위하여는 그 증빙을 稅務署에 提出하여야 한다.

그러나 葬禮를 치르는 등 경황이 없는 가운데 葬禮費支出證憑을 正確히 提出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稅務署에 提出한 葬禮費證憑이 200萬원 이하인 경우는 勿論 證憑을 提出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萬원까지는 무조건 葬禮費로 支出된 것으로 보아 控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實際 支出한 葬禮費가 2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支出證憑을 提出하면 實際 支出한 葬禮費 金額을 控除받을 수 있다.

4. 自進申告稅額控除額의 範圍調整(法 第20條의2)

종전에는 相續稅課稅價額을 申告하면 控除·減免되는 稅額에 대하여도 다시 10%의

自進申告 稅額控除를 하여 주었으나 이는 지나친 惠澤이므로 앞으로는 申告한 相續稅額에서 控除·減免稅額이나 기타 徵收猶豫額을 차감한 實負擔稅額의 10%만 自進申告稅額으로 控除해 주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申告한 相續稅額의 10%를 控除	○ 申告한 相續稅額에서 다음을 控除한 金額의 10%를 控除 · 文化財에 대한 徵收猶豫額 · 減免·控除稅額

5. 相續稅 決定節次의 改正(法 第25條·第25條의2)

종전에는 相續人(相續稅納稅義務者)이 相續稅自進申告를 한 후 自進申告를 받은 稅務署長은 相續稅課稅價額을 決定하여 通知한 후 다시 納付할 相續稅額을 決定하여 通知(相續稅納稅告知書)하였다. 이번 改正에서는 課稅價額의 決定通知節次를 없애고 바로 相續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通知를 하도록 하여 他稅目의 경우와 稅金決定節次를 같게 하였다.

그리고 相續人이 國稅 등 다른 稅金을 滯納하여 滯納處分을 받거나 海外로 移住하는 경우 등 國稅徵收法의 規定에 의한 納期前徵收事由가 있는 때에는 相續稅 自進申告期日(相續開始日로부터 6月)전이라도 稅務署長은 隨時로 相續稅課稅標準과 稅額을 早期에 決定할 수 있도록 하여 稅金의 逸失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相續稅課稅標準과 稅額의 通知方法에 있어서도 여러명의 納稅義務者(相續人)가 있는 경우 納稅義務者 1人에게만 通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通知의 效力은 納稅義務者 모두에게 미치도록 明文化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決定節次 ① 自進申告 → ② 課稅價額決定通知 → ③ 稅額決定通知(告知)	○ 決定節次 ① 自進申告 → ② 課稅標準 및 課稅決定通知(告知) ③ 隨時賦課制度 新設

6. 年賦延納 申請節次 등의 改正(法 第28條)

(1) 年賦延納申請 및 許可通知

相續稅 課稅價額 決定通知를 廢止하게 됨에 따라 相續稅 年賦延納節次를 다음과 같이 改正하였다.

즉, 相續稅 自進申告時 年賦延納을 申請한 경우에는 相續稅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通知時 그 許可與否를 通知하도록 하였고, 相續稅 自進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自進申告時 年賦延納申請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相續稅 決定通知에 따른 納付期限까지 年賦延納을 申請하면 申請日로부터 10日내에 그 許可與否를 通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에 相續稅 告知納付期限을 경과하여 相續稅 年賦延納許可通知가 있는 경우에는 年賦延納 許可通知日 이전에 한하여 遲延許可된 年賦延納稅額에 대하여 國稅徵收法에 의하여 滯納加算稅金은 適用하지 않도록 하였다.

(2) 事業相續時 年賦延納時期 延長

이번 改正에서는 事業相續에 對하여 年賦延納期間을 一般財產의 경우보다 2년을 더 延長하여 5年으로 하였다. 이는 事業을 相續받은 경우 相續稅納付를 위하여 事業을 處分하지 아니하고도 事業을 해서 번 돈으로 相續稅를 納付할 수 있도록 하여 事業의 계속성도 維持하면서, 家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事業相續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財產을 相續받은 경우로서 그 財產總價額이 1億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① 被相續人(死亡人)이 相續開始日 現在 3年 이상 계속하여 營爲한 個人事業(不動產賃貸業·自由職業·서비스業은 除外)

② 被相續人(死亡人)이 相續開始日 現在 10% 이상을 出資하고 있는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으로서 被相續人이 相續開始日 現在 3年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 그리고 5年間 年賦延納을 받을 수 있는 稅額을 事業相續으로 인정되는 財產에 상당하는 相續稅에 한한다.

改正된 이 規定은 1983. 1. 1 이후 최초로 年賦延納을 許可하는 分으로 適用한다.

(3) 年賦延納 利子率

종전에는 100원에 대하여 1日 5錢5厘였으나 5錢으로 引下하였다. 이 引下된 利子率은 1983. 1. 1부터 施行한다. 따라서 1982年에 年賦延納을 許可한 分이라 할지라도 1983. 1. 1 이후의 期間에 대하여는 引下된 利子率이 適用된다.

(5錢5厘) 전 ←——→ 이후(5錢)

1983. 1. 1

	改 正 前	改 正
○ 年賦延納 및 物納 申請期限	○ 課稅價額 決定通知日로부터 30日內(外國에 있는 경우에는 3月內) 申請	○ 相續稅 自進申告時 또는 申告納付期限까지 申請
○ 年賦延納 許可·通知	○ 申請日로부터 30日內 申請人에게 許可與否 通知	○ 相續稅 自進申告期限內 申請時 : 稅額決定通知時 함께 許可與否通知 ○ 告知納付期限內 申請時 : 申請日로부터 10日內 許可與否 通知
○ 年賦延納 期限	3年	3年 但, 事業相續의 경우에는 5年
○ 年賦延納 利子率	100원에 대하여 1日 5錢5厘	100원에 대하여 1日 5錢

7. 物納申請節次 등의 改正(法 第29條)

物納의 申請 및 許可節次는 年賦延納의 申請 및 許可節次가 改正된 것과 똑같이 改正되었다.

〈贈 與 稅〉

1. 당초 贈與者에게 贈與財產 返還時 贈與稅 再課稅 排除(法 第29條의2)

贈與를 받은 者가 贈與받은 金錢 以外의 財產을 1年 이내에 당초 贈與者에게 返還 또는 다시 贈與한 때에는 贈與稅를 또 賦課하지 않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甲이 乙에게 住宅을 贈與한 후 乙이 그 贈與받은 住宅을 甲에게 返還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당초 受贈者 乙에게 贈與稅를 課稅한 후 乙로부터 贈與財產을 返還받는 甲에 대하여 贈與稅를 再次 課稅하였다.

그러나 改正된 規定에서는 당초 受贈者 乙에 대하여는 贈與稅를 課稅하나, 乙로부터 贈與財產을 返還받은 甲에 對하여는 贈與稅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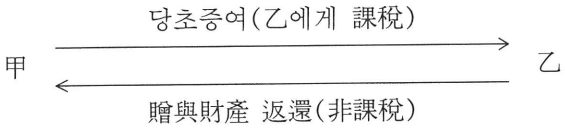

2. 直系尊卑屬間 不動産 등의 相互交換時 贈與擬制 除外(法 第34條, 令 第41條)

종전에는 直系尊卑屬 또는 配偶者에게 財産을 판 경우 그 財産을 산 사람이 판 사람에게 대가를 支給한 사실이 있더라도 당해 財産을 판 사람이 特殊關係者인 산 사람에게 贈與한 것으로 보아 贈與稅를 課稅하였다.

이번 改正에서는 權利의 移轉 등에 있어서 登記·登錄을 요하는 直系尊卑屬 또는 配偶者間에 서로 交換한 경우는 그 代價의 支給事實이 明白하며 贈與稅 回避를 위한 造作의 可能性도 적으므로 贈與의 擬制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면 直系尊卑屬間에 自動車를 서로 交換한 경우는 그 價格差異가 30%를 넘지 않는한 贈與稅는 課稅되지 아니한다. 이때 交換한 自動車의 價格差異가 30%를 넘는 때에는 法 第34條의 2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者間의 低價 또는 高價讓受渡에 의한 별도의 贈與擬制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讓渡所得稅가 課稅되는 不動産(土地·建物)을 서로 交換한 경우에는 이번 相續稅法 改正으로 直系尊卑屬 등 간의 贈與擬制에서는 除外되었다 해도 각각의 讓渡差益에 대하여 所得稅法에 의한 讓渡所得稅는 課稅된다.

改　正　前	改　正
○ 配偶者·直系尊卑屬間의 財産讓渡時 讓受者가 그 財産의 代價를 支給한 사실에 불구하고 讓受者에게 贈與한 것으로 봄.	○ 權利의 移轉이나 行使에 있어서 登記나 登錄을 要하는 財産을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間에 交換한 경우는 贈與로 보지 아니함.

3. 特殊關係者에게 高價讓渡時 贈與擬制(法 第34條의2)

종전에는 일정한 特殊關係에 있는 者에게 財産을 현저히 低廉한 價額, 즉 時價의 70% 이하의 價額으로 讓渡한 경우에만 讓渡者가 讓受者에게 그 差額相當額을 贈與한 것으로 擬制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종전의 低價讓渡 以外에 그 반대의 경우인 高價讓渡의 경우에도 贈

與로 擬制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特殊關係있는 者로부터 현저히 높은 價額, 즉 時價의 130% 이상의 價額으로 讓渡한 경우에는 이를 高價讓渡로 보아 讓受者가 讓渡者에게 그 差額相當額을 贈與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甲이 特殊關係者인 乙로부터 時價 1,000萬원인 重機를 1,500萬원에 산 경우 甲이 乙(讓渡者)에게 500萬원은 贈與한 것으로 본다.

低價讓渡의 경우는 讓受者에게 贈與한 것으로 보는 반면 高價讓渡의 경우는 讓渡者에게 贈與한 것으로 본다.

(低價讓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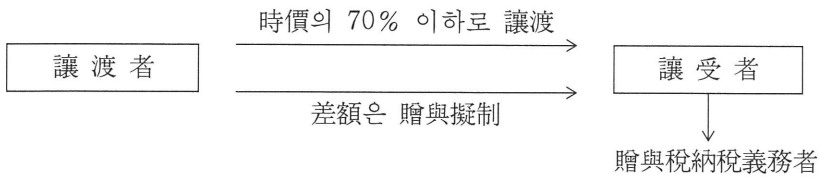

(高價讓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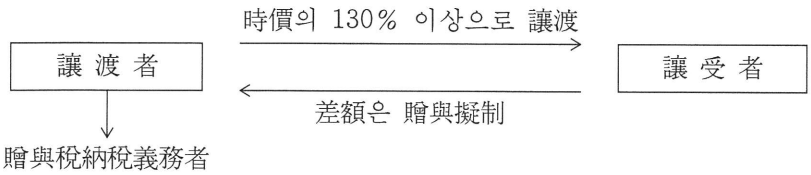

改 正 前	改 正
○ 低價讓渡 特殊關係者에게 時價의 70% 이하의 價額으로 財產讓渡時 그 差額은 讓受者에게 贈與한 것으로 봄. 〈新 設〉	○ 低價讓渡 (改正前과 같음) ○ 高價讓渡 特殊關係者에게 時價의 130% 이상의 價額으로 財產讓受時 그 差額은 讓渡者에게 贈與한 것으로 봄.

4. 贈與擬制에서 除外되는 信託財產(法 第32條의 2)

相續稅法上 不動產 등 實所有權者의 名義로 登記하지 아니하고 他人名義로 登記하는 경우에는 實所有權者가 名義者에게 贈與한 것으로 보고 贈與稅를 課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他人 등 第3者 名義로 登記 등을 한 財産 중에서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業을 營爲하는 者가 信託財産인 사실을 登記한 경우에는 實所有權者와 名義上의 所有權者가 명백히 나타나므로 그러한 때는 종전부터 贈與擬制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改正에서는 信託業法에 의한 財産의 信託登記를 贈與擬制에서 除外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趣旨로 信託法에 의한 信託財産임을 登記·登錄한 경우도 贈與擬制에서 除外토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業을 營爲하는 者가 信託財産인 事實을 登記 등을 하는 경우	信託法 또는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財産인 事實을 登記 등을 하는 경우

5. 勤勞福祉基金과 關聯한 贈與稅 非課稅(令 第4條·第42條)

(1) 勤勞福祉基金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企業體에 設置하는 基金으로서 稅制支援對象이 되는 勤勞福祉基金은 勞動部長官과 財務部長官이 協議하여 정한 바에 의하여 設置·運營되는 것에 한한다.

(2) 贈與稅의 非課稅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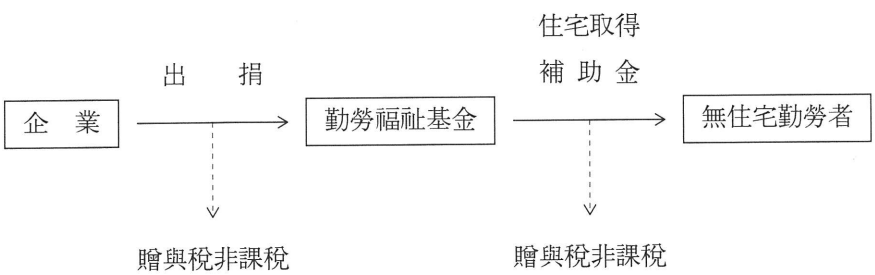

勤勞福祉基金이 企業으로부터 贈與받은 金品에 대하여는 贈與稅가 비과세된다.

그리고 無住宅勤勞者가 건물연면적이 50m²(15坪) 이하인 住宅을 取得하는 경우에 勤勞福祉基金으로부터 贈與받은 住宅取得補助金 중 住宅取得價額의 5% 이하의 金額에 대하여는 贈與稅를 非課稅한다.

1986년

◉ 법　　률 : 1986.12.31. 법　　률 제 3902호(국민복지연금법 부칙)(시행일 : 1988. 1. 1.)
◉ 시 행 령 :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시행일 : 1987. 1. 1.)
◉ 시행규칙 : 1986.12.31. 재무부령 제 1696호(시행일 : 1987. 1. 1.)

〈要　　約〉

○ 教育法의 規定에 의한 教育機關을 運營하는 法人과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의 適用을 받는 公益法人을 제외한 非營利公益法人에 대하여 出捐者등 特殊關係者의 理事就任을 許容하지 아니하던 것을 社會福祉法人과 醫療法人의 경우 理事現員의 $\frac{1}{3}$ 까지 許容함으로써 이 分野에 대한 民間部門으로부터의 資源動員을 支援함.

○ 出捐財產運用所得의 強制使用基準으로 每年 使用實績이 出捐財產運用所得의 80% 以上 및 出捐財產의 評價額에 대한 定期預金利子相當額의 50% 以上이어야 하던 것을 特定事業年度에는 그 使用實績이 使用基準에 미달되더라도 연속되는 3年間의 平均으로 計算한 使用實績이 使用基準에 미달되지 아니하면 使用基準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완화함으로써 公益法人의 원활한 事業遂行을 도모함.

○ 關稅의 課稅價格이 30萬원 未滿인 少額外國寄贈物品에 대해 贈與稅를 非課稅하도록 함.

○ 非上場株式의 評價에 있어서 1株當 최근 3年間 純損益의 平均額 計算方法을 單純平均方式에서 加重平均方式으로 전환함으로써 相續開始當時의 收益趨勢를 적절히 反映하도록 함.

○ 1株當 최근 3年間 純損益의 平均額이 零 이하인 경우 그 純損失額을 定期預金利子率에 의하여 資本還元하고 그 資本還元價額을 1株當 純資產價額에서 控除한 다음 그 殘額을 2等分함으로써 1株當價額을 평가하던 것을, 純損益의 平均額을 零으로 하여 結果的으로 1株當 純資產價額을 2等分하여 1株當價額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休·廢業중에 있는 法人의 株式과의 評價上 심한 不均衡을 해소함.

○ 支配株主그룹 所得株式 이외의 株式에 대해 市場性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 株式의 評價額에서 그 價額의 10%를 控除하는 輕減制度를 導入함으로써

評價의 適正化를 도모함.

○ 純資產價額·純損益額의 評價項目 중

— 資產에 포함하고 最終事業年度 損益에서 공제하던 移延資產價額을 資產에서 제외하고 損益에서는 控除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 資產과 負債에 포함하던 長期外貨債權·債務 評價差損益을 各各 資產과 負債에서 除外하도록 함으로써 評價의 適正化를 도모함.

○ 新株引受權포기에 따른 증여가액계산시 抵當權 등이 設定되어 있는 財產에 대하여는 擔保提供된 財產價額의 評價方法(相續稅法施行令 第5條의2)에 따라 評價하도록 明文化함.

〈改正內容〉

1. 公益法人의 要件 緩和

가. 特殊關係者의 理事就任 制限 緩和(相續稅法施行令 第3條의2 第1項第1號)

從 前	改 正
○ 社會福祉法人은 出捐者도 理事 취임불가 ○ 醫療法人은 醫療人인 出捐者만 理事就任可能	出捐者 등 特殊關係者도 理事現員의 1/3까지 就任許容(但, 醫療人인 出捐者는 特殊關係者로 보지 아니함)

非營利公益法人에 財產을 出捐하는 경우에는 贈與稅 또는 相續稅를 免除하면서 公認法人의 運營에 있어서 公益性을 보장하기 위하여 出捐者 등 當該法人과 特別한 관계가 있는 者에 대하여 理事就任을 原則的으로 許容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特定의 政策目的을 지원하기 위하여 敎育法에 의한 敎育機關을 운영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의 적용을 받는 公益法人에 대하여는 理事現員의 1/3 이내에서 특수관계자의 理事就任을 許容하며, 醫療法人에 대하여는 醫療人인 出捐者에 한해 理事就任을 許容하여 왔다.

그러나, 1980年代 後半부터 점증되고 있는 各種 社會福祉施策을 支援하기 위해서는 公共部門의 莫大한 財政支出 以外에 民間部門으로부터의 資源動員이 절실히 要請되고 있는 바, 社會福祉法人과 醫療法人의 出捐者 등 特殊關係者에 대하여 理事就任을 制限하는 것은 이 分野에 대한 民間資源의 動員에 큰 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改正令에서는 이러한 障碍要因을 해소하기 위하여 社會福祉法人과 醫療法人에 대하여 出捐者 등 特殊關係者의 理事就任을 理事現員의 1/3까지 許容하였다. 다만, 醫療法人의 경우 醫療法에 의한 醫療人인 出捐者에 대하여는 特殊關係者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改正前과 마찬가지로 理事現員의 1/3이라는 制限에 關係없이 理事에 就任할 수 있도록 하였다.

〈適用例〉

1987. 1. 1 以後 最初로 相續이 開始되거나 贈與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다만, 이 令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運營되는 社會福祉法人과 醫療法人이 이 改正規定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附則 第4項에서 이 令의 規定에 의한 公益事業을 運營하는 法人으로 보도록 規定하였다.

나. 出捐財産運用所得의 使用基準 緩和(相續稅法施行令 第3條의2第8項)

從 前	改 正
○ 「每年」使用實績이 運用所得의 80% 以上, 그리고 運用財産 價額에 대한 定期預金利子相當額의 50% 以上이어야 함.	○ 使用實績과 使用基準을 「3年平均」으로 計算할 수 있도록 함.

公益法人이 出捐받은 財産을 收益事業用 또는 收益用으로 使用한 경우 出捐財産運用所得의 強制使用基準으로, 從前에는 出捐財産運用所得(法人稅·住民稅 및 防衛稅와 移越缺損金을 除外한 金額)의 80% 以上을 每年 그 所得이 發生한 事業年度의 말일부터 1年內에 그 法人의 定款上의 固有目的事業에 使用하여야 하며, 또한 公益法人이 法人所有財産을 每年 固有目的事業에 使用한 實績이 出捐財産(固有目的事業에 使用한 分은 除外)의 評價額에 대한 定期預金利子相當額의 50% 以上이 되어야 公益法人으로 認定되었다.

이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出捐財産運用所得이 出捐財産의 評價額에 대한 定期預金利子相當額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收益의 源泉인 原本의 일부를 헐어서 固有目的事業에 支出하여야만 하고, 그 結果 公益法人의 伸縮性있는 원활한 事業遂行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改正令에서는 特定事業年度에는 그 使用實績이 使用基準에 미달되더라도 연속되는 3年間의 平均으로 計算한 使用實績이 連續되는 3年間의 平均으로 計算한 使用基準에 미달되지 아니하면 使用基準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緩和하였다.

〈事 例〉

區 分	1984	1985	1986	3年間 平 均
① 固有目的事業 以外의 출연재산 (전년도 말일 현재)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②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100	75	40	71.7
③ 固有目的事業 사용실적	80	60	40	60
④ 사용기준	80	60	50	57.3
○ ①×定期預金利子率(10%)×50%	(50)	(50)	(50)	(50)
○ ②×80%	(80)	(60)	(32)	(57.3)
⑤ 적합 여부 판정	적 합	적 합	미 달	적 합

2. 少額外國寄贈物品의 贈與稅 非課稅(相續稅法施行令 第4條第1項第7號)

他人으로부터 寄贈받은 物品으로서 外國으로부터 搬入되는 物品 中 關稅의 課稅價格이 30萬원 미만인 物品에 대하여는 輸入時 關稅 등이 課稅되는 以外에 受贈者에 대해 贈與稅를 課稅함으로써 民願이 야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贈與稅를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3. 非上場株式 評價方法의 改善

가. 平均純損益額의 計算方法 變更(相續稅法施行令 第5條第5項第1號나目)

從 前	改 正
(1株當 株式評價 公式) {(1주당 순자산가액)+(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의 단순평균액을 자본환원한 가액)}÷2	{(1주당 순자산가액)+(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을 자본환원한 가액)}÷2

1株當 最近 3年間 純損益의 平均額을 從前에는 單純平均方式으로 計算하였는데, 이 方式에 의하면 相續開始當時의 收益趨勢를 反映하지 못하는 缺點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번 改正令에서는 相續開始當時의 事業年度의 純損益額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어 評價하도록 加重平均方式을 導入하였다.

事業年度別 純損益額에 대한 加重値는 相續開始日에 가까운 事業年度順으로 各各 3,

2, 1로 定하였다(相續稅法施行規則 第5條第4項 參照).

〈事 例〉

(단위 : 원)

區分 / 利益趨勢別	3年前	2年前	1年前	單純平均 (從前)	加重平均 (改正)
○ 下向時	500	300	100	300	233
○ 上向時	100	300	500	300	366
	(1/6)	(2/6)	(3/6)		

註 : ( )는 加重値

나. **平均純損益이 零 이하인 경우의 評價方法改善**(相續稅法施行令 第5條第5項第1號 바目)

從前	改正
(1柱當 株式 評價公式) 〔1株當純資産 價額 − 1株當 最近 3年間 平均 純損失額을 資本還元한 價額〕 ÷2	(平均純損益額이 零 이하인 경우) 〔(1株當 純資産價額)+0〕÷2 ※ 1株當 最近 3年間 純損益의 加重平均額이 零 이하인 경우 이를 零으로 함.

1株當 最近 3年間 純損益의 平均額이 零 이하인 경우 從前에는 그 純損失額을 定期預金利子率에 의하여 資本還元하고 그 資本還元價額을 1株當 純資産價額에서 控除한 다음, 그 殘額을 2等分함으로써 1株當價額을 評價하였다. 그런데 이 評價方法에 의하면 1株當 純資産價値가 있는 法人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過小評價되고, 休·廢業中에 있는 法人의 경우 1株當 純資産價額 전부를 1株當 價額으로 評價하는 것과 比較하여 볼 때 심한 不均衡을 招來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改正令에서는 이러한 不均衡을 解消하기 위하여 1株當 最近 3年間 純損益의 加重平均額이 零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零으로 함으로써 結果的으로 1株當 純資産價額을 2等分하여 1株當價額을 評價하도록 하였다.

〈事 例〉

(단위 : 원)

1株當 純資産 價 値	1株當收益價値		1株當 評價額	
	從 前	改 正	從 前	改 正
700	800(80/0.1)	같음	750	같음
550	300(30/0.1)		425	
520	100(10/0.1)		310	
500	0(0/0.1)		250	
470	△100(△10/0.1)	0	185	235
410	△300(△30/0.1)	0	55	205
350	△500(△50/0.1)	0	0(△75)	175

註 : (/)는 (1주당 순손익액/정기예금이자율)

다. 支配株主그룹 所有株式 以外의 株式에 대한 輕減制度 導入(相續稅法施行令 第5條第5項第1號사目)

法人稅法施行令 第31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支配株主 및 그와 特殊關係에 있는 株主가 所有하는 株式외의 株式에 대하여는 市場性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 株式의 評價額에서 그 價額의 10%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評價의 適正化를 圖謀하였다.

支配株主란 당해 法人의 發行總株式數의 1/100 以上의 株式을 所有한 株主(정부를 除外한다)로서 그와 特殊關係가 있는 株主와의 所有株式 合計가 당해 法人의 株主 中 가장 많은 株式數가 되는 경우의 株主를 말한다.

라. 純資産價額·純損益額의 評價項目 中 一部調整(相續稅法施行令 第5條第5項第1號다目)

從 前	改 正
○ 移延資産價額을 資産에 包含하고 損益에서 控除함.	○ 資産에서 除外하고 損益에서는 控除하지 아니함.
○ 長期外貨債權·債務評價差損을 資産에 포함.	○ 資産에서 除外함.
○ 長期外貨債權·債務評價差益을 負債에 포함.	○ 負債에서 除外함.

(1) 移延資產

移延資產은 實質的으로는 이미 社外流出된 費用이며, 단지 將來 一定期間동안에 걸쳐 費用化하기 위하여 資產計定에 計上되는 架空資產에 해당한다.

그런데, 從前에는 이러한 移延資產을 1株當 純資產價額 計算時 資產에 包含시키고, 1株當 最近 3年間 純損益의 平均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最終事業年度의 純損益額에서 未償却殘額 全部를 控除하였다. 그 結果 純資產價額은 架空資產의 移延資產의 價額만큼 過大評價되고, 最終事業年度의 純損益額은 經常利益의 側面에서 볼 때 過小評價되는 問題點이 發生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改正令에서는 法人稅法施行令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延資產은 모두 1株當 純資產價額計算時 資產에서 除外하고, 最終事業年度의 純損益額計算時 純損益額에서 控除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換率調整計定

換率調整計定은 長期外貨債權·債務에 대한 評價差損이 計上되는 換率調整借計定과 長期外貨債權·債務에 대한 評價差益이 計上되는 換率調整貸計定으로 區分되는데, 換率調整借計定은 移延資產과, 換率調整貸計定은 移延負債와 매우 類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從前에는 1株當 純資產價額計算時 換率調整借計定의 金額을 資產에 包含시킴으로써 純資產價額이 過大評價되고, 換率調整貸計定의 金額을 負債에 包含시킴으로써 純資產價額이 過小評價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改正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解消하기 위하여 1株當 純資產價額計算時 法人稅法施行令 第38條의2의 規定에 의한 換率調整計定의 金額은 資產과 負債에서 각각 除外하도록 하였다.

4. 新株引受權 포기시 擔保提供된 財產의 評價方法 明文化(相續稅法施行令 第41條의3)

從前의 相續稅法施行令 第41條의3의 規定에 의하면 法人이 資本 또는 出資額을 증가하기 위하여 新株를 配定함에 있어서 當該法人의 株主 등이 新株引受權을 一部 또는 全部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新株引受權을 포기한 株主 등과 特殊關係에 있는 者가 그의 持分比率을 超過하여 新株를 配定받은 경우에는 그 超過하여 配定받은 新株의 納入金額과 同法施行令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과의 差額을 顯著히 저

렴한 代價로서 받은 利益으로서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고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法人의 評價對象 財産 中에 抵當權 등이 設定된 財産이 있는 경우 擔保提供된 財産價額의 評價方法을 規定하고 있는 相續稅法施行令 第5條의2를 適用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財務部 財産 22601－105(1986. 2. 8)에서 "新株引受權 포기에 따른 贈與價額計算時 抵當權 등 擔保提供된 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相續稅法 第9條第4項 및 同法施行令 第5條의2의 規定에 따라 評價하는 것"이라고 解釋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改正令에서는 新株引受權 포기시 擔保提供된 財産價額의 評價方法을 同 解釋에 따라 相續稅法 第9條第4項 및 同法施行令 第5條의2의 規定에 의하도록 明文化하였다.

1987년

◉ 시 행 령 : 1987. 5. 8. 대통령령 제12155호(시행일 : 1987. 5. 8.)
◉ 시행규칙 : 1987.12.31. 재무부령 제 1738호(시행일 : 1987.12.31.)

〈要　　約〉

○ 父母를 모시는 우리고유의 美風良俗을 기리기 위하여 이미 마련하여 施行하고 있는 5年 以上 同居·奉養住宅에 대한 住宅相續追加控除制度의 控除要件을 緩和하였다.

○ 納稅者의 便宜를 도모하고 稅務行政의 電算化를 위하여 重複되는 一部書式을 統合하여 申告書類를 簡素化하고, 기타 一部書式은 電算處理가 容易하도록 改正하였다.

〈改正內容〉

1. 祖父母·父母奉養相續控除條件의 緩和(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2제5항)

從 前	改 正
— 原 則 ○ 直系尊屬 중 1인이(當該直系尊屬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 被相續人을 被相續人의 死亡日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同居·奉養 — 例 外 ○ 直系卑屬 또는 그 配偶者 중 1인이 就學·疾病의 療養·業務上의 형편 등으로 一時的으로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경우 남은 1인이 계속하여 同居·奉養한 경우에 한하여 위 奉養期間에 算入	— 原 則 ○ (從前과 같음) — 例 外 ○ 直系卑屬·그 配偶者 또는 被相續人의 疾病의 遼養·業務上의 형편·就學 其他 부득이한 事由로 一時的으로 被相續人을 同居·奉養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當該 事由 發生 前後期間을 奉養期間에 合算하며, 이때 直系卑屬과 그 配偶者 중 1인이 계속 同居·奉養한 경우에도 그 期間을 奉養期間에 算入

2. 稅務行政의 電算化를 위한 書式改正(상속세법시행규칙 제12조)

從前에 각각 별개로 使用하여 오던 相續財產申告書(별지 제7호서식)와 贈與財產申告書(별지 제14호서식)를 削除하여 (相續稅 贈與稅) 申告 및 納付計算書로 흡수 統合하고, (相續稅 贈與稅)年賦延納許可書(별지 제15호서식)와 (相續稅 贈與稅) 物納許可書(별지 제16호서식)의 書式의 크기 및 서식의 항목을 調整하여 電算處理할 수 있도록 하였음.

1988년

◉ 법　　률 : 1988.12.26. 법　　률 제 4022호(시행일 : 1989. 1. 1.)
◉ 시 행 령 :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시행일 : 1989. 1. 1.)
◉ 시행규칙 : 1989. 2.23. 재무부령 제 1775호(시행일 : 1989. 2.23.)

〈要　　約〉

○ 相續稅의 課稅價額에서 控除되는 控除額을 引上調整하고 控除制度를 일부 改善함.

— 配偶者控除額을 2千萬원에서 4千萬원으로, 子女控除額을 500萬원에서 1千萬원으로, 未成年者控除額을 年40萬원에서 年100萬원으로, 年老者控除額을 300萬원에서 1千萬원으로, 障碍者控除額을 800萬원에서 1千萬원으로 각각 上向調整하도록 함.

— 住宅相續의 경우 住宅控除額의 限度額은 이를 基礎控除額 및 人的控除額을 포함하여 종전 6千萬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億원으로 引上調整하고, 5年 以上 同居奉養住宅에 대해서는 3千萬원을 追加控除의 限度額으로 하여 控除토록 함.

— 農地·草地 또는 山林地相續의 경우 그 控除額의 限度額은 이를 基礎控除額·人的控除額 및 住宅控除額을 포함하여 종전 7千萬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億1千萬원으로 引上調整하는 동시에 당해 農地 등의 面積限度를 上向調整함.

○ 相續稅와 贈與稅의 稅率體系를 單純化하고 最低稅率 및 最高稅率을 引下調整하도록 함.

○ 相續財産을 申告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申告에서 漏落된 財産에 대하여는 당해 財産의 相續開始當時의 價額과 相續稅賦課當時의 價額중 큰 금액을 相續稅의 課稅價額으로 하도록 함.

○ 賃借權이 約定된 財産도 賃借權이 登記된 財産과 같이 賃貸保證金과 課稅基準價額 중 큰 금액을 相續稅의 課稅價額으로 하도록 함.

○ 相續稅 및 贈與稅의 申告를 不誠實하게 하는 경우 賦課되는 加算稅의 賦課基準을 相續稅課稅標準의 申告時 漏落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그 加算稅率을 現行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함.

○ 相續財産 중 長期間에 걸쳐 收入이 발생되는 有期定期金과 無體財産權의 價額을 期間利子率을 勘案하여 現在價値로 환산한 금액으로 評價하도록 함.
○ 相續稅額을 分割納付할 경우 適用되는 利子稅率을 100원에 대하여 現行 1日 5錢(年利 18.25퍼센트)에서 1日 3錢(年利 10.95퍼센트)으로 引下함.

〈改正內容〉

1. 相續控除額의 現實化 및 控除制度 改善

가. 相續控除額의 引上調整(法§ 11, § 11의2, § 11의3)

現在 政府가 추진중인 地價現實化 작업이 1990年부터 施行되면, 相續財産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不動産의 價額이 大幅 現實化되고 최근 不動産投機抑制 및 地價一元化에 따른 전단계 조치로 國稅廳의 特定地域指定이 확대됨에 따라 中産層의 급격한 稅負擔增加가 예상되므로 各種 控除額을 上向調整하여 이를 緩和할 必要에서, 外國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配偶者控除額을 相續財産에 대한 配偶者의 生前 寄與度를 勘案하여 4千萬원으로 引上하고, 老人 및 障碍者에 대한 社會政策的 狀況을 고려하여 각각 1千萬원을 引上함과 아울러 控除限度額 계산시 除外하여 전액 控除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큰 控除額 增加惠澤을 賦與하였으며, 대다수 國民의 相續財産에 住宅이 포함되어 있는 現實을 勘案하여 基礎 및 人的控除를 포함하여 1億원까지 控除토록 함으로써 住居生活의 安定을 도모하였고 營農規模 擴大를 통한 農村經濟 活性化를 위하여 基礎·人的控除 및 住宅相續控除를 포함하여 1億1千萬원까지 控除額을 上向調整하였다.

控除制度	從前		改正
① 基礎控除		1,000萬원	1,000萬원
② 人的控除			
· 配偶者		2,000萬원	4,000萬원
· 子女	1人當	500萬원	1,000萬원
· 未成年者	20세까지		
	年數×	40萬원	100萬원
· 年老者	1人當	300萬원	1,000萬원※
· 障碍者	1人當	800萬원	1,000萬원※

控除制度	從前	改正
③ 住宅相續控除 · 3代이상대물림 住宅 등 追加控除	① + ② 包含 6,000萬원 (住宅價額 − 6千萬원) × 90%	1億원 (住宅價額 − 1億원) ×90% ※ 同居奉養住宅 追加控除에 3,000萬원 한도설정
④ 農地·草地 山林地 相續控除	① + ② + ③ 包含 7,000萬원	1億1千萬원

※ 年老者·障碍者控除는 綜合限度額 計算에서 控除

나. 住宅相續控除制度 改善

(1) 住宅相續 追加控除額의 限度設定(法 § 11의2②)

住宅相續追加控除는 父母를 섬기는 美風良俗을 기리기 위하여 3代 이상 代물림 住宅 및 5年 이상 同居奉養한 住宅에 대하여 追加控除의 惠澤을 주어 왔으나 一部 富裕層의 高級住宅이 큰 幅의 輕減惠澤을 보는 問題點을 是正하기 위하여 5年 이상 同居奉養한 住宅은 3,000萬원의 別途限度를 두었고, 3代 이상 代물림 住宅은 傳統家屋保護 등의 側面을 고려하여 現行 制度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住宅相續追加控除時 3代 이상 代물림住宅과 5年 이상 同居奉養住宅이 2 이상이 있을 경우 從前에는 住宅價額이 큰 住宅 하나에 대하여 控除하던 것을 住宅相續追加控除額이 큰 住宅 하나에 대하여 控除하도록 하였다.

區分	從前	改正
○ 3代 이상 代물림 住宅	限度없음	限度없음
○ 5年 이상 同居奉養住宅	〃	3,000萬원 限度設定

〈計算事例〉

相續財産	從前	改正
○ 3代 이상 代물림住宅 (評價額 : 2億원) ○ 5年 以上 同居奉養住宅 (評價額 : 3億원)	(2억−6,000만원)×90% =126,000,000원 (3억−6,000만원)×90% =216,000,000원	(2억−1억)×90% =90,000,000원 (3억−1억)×90% =18,000,000원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인 3천만원
住宅相續 追加控除額	216,000,000원	90,000,000원

(2) 住宅附隨土地의 範圍縮小(法 § 11의①, 令 § 8의2⑦)

住宅相續控除는 대다수 국민의 相續財産이 住宅에 포함되어 있는 現實을 勘案하여 基礎 및 人的控除를 포함하여 1億원까지 控除하여 줌으로써 住居生活의 安定을 도모하는 制度로 종전에는 住宅에 附隨되는 土地의 範圍를 建築定着面積의 10倍 以內까지 控除하여 주었으나 宅地에 대한 과다한 수요를 억제하고 限定된 國土의 效率的 利用을 제고하기 위하여 都市計劃區域안의 土地에 대하여는 建物定着面積의 5倍 以內로 縮小하였다.

從 前	改 正
○ 建築定着面積의 10倍 以內	○ 都市計劃區域內 : 5倍 ○ 都市計劃區域外 : 10倍

〈計算事例〉

相 續 財 産	從 前	改 正
— 住宅 1棟 ○ 評價額 : 1億 ○ 建 物 面積 : 50㎡ 價額 : 2千萬원 ○ 土 地 面積 : 500㎡ 價額 : 8千萬원 ○ 都市計劃區域內 所在 ○ 控除合計額 : 3千萬원	(計算根據) ○ 控除限度 6千萬원 — 3千萬원 = 3千萬원 …… ① ○ 住宅價額 1億원 …… 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計算根據) ○ 控除限度 1億원 — 3千萬원 = 7千萬원 …… ① ○ 住宅價額 2千萬원 + 8千萬원 $\times\frac{(50\times5)}{500}$ = 6千萬원 …… 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住宅相續控除額	3千萬원	6千萬원

다. 農地 등 相續控除制度 改善(法 § 11의3)

住宅相續控除額의 引上에 따라 農地 등 相續控除額을 1億1千萬원으로 上向調整하고, 營農規模 擴大와 투자회임기간이 長期인 山林地에 대한 投資擴大 및 畜産發展을 위한 草地의 造成을 支援하기 위하여 각각 面積限度를 大幅 擴大하였다. 同 面積限度는 租稅減免制度法에 規定한 自耕農民에게 讓渡하는 農地 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租減法 § 67의6), 自耕農民이 贈與받는 農地 등에 대한 贈與稅 免除(租減法 § 67의7), 營農 1子女가 贈與 받는 農地 등에 대한 贈與稅 免除(租稅法 § 67의8)의 경우에도 준용

되는 것으로 農地細分化 및 不在地主의 增加를 抑制하여 農村經濟를 活性化시키고 營農基盤造成을 支援하기 위해 대부분의 農地 등이 포함되도록 擴大한 것이다.

다만, 山林地의 경우 최근 일고 있는 林野에 대한 投機抑制次元에서 그 範圍를 山林廳長이 指定告示하는 保全林地內의 山林地로 縮小하였다.

區 分	從 前	改 正
— 金 額 限 度	基礎·人的·住宅控除포함 7,000萬원	基礎·人的·住宅控除포함 1億1千萬원
— 面 積 限 度		
· 農 地	6,000坪	9,000坪
· 草 地	30,000坪	45,000坪
· 山 林 地	60,000坪	90,000坪
— 山林地의 範圍縮小	造林期間 5年 이상인 山林地	造林期間 5年 이상인 保全林地안의 山林地

※ 山林의 利用區分

山林의 綜合的이고 效率的인 保全과 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立地的 條件을 勘案하여 保全林地와 準保全林地로 區分한다.

(1) 保全林地

① 要存國有林, 保安林, 採種林, 試驗林, 公園(都市公園은 除外), 文化財保護區域, 觀光地(觀光振興法의 規定에 의한 것), 寺刹林

② ①에서 除外된 山林 중 傾斜 36度 이상의 山林 및 傾斜 21度 이상 36度 미만의 山林으로서 立木本數度 51% 이상의 山林

(2) 準保全林地

保全林地 이외의 山林

라. 山林相續控除對象 被相續人의 範圍調整(令 § 8의4 新設)

山林相續控除는 5年 이상 造林한 山林에 한하여 山林地相續控除와는 달리 被相續人에 대한 制限없이 全額控除 惠澤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被相續人의 범위를 相續開始日 2年前부터 계속하여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計劃에 의하여 山林을 경영한 者와 山林法에 의하여 施業이 制限되는 山林을 所有한 者로 制限하고 控除對象山林도 保全林地안의 山林으로 축소하여 최근 일어나고 있는 林野에 대한 投機를 抑制하고 山林地相續控除와도 均衡을 맞추었다.

從　　前	改　　正
○ 制限없음	○ 相續開始日 2年前부터 山林을 경영한 者 ○ 山林法에 의하여 施業이 制限되는 山林所有者

※ 施業이 制限되는 山林의 範圍

(1) 保安林·採種林

(2) 軍事上의 目的으로 사용되는 山林

(3) 砂防地·天然保護林·試驗林·寺刹林·鳥獸保護區域안의 特別保護地區 및 指定開發地域

(4)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 또는 決定된 公園·公園保護區域·觀光地·文化財保護區域·開墾促進地域·草地造成地區·酪農地帶·都市計劃區域·工業團地 및 田園開發事業區域

2. 相續·贈與稅率體系調整

政府가 추진중인 地價一元化 作業이 1990年부터 施行되어 相續稅課稅價格이 대폭 現實化되면 종전 稅率體系下에서는 급격한 相續稅의 負擔增加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必要가 있으며, 종전 名目的인 高稅率體系가 重課의 實效는 미흡하면서 租稅回避現象만 增加시키므로 적용계급을 단순화하고 稅率을 조정하여 稅負擔을 適正化하고, 相續評價制度 및 誠實申告誘導裝置를 制度的으로 보강하는 한편, 稅務行政을 강화하여 誠實納稅를 誘導하기 위하여 稅率을 대폭 引下하였다.

區　　分	從　　前	改　　正
相續稅率 (法 § 14)	· 15단계 ┌ 100만원 이하 70%(8.4%) ∫ └ 5억원 초과 60% (72%)	· 8단계 ┌ 300만원 이하 5%(6%) ∫ └ 5억원 초과 55%(66%)
贈與稅率 (法 § 31의2)	· 14단계 ┌ 50만원 이하 7% (8.4%) ∫ └ 2억원 초과 67% (80.4%)	· 8단계 ┌ 150만원 이하 5% (6%) ∫ └ 2억원 초과 60% (72%)

※ (　)는 防衛稅를 포함한 稅率임.

〈參 考〉

相續稅 速算表

(單位 : 千원)

從 前 ('82.1.1～'88.12.31)			改 正 ('89.1.1 이후)		
課稅標準	稅 率(%)	累進控除額	課稅標準	稅 率(%)	累進控除額
1,000이하	7	0	3,000이하	5	0
1,000초과	9	20	3,000초과	10	150
3,000 〃	11	80	10,000 〃	15	650
5,000 〃	13	180	30,000 〃	20	2,150
7,000 〃	15	320	60,000 〃	25	5,150
10,000 〃	17	520	100,000 〃	35	15,150
13,000 〃	20	810	300,000 〃	45	45,150
19,000 〃	25	1,860	500,000 〃	55	95,150
25,000 〃	30	3,110			
35,000 〃	35	4,860			
50,000 〃	40	7,360			
70,000 〃	45	10,860			
100,000 〃	50	15,860			
300,000 〃	55	30,860			
500,000 〃	60	55,860			

贈與稅 速算表

(單位 : 千원)

從 前 ('80.1.1～'88.12.31)			改 正 ('89.1.1 이후)		
課稅標準	稅 率(%)	累進控除額	課稅標準	稅 率(%)	累進控除額
500이하	7	0	1,500이하	5	0
500초과	11	20	1,500초과	10	75
1,000 〃	15	60	5,000 〃	15	325
3,000 〃	19	180	10,000 〃	20	825
5,000 〃	23	380	30,000 〃	30	3,825
7,000 〃	27	660	60,000 〃	40	9,825
10,000 〃	32	1,160	100,000 〃	50	19,825
13,000 〃	37	1,810	200,000 〃	60	39,825
19,000 〃	42	2,760			
25,000 〃	47	4,010			
35,000 〃	52	5,760			
50,000 〃	57	8,260			
100,000 〃	62	13,260			
200,000 〃	67	23,260			

3. 相續財産 評價方法 改善

가. 評價基準時點 改善(法 § 9②)

(1) 槪 要

相續稅를 申告하지 않았거나 申告를 漏落한 財産에 대하여 相續稅賦課當時로 評價한 것은 相續稅의 誠實한 申告를 誘導하고 申告納付遲延으로 인한 物價上昇利益을 租稅로 흡수하려는데 있었으나 당초 立法意圖와는 달리 賦課當時의 價額이 相續開始當時보다 낮아지는 경우(예 : 相續開始當時에 時價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기피하여 오히려 誠實申告者가 重課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相續開始當時와 相續稅賦課當時의 價額을 比較하여 큰 금액으로 評價하도록 하였다.

區 分	從 前	改 正
○ 申告時 ○ 無申告 또는 申告漏落 財産	○ 相續開始當時 ○ 相續稅賦課當時	○ 從前과 同一 ○ 相續開始當時와 相續稅賦課當時를 比較하여 큰 금액

(2) 相續稅賦課當時의 定義(令 § 5⑦)

종전에는 相續稅賦課當時를 基本通則에서 「當該財産에 대하여 최초로 課稅標準을 決定한 날」이라고 定義하였으나 현실적으로 行政官廳의 相續稅決定에는 相續財産의 포착·評價에 상당한 期間이 所要되고 있는바, 그동안의 物價上昇으로 相續稅負擔이 증가할 경우 行政官廳의 相續稅 決定遲延으로 인한 不利益이 納稅者에게 귀속되는 불합리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賦課當時를 「相續稅를 賦課할 수 있음을 안 날」로 施行令에 明文化하여 民願의 소지를 해소토록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時期에 대하여는 基本通則에 類型別로 정할 예정이다.

〈賦課當時의 例示〉

① 相續稅 申告期限이 經過한 후 納稅義務者가 相續財産에 관한 書類를 제출한 경우 : 書類提出日

②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間의 去來에 있어 이를 讓渡로 보아 讓渡所得에 관한 申告書를 제출한 경우 : 申告書 接受日

③ 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이 相續稅나 他稅目을 調査決定하는 과정에서 相續財産照會에 의하여 相續財産이 파악된 경우 : 相續財産照會에 대한 回報內容이 所管稅

務署 또는 地方國稅廳에 接受된 날

④ 檢察 등 外部機關으로부터 相續에 관한 課稅資料가 通報된 경우 또는 脫稅提報가 接受된 경우 : 당해 通報 또는 提報된 財產을 所管稅務署長 등이 確認한 날

⑤ 상기 規定에 의한 申告書 接受 및 財產照會에 대한 回報 등이 相續稅 申告期限內에 이루어진 경우 : 相續稅申告期限 다음날

(3) 評價基準時點의 特例(令 § 40, § 41의3)

相續稅를 無申告하거나 申告漏落한 財產에 대하여는 相續開始當時와 相續稅賦課當時를 比較하여 큰 금액으로 評價하도록 하였으나 特殊關係人간의 低價讓渡 또는 高價讓受(法 § 34의2) 및 新株引受權 抛棄(法 § 34의4)에 따른 贈與價額 計算에 있어서는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贈與日 現在의 價額으로 評價하도록 하였다.

이는 財務部 例規(財產 22601－896, 1987. 11. 24)를 明文化한 것으로 贈與로 擬制하려면 擬制對象이 되는 利益 즉 讓渡對價와 時價와의 差額은 적어도 증여일 현재 確定되어 現金으로 表示되어야 한다는 條理上의 側面을 고려한 것이다.

나. 賃貸借契約이 締結된 財產의 評價

(1) 槪 要

從前에는 事實上 賃貸借契約이 締結되어 있으나 그 賃借權이 登記되지 않은 財產의 경우 대부분은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우므로 內務部 課稅時價標準額(또는 國稅廳基準時價)으로 評價하고 있는 바 同 價額이 時價를 充分히 反映하지 못할 때는 評價額보다 많은 賃貸保證金이 債務로서 控除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賃借權이 登記되지 않은 財產도 登記된 賃借權 및 經濟的 機能이 類似한 傳貰權과 衡平을 이루기 위하여 賃貸保證金과 賃貸料 換算金額의 合計額을 相續開始當時의 現況에 의한 價額과 比較하여 큰 금액으로 評價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相續開始當時의 現況에 의한 價額(內務部 時價標準額 또는 國稅廳基準時價)	○ 賃貸保證金과 賃貸料換算金額의 合計額을 相續開始當時의 現況에 의한 價額과 比較하여 큰 금액

(2) 賃貸料 換算金額의 計算方式

1年間의 賃貸料를 相續開始當時의 1年滿期 定期預金의 利子率을 감안하여 財務部令이 定하는 率(10%)로 나누어 計算한다.

〈算 式〉

$$賃貸料換算金額 = \frac{年間\ 賃貸料\ 收入}{財務部令이\ 定하는\ 率}$$

※ 財務部令이 定하는 率 : 10%(規則 § 5①)

〈計算事例〉

區 分	從 前	改 正
○ 相續財産 (時價標準額 3億원) ○ 債 務 賃貸保證金 4億원 年間賃貸收入 2천만원	3億원 △4億원	4億원+(2천만원÷10%)=6億원 △4億원
○ 相續稅 課稅價額	△1億원	2億원

다. 長期에 걸쳐 收益이 發生하는 相續財産의 評價

(1) 槪 要

從前의 경우 將來의 수입금액을 現在의 一時金과 같이 취급하여 相續財産을 과다하게 평가하던 不合理한 點을 해결하기 위해 有期定期金 評價의 경우는 殘存期間에 따른 換算比率로, 特許權 등 無體財産權 評價의 경우는 期間利子率을 감안하여 現在價値로 환산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相續財産評價의 適正化를 기했다.

從 前	改 正
○ 장래에 發生한 수입금액의 總額으로 評價	○ 期間利子率을 勘案하여 現在價値로 환산하여 評價 · 有期定期金 : 殘存期間別換算比率 · 無體財産權 : 複利現價額

(2) 有期定期金의 評價(令 § 6①)

(가) 有期定期金의 定義

일정한 期間, 定期에 反復하여 金錢 기타의 代替物을 給付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債權을 말하며 年金·定期給의 扶養料·地料 등이 있다.

(나) 評價方法

相續開始日 현재 殘存期間에 대한 總金額에 殘存期間別 換算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年의 定期金의 20배를 超過할 수 없다.

〈算 式〉

相續財產評價額 = 殘存期間에 대한 總金額 × 殘存期間別換算比率

㈏ 殘存期間別 換算比率(令 § 6①)

殘 存 期 間	換 算 比 率
5年 以下	70%
5年 超過~10年 以下	60%
10年 超過~15年 以下	50%
15年 超過~25年 以下	40%
25年 超過~35年 以下	30%
35年 超過	20%

〈計算事例〉

10年 동안 연간 100만원씩 收益을 얻을 수 있는 權利를 相續받은 경우

○ 종전 평가액

100만원×10년=1,000만원

○ 개정 평가액

100만원×10년×60%=600만원

(3) 無體財產權 등의 評價(令 § 5④, § 7①)

㈎ 評價方法

장래에 받을 각 年度의 收入金額을 다음 方法에 의하여 換算하여 그 合計額을 評價額으로 한다.

〈算 式〉

$$\text{n년도의 評價額} = \frac{\text{n年度의 收入金額}}{(1+10/100)^n}$$

n : 相續開始日로부터의 經過年數

㈐ 適用對象 財產의 種類

① 無體財產權

有體物에 대한 排他的 支配權인 物權에 대하여 非有體的利益에 대한 排他的 支配權을 總稱하는 것으로서 著作權과 工業所有權(特許權·實用新案權·商標權·意匠權)을 말한다.

但, 工業所有權의 경우는 權利者가 당해 권리를 他人에게 貸與하는 경우에 한하며, 權利者 스스로가 실시하는 경우는 營業權에 포함시켜 評價한다.

② 鑛業權과 採石權

③ 信託의 利益을 받을 權利 : 元本의 受益者와 收益의 收益者가 다른 경우 收益의 收益者가 받을 收益에 한하여 適用한다.

〈計算事例〉

"相續開始日로부터 5年間은 연간 100萬원, 그후 5年間은 연간 200萬원의 收入을 얻을 수 있는 特許權을 相續받은 경우"

○ 종전 평가액

(100만원×5년) + (200만원×5년) = 1,500만원

○ 개정 평가액

$$\frac{100만원}{(1+0.1)^1} + \frac{100만원}{(1+0.1)^2} \cdots\cdots + \frac{100만원}{(1+0.1)^5} + \frac{100만원}{(1+0.1)^6} +$$

$$\frac{200만원}{(1+0.1)^7} + \cdots\cdots \frac{200만원}{(1+0.1)^{10}} = 849만원$$

4. 誠實申告誘導裝置 強化 및 其他 改正事項

가. 加算稅制度 強化(法 § 26)

(1) 槪 要

현재 相續稅의 과세방법은 賦課主義를 채택하고 있어 상속세의 신고는 協力義務에 불과하므로 誠實申告를 誘導하기 위하여 申告時에는 10%의 稅額控除를 하고 無申告 또는 申告漏落財産이 있는 경우는 10%의 加算稅를 부과하고 있으나 성실한 納稅를 誘導하기에는 未洽하여 加算稅率을 20%로 높이고 加算稅徵收對象도 漏落된 課稅標準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架空債務를 計上하여 부인되더라도 加算稅가 부과되지 않음을 악용하여 고의로 架空債務를 計上함으로써 相續稅 負擔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誠實한 申告를 誘導하도록 하였다.

區 分	從 前	改 正
○ 加算稅率	10%	20%
○ 加算稅徵收對象	無申告 또는 申告漏落財産	漏落된 課稅標準

(2) 加算稅額 計算算式

$$\text{相續稅算出稅額} \times \frac{\text{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未達한 금액}}{\text{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한 課稅標準}} \times \frac{20}{100}$$

나. 年賦延納利子率 引下(令 § 27의2)

연부연납이자율이 制裁보다는 利子의 성격을 가진 점을 考慮하여 市中金利 및 國稅還給金 加算利率 水準으로 引下하여 相續稅의 일시납에 따른 負擔을 덜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일변 5전 (연리 18.25%)	일변 3전 (연리 10.95%)

〈計算事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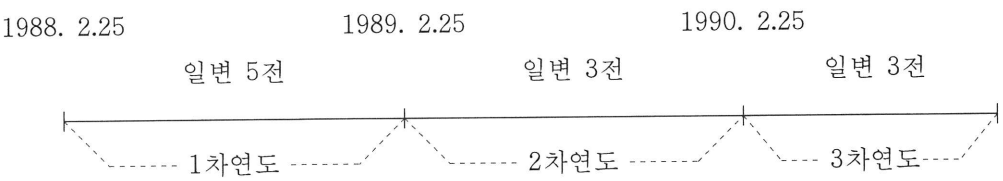

다. 從業員持株制에 대한 支援

(1) 우리社株 相續時 相續稅課稅價額 不算入(租稅法 § 7의3)

우리社株組合員이 取得한 株式의 長期保有를 誘導해 나감으로써 從業員의 株主化를 통해 主人意識을 고취하고 健全한 勞使關係를 維持하려는 從業員持株制度가 그 本來의 目的에 맞게 運營되도록 支援하기 위하여 우리社株組合員이 그 組合을 통하여 取得한 株式으로서 額面價基準 500萬원 이하에 상당하는 株式은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우리社株組合의 定義(令 § 41의2)

우리社株組合의 定義를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에 規定하는 團體로 함으로써 우리社株組合規約에 따라 原則的으로 退職時까지 預託(3年經過後 一定事由 있을 때만 引出可能)하도록 하고 우리社株引出時에도 他 組合員이 우선 買入하도록 하여 우리社株의 長期保有를 통한 從業員持株制의 조기정착을 支援하였다.

라. 相續財産 評價時 適用되는 利子率의 變動(規則5①)

(1) 改正內容

金利自由化에 對備하여 상속재산 평가시 適用되는 1년만기 定期預金利子率을 財務部令으로 위임하여 이를 10%로 정하였다.

(2) 適用對象

① 每年 直接公益目的事業 使用實績 算出時

② 營業權의 評價時

③ 非上場株式의 1株當價額 計算時

④ 事實上 賃貸借契約이 締結되거나 賃借權이 登記된 財産의 評價時

마. 公益事業의 範圍調整(令 § 3의2②16)

法律救助法에 의하여 설립된 大韓法律救助公團 및 同法에 의하여 登錄된 法律救助法人(예 : 家庭法律相談所 등)이 運營하는 事業을 公益事業의 範圍에 추가하여 出捐財産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課稅價額 算定時 이를 包含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法律救助事業의 원활한 수행을 支援하도록 하였다.

1990년

◉ 법　　률 : 1990.12.31. 법　　률 제 4283호(시행일 : 1991. 1. 1.)
◉ 시 행 령 :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시행일 : 1990. 5. 1.)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시행일 : 1991. 1. 1.)
◉ 시행규칙 : 1991. 3. 9. 재무부령 제 1849호(시행일 : 1991. 3. 9.)

〈要　　約〉

그동안 우리나라의 相續稅課稅實績이 미흡하였던 것은 상속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은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어 실액대로 과세되지 못하였고 부동산 이외의 재산은 제대로 포착과세가 되지 못한데 주된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부동산의 상속·증여시에는 公示地價를 적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하여 평가되도록 하고 고액상속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속재산의 포착률을 높이고 상속회피소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한편 相續稅·贈與稅의 각종 공제액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세부

담을 적정화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중산층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 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回避素地를 縮小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함.

— 相續財産의 성실한 申告를 誘導하기 위하여 相續財産價額이 50億원 이상인 高額相續者의 경우에는 그 相續財産의 申告內容을 所管稅務署長이 公告하도록 하는 制度를 導入하는 한편, 相續開始 5年後에 相續人이 보유한 主要財産의 價額이 相續開始 當時보다 현저히 增加한 경우에는 당초 調査決定한 相續財産 또는 그 價額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지의 여부를 更正調査하도록 함.

— 相續稅課稅價額 또는 贈與稅課稅價額의 計算時 相續開始日 또는 贈與日로부터 遡及하여 1年 내지 3年동안에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回避할 目的으로 사전에 處分한 財産, 用途가 불분명한 債務 또는 相續人 등에게 事前贈與한 財産의 價額은 相續稅課稅價額 또는 贈與稅課稅價額의 計算時 이를 合算하는 바, 그 遡及計算期間을 2年 내지 5年으로 연장함.

— 公益法人에 出捐하는 方法으로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回避하는 事例를 방지하기 위하여 公益事業을 영위하는 者에게 法人의 發行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20을 초과하여 出捐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課稅하도록 함.

— 資本去來를 이용한 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回避를 방지하도록 함.

· 企業合併을 함에 있어서 合併比率을 操作함으로써 大株主 등이 현저한 利益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相當하는 金額을 贈與받은 것으로 보아 贈與稅를 課稅하도록 함.

· 大株主와 特殊關係에 있는 株主의 株式만을 불균등하게 減資함으로써 大株主가 얻은 이익에 贈與稅를 課稅하는 制度를 整備함.

○ 현재 公益法人에 대한 事後管理要件이 지나치게 嚴格하고 경미한 사항 위반시에도 出捐財産 全體에 대하여 相續稅·贈與稅를 追徵하던 것을 出捐後 2년 이내에 다른 目的의 用途에 사용하는 경우 그 目的외에 사용한 財産에 대하여 追徵하도록 하는 등 事後管理要件을 合理的으로 調整함.

○ 相續稅를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相續財産을 漏落하여 申告하는 경우 종전에는 相續開始當時의 價額과 相續稅 賦課當時의 價額을 비교하여 큰 價額을 相續財産價額으로 하여 相續稅를 賦課하던 것을 앞으로는 相續開始當時의 價額을

基準으로 相續稅를 賦課하도록 하되, 相續稅의 성실한 申告·納付를 誘導하기 위하여 相續稅를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納付해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加算稅를 賦課하도록 함.

○ 相續받은 株式의 價額을 評價함에 있어서 企業의 財務諸表를 基準으로 하던 종전의 방법외에 동일한 業種이나 規模의 上場法人 株式과 比較評價하는 制度를 導入하여 그 評價의 客觀性을 높이도록 함.

○ 公示地價가 適用됨에 따라 土地 등의 相續財產價額이 現實化되는 점을 참작하여 相續稅課稅價額의 計算時 控除하는 基礎控除額 등을 引上 調整하고, 直系尊卑屬으로부터 贈與를 받은 경우 贈與財產 控除金額을 150萬원에서 1千500萬원으로 引上하는 등 贈與控除水準을 現實에 맞게 調整함.

○ 現行 相續稅 및 贈與稅의 稅率構造를 8段階에서 5段階로 單純化하고 稅率適用의 基準이 되는 課稅標準金額을 현실에 맞게 上向調整하여 稅負擔을 全般的으로 輕減함으로써 稅法에 따라 성실하게 稅金을 내는 納稅風土를 造成할 수 있도록 稅率體系를 調整하되, 現行 最低稅率이 너무 낮아 不動產을 讓渡하면서 이를 相續 또는 贈與하는 것으로 僞裝하는 事例를 방지할 수 있도록 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最低稅率을 適正水準으로 上向調整함.

〈改正內容〉

1. 相續財產의 捕捉率 提高와 相續稅 回避素地 縮小

가. 相續稅 申告內容 公告制度 導入(法 § 20의3, 令 § 14의2)

(1) 改正內容

(가) 공고대상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으로서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① 상속개시전 2년내에 처분한 재산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부채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②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相續稅法上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평가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③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과 비교하여 신고내용에 상속재산이 누락되었거나 부채를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고내용

—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 피상속인의 성명·성별·연령·주소·생존시의 주된 직업

— 주요 상속재산 종류별 가액

① 부동산(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

② 금융자산(예금, 주식, 채권 기타 금융자산으로 구분)

③ 보험금

④ 현금

⑤ 기타 재산

(다) 공고방법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4개월 내에 30일간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한다.

(2) 改正理由

고액상속자의 신고내용을 세무서에서 공시함으로써 여론을 의식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으로 숨겨진 상속재산을 포착하려는 데 있다.

나. 累積合算期間의 延長

(1) 改正內容

(가) 증여·상속재산간 합산기간 연장(法 § 4)

從 前		改 正
○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시	3 년	5 년
○ 기타의 자에게 사전 증여시	1 년	3 년

(나) 증여·증여간 합산기간 연장(法 § 31의2)

從 前		改 正
○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분 합산기간	3 년	5 년
○ 합산대상 판정기준	200만원 초과분	1천만원 초과분

(2) 改正理由

相續稅나 贈與稅의 누진부담을 피하기 위해 생전에 재산을 분산·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효연장과 균형을 맞추어 합산기간을 연장하였다.

* 현행 합산과세제도의 취지

현행 세제상 증여세는 기간별로 과세하지 않고 증여건별로 과세하고 있어서 분

산증여시에는 증여사실이 포착과세되는 경우에도 누진부담을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일정기간분은 합산과세하여 증여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과세하고 이미 과세받은 贈與稅는 공제해 주는 제도로 운용.

다만, 본 제도는 대재산가의 생전위장분산을 방지하려는 데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많은 대상을 누적합산함에 따른 번잡을 피할 수 있도록 합산대상 판정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다. 事前處分된 用途不分明 財産이 相續財産에 合算課稅되는 期間 延長(法 § 7의2①)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 처분한 상속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과세	합산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금액제한을 1억원으로 인상

* 현행 세제상 용도의 확인방법(令 § 3①)

①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불비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로서 사회통념상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④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改正理由

相續·贈與 누적 합산기간과 균형을 맞추어 연장하되, 금액기준을 부동산과표 현실화율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였다.

라. 高額相續人의 財産을 事後管理하는 根據 마련(法 § 25④, 令 § 18)

(1) 改正內容

(가) 사후관리대상 : 피상속인의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상속인

㈏ 관리대상 주요재산

① 부동산

②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③ 영업권·특정시설물이용권 등 무체재산권

④ 서화·골동품 등

㈐ 경정조사대상

주요재산의 가액이 조사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이 당해 재산의 증가사유를 입증토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정조사한다.

(2) 改正理由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5년 후에 다시 사후관리한다는 것을 사전예고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상속재산을 타인명의로 위장 분산시켜 상속후 소유주식 등 재산규모가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마. 負債의 事後管理(法 § 7의2②, 令 § 3)

(1) 改正內容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입증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해 입증되어야 공제 가능하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② 사인간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

㈏ 부담한 부채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사인간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다음의 방법에 의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 이자지급사실
-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

(2) 改正理由

부채를 위장부담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데 있다.

바. 贈與稅 資金出處調査의 立法體系 整備(法 § 34의6, 令 § 41의5)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증여세 자금출처조사가 법적 근거 없이 통칙에 의해 운영	다음 방법에 의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여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 ·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 가액 ·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금액

(2) 改正理由

현재 통칙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자금출처조사에 의한 과세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사. 租稅回避目的이 없어 名義信託 擬制贈與課稅에서 除外되는 要件을 明確히 規定(法 § 32의①, 令 § 40의6)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등기·등록 등이 소유권 변동의 요건이 되는 부동산·주식·기명식 채권 등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실질 소유자가 명의상의 소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과세 제외되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 ○ 不動產登記特別措置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從 前	改 正
* 憲法裁判所에서 동 조항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는 한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음.(1989. 7. 21)	* 不動產登記特別措置法 제7조제2항 : 조세부과 면탈, 시세차익획득, 법령 제한, 회피 실소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등기이전 신청 ○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외의 재산 · 소유자가 국내에 거주치 않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 명의가 도용된 경우 · 기타 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改正理由

憲法裁判所의 결정취지를 존중하고 과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과세처분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줄이려는 데 있다.

아. **金融機關의 本店에 相續·贈與財產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制度化**(法 § 23③, 令 § 17의2, 規則 § 8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현행 金融實名去來法上 특정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만 조회가능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고액상속자의 상속·증여세 조사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본점에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금융기관의 범위〉 · 실명거래법상의 금융기관 · 보험사업자 · 신용카드회사 · 한국증권전산(주)

(2) 改正理由

현행 제도 아래서는 고액상속자의 금융자산 조사를 위해 주소지, 사업장 주변

의 100여개 이상의 각 금융기관 점포에 일일이 조회할 수밖에 없었고, 조회를 받은 각 점포는 본점에 전산 조회하고 그 결과를 수보받아 다시 國稅廳에 회신하는 등 업무처리에 번잡과 불편이 있었다.

또한, 현행 조회방법으로는 조사공무원의 선험적 판단에 의해 조사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포착이 불충분하고 특정점포에 개설된 금융자산만 우연히 적출되어 과세에 불공평한 점이 많다.

2. 資本去來를 이용한 租稅回避防止 對策

가. 企業合併을 이용하여 贈與하는 경우 贈與稅 課稅(法 § 34의4, 令 § 41의3)

(1) 改正內容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시세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贈與稅를 과세한다.

(가) 과세요건

- 합병당시 법인간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고
- 주식의 실제가치에 비해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나) 과세대상 주주

- 합병결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액주주(총발행주식의 1% 미만 소유)를 제외한 대주주

(다) 과세대상 시세차익 계산방법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식과 교환되는 소멸·흡수되는 법인의 주식교부비율)×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발행주식수×대주주의 지분비율

(2) 改正理由

계열기업간에 합병비율을 실제가치와는 다르게 조작함으로써 건실한 기업의 주주가 부실한 기업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나누어 준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하려는 것이다.

나. 不均等 減資로 인해 特殊關係者가 얻는 利益에 대한 贈與稅 課稅(法 § 34의5, 令 § 41의4)

(1) 改正內容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불균등 감자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결과적으로 현저한 경제적 이익을 받게 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 과세대상 주주와 현저한 이익요건은 합병의 경우와 동일
- 과세가액 산정방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주식수×대주주의 지분비율×$\frac{\text{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text{총감자주식수}}$

(2) 改正理由

현행 商法上 주주평등의 원칙(상법 § 329, § 344)에 따라 불균등한 감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감자일로부터 6월 내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무효가 되나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가족법인 등에서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相續稅法上 정상평가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 등으로 유상감자하더라도 주주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반대의 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적은 점을 이용하여 불균등 감자를 가족주주간에 이익을 분여하는 방법으로 잘못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균등 감자로 인해 대주주가 얻은 경제적 이익(정상가액과 소각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려는 것이다.

다. 增資時 新株를 不均等 配定받음으로써 얻은 利益에 대한 贈與稅 課稅體系 整備 (法 § 34의5①1)

(1) 改正內容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시세차익에 贈與稅를 과세한다.

(2) 改正理由

지금까지 施行令으로 규정해 온 과세요건을 法律에서 현행대로 규정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였다.

라. 기타 資本去來를 利用하여 얻은 利益에 대하여 課稅하는 根據 마련(法 § 34의5①3)

(1) 改正內容

합병이나 증·감자 이외의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2) 改正理由

현행 稅法上 규제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資本去來技法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간에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施行令에서 과세되는 자본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였다.

3. 公益法人 事後管理制度 改善

가. 公益法人이 出捐받은 財産에 대한 報告制度 強化(法 § 26③)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公益法人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와 사용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세무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불이행시 제재조치 없음.	○ 매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할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相續·贈與稅額의 1%에 상당하는 加算稅 부과

(2) 改正理由

高額出捐財産에 대하여는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공익법인 설립단계부터 실효있는 세무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公益法人에 대한 株式出捐比率 制限(法 §8의2①1但書, 令 §3의2⑫)

(1) 改正內容

公益法人이 內國法人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주식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당해 內國法人 총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贈與稅 과세

- 초과 출연주식의 계산기준
  ① 매사업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의 직전일(주식회사 외의 경우는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초과비율 계산
  ② 초과비율계산시 발행주식총액과 출연주식(소유주식)의 가액은 의결권 있는 주식만으로 계산

(2) 改正理由

재벌들이 문화재단 등을 설립하여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適用例〉

①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법 施行前에 이미 20%를 초과하여 출연하거나 소유한 분에 대하여는 추징불가능하나,

③ 다만, 20%를 초과한 상태에서 추가 출연한 행위에 대하여는 추징 가능

다. 公益法人에 대한 지나치게 嚴格한 事後管理要件 緩和(法 §8의2④·⑤, 令 §3의2⑦·⑨, 規則 §4③)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出捐財産의 사용기준	— 出捐財産使用基準 완화
· 出捐財産價額(주식의 경우에는 시가기준)의 5% 이상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出捐財産 中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5% 사용
· 수익사업용 재산운용소득의 80% 이상을 1년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 80% → 60%
— 出捐財産의 사후관리기준미달시 출연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추징	— 사후관리기준미달시에도 기준미달사용분에 대하여만 추징

(2) 改正理由

현행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미한 사항 위반시에도 출연재산 전체에 대하여 贈與稅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의 사회복지활동 참여유인을 저해하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사후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適用例〉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사후관리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개정령 시행후 확인되었을 경우에도 개정령상의 기준미달 사용분에 대하여만 상속세·증여세를 추징토록 하였다.

라. 相續人들의 합의로 相續財産을 公益法人에 出捐時 相續稅 免除(法 §8의2⑥, 令 §3의2⑬)

(1) 改正內容

相續人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상속재산을 公益法人에 출연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相續稅가 면제된다.

- 相續稅 申告期限(상속 개시후 6월 이내)내에 출연
- 출연한 상속인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거나 중요한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못함.

(2) 改正理由

현행 세제는 유증으로 공익법인에 출연시에만 相續稅를 면제하고 있으나 상속인들의 합의로 상속재산에서 출연시에도 일정요건하에서 면제되도록 하여 과세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相續財產 評價方法의 改善

가. 公示地價를 적용하여 相續財產 評價(1990. 5. 1, 令 §5 改正)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상속(증여)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所得稅法上의 기준 시가결정방법에 의해 평가 ┌ 일반지역 : 地方稅法上의 과세 시가표준액 └ 특정지역 : 國稅廳長이 조사한 기준시가	— 토지는 일반지역·특정지역 모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 — 건물은 內務部 시가표준액에 의해 평가 · 國稅廳長이 정하는 지역의 건물 및 토지(아파트·빌라 등)는 별도로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액에 의해 평가

(2) 改正理由

부동산에 대한 相續稅 및 贈與稅 과세표준을 현실화 하려는 데 있다.

〈適用例〉

① 贈與稅 : 시행일(1990. 5. 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② 相續稅 : 1991. 1. 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한다.

* 讓渡所得稅(특별부가세) : 1990. 9.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나. 無申告 相續財產의 評價方法 改善(法 §9②·③삭제, 法 §26②, 令 §19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인플레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무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무신고나 신고누락시에는 상속개시당시의 가격과 부과당시의 가격과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평가	– 무신고시에도 평가기준시점을 상속개시일로 통일 – 성실신고납부유도를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신설 · 일변4전(연 14.6%)의 무납부기간별 차등가산세 · 다만, 가산세액이 미납부세액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10%로 하고, 가산세액의 총한도는 30%로 함.

(2) 改正理由

부과당시의 가액은 課稅官廳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각급 課稅官廳의 과세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부과기준일이 달라지게 되어 집행상 혼선이 야기되고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점을 상속개시 당시로 통일하는 대신에 무납부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가산세로 징수토록 하였다.

다. 非上場株式의 評價(令 §5⑥)

(1) 改正內容

(가) 현행 평가방법 중 수익가치계산방법의 개선(規則 §5⑨)

· 주당 수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순손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나누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從　　前		改　　正
정기예금이자율(10%)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15%)

*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1주당 평가가액=(주당자산가치+주당수익가치)×$\frac{1}{2}$

(나) 상장준비중인 기업의 주식평가(規則 §5⑧)

① 평가대상주식 :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證券管理委員會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기 전까지의 주식

② 평가방법 : 證券管理委員會에서 공무주식의 가액결정을 위해 마련한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에 의해 본질가치 또는 상대가치의 범위내에서 결정

· 상대가치

$$=\text{유사회사의 주가}\times\left(\frac{\text{발행회사의 주당 경상이익}}{\text{유사회사의 주당 경상이익}}+\frac{\text{발행회사의 주당순자산}}{\text{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right)\times\frac{1}{2}\times 70\%$$

· 본질가치 $=\dfrac{\text{자산가치}+\text{수익가치}}{2}$

㈐ 상장주식 주가와 비교하여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 도입(規則 §5⑩)

從 前	改 正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당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단순평균하여 평가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주가와 비교하여 낮은 가액으로 평가 ○ 업종 : 상장준비중인 기업주식의 공모가액을 상대가치로 평가하기 위하여 마련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유사회사의 범위"를 기준으로 유사한 업종 선정 ○ 규모 : 주당순자산가액·주당순손익·매출액 경상이익률 중 2개 이상이 비상장법인과 상하 20% 범위내인 상장법인 · 주당 순자산가액 $\dfrac{\text{자 기 자 본}}{\text{사업연도말현재발행주식총수}}$ · 주당 순손익 $\dfrac{\text{당 기 순 손 익}}{\text{전전사업연도말현재 발행주식총수}+\text{직전사업연도중 증가주식수}\times\dfrac{\text{신주발행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일수}}{\text{직전사업연도의 일수}}}$ · 매출액 경상이익률 $\dfrac{\text{경 상 손 익}}{\text{매출액 또는 수입금액}}\times 100$

(2) 改正理由

市場需給原理가 적용되는 상장주가는 수익가치를 중심으로 낮게 평가되지만 비

상장기업의 주식은 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토지를 公示地價로 평가하게 되므로 이러한 土地價格上昇을 전체가 반영되기 어려운 상장주식보다 비상장주식이 더 높게 평가되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라. 根抵當權이 設定된 財産의 評價(令 §5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根抵當權이 설정된 재산은 채권최고액과 相續稅法上의 정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	비교평가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 대신에 · 根抵當權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으로 함.

(2) 改正理由

債權最高額이 기업의 신용을 감안하여 높게 설정되는 경우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5. 相續·贈與 控除制度의 改善

가. 相續控除制度의 改善(法 §5, §11, §11의5)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① 기초공제	1,000만원	6,000만원
② 인적공제		
배 우 자	4,000만원	1억원+(결혼연수×6백만원)
자 녀	1인당 1,000만원	2,000만원
미성년자	20세까지 연수×100만원	20세까지 연수×300만원
연 로 자	1,000만원	3,000만원
장 애 자	1,000만원	75세까지 연수×300만원
③ 주택공제 3대 이상 대물림 주택 등은 한도외 추가 공제	①+②포함 1억원 (주택가액-1억원)×90% 동거봉양 주택공제는 3,000만원 한도	기초 및 인적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
④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	①+②+③포함 1억1천만원	
⑤ 가업상속공제	가업재산가액의 20% 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⑥ 산림상속공제	5년 이상 산림가액 전액면제	현행과 같음.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출자한 경우 출자지분에 대하여도 농지·초지·산림지로 보아 상속공제 인정

(2) 改正理由

공시지가 적용으로 상속세과표가 큰 폭으로 현실화된 것을 감안하여 공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으로써 중산층이 상속받은 1주택까지는 과세되지 않도록 하였다.

나. 贈與控除制度의 改善(法 §31)

(1) 改正內容

(가) 공제금액의 조정

從前(3년간 공제한도)	改正(5년간 공제한도)
직계존비속 ┐ 배 우 자 ┘ 150만원	직계존비속 1,500만원 배우자 1,500만원+(결혼연수×100만원)
기타친족 1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나)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 請求權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개정된 배우자 相續控除額 수준까지는 비과세 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贈與稅 과세(法 §29의2①)

(2) 改正理由

1971년 이래 조정되지 않는 현 控除水準은 비현실적으로 작아서 가까운 친족간의 일상의 생활보조비까지도 세제상으로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6. 稅率體系의 改善(法 14, §31의2)

(1) 改正內容

	從前(방위세 포함)	改 正
상 속 세	┌ 300만원 이하 6% └ 5억원 초과 66% (8단계)	┌ 2천만원 이하 10% └ 10억원 초과 55% (5단계)
증 여 세	┌ 150만원 이하 6% └ 2억원 초과 72% (8단계)	┌ 1천만원 이하 15% └ 5억원 초과 60% (5단계)

相續·贈與稅 改正稅率表

相續稅			贈與稅		
과 표	세 율	누진공제	과 표	세 율	누진공제
2천만원 이하	10%	—	1천만원 이하	15%	—
2억원 이하	20%	2백만	9천만원 이하	25%	1백만
5억원 이하	30%	2천2백만	2억5천만원 이하	35%	1천만
10억원 이하	40%	7천2백만	5억원 이하	45%	3천5백만
10억원 초과	55%	2억2천2백만	5억원 초과	60%	1억1천만

(2) 改正理由

너무 높은 세율구조 때문에 租稅回避行爲가 유발되지 않도록 방위세 폐지를 계기로 현행 세율구조를 하향조정하고 단순화하되, 최저세율은 讓渡稅率에 비하여 너무 낮아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증여받은 것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상 조정하였다.

7. 기타 補完內容

가. 贈與擬制의 適用對象이 되는 特殊關係者의 範圍調整(令 §41②, 規則 §11①)

(1) 改正內容

從前	改正
— 증여의제과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 ①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②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 이내 친족 ③ 사용인 및 생계유지자 ④ 출자법인 ⑤ 특약판매자 ⑥ 친지	—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정 ① 양도자의 친족 * 기본법상의 친족에 "배우자의 삼촌"과 "사돈"추가 ② 사용인 및 생계유지자 ③ "①·②"의 자가 30% 이상 출자법인 ④ "①·②"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50% 이상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⑤ "③·④"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 양도자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이거나 그 임원인 경우 다음을 특수관계자에 추가 · 계열기업군 소속 다른 기업체 · 계열기업군의 사주 · 사주의 친족

(2) 改正理由

현행 相續稅法上 지나치게 넓은 친족의 범위를 國稅基本法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고, 사실상 계열기업을 재배하고 있는 사주와의 거래가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하였다.

나. 贈與稅의 連帶納稅義務 規定 補完(令 §38)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연대납부책임이 있음. · 주소가 없는 때 · 주소가 불분명한 때 · 수증재산 처분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 증여세를 체납한 때	– 수증자가 체납한 때 연대납부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던 것을 ·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때로 보완

(2) 改正理由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이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예외적 경우에만 한정되도록 보완하였다.

다. 贈與者와 受贈者의 住所地가 없는 경우 納稅地 規定(令 §3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가 원칙이며 ·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규정	–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가 모두 불분명한 경우 ·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규정

(2) 改正理由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의 納稅地를 相續稅와 균형을 맞추어 명백히 규정하였다.

라. 保險金 등의 支給調書를 전산테이프로 提出可能하도록 補完(令 §1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보험금 지급자 또는 주식명의개서자는 · 지급일 또는 개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보험금지급조서 등을 법정서식의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	—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제출도 가능하도록 완화

(2) 改正理由

보험시장 등의 발전으로 제출량이 방대해지고 있어서 제출절차를 전산화하여 간소화하였다.

마. 書式의 整備 補完

(1) 改正內容

區 分	改 正 書 式 名	備 考
별지 제4호서식	출연재산명세서	개 정
별지 제5호서식	출연재산 사용계획서	〃
별지 제6호서식	출연재산의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
별지 제6—1호서식	출연재산의 2년내 사용명세서	제 정
별지 제6—2호서식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
별지 제6—3호서식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
별지 제8호서식	[상속세 /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개 정
별지 제8—4호 서식	□ 주택 □ 농지, 초지, 산림지 등 □ 산림 □ 가업 상속공제액 계산서	〃
별지 제9호서식	상속세(증여세)납세관리인 선정 (변경)신고서	개 정
별지 제10호서식(기1)	보험금 지급조서	〃
별지 제13호서식(기1)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
별지 제13호서식(기2)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
별지 제15호서식	[상속세 /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서	〃
별지 제16호서식	[□ 상속세 / □ 증여세] 물납허가서	〃

(2) 改正理由

相續稅法·令·規則의 개정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 보완하였다.

바. 博物館 資料에 대한 相續·贈與稅 徵收 猶豫(法 §8의3, 令 §4의2)

(1) 改正內容

박물관에 의한 박물관 자료로서 박물관에 전시·보존중에 있는 재산은 相續·贈與稅가 징수유예된다.

다만, 다음에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유예된 세액을 징수한다.

- 박물관 등록 취소
- 박물관 폐지
- 등록된 박물관 자료에서 제외

(2) 改正理由

개인 소장 문화재를 박물관에 공개토록 세제지원함으로써 미술품·문화재의 해외밀반출을 막고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1992년

◉ 법　　률 : 1991.11.30. 법　　률 제 4410호(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부칙)
(시행일 : 1992. 6. 1.)
◉ 시 행 일 : 1992. 5.30. 대통령령 제13653호(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부칙)
(시행일 : 1992. 6. 1.)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1호(시행일 : 1993. 1. 1.)
◉ 시행규칙 : 1992.12.31. 재무부령 제 1900호(국가기본법시행규칙 부칙)
(시행일 : 1993. 1. 1.)
1993. 2.26. 재무부령 제 1910호(시행일 : 1993. 2.26.)

〈要　　約〉

○ 企業增資時 일부 大株主가 增資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失權株를 再配定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株主와 特殊關係에 있는 者는 그의 持分比率이 높아짐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特殊關係에 있는 者가 얻은 이익을 그가 贈與받은 것으로 보아 贈與稅를 課稅할 수 있도록 함(令 §41의6).

○ 時價가 불분명한 非上場株式의 경우 株式評價方法에 의하여 평가한 후 支配株主는 그 평가액을, 非支配株主는 그 평가액에서 그 평가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價額을 기준으로 課稅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支配株主는 그 평가액에 그 평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價額을, 非支配株主는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課稅하도록 함으로써 非上場株式에 대한 課稅基準額을 上向調整함(令 §5).

○ 農地相續控除의 대상이 되는 自耕農地의 通作거리를 8킬로미터에서 農地賃貸借管理法施行令상의 通作거리인 20킬로미터로 擴大함(令 §8의3).

○ 社內勤勞福祉基金의 無住宅從業員에게 住宅資金을 보조하는 경우 현재는 住宅取得價額의 100分의 5 이내의 取得補助金에 대하여만 贈與稅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住宅傳貰價額의 100分의 10 이내의 賃借補助金에 대하여도 贈與稅를 면제함으로써 無住宅從業員의 住居安定을 지원함(令 §42).

○ 配偶者간 또는 直系尊卑屬간의 재산양도시 贈與로 의제하여 贈與稅를 課稅하되, 현재는 不動產을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贈與로 의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所得金額이나 所有財產處分代金으로 讓受財產의 代價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도 이를 贈與로 의제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41).

○ 國外相續財産價額의 원화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외환은행의 對顧客外國換買入率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규칙 §5).

○ 相續開始의 사실을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本籍地 시·구·읍·면장이 本籍地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주소지 중심의 행정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住所地 시·구·읍·면장이 住所地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함(규칙 §7).

〈改正內容〉

1. 資本去來에 대한 課稅強化 등

가. 增資時 특수관계주주의 失權으로 인한 持分率 增加利益에 대해 贈與稅 課稅(令 §41의6)

(1) 改正內容

현행 증자시 失權株와 관련한 贈與擬制規定은 일부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失權株를 특수관계자에게 再配定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나, 일부 주주가 실권하게 되면 이를 再配定하지 않더라도 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의 持分率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증여를 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되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增資時 발생한 失權株를 ○ 失權株主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에게 再配定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가 얻은 利益(신주의 시가와 失權株의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증여로 擬制하여 과세	— 增資時 발생한 失權株를 ○ 재배정하지 않더라도 ○ 失權株主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얻은 이익(持分率이 높아짐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액)은 贈與로 擬制하여 과세

한편, 失權株 미배정시 증여의제 규정은 ①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增資前의 持分比率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의 70/100 이하인 경우 ② 증자후 지분비율이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1% 이상인 大株主의 경우 ③ 실

권주주와 신주인수자간 特殊關係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도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균등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의 70/100을 초과하거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실권에 따른 상대적 지분비율 상승과정을 두단계로 분리해보면 그 經濟的 實質이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均等하게 全額 增資한 後 실권주주의 지분(증자분)만 신주인수가액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不均等 減資한 경우와 동일한 바 贈與擬制 價額의 計算算式은 다음과 같다.

$$\left[\begin{matrix}\text{균등증자시}\\ \text{1주당가액}\end{matrix} - \begin{matrix}\text{신주1주당}\\ \text{인수가액}\end{matrix}\right] \times \text{실권주 총수} \times \begin{matrix}\text{증자후}\\ \text{대주주의}\\ \text{지분비율}\end{matrix} \times \begin{matrix}\text{특수관계자}\\ \text{실권비율}\end{matrix}$$

〈사례〉 증자전 1주당평가액 20,000원(액면5,000원), 액면가액으로 100% 유상증자시

※ A : 실권, B·C·D·E : 인수,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할 경우

주 주	증 자 전		증 자		증 자 후		
	주 식 수	주식가액	배정	인수	주 식 수	주식가액	증 감
A(父)	10주(33%)	200,000원	10주	—	10주(20%)	140,000원	△60,000원
B(子)	10 (33)	200,000	10	10	20 (40)	280,000	30,000
C.D.E	10 (33)	200,000	10	10	20 (40)	280,000	30,000
계	30 (100)	600,000	30	20	50 (100)	700,000	—

※ B의 증여의제가액

○ 균등증자시 1주당가액 $= \frac{(30주 \times 20{,}000원) + (30주 \times 5{,}000원)}{30주 + 30주} = 12{,}500원$

○ 증여의제 요건 충족여부

· 요건 ① : $\frac{\text{신주1주당 인수가액}}{\text{균등 증자시 1주당가액}} = \frac{5{,}000}{12{,}500} \rightarrow 70/100$ 이하에 해당

· 요건 ② : B의 증자후 지분비율 40% + A의 지분비율 20% = 60% → 대주주에 해당

· 요건 ③ : A.B간 특수관계 성립

○ 증여의제가액 : (12,500원 − 5,000원) × 10주 × 40% × 10주/10주
= 30,000원

(2) 改正理由

失權株 미배정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企業을 稅金없이 事前相續하는 手段으로 惡用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나. 合併時 贈與擬制規定 補完(令 §41의3)

(1) 改正內容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從前 規定에 의할 경우 합병법인이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될 경우의 株式交付比率 산출이 곤란한 바 이를 보완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총발행주식수에 대한 합병전 총발행주식수의 비율에 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從前 規定에 의할 경우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합병전의 주식수인지 합병후의 주식수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산식이 불필요하게 중첩되어 있었는바 합병후 주식수를 의미함을 명백히 하고 복잡한 산식을 단순하게 보완하였다.

從 前	改 正
— 합병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산식중 ○ 신설·존속법인의 주식과 교환되는 소멸·흡수법인의 주식 교부비율 ○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총발행주식수×대주주의 지분비율	○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frac{\text{합병전 주식수}}{\text{합병후 주식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2) 改正理由

현행 合併時 贈與擬制價額 계산산식 중 일부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를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증여의제가액이 사실상 합병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과 일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종래 해석에 의해 운용되어온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산식을 단순·명백하게 하였다.

다. 減資時 贈與擬制規定 補完(令 §41의4②)

減資時 贈與擬制規定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감자후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통칙에 의해 운영하여 왔는 바 이를 명문화 하였다.

2. 非上場株式 評價制度 改善

가. 支配株主 所有株式에 대한 課稅基準額에 上向調整(令 §5②1호사목)

(1) 改正內容

時價가 불분명한 非上場株式의 경우 주식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후 支配株主 및 그 특수관계자 소유주식은 그 평가액을, 기타주주는 그 평가액에서 그 평가

액의 10%를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支配株主 및 그 특수관계자 소유주식은 그 평가액에 그 평가액의 10%를 가산한 가액을, 기타주주는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기준액을 상향조정하였다.

從 前	改 正
—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주식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후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소유주식 : 評價額을 기준으로 과세 ○ 기타주주 소유주식 : 평가액에서 10%를 差減한 가액으로 과세	○ 평가액에 10%를 加算한 가액으로 과세 ○ 評價額을 기준으로 과세

(2) 改正理由

支配株主(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는 사실상 회사에 대한 재배권을 가지고 또한 商慣行상 지배주주 소유주식은 일반주주 소유주식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한 것이다.

나. 企業公開前 非上場株式 評價方法 補完(令 §5⑥1호나목)

(1) 改正內容

비상장주식 평가시 企業公開를 목적으로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신고직전 6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기전까지의 주식은 公募株式 引受價額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집·매출 이후 실제 상장일까지의 주식에 대하여도 공모주식 인수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從 前	改 正
— 비상장주식 평가시 ○ 유가증권 신고직전 6월부터 모집·매출전까지의 주식은 ○ 공모주식인수가액으로 평가	○ 유가증권 신고직전 6월부터 실제상장일까지의 주식은 ○ 공모주식인수가액으로 평가

(2) 改正理由

募集·賣出 以後 실제 上場日까지의 株式은 별도 규정없이 해석에 의해 公募株

式의 인수가액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價額으로 評價하도록 하여 왔는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다. 純損益金 計算方法 補完(令 §5⑥1호마목)

(1) 改正內容

비상장주식 평가시 純損益金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控除되는 금액에 1990.12 세제개편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항목에 추가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과 토지초과이득세 및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加算되는 금액에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추가된 토지초과이득세 및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액을 추가하였다.

從 前	改 正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控除	○ 공제되는 금액에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토지초과이득세 追加
○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을 加算하여 계산	○ 가산되는 금액에 토지초과 이득세환급액 追加

(2) 改正理由

1993. 12 세제개편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항목에 추가된 내용을 주식평가에 반영한 것이다.

3. 農民·勤勞者에 대한 支援擴大

가. 農地相續控除 대상이 되는 自耕農地의 範圍擴大(令 §8의3)

(1) 改正內容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주택상속공제 등과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農地相續控除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通作距離를 종전 8㎞에서 교통발달 및 도로사정의 개선에 따라 20㎞로 확대하였다.

從 前	改 正
— 농지 등 상속공제는 ○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동일, 연접 시·구·읍·면 ○ 또는 거주지로부터 8km 이내 소재 농지·초지 등에 한하여 적용	○ 통작거리를 20km로 확대

(2) 改正理由

통작거리를 1991. 7. 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상의 통작거리와 일치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나. 社內勤勞福祉基金의 住宅傳貰補助金에 대한 贈與稅 非課稅(令 §42②)

(1) 改正內容

社內勤勞福祉基金法의 규정에 의해 기업내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되는 社內勤勞福祉基金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현재는 주택취득가액의 5/100 이내의 取得補助金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전세가액의 10/100 이내의 賃借補助金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社內勤勞福祉基金에 유증·증여한 금품에 대하여 종전에는 재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것에 한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으나, 1992. 1. 1부터 社內勤勞福祉基金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정리하였다.

從 前	改 正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주택종업원에게 ○ 주택취득보조금(주택가액의 5% 범위내) 지급시 증여세 비과세	○ 주택전세보조금(전세가액의 10% 범위내) 지급시에도 증여세 비과세

(2) 改正理由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社內勤勞福祉基金의 자금지원활동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4. 其他 未備點 補完

가. 配偶者·直系尊卑屬間 去來時 贈與擬制範圍 縮小(令 §41③)

(1) 改正內容

현재는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재산양도시 贈與로 擬制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법원의 경매·국세징수법상 공매·증권거래소를 통한 유가증권 거래·부동산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직계존비속간 거래시에도 상당한 反對給付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증여의제 범위를 축소하였다.

從 前	改 正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거래시 증여로 의제하되 다음의 경우 제외 ○ 경매·공매·증권거래소를 통한 유가증권 거래 ○ 부동산 등을 교환하는 경우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거래시에도 ○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

(2) 改正理由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까지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은 규정이 지나치게 규제적이고 비합리적인 바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나. 公益法人의 매년 出捐財產評價額의 5% 이상 使用要件 強化(令 §3의2⑦4호)

(1) 改正內容

公益法人에 재산을 出捐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던 출연재산에 대한 여러가지 事後管理制度를 두고 있는바, 종전에는 매년 출연재산평가액의 5% 이상 사용요건에 대한 사용재원별 제한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사용재원의 구분없이 공익법인이 直接公益目的事業에 실제 사용한 실적이 출연재산평가액의 5% 이상만 되면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국세청예규에 의해 운용되어 왔으나 매년 출연재산평가액의 5% 이상 사용요건은 공익법인

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出捐財産運用所得을 재원으로 하여 直接公益目的事業에 사용한 금액이 당해 재산평가액의 5%(정기예금이자율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취지임을 명백히 하였다.

從 前	改 正
— 공익법인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출연재산평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미달사용 상당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 공익법인의 사용실적 중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사용한 금액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미달사용 상당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事 例〉 收益事業用 資産價額 10억원, 출연재산운용소득 2천만원인 경우

○ 사용기준액 : 10억원×5%=5천만원

○ 부족분 3천만원을 새로이 출연받아 사용한 경우

→ $10억원 \times \frac{3천만원}{5천만원} = 6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2) 改正理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등에 변칙투자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요건을 강화하였다.

다. 國外相續財産 평가시 對顧客外國換買入率을 적용하여 評價(규칙 §5⑫)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신 설〉	— 국외상속재산가액의 원화평가방법 명시 ○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외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

(2) 改正理由

國外상속재산의 원화평가방법에 대한 明示規定이 없으므로 이를 규정하였다.

라. 相續開始資料 수집체계를 本籍地에서 住所地로 전환(규칙 §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相續開始資料는	
○ 피상속인의 本籍地 시·구·읍·면장이 사망신고 익월 10일까지 본적지 管轄稅務署長에게 통지	○ 피상속인의 所在地 시·구·읍·면장이 住所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
○ 사망신고를 住所地 시·구·읍·면장이 받은 경우 本籍地 시·구·읍·면장에게 통보하여 本籍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	○ 사망신고를 本籍地 시·구·읍·면장이 받은 경우 住所地 시·구·읍·면장에게 통보하여 住所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

※ 상속개시자료 募集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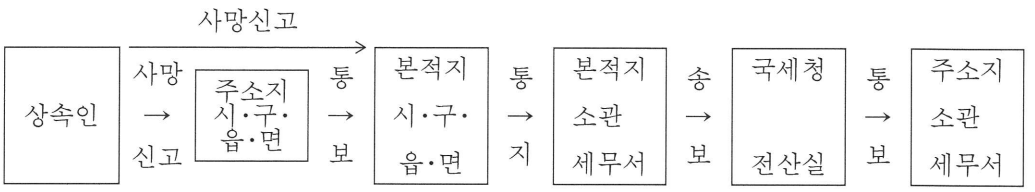

(2) 改正理由

生活의 기초가 本籍地 중심에서 住所地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住所地 중심으로 주민등록이 電算化(1993년 완료예정)되고 死亡申告도 대부분 住所地에 신고하는 등 주소지 중심의 행정비중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상속개시자료 募集體系가 복잡하여 통수보과정에서 漏落·亡失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1993년

◉ 법　　률 : 1993.12.31. 법　　률 제 4662호(시행일 : 1994. 1. 1.)
◉ 시 행 령 :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부칙)
(시행일 : 1993. 3. 6.)
◉ 시 행 령 :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시행일 : 1994. 1. 1.)
◉ 시행규칙 : 1994. 2.17. 재무부령 제 1962호(시행일 : 1994. 2. 7.)

〈要　　約〉

○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補完
　— 相續·贈與稅 控除額 上向調整
　— 相續·贈與稅 累進稅率 緩和
○ 公益法人을 통한 우회적인 相續·贈與規制
　— 公益法人의 株式을 出捐하는 경우의 免稅範圍 縮小
　— 公益法人에 特殊關係者 理事就任 許容範圍 縮小
○ 事前相續 및 變則 相續·贈與에 대한 課稅強化
　— 相續·贈與稅 賦課除斥期間을 10年으로 一般化
　— 세대생략 相續·贈與에 대한 割增稅率 適用制度 新設
　— 特殊關係없는 者에게 新株引受權 低價配定時에도 贈與稅 課稅
　— 相續稅 公示對象이 되는 高額相續者의 範圍 擴大
　— 相續·贈與稅 年賦延納制度 補完
○ 其他 改善事項
　— 葬禮費 概算控除額 引上調整
　— 相續開始前 處分財産·取得資金 出處의 立證責任 緩和
　— 事前相續財産 合算課稅時 贈與 당시의 評價價額을 기준으로 課稅
　— 非上場 株式 評價方法 補完

1.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補完

가. 相續·贈與稅 控除額 上向調整(상속세법 §5, §7, §11, §31, §33)

金融實名制 실시에 따라 金融財産에 대한 과세가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각종 控除額을 상향조정하여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配偶者의 財産形成寄與度를 감안하여 配偶者間 相續·贈與時의 控除額을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從 前	改 正
— 相續稅 控除額	
○ 基礎控除 : 6,000萬원	○ 1億원
○ 配偶者控除 : 1億원+(結婚年數×600萬원)	○ 1億원+(結婚年數×1,200萬원)
○ 子女·未成年者·障碍者·年老者控除	○ (좌 동)
○ 住宅·農地·山林·家業相續控除	
— 贈與稅 控除額(5年間)	
○ 直系尊卑屬 控除 : 1,500萬원	○ 3,000萬원(未成年者는 1,500萬원)
○ 配偶者控除 : 1,500萬원+(結婚年數×100萬원)	○ 3,000萬원+(結婚年數×300萬원)
○ 其他親族控除 : 500萬원	○ (좌 동)
— 保險金 控除額	
○ 相續控除 : 700萬원	○ 1,500萬원
○ 贈與控除 : 10萬원	○ 500萬원

이에 따라, 상속인 중 결혼연수가 30년인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상속받는 경우의 相續稅 控除額은 종전 4억8,000만원에서 7億원으로, 결혼연수가 30년인 夫婦間 相續·贈與時의 控除額은 배우자 相續 공제액이 종전 2억8,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배우자 贈與 공제액이 종전 4,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각각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나. 相續稅 및 贈與稅 累進稅率 緩和(상속세법 §14, §31의2)

金融實名制 실시에 따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각종 控除額을 대폭 인상한 외에 상속·증여세 最高稅率을 각각 5%씩 引下하고 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課稅階級을 조정하여 상속·증여세의 累進負擔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相續稅 : 10~55%(5段階)		— 10~50%(5段階)	
○ 2千萬원 以下	10%	○ 5千萬원 以下	10%
○ 2千萬원~2億원	20%	○ 5千萬원~2億5千萬원	20%
○ 2億원~5億원	30%	○ 2億5千萬원~5億5千萬원	30%
○ 5億원~10億원	40%	○ 5億5千萬원~10億원	40%
○ 10億원 超過	55%	○ 10億원 超過	50%
— 贈與稅 : 15~60%(5段階)		— 15~55%(5段階)	
○ 1千萬원 以下	15%	○ 2千萬원 以下	15%
○ 1千萬원~9千萬원	25%	○ 2千萬원~1億5千萬원	25%
○ 9千萬원~2億5千萬원	35%	○ 1億5千萬원~3億원	35%
○ 2億5千萬원~5億원	45%	○ 3億원~5億원	45%
○ 5億원 超過	60%	○ 5億원 超過	55%

〈參考〉 相續·贈與稅 控除額과 稅率調整에 따른 稅負擔 輕減

(1) 相續稅「結婚年數 30年인 配偶者, 子女 2人基準」

○ 控除額 : 4億8,000萬원 ⇨ 7億원

相續財産價額	相 續 稅 額		輕 減	
	從 前	改 正	輕減稅額	輕 減 率
500백만원	2백만원	—백만원	△ 2백만원	△100%
800	74	15	△ 59	△99.6
1,000	136	60	△ 73	△55.9
1,500	339	235	△104	△30.5
2,000	614	465	△149	△24.1
5,000	2,264	1,965	△299	△13.2
10,000	5,014	4,465	△549	△10.8

(2) 贈與稅「直系尊卑屬間 贈與時」

○ 控除額 : 1,500萬원 ⇨ 3,000萬원

贈與財産價額	贈 與 稅 額		輕 減	
	從 前	改 正	輕減稅額	輕 減 率
30백만원	2.75백만원	—백만원	△ 2.75백만원	△100%
50	7.75	3.0	△ 4.75	△61.3
100	20.25	15.5	△ 4.75	△23.5
200	54.75	42.5	△ 12.25	△22.4
500	183.25	164.5	△ 18.75	△10.3
1,000	481	436.5	△ 44.5	△ 9.3
5,000	2,881	2,636.5	△244.5	△ 8.5

2. 公益法人을 통한 迂廻的인 相續·贈與 規制

가. 公益法人에 株式을 出捐하는 경우의 免稅範圍 縮小(상속세법 §8의2①, ④)

(1) 改正內容 및 改正理由

대기업주가 財團法人을 설립한 후 이를 持株會社化(Holding Company)하는 등 公益法人을 통한 變則企業相續에 대한 規制를 강화하고 大企業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公益法人이 特定企業의 株式을 출연받거나 出捐받은 다른 재산으로 特定企業의 株式을 취득하는 경우의 상속·증여세 면제범위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發行株式總額의 20%에서 5%로 대폭 축소하였다.

從 前	改 正
- 公益法人의 株式을 出捐받거나 출연받은 다른 財產으로 株式을 取得하는 경우 ○ 當該 株式發行法人의 「發行株式總額의 20%」까지는 免稅하되, ○ 「發行株式總額의 20%를 超過하는 部分」은 贈與稅 課稅	- 議決權株式의 免稅範圍를 當該株式發行法人의 「發行株式總額의 5%」로 縮小

또한, 공익법인이 特定企業의 발행주식총액의 5%를 超過하여 주식을 出捐받거나 取得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보다 강화하였는바,

첫째, 특정기업의 주식을 2 이상의 公益法人에 分散出捐하는 경우의 5%초과 출연여부 판정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하였는바, 出捐한 株式 및 출연 당시 당해 公益法人이 所有하고 있는 주식외에 당해 출연자가 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出捐한 株式(당해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所有하고 있는 주식)을 合算하여 5%초과여부를 판정하도록 명백히 하였으며

둘째, 공익법인이 出捐받은 재산 및 그 운용소득으로 특정기업의 株式을 取得하는 경우에는 그 取得한 주식 및 取得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所有하고 있는 주식외에 당해 出捐者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公益法人이 소유하고 있는 株式을 합산하여 5% 초과여부를 판정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보완하였다.

한편, 이 경우의 상속·증여세 課稅價額을 종전에는 초과출연·초과취득한 株式의 評價額으로 하였으나, 초과출연시에는 초과출연 株式의 評價額으로 하되, 초과취득시에는 초과부분을 取得하는데 사용한 財產價額으로 하도록 하였다.

(2) 適用時期 및 適用例

1994. 1. 1 以後 出捐·取得分부터 適用(既存 5%超過所有 公益法人의 境遇 追加 出捐·取得分부터 適用)하되, 5%超過與否를 判定함에 있어서는 既 出捐·取得分을 包含하여 計算한다.

※ 事 例

① 1994. 1. 1 以後 出捐者 A가 B企業 株式 3%를 C公益法人에 出捐時

- ○ 出捐當時 C公益法人이 B企業 株式 3% 既保有時 : 1% 課稅
- ○ 出捐當時 C公益法人이 B企業 株式 5% 既保有時 : 3% 課稅
- ○ 出捐當時 C公益法人이 B企業 株式 10% 既保有時 : 3% 課稅
- ○ 出捐者 A가 1990. 1. 1 D公益法人에 B企業 株式 3% 既出捐時 : 1% 課稅

② A로부터 財産을 出捐받은 C公益法人이 1994. 1. 1 以後 B企業株式 3% 取得時

- ○ 取得當時 C公益法人이 B企業 株式 3% 既保有時 : 1% 課稅
- ○ 取得當時 C公益法人이 B企業 株式 5% 既保有時 : 3% 課稅
- ○ 取得當時 C公益法人이 B企業 株式 10% 既保有時 : 3% 課稅
- ○ 出捐當時 出捐者 A로부터 財産을 出捐받은 D公益法人이 B企業 株式 5% 既保有時 : 3% 課稅

나. **公益法人에의 特殊關係者 理事就任 許容範圍 縮小**(상속세법시행령 §3의2①, ④)

(1) 改正內容 및 改正理由

公益法人의 出捐者 및 그 친족 등 당해 公益法人과 特別한 關係에 있는 者는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理事로 취임할 수 없도록 制限하여 特別한 關係에 있는 者들이 공익법인을 실질적으로 支配하는 사례를 규제하여 왔는 바, 학술·장학·자선·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 特別한 關係에 있는 者의 理事취임이 허용되는 범위를 理事現員의 1/3에서 1/5로 대폭 축소하였다. 또한, 2 이상의 公益法人에 理事들이 중복취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규제하기 위하여 同一한 出捐者가 2 이상의 공익법인에 分散出捐하는 경우 당해 公益法人에 理事로 重複취임한 理事를 特別한 關係에 있는 者의 범위에 추가하였다.

從 前	改 正
― 公益法人의 出捐者 및 그 親族 등 特殊關係者의 理事就任이 許容되는 範圍 ○ 學術·奬學·慈善·社會福祉法人 등 : 「理事現員의 1/3」 限度 ○ 학교법인 : 制限없음(사립학교법상 이사현원의 2/5) ○ 其他法人 : 全面禁止	― 特殊關係者의 理事就任이 許容되는 範圍를 縮小 ○「理事現員의 1/5」 限度 ○ (좌 동)
― 公益法人에의 理事就任이 制限되는 特殊關係者의 範圍 ○ 出捐者(法人인 境遇 그 支配株主) ○ 出捐者·理事의 親族 ○ 出捐者·理事의 使用人 其他 雇傭關係에 있는 者, 生計維持費	― 特殊關係者의 範圍에 다음을 追加 ○ (좌 동) ○ 出捐者가 同一한 다른 公益法人의 理事

(2) 適用時期 및 適用例

1994. 1. 1이후 出捐分부터 적용된다. 즉, 1994. 1. 1이후 設立되는 公益法人은 당연히 改正規定이 적용되며, 1993. 12. 31 이전에 設立된 公益法人의 경우 1994. 1. 1 이후 새로이 出捐받는 財産에 대하여는 改正規定이 적용된다.

※ 事 例

① 特殊關係者의 數가 理事現員의 1/4인 A公益法人의 境遇

○ 1993. 1. 1. 1億원, 1994. 1. 1. 1億원을 各各 出捐받은 境遇 : 1994. 1. 1. 出捐分 1億원에 대해 課稅

② 出捐者 A로부터 各各 財産을 出捐받은 B·C公益法人에 理事 D가 重複就任하고 理事 D를 包含한 特殊關係者의 數가 理事現員의 1/4인 B公益法人의 境遇

○ 1993. 1. 1. 1億원, 1994. 1. 1. 1億원을 各各 出捐받은 境遇 : 1994. 1. 1. 出捐分 1億원에 대해 課稅

③ 1994. 1. 1. 特殊關係者의 數를 理事現員의 1/4에서 1/5로 縮小한 A公益法人의 境遇

○ 1993. 1. 1. 1億원, 1994. 1. 1. 1億원을 各各 出捐받은 境遇 : 課稅問題없음.

④ 1994. 1. 1. 特殊關係者의 數를 理事現員의 1/5로 하여 設立된 A公益法人의 境遇

○ 1994. 1. 1. 1億원을 出捐받은 境遇 : 課稅問題없음

○ 1994. 3. 1. 特殊關係者의 數를 理事現員의 1/4로 定款變更후 6個月 經過時 : 1994. 9. 1. 直接公益目的 使用財産을 除外한 出捐財産에 대해 課稅

다. 公益法人에 대한 主務官廳과 國稅廳間 業務協助裝置 마련(상속세법 §8의2, 동법 시행령 §3의2)

公益法人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主務官廳과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國稅廳間 업무협조장치를 마련하여 公益法人에 대한 事後管理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公益法人에 대한 設立許可·取消 등 指揮監督權은 主務官廳이 行使	— 主務官廳은 公益法人에 대해 設立許可·設立許可取消·是正命令·相續·贈與稅 賦課事由 發見時 다음달 말일까지 課稅官廳에 通報
— 課稅官廳에서는 公益法人에 出捐한 財産에 대한 事後管理를 擔當	— 課稅官廳은 公益法人에 대해 相續·贈與稅 課稅時 다음달 말일까지 主務官廳에 通報

라. 公益事業의 範圍에 追加(상속세법시행령 §3의2②, 동법 시행규칙 §3의2)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公益事業의 범위에 財務部令이 정하는 事業을 추가할 수 있도록 상속세법시행령에 위임근거규정을 신설하고, 其他 公益事業을 범위를 財務部令으로 규정하였다.

從 前	改 正
— 相續·贈與稅가 免除되는 公益事業의 範圍 ○ 學術·奬學·宗敎·慈善·社會福祉 法人 ○ 醫療·學敎法人 등	○ (좌 동)
〈新 設〉	○ 상공회의소가 運營하는 公共職業 訓練事業 ○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가 運營하는 中小企業硏修事業 ○ 工業團地管理公團이 運營하는 社會福祉事業

3. 事前相續 및 變則贈與에 대한 課稅強化

가. 相續·贈與稅 賦課除斥期間을 10年으로 一般化(국세기본법 §26의2)

상속·증여세의 賦課除斥期間을 종전에는 一般的인 경우 5년으로 하되, 신고기한내에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虛僞申告 또는 申告漏落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하여 왔으나, 상속·증여세 課稅強化 측면에서 賦課除斥期間을 10년으로 一般化하였다.

從 前	改 正
ㅡ 相續·贈與稅 賦課除斥期間 ○ 一般的인 境遇 : 5年 ○ 無申告·虛僞申告의 境遇 : 10年	賦課除斥期間을 10年으로 一般化

나. 世代省略 相續·贈與에 대한 割增稅率 適用制度 新設(상속세법 §14, §31의2)

祖父가 1世代를 뛰어넘어 孫子에게 직접 相續·贈與함으로써 그 子女가 부담하여야 할 한차례의 相續·贈與稅를 回避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直系尊卑屬인 피상속인과 상속인 또는 증여자와 수증자간 1世代를 뛰어넘는 世代省略移轉에 대하여는 一般상속·증여시의 稅額에 20%를 割增한 금액을 算出稅額으로 하여 課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從 前	改 正
ㅡ 被相續人과 相續人 또는 贈與者와 수증자간의 身分에 關係없이 相續·贈與稅의 稅負擔은 同一	ㅡ 直系尊卑屬인 被相續人과 相續人 또는 贈與者와 수증자간에 2世代 以上 差異가 있는 境遇 ○ 一般 相續·贈與時의 稅額에 「20%」를 割增하여 課稅 ○ 다만, 代襲相續의 境遇 除外

이 경우 直系尊卑屬間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父系·母系를 모두 포함하며, 祖父가 사망하기 전에 그 子女가 먼저 死亡한 경우로서 손자가 代襲相續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割增課稅하지 아니하고 一般 상속·증여시의 稅率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事 例

① 祖父가 孫子에게 全體 相續財產價額의 1/5 遺贈時, 割增前 算出稅額 1億원인 경우

○ 相續稅 算出稅額 : 1億원 + (1億원 × 0.2 × 0.2) = 1億400萬원

② 祖父가 孫子에게 증여시, 할증전 산출세액 2,000만원인 경우

○ 贈與稅 算出稅額 : 2,000萬원 + (2,000萬원 × 0.2) = 2,400萬원

다. 名義信託에 대한 贈與稅 課稅時 回避目的이 되는 租稅의 範圍 명시(상속세법 § 32의2)

不動產, 株式 등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財產을 他人名義로 하는 경우에는 租稅回避目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實質所有者가 名義者에게 贈與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租稅回避目的이 없는 경우를 贈與擬制 대상에서 除外하는 것은 지난 1989. 7 憲法裁判所의 限定合憲결정에 따른 것인 바, 이 경우 회피목적이 되는 租稅의 범위와 관련하여 종래 大法院 判例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相續·贈與稅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경우』로 限定하여 판결하여 왔다.

이에 따라, 綜合土地稅나 讓渡所得稅 등 다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경우는 증여세를 課稅할 수 없게 되는 問題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회피목적이 되는 租稅의 範圍를 구체적으로 列擧하여 이를 명백히 함으로써 名義信託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租稅를 回避」하기 위하여 不動產이나 株式을 他人名義로 하는 경우에는 實所有者가 名義者에게 贈與한 것으로 보아 名義者에게 贈與稅課稅	— 贈與稅 課稅對象이 되는 「租稅回避」의 範圍는 ○ 相續·贈與稅를 回避하기 위한 경우는 물론 ○ 所得稅, 法人稅, 財產稅, 綜合土地稅 등 다른 國稅나 地方稅를 回避할 目的으로 名義信託한 경우에도 贈與稅 課稅對象임을 분명히 함.

라. 特殊關係없는 者에게 新株引受權 低價配定時에도 贈與稅 課稅(상속세법 § 34의5)

법인의 增資時 일부 주주의 失權으로 인하여 발생한 失權株를 再配定함에 있어 종전에는 失權한 株主와 特殊關係 있는 者에게 再配定하는 경우에만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差額을 贈與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一般公募에 의하지 아니하고 緣故配定하는 경우에는 失權한 주주가 신주의 저가차익을 실권주 인수자에게

實質的으로 贈與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緣故配定하는 경우에는 실권한 주주와의 特殊關係 有無에 불구하고 모두 贈與稅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1992. 12. 相續稅法施行令 改正時 신설하였던 失權處理時의 증여의제규정을 法으로 명문화하였다.

從 前	改 正
ㅡ 法人의 增資時 發生한 失權株를 再配定하는 경우로서 ○ 失權한 株主와 「特殊關係있는 者」에게 配定하는 境遇 : 新株의 時價와 引受價額과의 差額을 贈與한 것으로 보아 課稅 ○ 「特殊關係가 없는 者」에게 配定하는 境遇 : 贈與로 보지 아니함.	○ 公募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特殊關係없는 자에게 配定한 경우에도 贈與한 것으로 보아 課稅

마. 相續稅 公示對象이 되는 高額相續者의 範圍 擴大(상속세법 §20의3, §23, §25)

高額相續者의 상속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相續財產價額이 50억원 이상인 者로서 租稅回避素地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서제출일부터 4월 이내에 30일간 申告內容을 公示하는 동시에 5년간 事後管理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對象이 되는 高額相續者의 범위를 상속재산가액 30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高額相續者에 대하여 적용되던 金融機關 本店에의 金融資產 一括照會制度는 金融實名制의 조기정착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이를 廢止하였다.

從 前	改 正
ㅡ 相續財產의 價額이 「50億원 以上」인 者에 대하여는 ○ 租稅回避素地가 명백한 경우 申告內容을 30日間 公示하고 ○ 相續開始後 5年까지 事後管理 ○ 金融機關 본점에 金融資產 一括 照會	ㅡ 公示 및 事後管理對象을 「30億원 以上」인 者로 擴大 ○ 廢止

바. 開發豫定地로 指定된 地域의 農地 등은 相續·贈與稅 控除·減免對象에서 除外(상속세법 §11의3, 조세감면규제법 §56, §57)

相續稅 과세시 일정 면적한도내에서 주택공제액과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하는 農地 등 相續控除의 對象이 되는 農地 등의 요건 및 自耕農民이 營農 1子女에게 農地 등을 증여하거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부터 農地 등을 贈與받는 경우의 贈與稅 免除對象이 되는 農地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보완하였다.

從 前	改 正
— 自耕農民인 被相續人의 相續財産 中 農地 등에 대하여는 相續稅課稅價額에서 控除(面積·金額限度) — 自耕農民이 營農 1子女에게 農地 등을 贈與하거나, 1996. 12까지 直系尊卑屬·兄弟姉妹로부터 農地 등을 贈與받는 境遇 ○ 都市計劃法上 住居·商業·工業 地域外에 소재하는 農地 등인 경우 贈與稅 免除(面積限度)	— 開發事業地區로 指定된 地域內 農地 등 他用途로의 轉用이 決定된 農地 등을 相續·贈與하는 경우에는 控除·減免對象에서 除外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宅地開發豫定地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工業團地(국가·지방·농공단지)』 ○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流通團地』 ○ 관광진흥법에 의한『觀光團地』 ○ 其他 農地 등의 轉用의 許可·同意·承認을 받은 開發事業地區

이는 他 용도로의 전용이 결정된 開發事業地區內 農地 등에 대하여는 農地相續控除를 배제하는 한편, 宅地로의 轉用이 결정된 宅地開發豫定地區內 農地 등의 경우에도 증여 당시 주거·상업·공업지역에만 해당되지 아니하면 贈與稅 減免對象이 되고, 贈與後 5年 이내에 收用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追徵對象이 되지 아니하는 등 營農後繼者를 지원하기 위한 農地減免制度를 惡用하는 사례를 規制하기 위한 것이다.

사. 相續·贈與稅 年賦延納制度 補完(상속세법 §28, 동법 시행령 §21)

納稅便宜 측면에서 상속·증여稅額이 400만원을 超過하는 경우 稅額 중 400만원을 年賦延納 申請時 납부하면, 나머지 400만원 超過金額에 대하여는 당해 상속·증여세의 決定通知日부터 3년(사업상속의 경우 5년)간 年賦延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속세 申告日부터 연부연납 기산일인 決定通知日까지는 대부분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이용하여 납세자력이 있는 일부 高額相續者들도 相續稅 申告時 400만원만 납부하고 무조건 年賦延納을 申請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상속·증여세 年賦延納 申請對象을 納付稅額 1,000만원 이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액의 1/4 이상을 申請과 동시에 納付해야만 연부연납을 許可하도록 절차를 보완하였다.

從 前	改 正
― 相續·贈與稅를 年賦延納하는 境遇	
○ 申請期限 : 申告期限內 또는 納稅告知書에 의한 納付期限內	○ (좌 동)
○ 申請對象 : 納付稅額 400萬원 超過時	○ 納付稅額 1,000萬원 超過時
○ 申請金額 : 稅額 中 「400萬원」을 年賦延納 申請時 納付하고, 「400萬원 超過額」에 대해 3年(5年)間 年賦延納	○ 稅額의 「1/4」을 年賦延納申請時 納付하고, 「나머지 3/4」에 대해 年賦延納
○ 年賦延納許可 : 稅額決定通知時(告知後 申請時 7日內)許可	○ (좌 동)

4. 其他改善事項

가. 證憑提出없는 경우의 葬禮費 槪算控除額 引上 調整(상속세법 §4)

피상속인의 葬禮節次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控除하되, 세금계산서 등 證憑提出이 없는 경우 200만원을 槪算控除하여 왔으나, 葬禮費 槪算控除額을 현실에 맞게 500만원으로 上向調整하였다.

從 前	改 正
―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控除하는 葬禮費	
○ 稅金計算書 등 證憑이 있는 경우 : 장빙상의 費用 全額	
○ 證憑提出이 없는 경우 : 「200萬원」 槪算 控除	○ 槪算控除額을 「500萬원」으로 上向調整

나. 贈與財產을 申告期限內 返還하는 경우 課稅對象에서 除外(상속세법 §29의2)

贈與를 받은 후 당초 贈與契約을 合議解除하여 증여재산을 당초 贈與者에게 返還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이내에 返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返還하는 것에 대하여는 贈與稅를 재차 課稅하지 아니하여 왔다.

그러나, 法令解釋에 의하여 贈與받은 재산을 贈與者에게 신고기한내 返還하면 당초부터 贈與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課稅하지 아니하여 왔는 바, 이를 明文으로 規定하여 본인의 意思와는 달리 贈與로 표시된 경우 納稅者가 스스로 是正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從 前	改 正
— 贈與後 당초 贈與契約을 解除하여 當初 贈與者에게 返還하는 경우 ○「申告期限(6월)以內」에 返還하는 境遇 : 當初 贈與·返還分 모두 非課稅(解釋) ○「6월 經過後 1年 以內」에 返還하는 경우 · 當初 贈與時 : 課稅 · 返還時 : 非課稅 ○「1年後」返還時 : 모두 課稅	○ 現在「法令解釋」에 의해 執行되고 있는 것을 法에 明示 ○ (좌 동)

다. 財產評價差異로 인한 過少申告時 申告不誠實加算稅 適用除外(상속세법 §20의2, §26)

상속·증여세 申告期限내에 상속·증여財產을 빠짐없이 申告한 경우에는 財產評價上의 差異 등으로 인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相續稅法上 評價額보다 적게 申告한 경우에도 申告稅額控除(신고세액의 10%)를 적용하는 반면, 過少申告·納付金額에 대하여는 申告不誠實加算稅(과소신고금액의 20%)와 納付不誠實加算稅(과소납부세액의 10~30%)를 부과하는 등 不合理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申告稅額控除의 적용기준을 신고한 財產에서 신고한 課稅標準으로 변경하는 한편, 단순한 財產評價上의 差異로 인한 過少申告·納付金額에 대하여는 課稅官廳에서 상속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評價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申告不誠實加算稅는 賦課하지 아니하고 納付不誠實加算稅만 부과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相續·贈與稅 申告稅額控除(10%)기준 ○ 申告한 財產	○ 申告한 課稅標準
— 申告不誠實加算稅(20%) 賦課基準 ○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未達한 金額	○ 신고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 但, 財產評價上의 差異로 인한 금액은 除外
— 納付不誠實加算稅(10~30%)賦課 ○ 納付하여야 할 稅額에 未達하게 納付한 稅額基準	○ (좌 동)

라. 負擔附贈與時 贈與擬制規定을 推定規定으로 轉換(상속세법 §29의4, 동법 시행령 §40의5)

受贈者가 贈與者의 재산을 무상으로 贈與받으면서 贈與者의 債務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負擔附贈與時 당해 贈與者와 受贈者가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관계에 있는 경우 가공채무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하여 客觀的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는 受贈者가 金融機關의 債務를 인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債務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控除하지 아니하고 전체가액을 贈與받은 것으로 보아 贈與稅를 과세하여 왔다.

그러나, 憲法裁判所는 『진정한 債務인 것이 明白한 경우』에는 債務를 控除하여야 한다는 違憲決定을 내림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負擔附 贈與시에도 受贈者가 證憑을 통해 진정한 채무임을 立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控除하도록 보완하였다. 이 경우 債務額 상당부분은 有償讓渡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가 과세되며, 事後管理를 통해 채무변제시 누가 辨濟하는지 여부 등 별도의 증여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從 前	改 正
― 配偶者·直系尊卑屬間의 負擔附 贈與時 다음의 경우에는 債務를 控除하지 아니하고 全體價額을 贈與받은 것으로 「看做하여」 증여세 과세 ○ 受贈者가 객관적으로 債務辨濟 能力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國家·地方自治團體·金融機關 이외의 債務를 인수한 경우	― 配偶者·直系尊卑屬間의 負擔附贈與時에도 ○ 당해 債務가 증여당시 현존하는 贈與者의 債務로서 ○ 受贈者가 契約書·채권자확인서·담보·이자지급 證憑 등에 의해 債務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立證하는 경우에는 贈與稅 課稅 價額에서 控除(※ 債務額 상당부분은 讓渡稅 課稅)

마. 相續開始前 處分財產·取得資金出處의 立證責任 緩和(상속세법시행령 §3, §41의5)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相續財產을 處分하여 포착이 어려운 現金 등으로 相續케하는 등의 租稅回避를 규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相續開始前 2년 이내에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종류별 합계액 1억원 이상의 財產을 處分하거나, 1억원 이상의 금융기관 債務(이자·담보제공 사실없는 경우 1억원 미만의 기타채무 포함)를 負擔한 경우로서 相續人이 그 使用處를 立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立證하지 못한 금액을 相續稅 課稅價

額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使用處를 相續人이 빠짐없이 立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체금액의 80% 이상(10억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5% 이상)을 立證한 경우에는 全體金額을 立證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相續人의 立證責任을 완화하였다.

또한, 財產取得資金 出處調査時 자금출처가 입증된 것으로 보는 金額基準을 동일하게 신설하여 納稅者의 立證責任을 완화하였다.

從 前	改 正
- 피상속인이 相續開始前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相續財產을 處分하거나 債務를 負擔한 경우로서 「그 用途가 객관적으로 明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相續稅 課稅價額에 산입 - 不動產 등 財產取得時 그 資金出處로 인정되는 금액의 合計額이 「取得財產價額에 未達」하는 경우 贈與 받은 것으로 推定하여 과세	다음의 경우에는 處分財產·債務의 用途 및 取得資金出處가 立證된 것으로 보아 相續稅 課稅價額에 算入하지 아니하고 贈與推定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함. ○ 立證되지 아니한 금액이 處分 財產·債務 및 取得財產價額의 「20%에 未達」하는 경우 ○ 但, 立證하여야 하는 金額이 10億원을 超過하는 경우 10億원 超過部分에 대하여는 「5%에 未達」하는 경우

※ 事 例

① 取得財產價額 또는 相續開始前 處分財產價額이 10億원인 境遇

○ 立證된 것으로 보는 金額基準 : 10億원×80%=8億원

⇨ 7億원의 出處立證時 3億원에 대해 課稅

② 取得財產價額 또는 相續開始前 處分財產價額이 15億원인 境遇

○ 立證된 것으로 보는 金額基準 : (10億원×80%)+(5億원×95%)=12億7,500萬원

⇨ 12億원의 出處立證時 3億원에 대해 課稅

바. 事前相續財產 合算課稅時 贈與當時의 評價價額을 基準으로 合算課稅(상속세법 §9)

事前相續을 통한 고율의 상속세 누진부담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死亡前 5年 이내에 상속인(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3년 이내)에게 贈與한 財產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合算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贈與財產에 대한 相續稅 合算課稅時 증여재산의 相續開始當時 評價價額을 기준으로 合算課稅하는 반면, 合算分에 대하여는 人的·物的 控除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規定이 지나치게 規制的이고 非合理的인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贈與財産에 대한 相續稅 合算課稅時 증여재산의 贈與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하도록 이를 合理的으로 補完하였다.

從 前	改 正
— 被相續人이 死亡前 5年 이내에 相續人에게 贈與한 財産의 가액을 相續稅 課稅價額에 合算課稅時 ○ 贈與財産의 「相續開始當時 評價價額」을 기준으로 合算課稅	○ 贈與財産의 「贈與當時의 評價 價額」을 기준으로 合算課稅

사. 營農 1子女에게 贈與한 農地 등은 事前 相續財産 合算對象에서 除外(조세감면규제법 §58)

租減法上 자경농민이 營農 1子女에게 農地 등을 贈與하는 경우 贈與稅가 免除되나, 당해 贈與者인 自耕農民이 농지 등을 증여한 후 5年 이내에 死亡하는 경우에는 相續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相續稅 課稅價額에 合算課稅되는 不合理한 事例가 발생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合算課稅하지 아니하도록 이를 합리적으로 補完하였다.

從 前	改 正
— 自耕農民이 營農 1子女에게 農地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租減法의 규정에 의해 贈與稅가 免除되나 ○ 相續稅法上 피상속인이 死亡前 5년 이내에 相續人에게 贈與한 財産은 相續稅 課稅價額에 合算	— 自耕農民이 營農 1子女에게 農地 등을 贈與함에 따라 贈與稅가 免除된 경우 ○ 자경농민이 贈與者가 贈與後 5년 이내에 死亡하는 경우에도 당해 農地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合算課稅 排除

아. 非上場株式의 評價方法 補完(상속세법시행령 §5⑥, 동법 시행규칙 §5④)

時價가 불분명한 非上場株式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비상장법인의 1株當 純資産價額과 1株當 최근 3년간 純損益額의 加重平均額을 기준으로 평가한 價額』과 『당해 비상장법인과 業種·規模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2 이상의 上場法人이 있는 경우의 그 上場法人의 株式價額의 平均額』을 비교하여 낮은 價額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純損益額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은 상속개시(증여)일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個月 경과시에는 『당해 사업연도 순손익액의 年換算額』과 직전 2개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사업연도 순손익액의 年換算額 계산을 위한 假決算이 사실상 困難한 문제가 있으므로 최근 3년의 적용방법을 단일화하여 『작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해 법인의 과거의 수익가치 대신 將來收益價値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등 3개 信用評價 專門機關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공모주식의인수가액결정에관한기준에 따라 평가한 1株當 推定利益(당해연도,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을 3과 2로 가중평균)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보완하였다.

한편, 類似上場法人 比較評價 방법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모든 上場法人을 세세분류 기준에 의해 분류하기 어려워 類似上場法人의 選定이 집행상 곤란하고, 주당순자산가액·주당순손익·매출액 경상이익률이 상하 20%범위 이내인 類似上場法人이 거의 없어 사실상 實效性이 없으므로 이를 廢止하였다.

從 前	改 正
ㅡ 時價가 不分明한 非上場株式의 價額은 원칙적으로 다음 중 낮은 價額에 의하여 評價	
○ 「1주당 純資産價額」과 「1주당 最近 3年間 純損益額의 가중평균액÷0.15」과의 平均額	○ 「1주당 最近 3年間 純損益額의 가중 평균액」 대신 「信用評價專門機關에 의한 1주당 推定利益」에 의할 수 있도록 함.
※ 1주당 純損益額 계산시 적용되는 「最近 3年」의 기준	
· 相續開始日이 직전 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個月 經過時 : 當該年度·直前 2個年度	○ 1주당 純損益額 계산시 적용되는 「最近 3年」의 적용방법을 단일화하여 「直前 3個 事業年度」기준으로 함.
· 相續開始日이 直前 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個月 未納時 : 直前3個年度	
○ 2 以上 類似上場法人 주식가액의 평균액	○ 廢止

자. 債務確認書에 의해 債務控除가 가능한 金融機關의 範圍 擴大(상속세법시행령 § 3③)

상속세 과세시 당해 기관의 債務確認書에 의해 債務控除가 가능한 金融機關의 범위에 사실상 貸出業務를 취급하는 모든 金融機關을 포함시켰다.

從 前	改 正
— 피상속인의 다음에 게기하는 金融機關에 대한 債務는 당해 金融機關의 債務確認書 제출만으로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控除	— 債務確認書에 의해 債務控除가 가능한 金融機關의 範圍에 다음을 追加
○ 法人稅法施行令 §37의2 각호에 該當하는 金融機關	○ (좌 동)
○ 證券會社	
○ 체신관서	○ (삭 제)
○ 證券投資信託業에 의한 委託會社	
	○ 農協·水協·畜協·林協
	○ 人蔘協同組合·信用協同組合
	○ 새마을金庫

차. 相續·贈與稅 申告時 6個月內 決定하도록 하는 訓示規定 新設(상속세법시행령 §18⑤)

상속·증여세의 課稅標準과 稅額은 상속인·수증자의 申告에 의하여 決定하되, 신고내용이 不當한 경우에는 政府가 決定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속·증여세 申告後 稅額決定까지는 대부분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으므로 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세액을 決定하도록 하는 훈시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相續財產의 調査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6월 이내에 決定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事由를 신고인에게 通知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相續·贈與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은 申告에 의하여 決定하되, 申告內容이 不當한 경우에는 政府가 決定하도록 하고 있으나	
○ 申告者에 대한 稅額決定時期에 대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함.	○ 申告者에 대하여는 申告日로부터 6月內에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 부득이한 事由로 6月內에 未決定時 相續人에게 그 事由를 通知

1994년

◉ 법　　률 : 1994.12.22. 법　　률 제 4805호(시행일 : 1995. 1. 1.)
◉ 시 행 령 :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시행일 : 1995. 1. 1.)
◉ 시행규칙 : 1995. 4. 1. 총 리 령 제　498호(시행일 : 1995. 4. 1.)

〈要　　約〉

○ 相續·贈與稅 면제범위 확대
　— 配偶者 相續 控除制度 補完
　— 配偶者 相續財產 未分割事由 新設
　— 申告時 提出할 證憑書類 등의 新設
　— 配偶者 贈與控除額 引上
　— 退職手當 控除額 引上
○ 農地 等 相續控除 擴大
　— 農漁民 相續控除
　— 被相續人의 要件補完
　— 事後管理規定 補完
　— 營農相續人 等 特別控除
○ 相續·贈與稅 稅率體系의 單一化
○ 公益法人 事後管理制度 補完
　— 公益法人의 出捐目的使用義務期間 延長
　— 公益法人 事後管理 除外 財產
　— 公益事業의 固有目的事業 使用範圍擴大
　— 公益法人 出捐財產 運用所得使用限度
　— 產·學·硏 綜合硏究團地에 대한 贈與稅 免除
　— 公益法人 受惠者 限定協議機關 調整
　— 公共法人의 報告書 未提出時 加算稅規定 補完
○ 相續·贈與稅 賦課 除斥期間 延長
○ 其他 改善事項
　— 勤勞福祉振興基金에 出捐한 財產에 대한 相續·贈與稅 免除
　— 相續稅 合算課稅時 旣納付 贈與稅額 控除制度 補完
　— 自營漁民에 대한 贈與稅 免除
　— 相續稅 課稅價額 算入財產

1. 相續·贈與稅 免除範圍 擴大

가. 配偶者 相續控除制度 補完(法 §11)

(1) 改正內容

配偶者 相續控除制度는 단순히 人的構成內容에 따라 획일적으로 概算控除하여 왔으나, 配偶者가 「실제 相續받은 相續額」을 기준으로 配偶者의 法定相續分 範圍內에서 「10億한도」까지 控除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中產層 以下者가 賦課되지 않도록 「실제 相續額의 크기」에 관계없이 從前의 概算控除額과 실제 상속액 중 선택하여 적용하게 하였으며, 실제 相續額을 控除받고자 하는 자는 相續財產分割協議書를 提出토록 하고 從前의 概算控除額은 별도의 신청없이도 무조건 控除토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配偶者 相續控除 — 相續與否와 관계없이 配偶者가 있는 경우 무조건 控除 — 1億+(結婚年數×1,200만원)	○ 다음 중 選擇的으로 控除 — 配偶者가 실제 相續받은 相續額에 관계없이 현행과 같이 「概算控除」 — 配偶者가 「실제 相續받은 相續額」을 기준으로 하여 配偶者의 法定相續分 範圍內에서 控除하되, 최고한도 「10억원」 設定

(2) 改正理由

(가) 부부간 相續·贈與稅의 免除範圍는 繼續하여 확대하여 왔으나 女性界 등에서 미흡한 점 등을 提起하였고 配偶者의 財產形成 寄與度를 勘案하여 配偶者의 相續에 대한 免稅範圍를 擴大하였다.

(나) 從前 相續稅 配偶者 控除制度는 단순히 人的構成 內容에 따라 공제하는 非合理的인 측면이 있으므로

① 配偶者 相續控除制度를 「實際 相續額」基準으로 개편하여 配偶者의 몫인 「法定相續分」을 기준으로 공제하되 中產層 以下者가 課稅되지 않도록 「實際 相續額의 크기」에 관계없이 現行 「結婚年數基準 概算控除額」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② 高額者들의 稅負擔 輕減惠澤이 지나치게 擴大되지 않도록 最高限度를 설정하였다.

나. 配偶者 相續財産 未分割 事由 新設(法 §11·令 §8③)

(1) 改正內容

配偶者가 「實際 相續받은 相續額」을 基準으로 하여 相續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申告期限內 申告·分割된 財産에 한하여 適用받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申告期限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相續財産을 分割하여 申告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控除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득이한 事由의 範圍를 新設하였다.

從 前	改 正
〈新 設〉	○ 부득이한 事由 規定 — 相續人 등의 相續財産에 대해 相續回復請求의 訴를 提起한 때 — 相續人이 確定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 相續財産을 分割하지 못하는 사실을 稅務署長이 認定하는 때

(2) 改正理由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申告期限 經過後에도 配偶者 相續控除 認定

다. 申告時 提出할 證憑書類 등의 新設(令 §13①)

(1) 改正內容

配偶者가 실제 相續받은 相續額을 基準으로 相續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申告期限內에 相續稅申告書와 證憑書類를 稅務署長에게 提出하도록 法을 개정함에 따라 證憑書類 등의 規定을 新設하였다.

從 前	改 正
〈新 設〉	○ 相續財産分割協議書를 提出 — 配偶者의 分割된 相續財産의 所在·價額·負擔한 債務와 相續人의 住所 및 姓名을 記載

(2) 改正理由

配偶者의 分割된 相續財産을 確認할 수 있도록 申告時 提出할 證憑書類를 規定한 것이다.

라. 配偶者 贈與控除額 引上(法 §31, §31의3)

(1) 改正內容

配偶者에게 贈與時 控除하는 基準額을 「300만원에 結婚年數를 곱하여 3천만원을 합한 金額」에서 「500만원에 結婚年數를 곱하여 5천만원을 합한 金額」으로 引上하고 贈與稅는 課稅時 贈與者別, 受贈者別로 각각 課稅하되, 控除額은 「수증자별로 5년간 合算」하여 直系尊卑屬間 3천만원을 控除하고 있는바, 자녀가 부모 각각으로부터 贈與를 받은 경우 控除額은 合算하여 3천만원을 控除하되 課稅標準 및 稅率은 부모 각각으로부터 받은 贈與價額을 基準으로 각각 適用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贈與價額을 合算하여 課稅토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配偶者 贈與控除額(5年間) — 3,000만원+(결혼연수×300만원) ○ 자녀가 부모 각각으로부터 贈與를 받은 境遇 — 控除額은 合算하여 3,000만원을 控除하되 — 課稅標準 및 稅率은 부모 각각으로부터 받은 贈與價額을 基準으로 각각 適用	○ 配偶者 贈與控除額 引上 — 5,000만원+(결혼연수×500만원) — (現行과 같음) —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贈與價額을 合算하여 課稅

(2) 改正理由

配偶者의 財産形成 寄與度를 반영할 수 있도록 配偶者間 贈與時의 控除額을 適正水準으로 上向調整하는 한편, 配偶者 控除額 引上에 따른 租稅回避素地를 縮小하였다.

마. 退職手當 控除額 引上(法 §8)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100만원	○ 1,000만원으로 引上

(2) 改正理由

退職手當 控除額이 1971. 12. 引上된 이래 그간 引上되지 않았으므로 物價上昇率 등을 勘案하여 引上하였다.

2. 農地 等 相續控除 擴大(法 §11의3)

가. 農漁民 相續控除(法 §11의3①)

(1) 改正內容

自耕農民인 被相續人의 相續財産 中 農地·草地·山林地의 일정한 面積內의 價額은 住宅控除 등 他 物的控除와 합하여 1억원 한도내에서 과세가액에 공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自耕農民의 範圍를 農·漁民·畜産 및 林業者로 명확히 하였으며 自營漁民의 경우 控除對象 範圍에 「20톤 미만의 어선」·「10ha 이내의 漁場·漁業權」을 追加하고 造林期間이 20年 以上인 山林地를 相續받은 경우에는 「30만평 이내의 山林地」로 控除對象을 追加하였다.

從 前	改 正
○ 自耕農民인 被相續人의 相續財産 中 農地·草地·山林地의 價額은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控除	
— 面積限度 :	— 面積限度
· 농 지 9천평 이내	· 농 지 9천평 이내
· 초 지 4만5천평 이내	· 초 지 4만5천평 이내
· 산림지 9만평 이내	· 산림지 9만평 이내 (20년조림지는 30만평)
	· 漁 船 : 20톤 미만
	· 漁場(漁業權) : 10ha 미만
— 金額限度 : 住宅控除 등 他 物的控除와 合하여 1억원 限度	— 〈現行과 같음〉
	○ 自營漁民인 被相續人의 相續財産 中 漁船·漁業權의 境遇에도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控除

(2) 改正理由

農民과의 課稅衡平을 고려하여 自營漁民이 漁船·漁業權 相續時에도 農民과 동일하게 相續控除를 받도록 改正하였다.

나. 被相續人의 要件 補完(令 §8의 3①·②)

(1) 改正內容

農地 等 相續控除對象인 被相續人의 自耕農民의 要件을 「在村自耕農民」에서 「在村自營農·漁民」으로 하고 「相續開始日 2년전부터 農業에 從事하는 者」를 「相續開始日 2년전부터 農業·畜產業·林業 및 漁業에 從事하는 者」로 補完하였다.

從 前	改 正
① 다음의 地域에 居住 ○ 農地·草地·山林地의 境遇 — 農地·草地·山林地의 所在地와 동일 市·郡·邑·面(연접한 市·郡·邑·面 包含) — 農地·草地는 통작거리(20km) 이내의 地域, 山林地는 通常的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地域까지 포함	○ 農地·草地·山林地의 境遇 (現行과 같음)
〈新 設〉	○ 漁船·漁業權의 境遇 — 漁船의 船積地·漁場이 최근한 沿岸의 市·區·邑·面(연접한 市·區·邑·面 包含)
② 相續開始日 2년전부터 農業에 從事	○ 相續開始日 2년전부터 農業·畜產業·林業 및 漁業에 從事

(2) 改正理由

漁民도 農民과 동일하게 相續控除를 받게 됨에 따라 被相續人의 要件에 漁船·漁業權을 소유하는 自營農民을 追加하였다.

다. 事後管理規程 補完(法 §8의 3⑤)

農地 등 相續控除를 받은 相續人이 相續開始後 5年 以內 농지 등을 처분하거나 農業에 從事하지 않는 境遇에는 控除받은 相續控除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있는 바, 漁船·漁業權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漁船·漁業權 상속후 부득이하게 漁業에 從事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事後管理를 排除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부득이한 事由發生時 事後管理 排除 — 農地 등의 地目變更 — 相續人의 死亡 — 相續人의 海外移住 — 其他 總理令이 정하는 事由 (兵役, 疾病, 就學 등) 〈新 設〉 ※ 事後管理內容 : 相續開始後 5年 以內 農地 등을 처분하거나 農業에 종사하지 않는 境遇에 相續稅 추징	(現行과 같음) ○ 天災地變 등에 의한 船舶의 멸실 및 폐선 ○ 漁業權의 免許取消, 免許期間 滿了

라. **營農相續人 등 特別控除**(法 §11의3②, 令 §8의3④, 規則 §6의3)

(1) 改正內容

農漁民 相續控除는 自耕農民인 被相續人의 相續財產 中 農地 등 相續控除對象 財產價額이 住宅相續控除 등 他 物的控除와 합하여 1억원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1억원 한도내에서만 控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정한 要件을 갖춘 영농(양축 및 영어를 包含) 相續人에 대하여는 農地 등 相續控除對象 財產價額이 住宅相續控除 등 他 物的控除와 합하여 1억원을 超過하는 경우 그 超過部分에 대하여 1억원(林業後繼者의 경우 2억원) 限度內에서 追加하여 控除할 수 있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新 設〉	〈營農相續人의 要件〉 ○ 農地·草地·山林地의 所在地와 동일한 市·區·邑·面(연접한 市·區·邑·面 包含)에 居住하는 者 ○ 農地·草地는 통작거리(20km) 以內의 地域에 居住하는 者 ○ 山林地는 通常的으로 직접 經營할 수 있는 地域에 居住하는 者 ○ 漁船의 船積地에 居住하는 者 ○ 漁場과 가장 가까운 연안의 市·區·邑·面(연접한 市·區·邑·面 包含)에 居住하는 者

從 前	改 正
	○ 相續開始日 2년전부터 農業·畜産業·林業 및 漁業에 從事하는 者 ○ 營農 및 營漁計劃者(規則 §6의2 新設) —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農漁民 後繼者 — 敎育法에 의한 農業 또는 水産系列의 高等學校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者 〈營農相續人 證憑書類〉(規則 §6의3) 1. 戶籍謄本 또는 住民登錄票 2. 農地稅 納稅證明書 3. 農地 등 保有明細書 4. 漁船의 船籍證書 寫本 5. 漁業權 免許證書 寫本 6. 農業 또는 水産系列의 高等學校 在學證明書 또는 卒業證明書 7. 山林法에 의한 林業後繼者임을 확인하는 書類 8. 相續開始日 이후 5년 이상 農業·畜産業 및 漁業에 從事하려는 者임을 확인하는 書類

(2) 改正理由

營農相續人에 대한 相續控除를 引上하여 UR妥結에 따른 農漁民에 대한 稅制支援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 등에 대해 他 物的控除와 별도로 1억원(林業後繼者는 2억원)을 追加控除토록 하였고 營農相續人의 要件을 新設하였다.

3. 相續·贈與稅 稅率體系의 單一化(法 §14, §31)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相續稅率(5단계) — 0.5억원 이하 10% — 2.5억원 이하 20% — 5.5억원 이하 30% — 10억원 이하 40% — 10억원 초과 50%	○ 相續稅率(4단계) — 0.5억원 이하 10% — 2.5억원 이하 20% — 5.5억원 이하 30% — 5.5억원 초과 40%

從 前	改 正
○ 贈與稅率(5단계) — 0.2억원 이하 15% — 1.5억원 이하 25% — 3억원 이하 35% — 5억원 이하 45% — 5억원 초과 55%	○ 贈與稅率(4단계) — 0.2억원 이하 15% — 1.5억원 이하 20% — 3억원 이하 30% — 3억원 초과 40%

(2) 改正理由

長期的으로 相續稅와 贈與稅를 통합하는 방향에 따라 금년에는 贈與稅率을 相續稅率에 일치하도록 하고 贈與稅 課稅階級은 所得稅率 水準 등을 감안하여 縮小 調整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부의 무상이전인 相續·贈與間 稅率體系의 中立性을 유지하고 稅率體系를 종전 5단계에서 4단계로 單純化하였다.

4. 公益法人 管理制度 補完

가. 公益法人의 出捐目的 使用義務期間 延長(法 §8의 2)

(1) 改正內容

相續稅法上 公益事業에 해당하는 公益法人이 財產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課稅對象에서 제외하여 公益法人에 대한 租稅支援을 하는 한편, 出捐받은 財產에 대하여는 財產을 出捐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出捐目的에 사용하도록 엄격히 事後管理를 하고 있는 바, 그 使用義務期間을 3년으로 延長하였다.

從 前	改 正
○ 公益法人이 財產을 출연받은 경우 相續·贈與稅를 면제하되 — 출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贈與稅 課稅 —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로서 「主務部長官의 사용연장승인」을 얻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 제외	○ 公益法人의 출연목적 사용의무기간을 「3년」으로 연장 (현행과 같음)

(2) 改正理由

公益法人이 출연받는 財產을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였다.

나. 公益法人 事後管理 除外 財產(法 §8의2④ 단서 영 §3⑰)

(1) 改正內容

公益事業에 출연된 모든 財產은 出捐財產의 사용의무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적용하여 의무위반시 贈與稅를 추징토록 되어 있으나, 출연자별 산정이 어려운 宗敎事業의 경우에는 事後管理對象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公益事業에 出捐하는 모든 財產을 事後管理(예 : 2년내 고유목적에 전부 사용등) ○ 公益法人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 出捐者別로 財產價額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재산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법을 개정하여 신설	○ 宗敎事業에 출연하는 헌금액은 사후관리 제외 다만, 출연자·출연가액이 확인되는 不動產·株式은 현재와 같이 사후관리

(2) 改正理由

헌금 등 종교상 기부금은 출연자별로 價額의 算定이 곤란하고, 公益法人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재산과 같이 相續稅·贈與稅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거의 없으므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다. 公益事業의 固有目的事業 사용범위 확대(영 §3의2⑥)

(1) 改正內容

公益法人이 出捐받은 財產을 타공익법인에 재출연시 公益事業의 固有目的事業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課稅토록 하였으나, 동일한 固有目的의 公益事業에 재출연하는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충족시 固有目的에 사용된 것으로 改正하였다.

從 前	改 正
○ 公益法人이 財産을 出捐받는 경우 相續·贈與稅를 면제하되 — 出捐財産을 당해 公益法人의 目的事業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贈與稅 課稅 — 다만, 公益法人의 해산으로 유사공익법인에 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	○ 公益法人이 당해 公益法人의 固有目的事業과 동일한 公益法人에 出捐하는 경우에도 — 출연재산 중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은 免除 — 「수익용재산」은 課稅(다만, 學校法人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중 不動産에 대하여는 제외)

(2) 改正理由

公益法人이 公益事業의 效率的 수행을 위해 동일한 固有目的事業의 公益法人이 固有目的事業用 固定資産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課稅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私立學校法에 의한 學校法人의 경우에는 敎育用 基本財産은 사실상 賣却處分이 禁止되고 있고 基本財産 중 수익용 기본재산을 타 학교법인에 출연할 수 있으므로 수익용 기본재산 중 現金, 株式 등이 아닌 不動産에 대해서는 免稅하여 公益事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私立學校의 취약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라. 公益法人 出捐財産 運用所得 사용한도(영 §3의2⑦)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公益法人이 출연받은 재산을 收益事業用으로 사용할 경우 — 出捐財産運用所得의 「60% 이상」을 1년내 公益目的事業에 사용하여야 함. ※ 60% 基準은 과거 3년간 平均金額을 基準으로 計算 可能	○ 「50% 이상」을 1년내 公益目的事業에 사용하여야 함.

(2) 改正理由

法人稅法施行令에서 규정하는 非營利法人의 指定寄附金 損金認定 範圍가 改正됨에 따라 公益法人의 出捐財産運用所得의 公益事業 사용한도액을 조정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마. 産·學·研 綜合研究團地에 대한 贈與稅 免除(영 §3의2⑦)

(1) 改正內容

公益事業에 출연한 財産을 出捐者에게 사용·수익케하는 경우에는 贈與稅 課稅對象이 되는 것이나, 敎育法에 의하여 설립된 私立學校 등이 출연받은 寄附金에 의하여 설립된 研究試驗用 建物 및 설비 등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贈與稅 課稅對象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新 設〉	※ 研究試驗用 施設(施行規則 §3의2②) 1. 출연받은 寄附金에 의하여 설립한 建物 2. 法人稅法施行規則(별표 3,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2) 改正理由

學校法人이 産業體로부터 研究施設을 기부받아 산업체와 공동으로 동 研究施設을 사용하는 경우에 贈與稅 課稅對象에서 제외하여 事業體 및 學校法人의 研究事業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바. 公益法人 受惠者 限定協議機關 調整(영 §3의2⑦6호)

(1) 改正內容

公益法人 公益事業의 受惠者를 일부 계층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贈與稅 課稅對象이 되는 것이나, 당해 公益法人이 관한 주무부장관과 財政經濟院長官이 합의하여 受惠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는 非課稅토록 하던 것을 公益法人의 設立許可 業務가 地方自治團體長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당해 公益法人의 관할세무서장과 수혜자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2) 改正理由

公益法人의 設立에 관한 업무를 地方自治團體에 위임한 경우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稅務署長이 협의토록 하여 法人設立許可時 長期間 소요되는 問題點을 개선하였다.

사. 公益法人의 報告書 미제출시 加算稅 規定補完(법 §26③, 영 §3의2⑰)

(1) 改正內容

公益法人이 出捐財産을 사용의무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主務部長官의 使用延長承認」을 받아 使用義務期限內에 稅務署長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과세제외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사용의무기한이 지난 후 遲延報告하는 경우에는 과세토록 되어 있었으나 「主務部長官의 使用延長承認」을 얻은 경우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않더라도 「加算稅」만 부과토록 하였다.

(2) 改正理由

종전에는 주무부장관의 사용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면 추징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이 지나치게 규제적인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主務部長官의 사용연장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稅務署長에게 報告되지 않은 경우에도 加算稅만 追徵되도록 하였다.

5. 相續·贈與稅 賦課除斥期間 延長(國稅基本法 §26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無申告·申告漏落 여부에 관계없이 10년 〈新 設〉	○ 無申告·虛僞申告調査 包含 : 15년 ○ 기타 10년 — 相續稅·贈與稅의 虛僞申告 또는 漏落申告의 範圍 · 가공의 債務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 登記 등을 요하는 재산을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경우 · 예금 등 金融資産을 신고누락한 경우 등 · 다만, 신고한 相續·贈與財産이 그 평가방법의 차이로 課稅標準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

(2) 改正理由

相續稅를 신고한 자가 상속세의 포탈목적·무신고의 경우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虛僞申告 또는 漏落申告를 한 경우에는 賦課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賦課可能토록 賦課除斥期間을 연장토록 하였다.

6. 其他 制度補完

가. 勤勞福祉振興基金에 出捐한 財產에 대한 相續·贈與稅 免除(영 §4)

(1) 改正內容

相續·贈與稅 과세대상 제외재산에 「勤勞福祉振興基金에 출연하는 금품」을 포함하였다.

從 前	改 正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相續·贈與稅 免除 〈新 設〉	(현행과 같음) ○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相續·贈與稅 免除

(2) 改正理由

中小企業勤勞者에 대한 福祉事業을 지원 강화하기 위하여 中小企業勤勞福者祉振興法에 의하여 설립된 「勤勞福祉振興基金」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相續·課稅價額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나. 相續稅 合算課稅時 旣納付 贈與稅額 控除制度 補完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相續財產에 加算한 贈與財產에 대한 贈與稅額은 相續稅 算出稅額에서 全額控除 — 控除稅額이 相續稅 算出稅額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본다.	○ 相續財產 중 加算한 贈與財產이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改正理由

1993. 12 法 改正時 가산하는 贈與財産의 평가방법을 상속당시에서 증여당시로 변경(§9)하였고, 금번 법 개정시 상속세율을 인하하게 됨에 따라 공제할 贈與稅額이 합산에 따른 相續稅額보다 큰 경우 合算課稅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공제되는 기 납부증여세액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贈與財産의 점유비만큼 공제하도록 하였다.

다. 自營漁民에 대한 贈與稅 免除(조감법 §56, §57)

農民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自營漁民에게도 漁船·漁業權에 대한 贈與稅를 免除토록 하였다.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營漁民에게 漁船·漁業權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贈與하는 경우에는 贈與稅 免除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漁船·漁業權을 5년 이내에 讓渡하거나 직접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免除稅額 追徵

③ 漁船·漁業權을 양수한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免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라. 相續稅 課稅價額 算入財産(영 §3)

(1) 改正內容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相續稅 課稅價額에 산입토록 하였으나, 이를 用途가 명백한 일정한 경우에는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제외토록 改正하였다.

從 前	改 正
〈相續開始前 2년내에 피상속인이 1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신고누락된 相續財産으로 보아 무조건 相續稅 課稅 —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사유가 있는 相續財産은 相續稅를 課稅하지 아니함. —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경우

從 前	改 正
–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性別·年齡·職業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의 수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특수관계 없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 性別·年齡·職業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改正理由

현행 규정을 추정규정이 아닌 간주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憲法上 裁判請求權, 平等權, 財產權 침해소지가 있다는 憲法裁判所의 결정에 따라서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1995년

◉ 시 행 령 :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
◉ 시행규칙 : 1995.11.28. 총 리 령 제 528호
1996. 3.26. 총 리 령 제 558호

〈要 約〉

○ 상속·증여세제 부담완화
– 상속·증여세율 인하
– 배우자공제 확대
○ 相續·贈與稅 物納制度 補完
– 상속·증여재산의 물납 우선순위 신설
– 상속·증여세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 허용
○ 公益事業 事後管理方法 改善
– 공익사업의 범위 조정

- — 수익용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개선
- — 상속인 출연재산의 비과세요건 보완

○ 場外登錄法人株式의 評價方法 改善

○ 相續·贈與稅 非課稅範圍 調整

○ 其他

- — 非上場 國·公債 등의 評價方法 補完
- — 無住宅勤勞者의 住宅取得 支援 擴大
- — 營農要件 판정시 通作距離 削除

〈改正內容〉

※ 전반적 흐름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등 상속·증여세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1994년 개정된 상속·증여세율 및 배우자간 상속·증여공제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보완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5%에 미달할 때에는 기 면제받은 상속·증여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의 50% 이상만 사용하면 되도록 하는 등 공익법인의 수익용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였다.

나. 상속·증여세 과세시 현재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와 같이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장외등록법인 주식평가의 객관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다. 상속·증여세를 물납함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물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부연납 기간중에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이 가능하도록 물납제도를 개선하였다.

1. 相續·贈與稅制 負擔緩和

가. 相續·贈與稅率 引下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相續稅率(5단계) — 0.5억원 이하 10% — 2.5억원 이하 20% — 5.5억원 이하 30% — 10억원 이하 40% — 10억원 초과 50% ○ 贈與稅率(5단계) — 0.2억원 이하 15% — 1.5억원 이하 25% — 3억원 이하 35% — 5억원 이하 45% — 5억원 초과 55%	○ 相續稅率(4단계) — 0.5억원 이하 10% — 2.5억원 이하 20% — 5.5억원 이하 30% — 5.5억원 초과 40% ○ 贈與稅率(4단계) — 0.2억원 이하 10% — 1.5억원 이하 20% — 3억원 이하 30% — 3억원 초과 40%

(2) 改正理由

○ 지난 1994년 세법개정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일치하도록 하고 세율체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인하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配偶者控除 擴大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配偶者 相續控除〉 — 相續與否와 관계없이 配偶者가 있는 경우 무조건 控除 — 1億+(結婚年數×1,200만원)	○ 다음 중 選擇的으로 控除 — 配偶者에 실제 相續받은 相續額에 관계없이 현행과 같이 「概算控除」 — 配偶者가 「실제 相續받은 相續額」을 기준으로 하여 配偶者의 法定相續分 範圍 內에서 控除하되, 최고한도 「10억원」設定

從 前	改 正
〈配偶者 贈與控除〉	
○ 配偶者 贈與控除額(5年間)	○ 配偶者 贈與控除額 引上
— 3,000만원+(결혼연수×300만원)	— 5,000만원+(결혼연수×500만원)
○ 자녀가 부모 각각으로부터 贈與를 받은 境遇	
— 控除額은 合算하여 3,000만원을 控除하되	— (現行과 같음)
— 課稅標準 및 稅率은 부모 각각으로부터 받은 贈與價額을 基準으로 각각 適用	—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贈與價額을 合算하여 課稅

(2) 改正理由

○ 지난 1994년 세법개정시 배우자의 자산 형성을 감안하여 배우자 공제액을 인상하는 한편,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를 보완하여 조세회피소지를 축소하였다.

(3) 改正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한다.

2. 相續·贈與稅 物納制度 補完

물납제도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 등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납세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얻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부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이나, 현금에 비해 환가성이 떨어지는 등 국가 재산관리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결여되는 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물납신청의 엄격한 요건으로 현실적으로 현금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물납을 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불편한 점 등을 보완하였다.

가. 相續·贈與財産의 物納優先順位 新設(令 §30)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物納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은 없음 ※ 物納對象財産 1. 국내소재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등	○ 상속·증여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우선순위를 신설 1. 國債 및 公債 2. 上場된 有價證券(1호의 재산을 제외) 3. 국내에 소재하는 不動産(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제외) 4. 上場되지 아니한 有價證券 5. 相續人이 거주하는 住宅 및 부수토지 ○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正當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2) 改正理由

○ 상속·증여세에 있어서는 納付稅額이 高額인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세금 낼 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납세편의를 증진한다는 側面에서 現金納付 외에 납부세액이 240만원이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받은 不動産이나 有價證券 등의 현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길을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납부와는 달리 물납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의 환금성과 그 가치의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가격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비교적 쉽게 확보되면서도 환금성이 높은 자산부터 순서대로 납부하도록 물납재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법 집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토록 하였다.

다만, 분쟁중인 재산 또는 당해 재산의 환가가 곤란한 경우 등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세의 물납을 申請하는 분부터 적용됨.

나. 年賦延納稅額에 대하여 物納 허용(令 §31, §32)

(1) 改正內容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는 납부세액이 고액인 점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세무서장이 3년(사업상속의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중의 각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는 물납을 허용치 않는 것으로 해석(상속세법기본통칙 80－3…28)하여 왔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상속·증여세를 한꺼번에 일시 납부하지 아니하고 年賦延納에 의한 분할납부(3년 또는 5년)하는 경우에도 그 분할납부하는 세금을 현금 대신에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物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연부연납 기간중의 각회분의 연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징수에 있어서 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분할납부하는 세액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상속·증여세 과세당시의 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세시점이 아닌 수납시점에서의 평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내 물납 신청시만 물납 가능 ○ 연부연납신청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중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음. ○ 收納價額 　— 상속·증여당시 가액	○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 허용토록 함. 　— 申請期限 : 각회분 납기 30일 전까지 신청 　— 許可通知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허가여부 통지 ○ 收納價額 　— 분할납부분 : 수납시점 가액 　＊신고납부 및 부과납부분 : 상속·증여당시 가액

(2) 改正理由

○ 연부연납하는 경우에도 실제 상속재산 등의 매각이 곤란한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중 각회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령에 의해 납기일 30일전까지 물납을 신청하여야 하나 1996. 2월말 이전에 납부기한이 到來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3. 公益法人 事後管理方法 改善

○ 상속세법상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환경보호단체를 추가하는 등 공익사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공익법인관련 세제를 보완하였다.

가. 公益事業의 範圍 調整(令 §3의 2②, 規則 §3의 2)

(1) 改正內容

○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다음을 추가

①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②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스카우트주관단체가 스카우트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③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

④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⑤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가 민주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⑥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헌정회가 민주헌정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재의료관리원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2)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5. 11. 28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收益用財産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개선(令 §3의 2⑦, ⑰)

(1) 改正內容

○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고유목적사업 재원을 위한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종전에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사용현황을 사후관리하여 매년 발생소득의 50% 이상을 1년 내 固有目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한 실적이 출연재산 평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사용분에 상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운용소득의 50% 이상 사용의무만 존치하고 출연재산가액 기준 사용의무는 삭제하였다.

○ 아울러 공익법인의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토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그 사용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일정한 사용의무를 전제로 증여세를 면제한 것이고 사후관리요건 미비로 인해 면제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사유발생일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사후관리하여 왔으나, 당해 재산의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사후관리기간을 조정하였다.

從 前	改 正
○ 出損財産運用所得 使用基準 — 출연재산운용소득의 5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 운용소득의 50% 이상 사용기준만 존치하고, 출연재산평가액 基準은 삭제

從 前	改 正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운용소득이 출연재산가액의 『5%』에 미달할 때는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	
〈新 設〉	○ 수익용재산을 賣却시에는 3년 내에 매각금액의 5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다만, 주무부장관(그 權限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수익용운용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출연받은 날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만 사후관리

(2) 改正理由

○ 소득의 일정률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산가액의 일정률 이상 사용기준은 당해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뜻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다.

○ 또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증여세의 일반적인 부과체척기간을 감안하여 10년 동안만 사후관리토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다. 相續人 출연재산의 非課稅要件 보완(令 §3의 2 ⑬)

(2) 改正內容

○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유증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본통칙에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하되,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만 출연을 이행하면 되도록 개정하였다.

○ 한편,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상속인이 당해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요건을 두고 있는 바,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상속인도 당해 요건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從 前	改 正
○ 상속인이 相續財産을 상속세신고기한(6개월) 내에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 비과세 — 다만, 출연상속인이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음을 조건	○ 공익법인 출연기간 보완 — 공익법인 설립허가 신청중에 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事由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까지 연장 ○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도 출연상속인과 같이 취급

(2) 改正理由

○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새로이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6개월 이내에 출연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理事로 就任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출연상속인과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종래 해석 등으로 운영되던 것을 시행령에서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출연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4. 場外登錄法人의 評價方法 改善

상속세법상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 1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반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의해 평가하여 왔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도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하였다.

(1) 改正內容

○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 월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개월간 공표된 증권협회기준가격과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가격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중지되거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시장가격과는 관계없이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 – 3년 이상 영업법인 1株當價額=(순자산가치+수익가치)÷2 – 3년 미만 영업법인 1株當價額=순자산가치	○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 – 1주당평가가액=상속개시일(증여일)의 基準價格과 상속개시일(증여일) 전 1개월간의 평균액 중 적은 가액 ○ 다만, 상속개시일(증여일)전후 6월 이내에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거나 – 매매거래가 중지된 사실이 있는 주식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

(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으로서 그 주식이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장외등록법인 등록요건〉

登 錄 要 件	場 外 登 錄 法 人	上 場 法 人
○ 설립경과년수	○ 3년 이상	○ 5년 이상
○ 자본금	○ 5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 주식의 분산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 자산가치·수익가치	○ 액면가 이상	○ 자산가치 > 액면가 1.5배 ○ 수익가치 > 액면가
○ 경영상태	○ 전년도 흑자	○ 납입자본이익률 – 최근 3년 : 당기순이익이 있고, 누계가 30% 이상 – 전년 : 5개시은 1년만기 정기예금 최저금리 평균치 이상
○ 자본상태	○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좌 동
○ 부채비율	○ 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 좌 동
○ 명의개서 대행위탁	○ 위탁필요	○ 좌 동
○ 유가증권	○ 통일규격	○ 좌 동
○ 법인의 영위업종	○ 사치·향락성서비스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좌 동

(나) 대용증권

대용증권이라 함은 주식의 매매거래 위탁시 위탁증거금, 증권거래 보증금, 담보대출보증금, 입찰보증금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증권거래소가 지정·고시한다.

장외등록법인의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거래일수 기준)의 거래량이 등록주식총수의 0.1%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대용증권의 지정여부는 증권시장지, 증권전산단말기를 통해 공시된다.

(다) 기준가격

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일일장외거래실적 집계보고서」를 기준으로 매일의 종목별 최고·최저가격, 매매수량 및 익일의 기준가격을 "증권시장지"에 게재하여 공포하는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외거래등록종목 매매 기준가격〉

區 分	基準價格算定基準
1. 등록후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 가. 등록신청일 전 6월 이내에 주식을 모집, 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법인의 경우	공 모 가 격
나. 대주주지분 양도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분산한 경우	위원회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본질가치 내에서 증권회사가 매수한 가액
다. 기타의 경우	"나"목에서 규정한 본질가치. 다만, 발행회사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이에 대한 미상환 잔액이 있는 경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과 본질가치 중 낮은 가액
2. 최초 매매개시 이후의 기준가격 가. 직전일에 거래형성이 된 경우	직전일 총거래대금 / 직전일 총거래주식수
나. 직전일에 거래형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 (ㄱ) 호가만 있는 경우	당해일의 기준가격에 비해 낮은 매도호가 중 최저매도호가 또는 당해일의 기준가격에 비해 높은 매수호가 중 최고 매수호가 다만, 기준가격에 비해 낮은 매도호가 또는 기준가격에 비해 높은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 호가가 없는 것으로 한다.
(ㄴ) 호가가 없는 경우	직전일의 기준가격

區　　分	基準價格算定基準
다. 매매거래정지 후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직전일의 기준가격
라. 액면분할(또는 합병)의 경우	직전일의 기준가격×분할(또는 병합)비율
마. 권리락 및 배당락의 경우	
(ㄱ) 권리락의 경우	권리락 직전일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 가액
(ㄴ) 배당락의 경우	배당락 직전일의 기준가격 − 직전사업연도 1주당 배당금
3. 추가등록 신주의 최초매매개시 기준가격	추가등록 신주의 매매개시일의 구주의 기준가격−경과배당금 다만, 공모증자한 경우에는 공모가액

주 : 1. 매매기준가격 산정시 100원 미만은 4사 5입함.
2. 매매기준가격 산정시 거래대금, 거래주식수 및 호가는 직전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발생분을 기준으로 함.
3. 직전사업연도 1주당 배당금 및 경과배당금 산정시 1주당 배당률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분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아니함.

㈑ 투자유의종목

증권업협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여 공시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해제〉

指 定 要 件	指 定 時 期	解 除 時 期
1. 거래부진법인(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분기가 있거나 연간 거래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매분기초일 및 매반기초일	거래요건 충족월의 익월초일
2.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 즉시	적정 또는 한정의견이 표시된 감사보고서 제출월의 익월 초일
3. 자본전액 잠식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 즉시	자본잠식액이 자본금의 50% 미만으로 회복된 월의 익월 초일
4. 주된 영업활동정지	확인즉시	영업재개월의 익월 초일
5.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 불성실 공시	불성실공시 연간 3회 확인즉시(고의, 중과실은 1회 확인즉시)	지정후 6월간 불성실 공시 사실이 없는 경우 익월 초일(지정기간중 불성실공시가 발생시 지정기간 재기산)

指 定 要 件	指 定 時 期	解 除 時 期
6. 주식분산기준 미달	확인즉시	사유해소월의 익월 초일
7. 결산서류 등의 미제출	제출시한의 익일	제출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초일
8.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 및 누락	확인즉시	사유해소월의 익월 초일
9. 당좌거래 정지	확인즉시	사유해소월의 익월 초일
10. 피흡수합병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인된 즉시	사유해소월의 익월 초일
11. 법령위반 등의 사유에 의해 협회가 등록법인에 대해 등록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인즉시	사유해소월의 익월 초일

(다) 매매거래의 정지

증권업협회는 등록된 주식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① 시세 및 거래량이 급변한 경우

②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기타 협회가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改正理由

○ 장외등록법인주식의 경우 장외시장이라는 제도화된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장부상 등의 가액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도 상장법인주식의 경우와 같이 제도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평가토록 하였다.

○ 그러나, 아직은 장외등록시장이 불완전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거래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용증권에 대하여만 적용토록 하고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 때에는 종전과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토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1 이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相續·贈與稅의 非課稅範圍 調整(令 §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상속·증여세 비과세범위 — 奬學金 —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자를 돕기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 — 記念品·축하금·賻儀金 등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이재구호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이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 100만원 미만인 물품

(2) 改正理由

○ 所得稅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면세범위와 맞추어 조문을 정리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수준으로 현실화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한다.

6. 其 他

가. 非上場 國·公債 등의 評價方法 補完(令 §5⑥ II)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비상장국·공채 — 실제매입가액+매입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	(현행과 같음)
〈新 設〉	○ 액면가액으로 強制添加消化하는 국·공채 —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상판매가액
〈新 設〉	○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 상속개시일 현재의 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

(2)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부터 상속·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나. 無住宅勤勞者의 주택 취득 지원 擴大(令 §4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무주택근로자가 社內勤勞福祉基金으로부터 보조를 받아 15평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동 기금으로부터 받는 補助에 대해 贈與稅 免除 – 주택취득보조금 : 취득가액의 5% – 주택임차보조금 : 임차가액의 10%	○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전용면적 15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

(2) 改正理由

○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원 強化 방안의 일환으로 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까지 확대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營農要件 판정시 通作距離(20㎞) 삭제(令 §8의 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農地·草地·山林地 상속공제 – 농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농지·초지·산림지가 있는 – 市·區·邑·面 및 連接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 農地賃貸借管理法施行令상의 통작거리(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 등 상속공제허용	○ 통작거리개념은 삭제 – 시·구·읍·면 → 市·郡·區

(2) 改正理由

○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의 시행(1996. 1)으로 통작거리개념이 없어짐에 따라 세법에서도 통작거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농지소재지의 범위도 기초자치단체단위(시·군·구)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相續·贈與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996년

◉ 법　　률 : 1996.12.30　법　　률　제 5193호
◉ 시 행 령 :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
◉ 시행규칙 : 1997. 4.19　총 리 령　제　629호

〈要　　約〉

○ 상속세법 전면개편
　— 배경
　— 명칭변경
　—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체계
○ 세율 및 과세구간의 통합
○ 배우자 상속·증여공제
○ 상속·증여공제 제도의 개선
　— 물적공제제도의 폐지 및 기초공제액 인상
　— 인적공제의 단순화
　— 일괄공제 제도의 도입
　—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의 신설
　— 보험금·신탁에 대한 상속·증여공제 제도의 폐지
　— 장례비용의 범위
○ 공익법인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강화
　— 동일종목 보유주식의 5%이내 보유 의무화
　—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 의무화
○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실효성 제고
○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등에 대한 증여의제
　—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
　—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불공정 합병시 증여의제 과세강화

— 결손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 평가제도 개선

— 평가의 원칙

· 경영권이 반영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 시가의 범위

— 부동산의 평가

— 지상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평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영업권의 평가

— 임대부동산의 평가특례

○ 납세자 권익 제고

—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 공제

— 상속세 경정청구권의 특례

— 가산세 제도의 개선

— 연금과 유족보상금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가업상속에 대한 분납기간 연장

○ 세무행정의 개선

— 증여세 신고기한 단축

— 물납제도의 개선

— 금융재산 일괄조회

— 재산관리 전산체계의 구축

〈改正內容〉

※ 개 요

○ 상속세법은 지난 1950년에 제정된 이후 총 17회의 크고 작은 부분개정을 통해 사회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 특히,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로 과거와는 달리 상속·증여세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해 상속세

법을 전면개편하게 된 것임.

○ 1950. 3. 22 상속세법이 제정(법률 제144호)된 이래 현재까지 상속세법이란 명칭아래 증여세도 함께 규정하여 왔으나, 이를 명확히 하여 법명칭을 국민 모두가 알기 쉽도록 하면서 법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하였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순서에 따라 조문체계를 전문 제7장 제86개 조문으로 재구성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하고 조문순서를 쫓아가면 자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배열하였음.

— 이번에 상속세법을 전면개편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관할 등 기본적인 사항은 제1장 총칙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은 제2장 및 제3장에, 재산의 평가·신고와 납부 및 결정과 징수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통적인 사항은 제4장 내지 제6장에, 상속개시 등의 통지, 지급조서의 제출, 금융재산 일괄조회 등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사항은 제7장 보칙으로 규정하였음.

1. 稅率 및 課稅區間의 統合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상속세〕 5천만원 이하 10% 2억5천만원 이하 20% 5억5천만원 이하 30% 5억5천만원 초과 40% (4단계) 〔증여세〕 2천만원 이하 10% 1억5천만원 이하 20% 3억원 이하 30% 3억원 초과 40% (4단계)	○ 최고세율을 45%로 인상 ○ 상속·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50억 이하 40% 50억 초과 45% (5단계)

(2) 改正理由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한 1회의 재산이전임에 반해 증여는 생전에 수회분할하여 재산을 이전할 수 있으므로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갖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증여세율을 상속세율보다 무겁게 적용하여 왔으나, 개정법에서는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을 완전통합하였다.

이번 개정에서 상속세 공제금액은 대폭 확대되었으나 증여재산공제는 세대간 이전의 경우 종전과 같이 3,000만원밖에 공제되지 않으므로 분할증여에 따른 상속세와의 실질적인 세부담 차이가 별로 없게 되었으며, 증여를 상속보다 중과할 경우에는 재산의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노년세대에서 경제활동이 왕성한 젊은세대로 재산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일부 부작용이 있고, 현실적으로 자녀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거나 본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세제외적인 요인에 억제되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간 의사결정에 세부담이 중립적이 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주요국의 세율비교

(단위 : %)

구 분	상속세율	증여세율	소득세율
한 국	10~45	10~45	10 ~40
영 국	40	20	20 ~40
프 랑 스	5~40		12 ~56.8
독 일	3~35	완전통합	19.2 ~53
미 국	18~55		15 ~39.6
일 본	10~70	10~70	10 ~50
캐 나 다	—	—	17 ~29
호 주	—	—	20 ~47

2. 配偶者 相續·贈與控除 補完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상속공제〉 ○ 『1억원+결혼연수×1,200만원』과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10억원한도) 중 선택 〈新 設〉	〈상속공제〉 ○ 법정상속분인 일정비율(예 : 자녀 1인과 공동상속시 60%, 자녀 2인과 공동상속시 43%)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控除(공제한도 : 30억원) ○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경우

從　　前	改　　正
	— 법정상속분인 일정비율의 1/2(예 : 자녀1인과 공동상속시 30%)을 공제(공제한도 : 15억원)
〈新　設〉	○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5억원 공제
〈증여공제〉	〈증여공제〉
○ 5년간『(결혼연수×500만원)+5,000만원』	○ 5년간『5억원 공제』

(2) 改正理由

○ 배우자의 사망으로 잔존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종전에는 결혼연수 1년에 1,2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과 배우자 법정지분 내에서 1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중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법정상속분 공제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결혼연수에 의한 개산공제방식은 폐지하였다.

그동안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나 여성계를 중심으로 부부간의 재산이전은 ①상속세가 세대간 수직적 재산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1세대에는 1회만 과세하여야 하고 ②배우자간 재산이전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에 불과하며 ③생존배우자의 물적생활기반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보장제도이므로 전액공제를 주장하는 등 유산세제과세형을 취하고 있는 주요 외국에 비해 공제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배우자상속액을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할 경우에는 그 혜택이 일부 고액재산가에게만 집중되어 상속세의 주요정책기능인 부의 집중완화를 유도하기가 어렵고 우리나라의 상속관행과 맞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일정한도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전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결혼연수에 의한 개산공제방식은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른 형평을 반영할 수 있는 점은 있으나 생존배우자의 생활보호 측면에서는 결혼기간이 짧은 부부의 경우 자녀양육비, 교육비 등에 오히려 많은 부담이 있음에도 공제액은 더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법정상속분 공제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법정상속분 공제 방식으로 전환시 종전의 결혼연수에 의한 개산공제방식에 의한 경우보다 공제액이 종전보다 줄어드는 계층의 보호를 위해 최소공제액을 5억으로 설정하였다.

(가) 민법상 법정상속지분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고, 남녀간, 자녀간 상속비율은 완전 균등하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자녀2인이 상속할 경우 배우자(1.5), 자(1), 녀(1)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배우자와 직계부모가 상속할 경우에는 배우자(1.5), 부(1), 모(1)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사례〉

상속재산 10억 중 배우자의 상속지분

$$10억 \times \frac{(1.5)}{(1.5)+(1)+(1)} \fallingdotseq 4.3억$$

(나) 법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배우자공제한도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실제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실제상속재산가액은 적극적 상속재산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인 채무 등과 상속재산 중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된 재산가액을 차감하고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한편 배우자가 상속개시 5년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만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총상속재산 + 상속개시 전 5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채무·공과금·비과세재산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

×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율 − 상속개시 전 5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 배우자상속공제액

〈사 례〉

- 총상속재산(195억)
- 상속개시 3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5억(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3억)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된 재산 : 5억
- 금양임야(비과세재산) : 5억
- 채무 : 10억

○ 〈사례〉의 경우 배우자 1, 자녀 2명이 상속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 가액은?

(195억+5억)−〔10억(채무)+5억(금양임야)+5억(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된 재산)〕=180억×$\frac{1.5(\text{배우자상속지분})}{4.5(\text{상속지분})}$=60억−3억(배우자 사전상속분)=57억≦30억

㈐ 배우자상속분의 분할 및 신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는 조속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상 상속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등 장기간 미분할상태로 방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행 세무행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를 악용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배우자공제분이 분할되어 확정된 후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협의분할" 과정을 통해서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의 명목상 분할과 다르게 분할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속인 중 1인이 사후에 고유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에 의해 당초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이 고유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개정법률 §31③)을 정비하였다.

㈑ 상속재산 미분할사유의 신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및 신고기한을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그 전에 상속세의 부과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득이한 사유

- 상속인 등이 재산상속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국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상속재산미분할사유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만 한다.

㈒ 상속재산미분할시의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유류분에 해당하는 법정상속분공제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최고한도는 15억원이 되는 것이나 최소공제액은 분할한 경우와 같이 5억원을 공제한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相續·贈與控除制度의 改善

가. 物的控除制度의 폐지 및 基礎控除額 인상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물적공제 : 7종] ○ 주택공제 – 일반공제 : 상속재산 중 주택 1채 – 추가공제 : 3대 이상 대물림주택 및 5년 이상 동거분양주택가액의 90% ○ 농 지 : 9천평 이내 ○ 초 지 : 4만5천평 이내 ○ 산림지 : 9만평 이내 ○ 어 선 : 20t 미만 ○ 어 장 : 3만평 이내 ○ 가업상속공제 : 5년 이상 계속 사업용 재산가액의 20% ※ 물적공제 종합한도 : 1억원	〈삭 제〉
[기초공제] ○ 1억원	[기초공제] ○ 일반인 : 2억원 ○ 家業상속인 : 3억원 – 5년 이상 피상속인이 계속 영위한 사업의 사업용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 *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소유지분 50% 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상속인공제] ○ 營農·營漁상속인 : 1억원 추가 공제 ○ 林業상속인 : 2억원 추가 공제	○ 營農·營漁·林業상속인 : 4억 –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2) 改正理由

○ 현행 물적공제제도는 상속인의 물적기초재산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는 있으나 금액제한(1억)으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고

— 물적공제 대상자산의 유무에 따른 과세상 불형평문제가 있으므로

○ 물적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한도액(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인상하여 공제제도를 단순화하였다.

○ 영농·영어상속인에 대하여는 임업상속인수준(4억)으로 공제를 확대하여 농·어민을 지원하였다.

— 가업상속인에 대하여도 가업상속을 장려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일반인보다 1억원 추가공제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나. 人的控除의 단순화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자녀공제]	
○ 1인당 : 2,000만원	○ 1인당 : 3,000만원
○ 대상 : 2인으로 제한	○ 공제대상자녀수제한 폐지
[미성년자공제]	
○ 300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 500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종전과 같음)
○ 3천만원	
[장애자공제]	
○ 300만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	○ 500만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

(2) 改正理由

○ 자녀공제는 공제대상자녀수 제한을 폐지하고 연로자공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액공제(3,000만원)하도록 하였으며 연로자공제대상기준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합하는 등 제도를 단순화하고 연수기준으로 계산하는 미성년자·장애인 공제금액은 현행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는 모두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동거가족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장애인공제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장애인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

다. 一括控除의 도입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라 항목별 공제(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 선택 허용 ○ 배우자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적용 배제 ○ 일괄공제액 – 일반인 : 5억원 – 가업상속인 : 6억원 – 영농 등 상속인 : 7억원 ○ 사후관리 – 가업상속·영농상속에 해당하여 추가공제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년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영농 등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추가공제한 금액만큼을 상속세 추징

(2) 改正理由

○ 배우자상속공제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라 항목별 공제(기초공제+기타인정공제) 대신 일괄공제(5억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금액이 적용되도록 하여 상속인 중 공제대상의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일정수준 이하 계층의 세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세액계산절차를 단순화하였다.

○ 결국 상속인 중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최소공제액 5억과 일괄공제 5억을 합하여 최소 10억까지 상속세 부담이 없게 되었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

라. 금융재산상속공제제도의 신설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해 공제 —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2천만원 — 금융재산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 한도) ○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은 적용배제

(가) 공제대상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여기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법상 규정되어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한편, 금융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금융조달 방식에 의해 발행되는 비상장주식과 사모사채의 경우에도 상속공제되는 금융재산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나)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상장·비상장주식 모두 10% 더 높게 할증하여 평가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주식을 대량보유함으로써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경영권이 수반된 것으로 재산의 보유형태로서의 일반적 금융재산과는 달리 자기자본에 해당하므로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① 최대주주의 판정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여기서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한 것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합계가 5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피상속인 소유지분이 특수관계자인 장남의 보유지분보다 낮은 경우에

도 피상속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② 특수관계자의 범위

(i) 친족

(ii)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iii) 주주 등 1인과 (i) 및 (ii)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iv) 주주 등 1인과 (i) 및 (ii)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v) (iii) 및 (iv)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改正理由

○ 종전의 보험금과 합동운용신탁에 대한 특별상속공제는 폐지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도록 하였다. 다만, 한도액은 2억원으로 제한하여 고액재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유산규모가 작은 상속인에 대한 세부담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가액 전액을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금융재산상속공제제도를 신설함으로써 ①금융상품의 구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금융상품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고 ②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정확한 시가의 추정이 어려워 공시지가 등에 의해 평가할 경우 금융재산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되는 문제를 일부 보완하였으며 ③금융재산의 보유를 촉진하는 기대효과를 갖게 되었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

〈참고〉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금융자산가액	공 제 액	과 세 금 액	비 고
1천만원	1천만원	—	2천만원 미달
2천만원	2천만원	—	〃
5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20% 공제시 1천만원
1억원	2천만원	8천만원	20% 공제시 2천만원
10억원	2억원	8억원	한도 2억원
20억원	2억원	18억원	〃

마. 保險金·信託에 대한 相續·贈與控除制度의 폐지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상속공제] ○ 보험금 1,500만원, 실물신탁(금전신탁은 제외)은 700만원을 상속세 과세제외 [증여공제] ○ 보험금 증여의제과세시 500만원 공제	○ 폐지하되 — 보험금 1,500만원, 실물신탁 700만원 공제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시 최소 2천만원까지 전액공제하는 것으로 대체

(2) 改正理由

○ 특정 금융상품별 공제제도는 금융재산상속공제제도(20%)로 흡수통합하여 금융상품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고 단순화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바. 葬禮費用의 범위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상속개시일부터 장례일까지의 장례비용 — 실비용 공제(묘지구입비·상석·비석·묘지치장비용은 제외)와 — 500만원 표준공제 중 선택허용	○ 실비용공제시에도 1,000만원까지의 공제한도 설정 — 묘지구입비·상석·비석·묘지치장비용 등을 實費用控除對象에 포함 — 500만원 표준공제는 종전과 같음

(2) 改正理由

○ 묘지조성에 실제 소요된 묘지구입비 등을 공제대상에 포함하되 1천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설정하였다.

— 다만,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 공제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公益法人 事後管理의 實效性 提高

가. 自己內部去來에 대한 課稅 強化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이 사용·수익한 때 →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 – 과세표준 : 사용·수익한 출연재산가액 또는 귀속되는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현행유지
〈新 設〉	○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任員, 당해공익법인 및 그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法人과 그 任員을 규제대상에 추가 * 특별관계있는 법인 : 출연자 및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가 출자에 의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例 :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 –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2) 改正理由

○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예 : 건물의 임대, 금전소비대차 등)는 물론,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 당해 공익법인 및 그 출연자와 특별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임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도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자기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다.

○ 다만, 산학연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例 : 학술연구 발표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에는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최초로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나. 同一種目 保有株式의 5% 이내 보유 의무화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공익법인이 보유한 株式(출자지분 포함)은 동일종목 기준으로 특정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 1990. 12말 이전 취득보유한 주식은 20% 초과분까지 – 1993. 12말 이전 취득·보유한 주식은 20%까지 증여세 면세	○ 종전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6. 12. 31 현재 동일종목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5%이내로 축소 ○ 축소하는 부분은 다른 종목의 우량주식으로 보유토록 하여 分散投資를 유도 – 유예기간 · 5% 초과~20% 이하 보유 : 3년 · 20% 초과 보유 : 5년 – 의무위반시 · 불이행 가산세(20%)부과 · 횟수 : 1회에 한함 · 과세대상 : 5% 초과주식가액 – 과세시기 : 유예기간 만료일 ○ 주식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① 성실도 판정기준 –「출연재산가액의 5% 이상」과「출연재산운용소득의 80% 이상」중 큰 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성실공익법인 – 판정시기 : 유예기간 종료일 – 3년간 또는 5년간 고유목적에 사용한 금액의 평균액을 통산 – 유예기간 종료후에는 매년 판정 ②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포함)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과 당해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2) 改正理由

○ 공익법인이 동일종목의 주식을 5% 초과하여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보다는 보유주식을 우량종목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사업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주식을 분산소유하면 그만큼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도도 낮아지게 되며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의 분산을 유도하여 공익법인이 株式會社化되는 폐해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종전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동일종목 주식을 5% 초과 20% 이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 내에, 20%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 내에, 각각 5%를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종목 주식으로 대체보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주식분산을 유도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1회에 한해 액면가액의 20%를 부과토록 하였다.

다만, 주식투자에 따른 운용소득의 대부분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등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성실한 공익법인의 경우는 5% 이내 보유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성실한 공익법인 판정기준은 「총출연재산가액의 5%」와 「총출연재산운용소득의 80%」 중에서 큰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보다 쉽게 5% 이하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통산하여 성실도를 판정하되, 성실도 기준위반시는 유예기간 만료일에 1회에 한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한편,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매년 성실도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당해 사업연도 말일에 1회에 한해 가산세를 부과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현재 주식보유기준(5%)을 초과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성실공익법인의 판정 : 부동산 1건(10억원), 주식 2만주(액면가액 5천원, 1억원)을 출연받은 경우

* 부동산을 임대하여 1년간 임대료를 1억원을 받고, 주식배당을 10% 받아 1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① 총출연재산가액(11억원)의 5%인 5.5천만원과

② 1억1천만원(운용소득)의 80%인 8.8천만원 중 큰 금액인 8.8천만원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예외가 인정됨

다.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檢査 및 帳簿의 作成·備置 義務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외부전문가 확인·검사(2년에 1회) — 외부전문가 : 3인 이상의 회계사·세무사·변호사 — 주요 확인·검사사항 · 출연목적사업에 사용여부 · 자기내부거래 위반여부 · 동일종목주식의 5% 초과보유 여부 등 —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연간 수입금액과 연간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7/10,000) ·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국세청) ○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법인 — 자산 5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출연자 1인(특수관계자 포함)의 출연재산가액이 전체 출연재산가액의 5%미만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 확인·검사결과의 처리 —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외부확인·검사결과는 일반인에게 열람 허용
〈新 設〉	○ 장부 작성·비치의무(10년)부여 — 의무위반시에는 연간 수입금액과 연간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에 대해 가산세 적용(7/10,000)

(2) 改正理由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관련사항의 확인·검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출연목적 사용여부, 자기

내부거래 위반여부, 5% 초과보유주식 현황 등 출연재산운용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수입에 대한 장부를 상속·증여세 시효기간(10년)동안 보존토록 의무화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①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1996. 12. 31 이전에 설립된 공익법인 등은 1998.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을 받아야 함.

5. 借名株式에 대한 課稅의 實效性 提高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록·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차명하는 경우에는 차명시점에 증여의제과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명의신탁사실을 등기신청시 신고하거나 –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제도를 폐지 ○ 주식을 유예기간 2년내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되, –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명의로 전환시는 적용 배제 ○ 유예기간내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전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유예기간까지 실명화하지 않거나 1997. 1. 1 이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

(2) 改正理由

○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약정이 무효화되었으므로 부동산(토지, 건물)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제도를 폐지하였다. 한편 종전 상속세법에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차명시점에 증여의제과세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2년의 유예기간

을 설정하고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한 과거의 차명주식에 대해 종전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주식의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대신 1997. 1. 1 이후 차명하거나 유예기간 종료일 후 발견되는 차명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최초로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1996. 12. 31 이전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1998. 12. 31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6. 世代省略 相續·贈與에 대한 割增課稅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1세대를 뛰어넘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20%를 가산하여 할증과세 –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여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代襲상속의 경우는 제외	○ 할증과세율 인상 – 현행 20% → 30% (현행과 같음)

(2) 改正理由

○ 1세대를 뛰어넘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률을 상속·증여세의 현행 평균실효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강화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의 사례

① 일 본

– 세대생략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액의 20% 할증과세

– 다만, 최고세율(현행 70%)을 한도로 함.

② 미국의 generation-skipping tax

– 상속·증여재산의 합계액이 1백만달러 초과할 경우

→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55%로 과세

7. 變則贈與에 대한 과세강화

가. 特殊關係人間 저가양도 등에 대한 증여의제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과세대상〉 –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 $\frac{\text{시가}-\text{대가}}{\text{시가}} \geqq 30\%$ –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 $\frac{\text{대가}-\text{시가}}{\text{대가}} \geqq 30\%$	〈과세대상〉 $\frac{\text{시가}-\text{대가}}{\text{시가}} \geqq 30\%$ 또는 1억원 $\frac{\text{대가}-\text{시가}}{\text{시가}} \geqq 30\%$ 또는 1억원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양도자(양수자)의 친족 ② 사용인, 기타 생계유지자와 그 친족 ③ 30% 이상 출자법인 ④ ①·②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50% 이상 출연·설립한 비영리법인 ⑤ ③·④의 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⑥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간 특수관계자 ⑦ 상품·제품 특약판매자 ⑧ 동향, 동창 동일직장관계 등의 친지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국세기본법상 친족의 범위와 일치 ② 사용인, 기타 생계유지자 ③~⑤ (종전과 같음) ⑥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삭　제) ⑦ 임원의 임면권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新　　設〉	

(2) 改正理由

○ 저가·고가 양도양수시의 증여의제과세요건인 ①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② 고·저가의 기준을 시가 또는 대가의 일정비율에 의하여만 판정하였던 것을 1억원 금액기준에 해당하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 또는 대가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증여의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1997. 1. 1 이후 저가로 취득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

나. 土地無償使用權에 대한 贈與擬制

(1) 改正內容

구 분	내 용
1. 토지의 무상사용·수익	① 특수관계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사용 ② 건물만을 특수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 ③ 특수관계자와 토지·건물을 함께 제3자로부터 매입하면서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
2. 특수관계자인의 범위	①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배우자 ③ ①과 ②가 50% 이상 출연한 비영리법인
3. 과세이익의 계산	〔토지의 시가(공시지가)〕×(연 2%)×(지상권존속연수, 30년)
4. 증여시기	① 건물의 신축사용시 : 준공검사일 또는 사용일 ② 매입사용시 : 잔금청산일
5. 적용배제	① 주택의 신축사용시 ② 토지소유자에게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2) 改正理由

(가) 배 경

아버지의 땅위에 아들이 자기명의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등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사용케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무상사용권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과세대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라 함은 아버지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아들이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거나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 함께 토지·건물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면서 본인은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토지의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다른 증여의제과세의 경우보다 크게 축소하였다. ①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 ③ ①과 ②에 해당하는 자가 50% 이상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였다.

㈑ 증여시기

토지의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증여시기는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준공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로 한다.

구 분	증 여 시 기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 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건물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치 않은 경우 등은 다음에 의한다(소영 162① 1호~3호)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다. 轉換社債利益에 대한 증여의제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특수관계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 취득일 현재 당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평가액과 전환사채의 인수가액의 차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 ○ 증여의제가액 = (전환사채취득일 현재 교부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발행법인의 주식평가액— 전환사채 취득가액)

(2) 改正理由

(가) 배 경

신종금융상품인 전환사채를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주가가 당초에 약정된 전환가격보다 상승할 때 대주주에게 처분하는 방식으로 변칙증여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였다.

(나) 과세대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현재 당해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과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간의 차액을 얻은 전환사채 취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 과세가액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액과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때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방법에 불구하고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공표된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장외등록법인·비상장법인의 경우 각각 이 법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left[\text{주식 1주당 평가액} \times \frac{\text{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text{주식 1주당 전환기준가격}}\right] - \text{전환사채취득가액}$$

(라) 증여시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가가 당초 약정한 전환가격보다 높아져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처분한 것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을 증여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이므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때를 증여시기로 본다.

구 분	증 여 시 기
1. 과세대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식전환가액에서 전환사채가액을 차감한 차액을 얻은 전환사채 취득자
2.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친족·사용인, 생계유지자 ② ①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①과 ②가 이사의 1/2이거나 출연설립한 비영립법인 ④ ①·②와 ③이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⑤ 임원의 임면, 사업의 결정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

구 분	증 여 시 기
3. 과세이익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의 평가액) -(전환사채 취득가액) * 주식가액의 평가액 :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시점의 종가(비상장법인의 경우 보충적 평가액)
4. 증여시기	전환사채를 취득한 시점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특수관계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

라. 不公正 合併시 증여의제 과세강화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증여의제과세대상〉 ① 특수관계법인간의 합병 · 법인세법(§46①)상 특수관계법인	(종전과 같음)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행사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新 設〉	② 직전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 등 기일 전까지의 기간중
〈新 設〉	
② 특수관계의 판정기준 : 합병등기일 현재	
③ 합병이익 · $\frac{A-B}{A} \geqq 30\%$ A :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당평가액 B :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환산가액	· $\frac{A-B}{A} \geqq 30\%$ 또는 1억
④ 합병차익을 얻은 법인의 대주주 · 대주주 : 지분율 1% 이상 보유 주주	·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액면가액 3억원 이상인 보유주주

(2) 改正理由

○ 특수관계법인 및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수관계 여부의 판정시기를 보완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마. 特定法人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2년 이상 결손법인(또는 휴면법인)에게 재산증여, 현물출자, 채무변제·인수하거나,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으로 양도함으로써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 — 증여가액의 계산 · 이익상당액에 의해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2) 改正理由

(가) 배　경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결손이 누적된 법인을 매입하여 자녀를 주주로 하고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자산수증익은 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므로 법인세 부담이 없게 되고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에게 실질적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효과를 얻는 등 법인과의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 등에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및 증여세 부담없이 당해 법인의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과세대상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① 특정법인의 범위

㉠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

㉡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주주 등의 사용인 또는 사용인 외의 자로서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과세대상 거래의 범위

㉠ 당해 법인에 증여하는 재산

㉡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것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

– ㉢, ㉣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 함은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서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다) 증여가액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상당액에 의하여 증가된 특정법인 주식 1주당 증가가치에 각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즉, 특수관계에 있는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과세대상 거래가 있은 후 1주당 평가액에서 거래가 있기 전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보유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1주당 평가액이 負의 수(△)인 경우에도 실 증가치를 계산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8. 評價制度 改善

가. 評價의 원칙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종전에는 시가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기본통칙으로 운용하여 왔으나 이를 일부 보완하여 법령에 반영하였으며 경영권이 반영된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비상장주식에 한하여 적용하여 오던 것을 모든 주식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經營權이 반영된 株式에 대한 割增評價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적용대상 : 비상장법인 – 할증평가율 : 10% – 최대주주의 범위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주식 중 가장 많은 주주	–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을 추가 – (종전과 같음) – 최대주주의 범위 조정 · 당해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주식지분을 합하여 「10% 이상」 소유한 경우

(2) 改正理由

○ 종전에는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식에 한하여 10% 할증평가하였다.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은 회사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데 비하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지배주식은 통상의 주식가치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고 그 지배권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간에 차별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간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현행제도를 감안하여 모든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지배주식의 경우에도 주식분산이 양호하여 최대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합하여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①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지배주식에 해당한다. 여기서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라 함은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한 것이 가장 많은 경우를 말하며,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보유자가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합계가 5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평가대상이 되는 주주의 소유지분이 특수관계자인 아들의 보유지분보다 낮은 경우에도 당해 주식은 지배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② 특수관계자의 범위

- 친족
-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다. 時價의 범위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① 시가의 정의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 – 상장주식, 장외등록법인주식 중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시가에 해당
○ 시가의 적용기간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내	② 시가의 적용기간 – 상속재산 : 상속개시 전후 6개월 – 증여재산 : 증여일 전후 3개월
○ 시가의 적용범위(기본통칙) –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가액 –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 수용보상가액	③ 시가의 적용범위 –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다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은 제외 –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경우의 감정가액 – 수용보상·공매가액
○ 주식에 대하여는 시가 적용을 배제	(삭 제)

(2) 改正理由

○ 증여세의 신고기한이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시가의 적용기간을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구분하였으며 종전에는 주식에 대하여는 시가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공정시장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액 및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법원의 판례를 수용하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거래가격에 한하여 시가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데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시가적용 기준을 일부 보완하였다.

(가) 上場株式의 時價

從 前	改 正
○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의 증권거래소의 종가 평균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종가 중 낮은 가액	○ 상속개시일 전 3개월간의 증권거래소의 종가 평균액

상장주식은 공정시장인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가는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증권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심하여 특정일 하루에 형성된 가격을 가지고 상장주식의 안정적인 조치를 파악하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되는 점이 있고 매매물량의 조절 등을 통해 거래가격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개정법에서는 상장주식 평가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3개월간의 증권거래소 종가를 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토록 하고 이를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나) 장외등록법인주식의 시가

장외등록법인이라 함은 증권거래소 외에 장외에서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있도록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을 말하는데 장외등록법인 주식 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성을 인정하여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3개월간의 기준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라. 不動産의 평가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토지 : 공시지가 ○ 건물 — 아파트(연립, 빌라 포함) · 지정지역 : 기준시가 · 일반지역 :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 기타건물(상가, 오피스텔) :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新　　設〉	종전과 같음 — 기타건물 · 지정지역 : 기준시가 · 일반지역 : 종전과 같음 — 서울특별시(연접시 포함),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업용건물,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등 특수건물의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 매년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

(2) 改正理由

○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현실화율에 힘입어 시가에 상당히 근접하여 평가되고 있으나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평가하므로 토지에 비해 과소평가된다. 개정법에서는 건물 기준시가의 산정·고시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시가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신설규정에 의한 상업용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1998.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마. 地上權 및 不動產에 관한 權利의 평가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지상권의 평가 — 잔존기간의 연수의 구분에 따라 토지 기준임대가에 일정배수를 곱한 금액	○ 지상권의 평가 — 토지공시지가에 年2%를 곱한 금액의 잔존연수합계액을 현가 $\frac{(\text{토지공시지가}\times 2\%)\times \text{잔존연수}}{(1+0.1)^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2) 改正理由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및 기타정착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하는데 종전의 평가방식은 토지의 기준임대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법이 없어 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지상권의 목적물이 되는 토지의 가액에 연 2%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상권의 잔존연수기간만큼 합산하여 현가한 가액에 의해 평가토록 하였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정의를 규정하고 종전 통칙 등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법령에 반영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바. 非上場株式의 평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은 그 평가요소로서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다. 시가평가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자산가치+수익가치)÷2 — 자산가치 $\frac{\text{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text{발행주식총수}}$	①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종전과 같음)

從　　前	改　　正
— 수익가치 $\frac{\text{1주당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0.15}$	
○ 자산가치로만 평가 —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 휴·폐업, 청산중인 법인	② 자산가치로만 평가 (종전과 같음)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新　　設〉 ○ 상장추진중의 주식 —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일 6개월 전일부터 상장일까지의 기간내인 경우에는 공모예정가로 평가	③ 상장추진중인 주식 — 공모기준가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 — 적용기간을 구분 · 상속재산 : 6개월 이전 · 증여재산 : 3개월 이전
〈新　　設〉	④ 장외등록추진중인 주식 — 공모기준가(매매기준가격)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 * 매매기준가격 : 등록후 최초매매개시 기준가격
〈新　　設〉	⑤ 미상장주식 — 상장주식 구주1주당평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 배당차액 액면가 × 직전기배당률 × $\frac{\text{미보유기간}}{365}$

(2) 改正理由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즉,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치를 1 : 1로 보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단순평균하고 있다. 다만, 수익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및 휴·폐업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에 의하여만 평가하였다.

— 개정법에서는 부동산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을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주식의 범위에 추가하였다. 여기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의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평가대상법인의 주식가치는 수익가치보다는 자산가치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수익가치가 負(△)의 수인 결손법인의 경우 계속기업을 전제로 수익가치를 계산하더라도 負(△)의 수가 산출되고 결국 주식가치는 자산가치를 2로 나눈 금액에 의해 평가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실질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판정은 부동산 및 지상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 기업공개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공개전 당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증여하여 상장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므로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신고 6개월 전부터 상장일까지의 주식은 공모예정가로 평가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1997.12.31 개정). 개정법에서는 장외등록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공개준비중인 비상장주식과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토록 하고 증여세신고기한이 3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상속재산평가와 증여재산의 평가시 적용기간을 각각 구분하였다.

— 또한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에 있어 종전에는 공모예정가에 의해 평가토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기업공개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장외등록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기준가격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보완하였다.

— 여기서 매매기준가격이라 함은 장외등록후 최초 매매개시시 기준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모집 또는 매출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분산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을, 입찰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분산한 경우에는 가중평균낙찰가로서 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최초매매기준가격을 말한다.

○ 미상장주식의 평가는 종전 평가준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령에 반영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사. 營業權의 평가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자기창설영업권의 평가방법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이익×1/3)－자기자본】×10%×영업권 지속연수	【(상속개시일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1/3)－자기자본】×10%×영업권지속연수

(2) 改正理由

○ 영업권을 계산하는 평균순손익액을 3년간의 단순평균방식에서 평가대상법인의 수익력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가중평균방식에 의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아. 賃貸不動產의 평가특례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임대료 환산가액 (1년간 임대료÷10%)＋임대보증금	(1년간 임대료÷18%)＋임대보증금

(2) 改正理由

○ 사실상 임대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일정률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그 재산의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즉 1년간의 임대료를 일정률로 나누어 임대보증금을 산출해 내는 것인데 종전에는 1년간의 임대료를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한 10%의 율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나 일반적인 부동산임대 관행상 적용되는 이율에 비해 낮은율로 적용됨에 따라 실제의 임대보증금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정법에서는 연 18%(월 1.5%)의 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9. 納稅者 權益提高

가. 相續開始後 發生하는 特別損失費用 控除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신고기한(사망후 6월, 증여후 3월)내에 화재·천재지변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 다만,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2) 改正理由

○ 상속개시 후 재난에 의해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세의 경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외에 본래 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상속인의 생활기초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상속개시 후 법정신고기한내에 재난 등에 의해 상속재산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실된 손실가액만큼을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물적생활기초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 재해손실공제의 적용요건

· 재난관리법상 인정되고 있는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법정신고기한 내에 발생하는 재난을 대상으로 하며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의 수령 또는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받는 금액은 공제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나. 相續稅 更正請求權이 特例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당초 신고시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내』 당초 신고된 세액을 감액 경정청구 가능(국세기본법)	○ 상속세의 감액 경정청구기한 연장 — 현행 2개월 → 6개월

從　　前	改　　正
〈新　　設〉	○ 상속받은 부동산의 수용가액이 당초 상속세 과세시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 정부의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액경정청구 적용

(2) 改正理由

○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분쟁 결과 패소하거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해 상속인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감액청구기한을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상속재산의 수용 및 지배주식에 해당하여 할증평가된 주식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도 수용가액 및 매각가액이 상속세결정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사유는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

다. 加算稅制度의 개선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분의 20% – 평가차액에 의한 과소신고분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기본 : 미납부금액의 10% – 추가 : 미납부기간중 연 14.6%(20% 한도) – 평가차액으로 인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 부과 ③ 보고불성실가산세 – 누락 또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1%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 (종전과 같음) – 신고시와 결정시의 평가방법이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종전과 같음) – (삭　제) – 신고시와 결정시의 평가방법이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③ 보고불성실가산세 – (종전과 같음)

從　　前	改　　正
〈新　　設〉	④ 세무확인 불이행 및 장부작성·비치불이행 가산세 — 불이행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당해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의 7/10,000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은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新　　設〉	⑤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의 기준의무불이행 가산세 —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의 20%

(2) 改正理由

○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산출세액(세대생략할증과세분을 포함한다) 중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가액이 차지하는 상당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개정법에서는 신고시와 결정시의 평가방법의 상이함으로 인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토지를 공시지가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따라 평가차액만큼 과소신고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당초 신고시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올바르게 적용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면제한다.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시기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과세 결정시 과세관청이 시가를 부인하고 공시지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이 상이함으로 인한 평가차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 한편, 종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평가차액으로 인한 미납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개정법에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부과결정제도를 취하고 있고 그 부과결정이 신고기한 경과후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결정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공익법인과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제도, 공익법인의 장부작성·비치의무 및 주식보유기준의 이행의무제도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가산세제도를 신설하였다.

라. 年金과 遺族報償金에 대한 相續稅 非課稅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상속세비과세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에게 퇴직금 대신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재해보상금 등	○ 다음을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종업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유족에게 퇴직금 대신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보상금 등

(2) 改正理由

○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연금 등과 같이 비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마. 家業相續에 대한 분할납부기간 연장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① 분할납부기간 – 일반적인 경우 : 3년 – 가업상속재산 : 5년 〈新 設〉	(종전과 같음) – 가업상속재산가액이 총상속재산가액의 50% 이상인 경우 : 7년

從 前	改 正
② 분할납부금액 — 연부연납신청시 · 일반적인 경우 : 납부세액의 1/4 · 가업상속재산 :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상당세액의 1/6 〈新 設〉 — 분납기간중 · 일반적인 경우 : 납부세액의 3/4을 3년간 안분계산 · 가업상속재산 : 가업상속재산상당 납부세액의 5/6를 5년간 안분계산 〈新 設〉	(종전과 같음) ·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 당해 상당세액의 1/8 (종전과 같음) ·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 당해 상당세액의 7/8을 7년으로 안분계산

(2) 改正理由

○ 상속인이 승계받은 기업을 처분하지 않고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

10. 稅務行政의 改善

가. 贈與稅 신고기한 단축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①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부터 6개월	○ 신고기한단축(6개월 → 3개월)

(2) 改正理由

○ 증여는 증여자가 증여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무상이전시키는 것이므로 신고가 지체될 여지가 적으므로 상속세신고기한보다 단축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나. 物納制度의 개선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① 물납신청요건 – 납부세액 240만원 이상	– 납부세액 1,000만원 이상
–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1/2 이상일 것 –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할 것 –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적당한 재산일 것	(종전과 같음)
② 수납가액의 결정 – 원칙 : 상속제·증여세 과세가액 – 예외 · 수납기간중 물납신청한 주식에 대해 증자가 있는 경우 : 환산가액 · 연부연납시 분납분에 대한 물납재산 : 평가시점을 수납일 현재로 기준	(종전과 같음)
	* 수납기준일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에서 수납일 현재로 기간에 따른 평가차액만 반영됨을 명확화 – 당초에 시가로 평가 → 수납일 현재 시가 · 수납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초 과세가액 – 당초에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 → 수납일 현재 공시지가 등

(2) 改正理由

○ 상속·증여세의 물납기준금액을 다른 세목과 일치시켰다.

○ 연부연납기간중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1995.12.30)하였는바 이때 수납가액의 결정에 있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과 물납신청일간의 기간동안의 가격상승 및 하락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납일

현재를 수납가액 평가시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한 기간에 의한 가격 등락분만을 반영하는 것이지 상이한 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법에서는 해석으로 운용되는 이러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물납신청요건에 한하여 1997.1.1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다. 金融財產 一括照會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금융자산 일괄조회제도가 1990.12 도입되었으나, 금융실명제 실시(1993.8) 이후 1993.12 폐지	○ 사망자에 한하여 금융자산 일괄조회를 허용하되,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자 중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

(2) 改正理由

○ 특정점포별로 조회하는 데 따른 금융기관과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지양하고 상속세과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

라. 財產管理 電算體系의 構築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① 인별재산관리 〈新 設〉	○ 인별재산관리체계의 구축을 명문화 — 대 상 · 부동산과다보유자 · 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의 대주주 및 그 배우자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從　　前	改　　正
② 과세자료의 수집 ○ 토지·건물 : 등기신청서부본을 통해 자료수집 ○ 이자·배당소득 : 지급명세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수집 ○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수동으로 지급조서를 작성하거나 전산테이프를 제출(다음날 15일까지)	○ 종전과 같음
〈新　　設〉	○ 전산조직이 설치된 경우에는 전산테이프 제출의무화
〈新　　設〉	○ 골프장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 발행사업자에 대하여 회원권 발행상황 및 매년 회원변동상황의 보고 의무화
〈新　　設〉	○ 埋葬·火葬申告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新　　設〉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출자지분을 포함(법인세법 관련사항)

(2) 改正理由

○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가 체계적이어야 하므로 인별재산관리체계 구축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 다만, 사생활 및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 비밀보장의 원칙

· 자료의 이용은 과세목적에 한정

·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 누구든지 자료의 제공이나 이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그 사실을 취급하는 것부터 적용

第2部

統　計　資　料

1. 상속세

[표 1-1] 연도별 상속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단위 : 명, 백만원, %)

	납세자수	예 산 액 (A)	징수결정액 (B)	부 과 액	수 납 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B/A)	(C/A)
1965	590	64	53	44	49	0	4	82.7	76.3
1966	711	101	80	137	77	0	3	78.9	76.0
1967	664	78	192	280	175	0	17	246.4	224.1
1968	490	233	308	296	263	0	44	132.1	113.0
1969	455	270	399	504	370	0	28	147.6	137.1
1970	585	313	1,039	1,407	870	12	157	332.0	278.0
1971	666	407	1,233	1,586	1,036	10	188	303.0	254.6
1972	664	882	1,162	1,053	955	10	196	131.7	108.3
1973	407	957	1,376	1,268	877	2	496	143.8	91.7
1974	296	1,824	1,636	1,685	1,601	1	34	89.7	87.8
1975	241	4,200	5,083	9,613	4,234	1	848	121.0	100.8
1976	270	2,947	8,241	5,438	5,687	12	2,542	279.6	193.0
1977	300	3,308	5,118	3,981	4,917	18	183	154.7	148.6
1978	285	4,148	4,225	3,187	3,799	19	407	101.9	91.6
1979	317	9,573	7,301	1,796	2,239	52	667	76.3	23.4
1980	350	9,311	11,265	4,290	2,912	33	1,608	121.0	31.3
1981	866	11,859	18,389	22,671	11,975	24	6,390	155.1	101.0
1982	820	14,471	22,483	20,326	17,889	209	4,385	155.4	123.6
1983	1,105	16,728	21,957	21,516	18,107	116	3,733	131.3	108.2
1984	1,144	22,567	39,812	40,929	19,946	317	19,549	176.4	88.4
1985	1,110	21,564	27,078	28,225	17,821	810	8,446	125.6	82.6
1986	1,324	18,594	45,069	48,460	33,382	2,348	9,339	242.4	179.5
1987	1,140	38,696	42,970	50,558	32,724	1,506	8,740	111.0	84.6
1988	1,414	49,736	56,460	53,896	36,007	1,892	18,561	113.5	72.4
1989	1,703	39,165	53,986	87,704	39,472	2,096	12,418	137.8	100.8
1990	2,294	40,942	82,240	115,506	71,033	635	10,572	200.9	173.5
1991	2,869	97,486	143,017	230,967	104,372	31	38,614	146.7	107.1
1992	3,438	119,618	226,987	325,624	175,030	51	51,906	189.8	146.3
1993	2,291	179,485	475,923	676,050	346,337	1,215	128,371	265.2	193.0
1994	2,549	498,700	629,226	783,725	523,570	2,340	103,316	126.2	105.0
1995	3,464	632,500	772,470	880,967	605,644	19,444	147,382	122.1	95.8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2] 연도별 상속세 월별 징수

(단위 : 천원)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폐쇄기
1965	48,573	917	458	2,753	9,208	10,116	1,015	2,144	1,011	1,933	7,323	2,052	9,642	—
1966	76,734	1,420	1,098	4,579	6,054	3,814	11,396	3,324	4,386	2,642	1,296	7,709	29,016	—
1967	174,818	1,270	1,576	9,585	12,850	4,541	10,436	9,253	12,119	4,241	13,931	18,797	77,219	—
1968	263,406	642	2,467	7,905	11,490	12,923	9,343	14,397	6,210	12,064	28,333	19,273	138,358	—
1969	370,069	1,232	4,936	6,434	2,998	27,266	19,835	33,173	17,317	4,493	7,274	66,094	91,393	87,625
1970	869,987	5,407	2,958	15,762	30,936	81,155	104,265	44,600	96,111	48,970	72,522	43,627	128,148	195,528
1971	1,036,185	9,000	7,619	113,107	19,003	34,342	88,233	19,499	45,914	99,247	56,118	59,359	365,504	119,240
1972	955,360	4,491	19,116	85,945	47,231	25,837	36,531	50,620	51,281	75,538	161,405	70,750	175,817	150,798
1973	877,176	8,417	26,937	33,905	43,741	48,757	31,375	77,772	147,588	144,953	223,634	67,350	19,874	2,873
1974	1,601,188	34,441	42,801	734,872	120,171	60,986	86,914	93,039	59,869	32,502	167,988	42,581	55,258	69,766
1975	4,233,978	257,190	682,142	70,304	1,398,486	82,665	501,861	73,245	38,170	759,664	99,634	181,506	89,111	—
1976	5,686,746	38,148	502,496	53,355	1,263,885	54,271	82,204	139,662	403,618	1,306,258	867,295	252,674	707,779	15,101
1977	4,916,678	92,995	222,950	57,205	655,699	85,197	155,628	160,502	260,054	867,954	1,092,813	134,050	712,961	418,670
1978	3,799,178	204,319	104,330	198,419	87,806	213,477	165,707	257,256	173,237	392,243	949,304	294,468	308,022	450,590
1979	2,239,484	381,828	203,810	93,537	99,849	106,325	72,242	120,521	182,777	189,472	130,039	249,188	382,883	27,013
1980	2,912,931	78,041	250,364	257,035	255,440	194,955	213,374	143,761	309,210	263,094	260,702	358,264	310,404	18,287
1981	11,975,382	178,599	195,061	291,575	392,962	883,064	548,255	1,502,944	441,051	792,942	4,246,102	874,343	1,628,484	—
1982	17,888,941	254,474	378,828	508,829	512,330	302,215	1,050,254	1,522,324	1,875,075	1,544,488	2,332,998	1,751,624	5,855,502	—
1983	18,107,385	1,096,748	2,491,239	1,499,262	703,100	1,077,568	2,522,125	1,046,166	1,385,344	1,439,761	1,051,992	1,405,976	2,388,104	—
1984	19,945,849	828,377	643,279	877,950	1,263,203	1,564,248	1,242,201	1,174,064	762,121	1,359,113	2,371,846	2,776,269	5,083,178	—
1985	17,821,057	1,263,714	541,142	1,001,368	1,692,868	1,098,147	1,422,101	1,377,784	960,939	1,574,291	1,129,846	3,044,502	2,714,355	—
1986	33,382,209	2,790,813	1,405,698	1,513,314	4,622,435	1,212,677	2,751,804	6,589,915	2,181,134	3,614,010	2,221,467	943,614	3,535,328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3] 연도별 상속세 시도별 징수

(단위 : 천원)

	합 계	서 울	부 산	인 천	대 구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경 북	경 남	전 북	전 남	제 주
1971	1,036,185	791,279	81,730	—	—	21,551	21,689	956	10,753	53,694	15,639	6,519	17,631	14,744
1972	955,360	674,937	87,832	—	—	29,182	4,763	3,256	12,429	62,056	34,748	23,504	17,900	4,753
1973	877,176	630,581	137,725	—	—	22,322	4,519	1,931	3,210	27,289	16,714	5,842	17,598	9,445
1974	1,601,188	1,274,556	86,533	—	—	120,352	805	5,034	18,627	29,121	20,441	5,192	26,584	13,943
1975	4,233,928	3,778,310	225,670	—	—	61,671	1,909	797	20,798	54,304	31,939	4,622	47,453	6,455
1976	5,686,746	4,147,966	386,882	—	—	816,382	4,542	5,648	37,743	43,001	101,347	16,241	121,457	5,537
1977	4,916,678	2,580,513	835,877	—	—	987,757	14,386	23,682	47,711	105,768	121,741	24,550	150,114	24,579
1978	3,799,178	1,605,879	799,705	—	—	923,666	7,703	12,391	48,048	117,871	163,352	37,990	82,114	459
1979	2,239,484	1,062,042	591,341	—	—	157,213	5,165	2,320	59,233	127,613	58,008	39,767	51,834	84,948
1980	2,912,931	1,625,167	394,916	—	—	134,462	112,229	36,825	143,486	180,617	95,731	29,886	158,585	1,027
1981	11,975,382	9,027,303	991,147	—	—	333,340	41,417	73,571	195,485	722,278	218,474	112,722	161,032	98,613
1982	17,888,941	12,257,064	1,941,305	256,542	1,162,205	357,973	104,736	50,786	430,948	258,970	262,878	354,902	448,597	2,035
1983	18,107,385	6,826,029	3,144,850	152,391	1,251,390	397,483	386,602	126,972	418,708	1,017,966	3,595,735	296,253	406,483	86,523
1984	19,945,849	10,763,963	3,027,732	252,304	2,438,016	609,773	451,383	41,297	299,581	288,451	722,324	228,630	796,380	26,015
1985	17,821,057	8,606,637	4,380,546	183,521	1,169,272	526,868	366,785	58,787	843,966	414,038	418,128	276,869	430,207	145,433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4] 연도별 상속세 부과

(단위 : 건, 백만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1965	590	734	446	288	44	516	—	44
1966	711	1,456	690	767	154	17	—	137
1967	664	2,048	793	1,256	290	7	—	280
1968	490	2,805	1,237	1,568	424	128	—	296
1969	455	3,871	2,061	1,866	527	24	—	504
1970	585	7,040	2,565	4,475	1,724	320	—	1,407
1971	666	8,718	3,436	5,282	2,059	661	—	1,586
1972	664	8,110	4,313	3,798	1,237	184	—	1,053
1973	407	7,322	3,597	3,725	1,376	107	—	1,268
1974	296	9,036	4,775	4,262	1,820	135	—	1,685
1975	241	21,853	5,131	16,722	10,166	553	—	9,613
1976	270	26,705	15,807	10,898	5,898	460	—	5,438
1977	300	18,353	9,773	8,580	4,202	221	—	3,981
1978	285	16,877	8,352	8,525	4,039	852	—	3,187
1979	317	14,544	9,488	5,056	1,946	150	—	1,796
1980	350	27,777	17,510	10,267	4,551	262	—	4,290
1981	866	94,558	40,781	53,777	29,569	6,898	—	22,671
1982	820	92,185	47,164	45,021	21,297	971	—	20,326
1983	1,105	120,456	60,926	59,529	26,717	5,201	—	21,516
1984	1,144	180,560	82,957	97,604	45,346	4,893	476	40,929
1985	1,110	157,275	82,262	75,013	32,526	5,368	1,066	28,225
1986	1,324	231,971	117,443	114,527	51,576	4,625	1,508	48,460
1987	1,140	246,699	127,288	119,411	53,904	5,162	1,816	50,558
1988	1,414	261,368	133,496	127,872	57,356	6,428	2,968	53,896
1989	1,703	404,130	191,582	212,548	95,703	11,148	3,149	87,704
1990	2,294	655,696	329,188	326,508	129,230	20,074	6,350	115,506
1991	2,869	872,847	326,380	546,467	241,497	28,258	17,728	230,967
1992	3,438	1,510,240	671,284	838,956	334,185	37,695	29,134	325,624
1993	2,291	2,196,649	683,219	1,512,430	691,053	76,658	61,655	676,050
1994	2,549	2,680,931	884,291	1,796,640	794,154	99,366	88,937	783,725
1995	3,464	3,300,717	1,241,930	2,058,787	890,074	92,025	82,918	880,967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65	계	112	13	6	7	1	0	—	1
1종	1만원이하	1	0	0	0	0	—	—	0
	1만원초과	31	2	2	1	0	—	—	0
	2만원초과	48	4	3	2	0	—	—	0
	5만원초과	16	2	1	1	0	—	—	0
	10만원초과	10	2	1	1	0	—	—	0
	20만원초과	3	1	0	1	0	—	—	0
	30만원초과	2	1	0	1	0	—	—	0
	50만원초과	1	1	—	1	0	0	—	0
	1백만원초과	—	—	—	—	—	—	—	—
	2백만원초과	—	—	—	—	—	—	—	—
	5백만원초과	—	—	—	—	—	—	—	—
	1천만원초과	—	—	—	—	—	—	—	—
2종	계	3	0	0	0	0	—	—	0
	1만원이하	—	—	—	—	—	—	—	—
	1만원초과	—	—	—	—	—	—	—	—
	2만원초과	2	0	—	0	0	—	—	0
	5만원초과	—	—	—	—	—	—	—	—
	10만원초과	1	0	—	0	0	—	—	0
	20만원초과	—	—	—	—	—	—	—	—
	30만원초과	—	—	—	—	—	—	—	—
	50만원초과	—	—	—	—	—	—	—	—
	1백만원초과	—	—	—	—	—	—	—	—
	2백만원초과	—	—	—	—	—	—	—	—
	5백만원초과	—	—	—	—	—	—	—	—
	1천만원초과	—	—	—	—	—	—	—	—
3종	계	475	721	441	281	44	1	—	43
	10만원이하	144	90	81	10	0	—	—	0
	10만원초과	115	91	74	17	1	—	—	1
	20만원초과	60	59	44	15	1	—	—	1
	30만원초과	50	63	43	20	1	0	—	1
	50만원초과	29	55	38	17	1	0	—	1
	70만원초과	32	74	47	27	3	0	—	3
	100만원초과	19	70	41	29	4	0	—	4
	200만원초과	15	81	34	46	8	0	—	8
	500만원초과	7	68	24	44	9	—	—	9
	1천만원초과	4	71	15	56	15	—	—	15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66	계	711	1,456	690	767	154	17	—	137
	10만원이하	209	129	116	14	1	—	—	1
	10만원초과	151	116	95	22	1	0	—	1
	20만원초과	76	67	48	19	1	0	—	1
	30만원초과	89	107	73	34	2	0	—	2
	50만원초과	37	55	33	23	2	0	—	2
	70만원초과	39	78	45	34	3	0	—	3
	100만원초과	53	165	89	75	10	0	—	10
	200만원초과	34	178	69	109	18	1	—	18
	500만원초과	13	116	37	79	16	1	—	15
	1천만원초과	10	445	86	359	99	16	—	84
1967	계	664	2,048	793	1,256	290	9	—	280
	10만원이하	181	109	97	12	1	—	—	1
	10만원초과	129	92	75	18	1	0	—	1
	20만원초과	73	64	46	18	1	0	—	1
	30만원초과	67	75	49	26	2	0	—	2
	50만원초과	41	72	48	24	2	—	—	2
	70만원초과	33	62	35	27	3	0	—	3
	100만원초과	65	214	122	92	12	0	—	12
	200만원초과	35	212	98	114	19	2	—	18
	500만원초과	17	172	54	118	24	4	—	21
	1천만원초과	23	974	167	807	224	4	—	220
1968	계	490	2,805	1,237	1,568	424	128	—	296
	20만원이하	120	117	103	13	1	—	—	1
	20만원초과	99	181	148	33	2	0	—	2
	50만원초과	152	564	400	164	19	0	—	19
	200만원초과	52	348	185	163	26	2	—	25
	500만원초과	30	465	242	223	47	4	—	43
	1천만원초과	32	777	128	650	185	104	—	81
	3천만원초과	4	184	27	157	60	19	—	41
	1억원초과	1	169	4	165	84		—	84
	5억원초과	—	—	—	—	—	—	—	—
1969	계	455	3,871	2,061	1,858	527	24	—	504
	20만원이하	50	95	89	6	0	0	—	0
	20만원초과	96	275	242	33	2	0	—	2
	50만원초과	155	634	471	165	20	0	—	19
	200만원초과	72	595	381	218	35	2	—	33
	500만원초과	34	500	265	231	51	2	—	49
	1천만원초과	40	1,208	564	689	198	10	—	189
	3천만원초과	7	454	48	406	171	11	—	160
	1억원초과	1	110	2	109	51	—	—	51
	5억원초과	—	—	—	—	—	—	—	—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70	계	585	7,040	2,565	4,475	1,724	320	—	1,407
	20만원이하	44	77	71	6	0	0	—	0
	20만원초과	90	262	231	31	2	0	—	2
	50만원초과	200	781	567	214	25	2	—	23
	200만원초과	121	873	514	359	56	9	—	46
	500만원초과	51	714	340	375	82	11	—	70
	1천만원초과	52	1,415	586	829	251	54	—	200
	3천만원초과	16	753	68	685	282	70	—	212
	1억원초과	11	2,164	188	1,977	1,025	173	—	852
	5억원초과	—	—	—	—	—	—	—	—
1971	계	666	8,718	3,436	5,282	2,059	679	—	1,586
	20만원이하	31	86	81	5	0	0	—	0
	20만원초과	90	305	274	31	2	0	—	2
	50만원초과	226	970	730	240	28	2	—	26
	200만원초과	154	1,282	787	495	79	5	—	74
	500만원초과	80	1,196	611	584	133	20	—	114
	1천만원초과	55	1,407	543	864	260	51	—	209
	3천만원초과	21	1,112	272	840	325	41	—	289
	1억원초과	8	1,790	67	1,722	946	498	—	647
	5억원초과	1	571	71	500	285	62	—	224
1972	계	664	8,110	4,313	3,798	1,237	184	—	1,053
	20만원이하	16	32	29	3	0	0	—	0
	20만원초과	79	272	243	29	2	0	—	2
	50만원초과	272	1,736	1,436	301	35	2	—	33
	200만원초과	137	1,305	862	442	69	7	—	62
	500만원초과	77	1,229	670	559	116	18	—	99
	1천만원초과	63	1,747	745	1,002	302	66	—	236
	3천만원초과	16	1,058	303	755	253	28	—	225
	1억원초과	3	127	7	120	112	60	—	52
	5억원초과	1	605	18	587	346	3	—	344
1973	계	407	7,322	3,590	3,725	1,376	107	—	1,268
	20만원이하	6	20	19	1	0	—	—	0
	20만원초과	45	266	250	16	1	0	—	1
	50만원초과	137	1,155	993	156	19	1	—	17
	200만원초과	87	888	617	271	43	4	—	39
	500만원초과	59	1,052	621	431	89	8	—	81
	1천만원초과	45	1,216	512	703	217	28	—	188
	3천만원초과	24	1,710	468	1,242	523	52	—	470
	1억원초과	4	1,014	108	905	485	14	—	471
	5억원초과	—	—	—	—	—	—	—	—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74	계	296	9,036	3,902	4,262	1,820	135	—	1,685
	20만원이하	1	2	2	0	0	—	—	0
	20만원초과	23	221	213	9	1	0	—	1
	50만원초과	68	713	625	88	11	1	—	10
	200만원초과	90	1,211	830	318	52	3	—	48
	500만원초과	54	1,162	712	450	97	17	—	80
	1천만원초과	48	2,898	1,094	994	308	35	—	273
	3천만원초과	7	743	173	570	243	4	—	240
	1억원초과	4	829	208	621	329	18	—	310
	5억원초과	1	1,257	46	1,211	780	57	—	723
1975	계	156	17,896	2,741	15,128	9,428	459	—	8,969
74.12.31	20만원이하	1	9	9	0	0	—	—	0
이전상속분	20만원초과	9	45	42	4	0	—	—	0
	50만원초과	40	558	469	62	7	0	—	7
	200만원초과	35	387	279	109	17	1	—	16
	500만원초과	28	683	443	240	50	5	—	45
	1천만원초과	21	823	343	480	151	10	—	141
	3천만원초과	13	1,151	263	888	380	12	—	368
	1억원초과	5	1,729	136	1,593	858	31	—	827
	5억원초과	4	12,511	758	11,753	7,965	400	—	7,565
75.1.1	계	84	3,957	2,363	1,594	738	93	—	644
이후상속분	50만원이하	2	57	56	1	0	0	—	0
	50만원초과	9	181	174	7	1	0	—	1
	100만원초과	15	340	314	26	3	0	—	3
	300만원초과	16	630	562	68	10	2	—	9
	500만원초과	9	215	153	62	11	1	—	10
	700만원초과	5	117	72	44	9	1	—	9
	1000만원초과	5	189	135	54	12	1	—	11
	1500만원초과	9	483	340	142	38	6	—	32
	2000만원초과	8	423	224	199	65	2	—	63
	3000만원초과	2	256	168	88	35	20	—	15
	5000만원초과	1	80	11	69	31	10	—	21
	7000만원초과	1	112	31	81	38	1	—	37
	1억원초과	1	136	26	109	55	1	—	54
	3억원초과	—	—	—	—	—	—	—	—
	5억원초과	1	739	96	643	427	48	—	379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76	계	56	5,827	560	5,268	3,244	198	—	3,046
75.12.31	20만원이하	—	—	—	—	—	—	—	—
이전상속분	20만원초과	1	5	5	0	0	—	—	0
	50만원초과	13	63	58	5	1	0	—	1
	200만원초과	19	223	166	58	9	0	—	9
	500만원초과	3	21	4	17	8	0	—	8
	1천만원초과	11	341	152	189	53	1	—	52
	3천만원초과	1	56	11	45	29	2	—	27
	1억원초과	6	911	21	891	429	107	—	323
	5억원초과	2	4,205	143	4,063	2,715	88	—	2,627
76.1.1	계	214	20,877	15,248	5,630	2,654	262	—	2,391
이후상속분	과세미달	1,457	8,922	8,742	180	—	—	—	—
	50만원이하	12	132	127	4	0	0	—	0
	50만원초과	12	216	207	9	1	0	—	1
	100만원초과	41	650	573	78	10	1	—	9
	300만원초과	22	486	396	90	14	1	—	13
	500만원초과	24	639	483	156	28	1	—	27
	700만원초과	21	687	512	175	34	3	—	31
	1000만원초과	25	971	655	316	76	4	—	72
	1500만원초과	12	736	511	225	65	3	—	62
	2000만원초과	16	930	551	379	123	5	—	118
	3000만원초과	15	1,229	670	558	211	11	—	200
	5000만원초과	5	571	258	313	137	4	—	133
	7000만원초과	2	514	298	216	104	—	—	104
	1억원초과	3	1,076	309	767	437	13	—	424
	3억원초과	2	1,474	711	763	473	105	—	368
	5억원초과	2	1,646	245	1,401	940	112	—	827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77	계	39	2,493	446	2,047	1,111	3	—	1,108
74.12.31	20만원이하	—	—	—	—	—	—	—	—
이전상속분	20만원초과	1	5	5	0	0	—	—	0
	50만원초과	7	100	91	9	1	—	—	1
	200만원초과	9	175	145	30	5	—	—	5
	500만원초과	8	104	43	61	13	0	—	13
	1천만원초과	7	212	65	147	47	2	—	45
	3천만원초과	4	313	48	265	114	—	—	114
	1억원초과	2	542	42	500	271	—	—	271
	5억원초과	1	1,041	8	1,034	659	—	—	659
75.1.1	계	261	15,860	9,326	6,533	3,091	218	—	2,873
이후상속분	50만원이하	11	160	157	3	0	0	—	0
	50만원초과	9	151	144	7	1	0	—	1
	100만원초과	43	1,056	972	84	11	0	—	10
	300만원초과	40	1,290	1,128	162	25	1	—	24
	500만원초과	18	674	561	113	20	1	—	19
	700만원초과	34	1,363	1,076	286	59	4	—	55
	1000만원초과	23	905	607	298	75	4	—	71
	1500만원초과	21	988	599	390	113	1	—	112
	2000만원초과	21	1,387	875	512	167	14	—	153
	3000만원초과	22	2,033	1,073	960	380	14	—	366
	5000만원초과	9	1,600	1,042	558	244	37	—	207
	7000만원초과	3	392	151	242	113	20	—	93
	1억원초과	4	982	163	819	470	35	—	435
	3억원초과	1	585	200	385	239	24	—	215
	5억원초과	2	2,293	579	1,714	1,175	64	—	1,111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78	계	7	59	36	23	4	0	—	4
74.12.31	20만원이하	—	—	—	—	—	—	—	—
이전상속분	20만원초과	—	—	—	—	—	—	—	—
	50만원초과	3	19	15	4	0	—	—	0
	200만원초과	3	29	19	10	2	0	—	2
	500만원초과	1	11	2	10	2	—	—	2
	1천만원초과	—	—	—	—	—	—	—	—
	3천만원초과	—	—	—	—	—	—	—	—
	1억원초과	—	—	—	—	—	—	—	—
	5억원초과	—	—	—	—	—	—	—	—
75.1.1	계	278	16,818	8,316	8,502	4,035	852	—	3,183
이후상속분	50만원이하	10	169	166	3	0	0	—	0
	50만원초과	13	292	281	11	1	0	—	1
	100만원초과	45	911	832	79	10	0	—	10
	300만원초과	34	980	855	125	19	1	—	18
	500만원초과	19	551	441	110	19	1	—	19
	700만원초과	26	839	628	211	44	2	—	42
	1000만원초과	19	627	408	218	51	4	—	48
	1500만원초과	19	786	556	230	65	3	—	61
	2000만원초과	29	1,453	745	708	233	24	—	209
	3000만원초과	24	1,876	903	973	378	22	—	356
	5000만원초과	14	1,159	400	759	326	34	—	292
	7000만원초과	10	984	433	551	257	10	—	247
	1억원초과	14	4,878	1,667	3,211	1,685	118	—	1,568
	3억원초과	—	—	—	—	—	—	—	—
	5억원초과	2	1,313	—	1,313	946	633	—	313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79	계	11	135	66	69	18	—	—	18
74.12.31	20만원이하	—	—	—	—	—	—	—	—
이전상속분	20만원초과	1	9	9	0	0	—	—	0
	50만원초과	2	19	17	2	0	—	—	0
	200만원초과	4	32	18	14	2	—	—	2
	500만원초과	1	12	6	5	1	—	—	1
	1천만원초과	3	63	16	47	14	—	—	14
	3천만원초과	—	—	—	—	—	—	—	—
	1억원초과	—	—	—	—	—	—	—	—
	5억원초과	—	—	—	—	—	—	—	—
75.1.1	계	306	14,408	9,423	4,987	1,929	150	—	1,778
이후상속분	50만원이하	6	175	173	2	0	0	—	0
	50만원초과	17	397	384	14	1	0	—	1
	100만원초과	30	721	667	54	7	0	—	6
	300만원초과	39	1,066	925	141	22	1	—	20
	500만원초과	31	1,371	1,195	176	32	2	—	29
	700만원초과	28	931	709	222	46	2	—	44
	1000만원초과	65	2,649	1,811	838	212	31	—	181
	1500만원초과	18	1,060	778	283	81	4	—	78
	2000만원초과	24	1,403	949	454	150	16	—	133
	3000만원초과	18	1,271	605	666	256	24	—	232
	5000만원초과	15	986	312	674	313	13	—	300
	7000만원초과	3	844	582	261	125	5	—	120
	1억원초과	10	1,528	332	1,195	679	51	—	628
	3억원초과	—	—	—	—	—	—	—	—
	5억원초과	2	8	—	8	6	—	—	6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80	계	5	67	41	12	—	12	—	—
74.12.31	20만원이하	—	—	—	—	—	—	—	—
이전상속분	20만원초과	1	6	0	0	—	0	—	—
	50만원초과	—	—	—	—	—	—	—	—
	200만원초과	1	9	2	0	—	0	—	—
	500만원초과	2	23	12	2	—	2	—	—
	1천만원초과	1	29	26	9	—	9	—	—
	3천만원초과	—	—	—	—	—	—	—	—
	1억원초과	—	—	—	—	—	—	—	—
	5억원초과	—	—	—	—	—	—	—	—
75.1.1	계	223	16,513	7,052	3,317	139	3,178	—	—
이후상속분	50만원이하	13	212	2	0	0	0	—	—
	50만원초과	8	231	6	1	0	1	—	—
	100만원초과	24	774	44	6	0	5	—	—
	300만원초과	16	546	71	11	0	10	—	—
	500만원초과	24	1,570	151	27	1	26	—	—
	700만원초과	30	1,223	234	46	2	44	—	—
	1000만원초과	20	833	277	68	2	65	—	—
	1500만원초과	20	1,074	351	99	8	91	—	—
	2000만원초과	18	1,222	452	147	8	138	—	—
	3000만원초과	21	2,009	862	328	2	326	—	—
	5000만원초과	9	1,109	553	241	2	239	—	—
	7000만원초과	6	1,244	630	292	4	288	—	—
	1억원초과	10	2,735	1,857	1,044	99	945	—	—
	3억원초과	2	704	556	332	11	321	—	—
	5억원초과	2	1,030	1,005	676		676	—	—
80.1.1	계	122	11,198	—	3,175	1,223	122	—	1,100
이후상속분	100만원이하	3	89	—	2	0	0	—	0
	100만원초과	21	790	—	47	4	0	—	4
	300만원초과	11	683	—	43	4	0	—	4
	500만원초과	16	1,067	—	96	11	1	—	10
	700만원초과	9	495	—	76	11	1	—	10
	1000만원초과	12	569	—	138	22	3	—	19
	1300만원초과	17	1,297	—	276	54	4	—	50
	1900만원초과	9	588	—	205	47	4	—	43
	2500만원초과	8	631	—	234	62	13	—	49
	3500만원초과	7	629	—	282	83	9	—	74
	5000만원초과	2	419	—	124	43	4	—	39
	7000만원초과	3	577	—	238	90	9	—	81
	1억원초과	3	718	—	541	260	73	—	187
	3억원초과	—	—	—	—	—	—	—	—
	5억원초과	1	2,645	—	874	530	0	—	529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81	계	363	26,288	10,326	15,961	9,095	407	—	8,684
75.1.1	50만원이하	16	247	241	6	1	0	—	1
이후상속분	50만원초과	19	387	372	15	5	—	—	2
	100만원초과	62	1,089	954	135	18	0	—	18
	300만원초과	56	1,355	1,122	233	34	0	—	34
	500만원초과	24	550	407	142	24	0	—	24
	700만원초과	39	1,232	879	353	73	1	—	72
	1000만원초과	39	1,218	728	490	121	1	—	119
	1500만원초과	19	795	462	332	94	0	—	94
	2000만원초과	18	860	379	480	159	3	—	156
	3000만원초과	22	1,778	874	904	358	22	—	336
	5000만원초과	10	1,055	469	586	251	28	—	223
	7000만원초과	12	1,836	651	1,184	566	77	—	489
	1억원초과	20	6,285	2,196	4,088	2,504	93	—	2,411
	3억원초과	3	1,344	205	1,140	706	19	—	687
	5억원초과	4	6,260	387	5,873	4,183	162	—	4,020
80.1.1	계	503	68,270	30,455	37,815	20,477	6,491	—	13,986
이후상속분	100만원이하	56	1,282	1,240	42	3	0	—	3
	100만원초과	38	1,257	1,182	75	6	0	—	6
	300만원초과	51	2,253	2,036	218	22	1	—	21
	500만원초과	28	1,369	1,197	172	20	2	—	19
	700만원초과	55	2,806	2,318	487	68	3	—	66
	1000만원초과	37	2,258	1,814	444	74	4	—	70
	1300만원초과	47	3,423	2,698	725	140	10	—	130
	1900만원초과	49	4,051	3,005	1,046	234	13	—	220
	2500만원초과	39	3,944	2,809	1,135	293	30	—	263
	3500만원초과	27	2,741	1,566	1,175	352	18	—	334
	5000만원초과	21	3,007	1,731	1,276	442	20	—	422
	7000만원초과	14	1,944	739	1,206	525	42	—	483
	1억원초과	29	9,097	4,340	4,757	2,177	51	—	2,127
	3억원초과	4	2,098	408	1,689	912	57	—	856
	5억원초과	8	26,740	3,372	23,368	15,209	6,241	—	8,968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82 77.1.1~ 79.12.31 상속분	계	159	10,538	5,360	5,177	2,407	54	—	2,353
	50만원이하	1	8	8	0	0	—	—	0
	50만원초과	9	149	142	7	1	—	—	1
	100만원초과	16	353	319	34	4	−0	—	5
	300만원초과	28	652	532	120	19	—	—	19
	500만원초과	13	442	365	77	13	—	—	13
	700만원초과	10	444	361	83	17	−0	—	17
	1000만원초과	22	805	532	273	67	0	—	67
	1500만원초과	12	484	273	212	59	−1	—	60
	2000만원초과	11	562	293	269	90	−4	—	93
	3000만원초과	11	902	433	469	185	2	—	182
	5000만원초과	7	565	175	390	165	24	—	141
	7000만원초과	5	697	219	478	233	19	—	214
	1억원초과	11	3,455	1,543	1,912	1,072	14	—	1,058
	3억원초과	3	1,363	46	1,317	830	−0	—	831
	5억원초과		−343	120	−464	−348	—	—	−348
80.1.1~ 81.12.31 상속분	계	471	60,894	28,543	32,351	16,088	656	—	15,432
	100만원이하	32	647	623	24	2	0	—	2
	100만원초과	36	1,164	1,087	77	7	0	—	6
	300만원초과	44	1,728	1,555	173	17	0	—	17
	500만원초과	37	1,396	1,152	244	28	1	—	27
	700만원초과	31	1,427	1,151	276	39	1	—	38
	1000만원초과	41	1,873	1,384	489	82	3	—	79
	1300만원초과	45	3,803	3,087	716	139	5	—	134
	1900만원초과	36	3,414	2,590	824	183	11	—	172
	2500만원초과	30	2,350	1,494	856	223	20	—	203
	3500만원초과	40	3,696	1,870	1,826	462	10	—	452
	5000만원초과	22	2,823	1,465	1,357	437	10	—	428
	7000만원초과	23	2,942	1,016	1,926	748	74	—	673
	1억원초과	40	11,350	3,995	7,355	3,634	156	—	3,479
	3억원초과	6	2,654	703	1,951	1,023	132	—	892
	5억원초과	8	19,628	5,371	14,257	9,064	234	—	8,830
1982 82.1.1 이후상속분	계	190	20,753	13,260	7,493	2,802	261	—	2,541
	100만원이하	10	497	490	7	0	0	—	0
	100만원초과	22	952	904	49	4	0	—	4
	300만원초과	17	835	758	78	6	1	—	6
	500만원초과	20	908	787	121	12	1	—	11
	700만원초과	14	930	833	97	12	1	—	11
	1000만원초과	10	910	796	114	14	1	—	13
	1300만원초과	21	1,787	1,505	282	48	4	—	44
	1900만원초과	8	615	434	181	30	3	—	27
	2500만원초과	18	1,873	1,328	545	108	9	—	98
	3500만원초과	17	1,779	1,199	579	165	15	—	151
	5000만원초과	8	898	513	384	145	18	—	127
	7000만원초과	11	1,856	1,031	825	239	17	—	222
	1억원초과	7	2,600	1,268	1,332	555	50	—	505
	3억원초과	6	2,276	1,078	1,198	498	46	—	452
	5억원초과	1	2,038	336	1,702	965	94	—	871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83 79.12.31 이전상속분	계	102	5,124	1,981	3,144	1,561	24	—	1,537
	50만원이하	3	40	39	1	0	—	—	0
	50만원초과	5	116	111	4	0	—	—	0
	100만원초과	10	207	189	19	2	0	—	2
	300만원초과	8	37	7	29	5	0	—	4
	500만원초과	11	270	202	69	13	0	—	12
	700만원초과	11	511	385	125	26	1	—	25
	1000만원초과	12	442	292	150	37	2	—	35
	1500만원초과	9	279	130	149	41	—	—	41
	2000만원초과	5	201	90	111	35	—	—	35
	3000만원초과	12	586	100	486	188	13	—	175
	5000만원초과	7	633	198	435	190	3	—	187
	7000만원초과	3	339	79	260	124	0	—	124
	1억원초과	3	470	140	330	168	5	—	163
	3억원초과	—	—	—	—	—	—	—	
	5억원초과	3	993	18	975	732	—	—	732
80.1.1~ 81.12.31 상속분	계	276	25,244	13,161	12,083	5,422	207	—	5,201
	100만원이하	35	1,047	1,013	34	2	0	—	2
	100만원초과	24	736	690	46	4	0	—	4
	300만원초과	22	767	684	83	8	0	—	8
	500만원초과	22	844	721	123	14	—	—	14
	700만원초과	14	675	561	113	15	0	—	15
	1000만원초과	27	872	613	260	41	—	—	41
	1300만원초과	25	1,615	1,209	406	80	0	—	79
	1900만원초과	9	696	490	206	48	3	—	44
	2500만원초과	21	1,659	1,060	599	153	9	—	256
	3500만원초과	22	2,197	1,287	910	272	15	—	397
	5000만원초과	20	2,780	1,663	1,118	401	4	—	552
	7000만원초과	16	2,683	1,252	1,431	567	15	—	1,341
	1억원초과	16	4,205	1,371	2,834	1,359	18	—	274
	3억원초과	1	654	144	510	285	11	—	2,041
	5억원초과	2	3,814	405	3,409	2,172	131	—	131
82.1.1 이후상속분	계	727	90,088	45,785	44,303	19,734	4,970	—	14,764
	100만원이하	108	5,413	5,312	101	7	0	—	7
	100만원초과	40	1,586	1,519	68	5	0	—	5
	300만원초과	40	2,686	2,527	159	14	1	—	14
	500만원초과	56	2,896	2,572	324	32	3	—	29
	700만원초과	76	3,765	3,112	653	74	6	—	68
	1000만원초과	81	3,314	2,349	965	122	7	—	115
	1300만원초과	68	4,532	3,444	1,089	155	9	—	145
	1900만원초과	54	4,556	3,368	1,189	197	13	—	184
	2500만원초과	41	4,138	2,992	1,145	216	6	—	210
	3500만원초과	40	5,590	3,907	1,683	395	48	—	347
	5000만원초과	36	5,226	3,029	2,197	604	35	—	569
	7000만원초과	26	4,758	2,579	2,179	695	40	—	655
	1억원초과	44	11,818	5,020	6,798	2,701	284	—	2,417
	3억원초과	2	870	168	702	325	32	—	293
	5억원초과	15	28,939	3,888	25,052	14,193	4,487	—	9,706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84	계	125(−3)	6,012	3,018	2,994	1,224	11	−	1,214
79.12.31	50만원이하	13	491	448	43	4	−	−	4
이전상속분	50만원초과	1	17	16	1	0	−	−	0
	100만원초과	13	238	210	27	4	−	−	4
	300만원초과	6	161	138	24	4	−	−	4
	500만원초과	8	220	167	53	10	0	−	10
	700만원초과	19	587	425	163	33	0	−	33
	1000만원초과	16	529	316	212	54	−	−	54
	1500만원초과	6	191	89	102	28	−	−	28
	2000만원초과	13	577	244	333	110	2	−	108
	3000만원초과	10	554	217	337	123	0	−	123
	5000만원초과	4	322	56	266	118	−	−	118
	7000만원초과	5	544	131	413	195	0	−	195
	1억원초과	8	1,545	561	984	515	8	−	507
	3억원초과	3(−3)	37	−	37	26	−	−	26
	5억원초과	−	−	−	−	−	−	−	−
80.1.1～	계	168	23,360	8,599	14,761	7,719	98	−	7,621
81.12.31	100만원이하	14	524	518	6	0	0	−	0
상속분	100만원초과	12	377	354	23	2	−	−	2
	300만원초과	10	367	330	37	4	−	−	4
	500만원초과	9	266	211	55	6	−	−	6
	700만원초과	16	634	492	142	20	0	−	20
	1000만원초과	8	387	298	90	14	0	−	14
	1300만원초과	11	734	535	199	41	0	−	41
	1900만원초과	21	1,092	631	461	104	8	−	96
	2500만원초과	17	896	401	494	127	8	−	119
	3500만원초과	17	1,596	898	698	208	3	−	205
	5000만원초과	7	1,074	636	438	153	1	−	152
	7000만원초과	5	868	461	407	156	−	−	156
	1억원초과	7	1,725	694	1,031	475	47	−	429
	3억원초과	8	3,956	654	3,302	1,799	−	−	1,799
	5억원초과	6	8,864	1,485	7,379	4,608	31	−	4,577
82.1.1	계	854	151,188	71,339	79,849	36,403	4,785	476	32,095
이후상속분	100만원이하	47	1,575	1,547	28	2	0	0	2
	100만원초과	67	3,335	3,200	135	11	0	0	11
	300만원초과	47	2,530	2,330	200	18	1	0	18
	500만원초과	65	3,251	2,840	411	39	1	1	38
	700만원초과	58	3,914	3,412	502	57	3	2	56
	1000만원초과	48	2,981	2,426	555	69	4	2	67
	1300만원초과	79	7,203	5,898	1,305	191	14	8	184
	1900만원초과	48	3,502	2,491	1,010	163	9	5	159
	2500만원초과	80	9,423	7,225	2,197	413	28	6	391
	3500만원초과	72	9,536	6,807	2,729	605	61	9	553
	5000만원초과	65	9,473	5,644	3,829	1,053	65	24	1,012
	7000만원초과	48	8,814	4,870	3,943	1,253	53	25	1,225
	1억원초과	79	23,406	9,731	13,674	5,582	564	78	5,096
	3억원초과	31	17,573	6,137	11,436	5,328	421	149	5,055
	5억원초과	20	44,674	6,781	37,893	21,619	3,559	167	18,228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85	계	21	1,105	477	628	252	1	—	252
79.12.31	50만원이하	−1	−57	−57	−0	−0	—	—	−0
이전상속분	50만원초과	1	29	28	1	0	—	—	0
	100만원초과	—	—	—	—	—	—	—	—
	300만원초과	2	35	27	8	1	—	—	1
	500만원초과	2	51	40	11	2	—	—	2
	700만원초과	1	25	17	8	2	—	—	2
	1000만원초과	7	218	136	82	20	0	—	20
	1500만원초과	—	—	—	—	—	—	—	—
	2000만원초과	1	46	22	25	8	—	—	8
	3000만원초과	4	383	204	179	72	1	—	71
	5000만원초과	2	144	26	118	51	—	—	51
	7000만원초과	1	95	19	76	35	—	—	35
	1억원초과	1	136	17	119	62	—	—	62
	3억원초과	—	—	—	—	—	—	—	—
	5억원초과	—	—	—	—	—	—	—	—
80.1.1~	계	250	19,463	9,620	9,842	4,094	101	—	3,993
81.12.31	100만원이하	23	397	381	16	1	—	—	1
상속분	100만원초과	24	745	699	46	4	—	—	4
	300만원초과	14	442	388	55	5	—	—	5
	500만원초과	17	555	456	99	11	—	—	11
	700만원초과	25	872	662	210	29	0	—	29
	1000만원초과	20	684	468	216	34	1	—	34
	1300만원초과	35	1,350	805	544	105	−0	—	105
	1900만원초과	9	560	354	206	47	4	—	44
	2500만원초과	20	1,400	821	579	149	5	—	144
	3500만원초과	23	1,884	899	985	298	2	—	296
	5000만원초과	12	1,151	432	719	247	1	—	246
	7000만원초과	10	1,332	480	853	333	6	—	327
	1억원초과	12	4,056	1,829	2,227	1,077	77	—	1,000
	3억원초과	4	2,518	916	1,602	869	4	—	865
	5억원초과	2	1,518	32	1,485	883	—	—	883
82.1.1	계	839	136,707	72,164	64,543	28,180	5,266	1,066	23,980
이후상속분	100만원이하	52	2,238	2,202	36	2	0	0	3
	100만원초과	54	2,674	2,561	113	9	1	0	8
	300만원초과	48	2,791	2,609	182	16	0	1	16
	500만원초과	50	2,943	2,658	286	28	1	1	27
	700만원초과	72	5,107	4,487	620	70	5	3	68
	1000만원초과	52	3,584	2,987	596	74	4	2	72
	1300만원초과	88	7,715	6,377	1,338	188	18	5	175
	1900만원초과	57	5,903	4,643	1,260	209	13	4	200
	2500만원초과	71	8,032	5,980	2,053	395	24	11	382
	3500만원초과	83	10,704	7,253	3,451	804	48	33	789
	5000만원초과	53	9,123	5,902	3,221	898	120	19	797
	7000만원초과	52	10,205	5,963	4,242	1,344	100	20	1,264
	1억원초과	73	22,346	10,647	11,699	4,692	296	175	4,572
	3억원초과	17	11,216	4,339	6,878	3,258	216	128	3,171
	5억원초과	17	32,125	3,557	28,568	16,191	4,420	665	12,436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86	계	0	−1	109	−6	−2	−	−	−2
79.12.31	50만원이하	−	−	−	−	−	−	−	−
이전상속분	50만원초과	−	−	−	−	−	−	−	−
	100만원초과	−	−	−	−	−	−	−	−
	300만원초과	−	−1	−	−1	−0	−	−	−0
	500만원초과	−	−	−	−	−	−	−	−
	700만원초과	1	67	57	10	2	−	−	2
	1000만원초과	−1	−67	52	−15	−4	−	−	−4
	1500만원초과	−	−	−	−	−	−	−	−
	2000만원초과	−	−	−	−	−	−	−	−
	3000만원초과	−	−	−	−	−	−	−	−
	5000만원초과	−	−	−	−	−	−	−	−
	7000만원초과	−	−	−	−	−	−	−	−
	1억원초과	−	−	−	−	−	−	−	−
	3억원초과	−	−	−	−	−	−	−	−
	5억원초과	−	−	−	−	−	−	−	−
80.1.1~	계	170	14,011	7,384	6,627	2,677	77	−	2,600
81.12.31	100만원이하	11	254	244	10	1	−	−	1
상속분	100만원초과	10	302	280	21	2	−0	−	2
	300만원초과	18	687	606	80	8	0	−	8
	500만원초과	16	672	572	100	12	0	−	12
	700만원초과	18	985	827	158	22	1	−	21
	1000만원초과	14	636	478	158	25	0	−	25
	1300만원초과	14	496	284	212	40	2	−	38
	1900만원초과	2	235	172	64	16	−	−	16
	2500만원초과	14	811	408	403	103	−	−	103
	3500만원초과	15	1,251	612	639	193	10	−	183
	5000만원초과	14	1,602	799	803	272	16	−	256
	7000만원초과	11	1,731	874	856	324	−19	−	343
	1억원초과	13	3,193	926	2,266	1,083	121	−	963
	3억원초과	−	−	−	−	−	−	−	−
	5억원초과	−	1,157	300	857	574	−54	−	628
82.1.1	계	1,154	217,961	110,055	107,906	48,901	4,548	1,508	45,862
이후상속분	100만원이하	79	2,490	2,440	49	3	0	0	4
	100만원초과	91	5,728	5,568	160	13	1	1	12
	300만원초과	60	4,105	3,868	237	21	1	1	21
	500만원초과	71	4,023	3,584	439	44	3	2	44
	700만원초과	93	7,060	6,282	778	87	4	5	88
	1000만원초과	68	6,024	5,255	769	95	7	4	92
	1300만원초과	94	8,893	7,403	1,490	212	19	8	201
	1900만원초과	75	6,740	5,116	1,624	267	23	13	257
	2500만원초과	106	13,966	10,756	3,210	633	38	26	621
	3500만원초과	83	12,944	9,414	3,530	832	85	36	782
	5000만원초과	84	12,984	7,673	5,311	1,506	150	45	1,402
	7000만원초과	73	16,580	10,146	6,434	2,102	186	89	2,006
	1억원초과	103	30,817	14,084	16,733	6,733	588	199	6,344
	3억원초과	34	19,249	6,264	12,985	6,092	743	275	5,624
	5억원초과	40	66,356	12,200	54,155	30,259	2,699	805	28,365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87	계	9	966	698	268	86	24	—	84
80.1.1~	100만원이하	—	—	—	—	—	—	—	—
81.12.31	100만원초과	1	25	24	1	—	—	—	—
상속분	300만원초과	—	—	—	—	—	—	—	—
	500만원초과	—	—	—	—	—	—	—	—
	700만원초과	3	103	79	24	3	—	—	3
	1000만원초과	1	54	43	11	1	—	—	1
	1300만원초과	1	39	24	15	3	1	—	3
	1900만원초과	1	49	27	22	5	2	—	4
	2500만원초과	—	—	—	—	—	—	—	—
	3500만원초과	—	—	—	—	—	—	—	—
	5000만원초과	—	—	—	—	—	—	—	—
	7000만원초과	2	696	501	195	74	21	—	73
	1억원초과	—	—	—	—	—	—	—	—
	3억원초과	—	—	—	—	—	—	—	—
	5억원초과	—	—	—	—	—	—	—	—
82.1.1	계	1,131	245,723	126,591	119,232	53,807	5,128	—	50,462
이후상속분	100만원이하	71	3,534	3,494	40	2	—	—	2
	100만원초과	64	4,522	4,408	114	9	—	—	9
	300만원초과	58	4,920	4,690	230	20	1	—	20
	500만원초과	51	4,439	4,143	296	29	1	—	28
	700만원초과	67	6,036	5,467	569	63	2	—	63
	1000만원초과	65	5,414	4,676	738	91	5	—	89
	1300만원초과	90	9,455	8,032	1,423	202	15	—	193
	1900만원초과	77	7,905	6,193	1,712	284	15	—	279
	2500만원초과	100	13,162	10,234	2,928	567	38	—	548
	3500만원초과	93	13,930	10,065	3,865	901	66	—	869
	5000만원초과	89	15,634	10,408	5,226	1,434	112	—	1,371
	7000만원초과	77	14,417	7,956	6,561	2,071	216	—	1,925
	1억원초과	150	50,418	24,618	25,800	10,521	783	—	10,074
	3억원초과	31	20,277	8,564	11,713	5,485	540	—	5,278
	5억원초과	48	71,660	13,643	58,017	32,128	3,334	—	29,714
1988	계	1,414	261,368	133,496	127,872	57,356	6,428	—	53,896
82.1.1	100만원이하	189	4,580	4,417	163	11	—	—	13
이후상속분	100만원초과	83	3,986	3,816	170	14	1	—	14
	300만원초과	46	3,332	3,110	222	21	1	—	21
	500만원초과	65	4,363	3,992	371	38	2	—	37
	700만원초과	68	6,302	5,564	738	90	4	—	88
	1000만원초과	73	6,212	5,264	948	126	5	—	126
	1300만원초과	88	7,932	6,571	1,361	200	14	—	194
	1900만원초과	91	9,687	7,723	1,964	340	20	—	331
	2500만원초과	107	11,425	8,470	2,955	600	52	—	581
	3500만원초과	93	13,785	10,212	3,573	857	76	—	817
	5000만원초과	122	18,278	11,710	6,568	1,855	134	—	1,862
	7000만원초과	95	17,440	10,085	7,355	2,397	207	—	2,298
	1억원초과	193	51,523	22,643	28,880	11,792	1,008	—	11,377
	3억원초과	37	19,020	8,036	10,984	5,115	328	—	5,144
	5억원초과	64	83,503	21,883	61,620	33,900	4,576	—	30,993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89	계	1,330	327,507	146,533	180,974	86,682	10,171	—	79,584
82.1.1~	100만원이하	65	3,999	3,881	118	8	—	—	8
88.12.31	100만원초과	66	3,451	3,303	148	12	—	—	12
상속분	300만원초과	112	8,689	8,253	436	39	2	—	38
	500만원초과	64	6,147	5,745	402	41	3	—	40
	700만원초과	67	6,158	5,583	575	65	4	—	63
	1000만원초과	64	4,757	3,963	794	102	4	—	103
	1300만원초과	97	10,057	8,530	1,527	217	19	—	208
	1900만원초과	68	6,188	4,691	1,497	246	13	—	243
	2500만원초과	118	16,021	12,475	3,546	697	44	—	680
	3500만원초과	104	14,641	10,227	4,414	1,039	66	—	1,025
	5000만원초과	102	17,334	11,108	6,226	1,740	125	—	1,704
	7000만원초과	125	26,726	15,187	11,539	3,807	252	—	3,783
	1억원초과	157	50,195	22,164	28,031	11,525	681	—	11,463
	3억원초과	61	35,088	13,377	21,711	10,317	771	—	10,054
	5억원초과	60	118,056	18,046	100,010	56,827	8,187	—	50,160
89.1.1	계	373	76,623	45,049	31,574	9,019	977	—	8,120
이후상속분	300만원이하	33	2,804	2,741	63	3	—	—	3
	300만원초과	53	6,420	6,038	382	30	3	—	28
	1000만원초과	91	9,262	7,661	1,601	181	18	—	165
	3000만원초과	54	7,808	5,416	2,392	362	37	—	332
	6000만원초과	56	10,905	6,615	4,290	784	53	—	737
	1억원초과	61	21,094	11,676	9,418	2,372	407	—	1,979
	3억원초과	17	9,012	3,319	5,693	1,794	140	—	1,666
	5억원초과	8	9,318	1,583	7,735	3,493	319	—	3,210

[표 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계속)

(단위 : 건, 천원)

		과세건수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가액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1990	계	616	176,721	73,678	103,043	50,368	10,170	—	42,468
88.12.31	100만원이하	13	723	716	7	1	—	—	1
이전상속분	100만원초과	22	1,997	1,960	37	3	—	—	3
	300만원초과	21	2,353	2,269	84	8	—	—	8
	500만원초과	17	2,393	2,294	99	10	—	—	10
	700만원초과	57	5,600	5,090	510	58	7	—	54
	1000만원초과	36	3,051	2,627	424	53	2	—	56
	1300만원초과	43	4,277	3,572	705	102	8	—	98
	1900만원초과	33	3,870	3,105	765	130	6	—	132
	2500만원초과	43	5,486	4,213	1,273	248	14	—	245
	3500만원초과	78	10,104	6,559	3,545	862	21	—	889
	5000만원초과	49	10,122	7,039	3,083	873	35	—	893
	7000만원초과	59	11,935	6,960	4,975	1,598	78	—	1,620
	1억원초과	78	23,706	11,023	12,683	5,104	240	—	5,107
	3억원초과	28	16,487	5,483	11,004	5,188	412	—	4,930
	5억원초과	39	74,617	10,768	63,849	36,130	9,347	—	28,422
89.1.1	계	1,678	478,975	255,510	223,465	78,862	9,904	—	73,038
이후상속분	300만원이하	188	9,544	9,113	431	21	1	—	20
	300만원초과	246	20,644	18,612	2,032	166	18	—	152
	1000만원초과	283	37,813	31,775	6,038	722	58	—	686
	3000만원초과	280	52,375	39,272	13,103	2,019	246	—	1,825
	6000만원초과	234	52,136	33,068	19,068	3,562	248	—	3,462
	1억원초과	281	100,107	55,904	44,203	11,214	809	—	10,907
	3억원초과	77	46,196	14,983	31,213	10,569	933	—	10,097
	5억원초과	89	160,160	52,783	107,377	50,589	7,591	—	45,889

주 : 1965년의 경우 세가지로 구분 1종 : 1956년 이전 상속개시분.
2종 : 1957~1960년 상속개시분.
3종 : 1961년 이후 상속개시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6] 연도별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단위 : 백만원)

	토지				축조물		광산		입목, 죽	차량	선박	유가증권과 출자의 가액						통화와 예금				
	전	답	대	기타	건물	기타	권리	설치				국채	지방채	사채	주권	법인에의 출자	기타증권 및 출자	통화	은행 예금	신탁 예금	우편 예금	기타 예금
1965	52	152	167	19	140	0	—	—	11	7	9	—	—	—	29	33	0	22	4	1	0	0
1966	74	232	414	12	270	1	—	—	25	3	14	0	—	—	134	29	2	10	17	0	0	0
1967	89	237	625	82	352	4	1	0	5	9	4	4	—	—	280	141	1	18	22	—	—	2
1968	93	196	1,187	47	440	19	—	—	8	5	8	0	4	1	113	62	135	26	14	—	1	4
1969	309	241	1,480	260	612	203	1	—	13	7	—	—	—	6	301	20	6	30	37	—	—	3
1970	406	380	2,600	398	855	30	—	—	17	18	10	1	—	—	1,064	271	17	195	40	4	0	3
1971	467	530	3,583	348	1,278	12	—	—	17	6	9	0	0	—	1,619	11	1	201	125	0	—	3
1972	318	433	3,792	405	1,132	75	—	—	8	6	17	—	—	—	431	59	9	84	359	—	0	22
1973	221	293	3,806	157	1,387	20	—	—	28	16	133	—	0	8	394	85	34	34	139	0	—	4
1974	245	294	3,869	441	1,425	39	—	—	12	40	51	—	—	25	1,683	23	54	174	74	3	—	2
1975	182	639	3,450	283	1,808	22	—	—	17	42	159	—	—	520	6,205	55	504	1,378	1,217	15	—	42
1976	567	376	13,420	584	3,088	57	—	—	29	55	107	0	2	4,526	355	425	64	105	929	—	—	189
1977	361	489	7,648	301	3,010	26	—	—	18	36	149	0	—	3,443	62	105	26	207	232	14	—	5
1978	491	829	7,466	699	2,712	31	—	—	5	105	43	—	—	35	1,186	63	1	300	94	—	—	34
1979	603	691	6,224	671	3,044	60	—	—	1	62	191	268	0	—	1,030	91	18	195	185	0	—	20
1980	1,245	1,538	11,996	645	6,051	225	—	—	99	106	52	—	—	44	1,901	80	322	54	242	3	2	221
1981	4,859	5,070	39,566	2,652	21,168	289	—	—	26	108	6	206	707	184	8,841	751	9	182	1,041	117	0	109
1982	5,060	5,276	41,189	2,592	20,407	1,738	—	30	309	218	130	9	—	—	7,524	32	250	423	1,273	—	12	2
1983	10,335	7,815	42,825	2,402	27,894	1,621	5	—	200	331	191	2	—	120	10,464	169	50	1,091	445	—	20	121
1984	8,728	9,360	87,791	5,053	33,778	1,035	35	—	2	342	702	70	0	157	14,258	597	84	246	1,134	1,065	6	100
1985	8,994	9,614	66,504	4,916	41,059	812	28	—	112	350	183	9	—	62	5,435	560	549	262	2,043	13	—	53
1986	9,230	16,662	102,679	5,917	57,686	1,925	—	5	51	894	50	172	17	93	8,867	689	50	480	4,110	519	—	667
1987	17,372	17,285	110,154	—	57,427	4,272	—	—	—	882	336	20	—	41	7,701	7,987	2,220	988	4,769	4	82	999
1988	28,474	25,113	83,331	—	42,742	3,613	—	—	54	1,158	10	128	—	—	25,757	4,974	1,867	561	7,368	229	—	111
1989	32,401	36,154	165,225	—	85,705	2,386	30	—	154	1,438	697	432	24	146	20,217	12,447	5,028	996	8,106	1,852	156	694
1990	65,585	58,664	296,531	—	106,654	4,778	89	—	115	1,736	879	73	—	1,503	31,728	2,405	747	3,077	20,517	179	51	713

[표 1-6] 연도별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계속)

(단위 : 백만원)

	채권			무체재산권	기계기구와 집기	상품제품과 곡물	생명보험금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급여	기타의 상속재산	소계	증여재산가산액	총계	공제금액	차인과세가액
	외상매출금	대부금	기타채권											
1965	3	0	5	14	21	20	0	2	20	730	4	734	446	288
1966	7	6	17	11	40	31	1	5	35	1,395	61	1,456	690	767
1967	4	—	11	16	41	19	0	4	66	2,037	11	2,048	793	1,256
1968	28	9	15	15	61	36	2	3	54	2,583	222	2,805	1,237	1,568
1969	7	2	4	66	68	38	6	5	74	3,801	57	3,857	2,061	1,866
1970	18	1	126	120	97	72	5	27	65	6,839	202	7,040	2,565	4,475
1971	12	9	30	84	158	53	1	13	111	8,683	35	8,718	3,436	5,282
1972	40	23	60	135	86	85	9	15	413	8,016	95	8,110	4,313	3,798
1973	22	45	27	121	99	48	7	24	67	7,219	103	7,322	3,597	3,725
1974	15	1	97	119	109	100	0	40	61	8,994	35	9,029	4,767	4,262
1975	15	12	228	112	129	49	21	196	111	17,410	4,443	21,853	5,131	16,722
1976	60	83	58	173	259	68	91	124	88	25,884	821	26,705	15,807	10,898
1977	161	7	20	388	489	133	18	190	362	17,898	455	18,353	9,773	8,580
1978	139	—	64	130	444	303	33	56	180	15,443	1,434	16,877	8,352	8,525
1979	100	57	43	105	305	271	31	107	128	14,502	142	14,644	9,488	5,056
1980	520	8	668	203	308	307	38	83	254	27,213	565	27,778	17,510	10,267
1981	464	79	2,540	426	1,210	550	187	787	586	92,721	1,837	94,558	40,781	53,777
1982	313	8	752	304	1,058	953	919	310	381	91,472	713	92,185	47,164	45,021
1983	915	—	107	332	1,366	809	825	237	417	111,107	9,349	120,456	60,926	59,529
1984	581	—	511	569	523	349	819	363	918	169,176	11,384	180,560	82,957	97,604
1985	941	30	1,792	322	952	865	2,230	1,268	1,169	151,128	6,148	157,275	82,262	75,013
1986	856	540	3,883	579	1,873	1,852	2,178	1,201	2,434	226,159	5,812	231,971	117,443	114,527
1987	465	137	855	739	1,251	1,033	3,158	940	649	241,766	4,929	246,695	127,288	119,411
1988	1,125	205	7,168	1,054	1,240	468	3,664	961	6,224	247,599	13,769	261,368	136,496	127,872
1989	1,282	210	1,935	1,519	1,138	1,258	3,842	1,781	2,299	389,552	14,578	404,130	191,582	212,548
1990	3,206	840	2,157	1,713	5,375	1,494	4,444	2,876	7,422	625,551	30,145	655,696	329,188	326,508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7] 연도별 상속세 부과액 계급별 인원수

(단위 : 명)

	1965	1966	1967	1968	1969
계	590	711	664	490	455
500원미만	1	—	—	—	—
500원이상	23	—	1	17	5
1,000원이상	127	87	83	—	—
3,000원이상	103	122	112	36	9
5,000원이상	110	136	116	57	33
1만원이상	108	145	110	85	74
3만원이상	33	51	48	49	43
5만원이상	38	56	48	44	43
10만원이상	19	40	47	59	59
20만원이상	13	35	44	58	74
50만원이상	6	22	24	25	37
100만원이상	2	6	3	33	25
150만원이상	2	1	6	—	—
200만원이상	4	5	16	15	30
500만원이상	1	4	2	9	13
1,000만원이상	—	1	4	3	10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계	585	666	664	407	296	241	270	300	285	317
500원이상	1	—	—	—	—	1	—	—	—	—
3,000원이상	6	—	1	—	—	1	—	—	—	—
5,000원이상	36	31	16	6	1	1	—	—	—	—
1만원이상	71	68	58	38	16	7	3	4	3	3
3만원이상	46	58	47	23	14	11	9	8	9	5
5만원이상	76	68	111	43	18	15	12	17	11	15
10만원이상	76	82	108	62	35	28	17	19	30	13
20만원이상	101	112	112	71	50	40	33	34	25	33
50만원이상	41	80	73	49	44	32	34	39	37	37
100만원이상	40	55	57	38	37	25	37	38	30	41
200만원이상	50	51	45	33	45	25	40	49	27	89
500만원이상	20	30	20	19	16	21	31	37	40	32
1,000만원이상	12	21	11	16	9	18	25	35	36	31
3,000만원이상	2	3	3	5	5	2	12	7	14	6
5,000만원이상	3	4	—	1	4	3	7	8	10	9
1억원이상	4	3	2	3	2	5	2	1	11	1
2억원이상	—	—	—	—	—	6	8	4	2	2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8] 연도별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단위 : 건, 백만원)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 세 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65	38	—	38	35	1	14	20	1	3
1966	12	3	9	12	—	6	6	0	—
1967	17	—	17	17	3	6	8	1	—
1968	16	—	16	15	2	8	5	2	1
1969	20	1	19	17	1	10	6	24	3
1970	27	2	25	34	13	11	10	26	4
1971	30	4	26	25	1	16	8	1	5
1972	48	5	43	46	5	31	10	2	2
1973	29	2	27	28	5	20	3	3	1
1974	13	1	12	13	1	7	5	4	—
1975	10	—	10	9	1	6	2	9	1
1976	13	1	12	12	—	9	3	23	1
1977	12	1	11	12	1	7	4	2	—
1978	6	—	6	6	3	1	2	3	—
1979	8	—	8	7	1	6	—	—	1
1980	7	1	6	7	—	4	3	35	—
1981	44	—	44	43	10	15	18	324	1
1982	50	1	49	43	13	16	14	180	7
1983	34	7	27	33	7	22	4	23	1
1984	47	1	46	43	13	27	3	194	4
1985	63	4	59	58	19	29	10	55	5
1986	96	5	91	92	23	61	8	193	4
1987	45	4	41	41	10	27	4	111	4
1988	37	4	33	36	12	21	3	112	1
1989	44	1	43	41	13	20	8	198	3
1990	30	3	27	27	5	16	6	252	3
1991	35	3	32	31	9	17	5	160	4
1992	108	4	104	101	22	65	14	479	7
1993	121	7	114	117	37	67	13	1,113	4
1994	112	4	108	104	8	67	29	1,864	8
1995	149	8	141	140	28	66	46	2,887	9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9] 연도별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분

(단위 : 건, 천원)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 세 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65	3	—	3	2	—	1	1	1,047	1
1966	4	1	3	4	—	3	1	74	—
1967	3	—	3	3	—	3	—	—	—
1968	6	—	6	4	—	3	1	352	2
1969	10	2	8	9	—	9	—	—	1
1970	13	1	12	8	—	3	5	410,042	5
1971	14	5	9	12	—	9	3	3,395	2
1972	24	2	22	23	1	17	5	230,036	1
1973	14	1	13	13	—	11	2	1,600	1
1974	8	1	7	8	—	6	2	18,581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10] 연도별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단위 : 건, 백만원)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 세 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65	4	—	4	4	—	4	—	—	—
1966	—	—	—	—	—	—	—	—	—
1967	—	—	—	—	—	—	—	—	—
1968	4	—	4	3	1	—	2	7	—
1969	8	1	7	6	—	3	3	11	2
1970	10	2	8	10	—	6	4	12	—
1971	8	—	8	8	—	4	4	7	—
1972	17	—	17	16	—	11	5	52	1
1973	13	1	12	11	1	7	3	38	2
1974	14	2	12	11	1	7	3	2	3
1975	14	3	11	—	2	9	1	1	2
1976	16	2	14	14	—	11	3	8	2
1977	15	2	13	12	—	9	3	3	3
1978	23	3	20	21	4	9	8	100	2
1979	11	2	9	11	1	6	4	50	—
1980	7	—	7	5	1	2	2	11	2
1981	59	2	57	40	7	18	15	115	19
1982	75	19	56	71	6	42	23	276	4
1983	55	4	51	47	5	32	10	124	8
1984	65	8	57	54	11	37	6	159	11
1985	82	11	71	75	14	53	8	667	7
1986	122	7	115	107	7	93	7	81	15
1987	122	15	107	108	7	87	14	260	14
1988	108	14	94	96	5	78	13	819	12
1989	109	12	97	98	12	68	18	769	11
1990	114	11	103	104	10	71	23	1,956	10
1991	111	10	101	89	1	71	17	937	22
1992	357	22	335	328	27	247	54	2,342	29
1993	281	29	252	252	38	176	38	2,632	29
1994	370	29	341	330	17	254	59	4,963	40
1995	366	40	326	303	18	231	54	3,216	63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11] 연도별 상속세 세무소송 실적

(단위 : 건)

		처리대상건수			당년도 종결건수				계 류 건 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국가승소	국가패소	기타	계	고등법원	대법원
1965	고등법원	2	—	2	—	—	—	—	—	—	—
	대법원	1	—	1	—	—	—	—	—	—	—
1966	고등법원	15	—	15	—	—	—	—	—	—	—
	대법원	3	—	3	—	—	—	—	—	—	—
1967	고등법원	10	—	10	—	—	—	—	—	—	—
	대법원	8	—	8	—	—	—	—	—	—	—
1968	고등법원	1	—	1	—	—	—	—	—	—	—
	대법원	—	—	—	—	—	—	—	—	—	—
1969	고등법원	1	—	1	—	—	—	—	—	—	—
	대법원	1	—	1	—	—	—	—	—	—	—
1970	고등법원	—	—	—	—	—	—	—	—	—	—
	대법원	—	—	—	—	—	—	—	—	—	—
1971	고등법원	2	—	2	—	—	—	—	—	—	—
	대법원	1	—	1	—	—	—	—	—	—	—
1972	고등법원	6	—	6	—	—	—	—	—	—	—
	대법원	—	—	—	—	—	—	—	—	—	—
1973		12	7	5	2	1	—	1	10	—	—
1974		13	10	3	5	3	1	1	8	—	—
1975		8	8	—	4	2		2	4	—	—
1976		7	4	3	2	2	—	—	5	—	—
1977		11	5	6	3	1	1	1	8	—	—
1978		14	8	6	5	1	3	1	9	—	—
1979		10	9	1	2	2	—	—	8	—	—
1980		11	8	3	4	3	1	—	7	—	—
1981		11	7	4	2	1	1	—	9	—	—
1982		33	9	24	9	4	4	1	24	—	—
1983		40	24	16	13	5	4	4	27	—	—
1984		49	27	22	19	6	8	5	30	—	—
1985		74	30	44	20	7	10	3	54	—	—
1986		90	54	36	32	10	10	12	58	—	—
1987		122	58	64	55	16	13	26	67	48	19
1988		125	67	58	44	8	13	23	81	53	28
1989		134	81	53	55	37	18	—	79	58	21
1990		119	79	40	43	31	12	—	76	60	16
1991		117	76	41	30	22	8	—	87	68	19
1992		154	76	78	42	30	12	—	112	86	26
1993		218	117	101	97	68	29	—	121	87	34
1994		229	121	108	79	50	29	—	150	123	27
1995		276	150	126	88	62	26	—	188	167	2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12] 연도별 상속세 감사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건 수	세 액
1968	6	1
1969	7	1
1970	20	48
1971	15	47
1972	23	40
1973	25	46
1974	29	102
1975	18	52
1976	31	38
1977	19	61
1978	19	89
1979	9	23
1980	8	34
1981	22	54
1982	30	155
1983	34	961
1984	33	588
1985	111	1,314
1986	71	2,711
1987	63	2,828
1988	38	1,536
1989	47	1,461
1990	46	4,883
1991	61	2,303
1992	180	10,239
1993	118	9,579
1994	94	8,392
1995	128	16,083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증여세

[표 2-1] 연도별 증여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단위 : 명, 백만원, %)

	납세자수	예산액 (A)	징수결정액(B)	부과액	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C/A)
1965	8,355	51	86	113	73	0	13	170.4	143.9
1966	12,390	237	402	522	331	0	71	169.5	139.5
1967	6,536	355	383	484	328	0	55	108.0	92.4
1968	6,467	417	533	636	417	6	109	127.8	100.1
1969	3,702	484	548	633	463	6	79	113.2	95.6
1970	3,652	561	826	1,000	631	15	181	147.3	112.4
1971	4,193	797	1,104	1,342	931	13	160	138.5	116.8
1972	3,323	789	718	919	573	32	113	91.0	72.6
1973	2,107	856	1,100	1,237	951	8	141	128.5	111.1
1974	2,600	1,087	1,263	1,394	1,224	2	38	116.2	112.6
1975	8,173	3,135	6,688	10,221	6,561	4	123	213.3	209.3
1976	6,343	3,664	4,372	2,539	4,218	5	150	119.3	115.1
1977	10,929	10,605	6,101	7,370	5,824	32	245	57.5	54.9
1978	14,742	13,299	5,334	5,755	4,944	27	363	40.1	37.2
1979	19,536	9,573	4,585	4,309	4,343	49	193	47.9	45.4
1980	20,052	9,311	7,204	7,841	6,710	33	460	77.4	72.1
1981	28,411	11,859	17,295	19,884	14,240	299	2,756	145.8	120.1
1982	29,489	13,532	21,607	21,004	17,565	396	3,646	159.7	129.8
1983	38,326	15,643	32,335	30,976	24,555	438	7,342	206.7	157.0
1984	33,937	24,383	35,185	36,465	27,119	498	7,568	144.3	111.2
1985	27,849	26,924	42,486	42,873	28,566	1,055	12,865	157.8	106.1
1986	26,156	39,305	43,204	43,602	30,987	820	11,396	109.9	78.8
1987	31,907	30,818	52,870	54,302	36,971	875	15,024	171.6	120.0
1988	22,470	51,411	98,427	107,232	73,253	2,199	22,975	191.5	142.5
1989	22,587	69,312	131,313	164,005	103,499	3,451	24,363	189.5	149.3
1990	29,120	109,029	267,812	339,682	224,900	1,224	41,688	245.6	206.3
1991	28,607	221,437	267,676	293,350	221,829	287	45,560	120.9	100.2
1992	28,357	237,698	311,482	398,220	258,243	428	52,811	131.0	108.6
1993	23,630	414,447	387,221	370,922	320,830	2,874	63,517	93.4	77.4
1994	29,285	342,000	468,874	381,473	383,850	11,747	73,277	137.1	112.2
1995	35,555	438,400	533,725	448,147	423,730	14,084	95,911	121.7	96.7

주 : 1979~1981년 예산액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한 것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2-2] 연도별 증여세 월별 징수

(단위 : 천원)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폐쇄기
1965	72,723	503	1,482	3,617	5,433	5,130	4,173	5,497	5,182	6,497	7,249	8,576	19,384	—
1966	330,635	3,983	6,671	12,609	18,502	21,019	24,259	14,972	16,159	24,672	16,542	32,549	138,698	—
1967	327,969	9,408	7,515	8,586	15,158	24,033	16,326	9,261	12,965	28,975	26,005	37,941	131,796	—
1968	417,284	4,616	12,666	26,313	32,225	36,519	44,555	49,866	40,579	36,504	24,227	28,844	80,371	—
1969	462,571	6,416	8,053	11,025	14,761	32,721	24,872	23,786	112,537	49,356	18,035	49,052	80,423	31,535
1970	630,663	9,105	6,942	13,744	39,216	98,475	78,935	26,258	45,335	44,258	66,130	72,805	87,516	41,943
1971	930,895	4,431	11,089	24,998	16,118	15,330	96,285	50,488	108,420	69,519	122,481	138,044	242,693	30,998
1972	573,171	2,861	31,005	45,327	32,363	32,419	38,300	28,261	34,850	47,871	61,715	30,794	135,642	51,763
1973	951,160	12,117	23,332	186,278	49,551	65,137	180,322	117,158	67,363	62,388	91,553	55,856	41,908	−1,803
1974	1,224,176	118,067	13,941	218,369	56,167	73,263	167,862	129,837	68,324	16,795	89,143	122,820	142,499	7,089
1975	6,561,480	222,521	124,342	634,936	122,551	156,000	110,535	622,981	161,156	1,464,962	2,333,241	231,253	361,548	15,454
1976	4,217,586	142,151	152,036	120,942	196,494	162,154	115,002	225,310	135,803	789,612	1,367,464	306,564	473,141	30,913
1977	5,823,806	102,708	143,999	397,630	1,141,741	157,827	135,921	447,671	183,096	385,179	859,115	306,679	723,684	838,556
1978	4,944,346	178,484	221,133	355,675	326,377	159,235	455,081	589,037	379,445	1,034,349	352,374	335,793	357,346	200,017
1979	4,342,978	375,294	232,439	586,742	243,147	242,955	319,876	585,677	219,784	367,722	352,213	367,753	418,198	31,178
1980	6,710,013	765,295	395,266	814,593	521,601	434,921	412,475	473,211	414,819	402,082	975,911	436,727	649,430	13,682
1981	14,240,497	723,876	711,241	1,272,664	931,525	500,724	903,933	871,755	774,270	700,908	869,854	1,000,409	4,979,338	—
1982	17,564,520	504,938	688,973	1,501,079	650,181	711,172	736,979	1,308,465	1,679,880	2,129,823	1,786,040	2,292,251	3,574,739	—
1983	24,554,777	1,412,398	1,497,251	969,440	1,032,831	2,979,470	2,334,749	1,582,919	875,359	1,540,639	2,422,104	2,993,961	4,913,656	—
1984	27,119,000	1,596,065	1,824,411	1,289,021	863,834	1,812,939	2,823,811	1,610,807	1,633,034	1,672,019	2,651,099	1,770,768	7,571,192	—
1985	28,565,872	1,497,666	1,727,669	1,630,999	4,364,343	2,007,895	2,895,486	1,885,370	2,122,804	2,158,757	1,979,070	2,981,949	3,313,864	—
1986	30,987,094	2,183,912	2,425,266	2,339,310	1,338,960	1,123,048	2,532,769	2,948,598	1,248,935	3,453,784	2,562,304	4,447,750	4,382,458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2-3] 연도별 증여세 시도별 징수

(단위 : 천원)

	합 계	서 울	부 산	인 천	대 구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경 북	경 남	전 북	전 남	제 주
1971	930,894	747,621	64,686	—	—	26,986	3,403	9,643	2,429	13,614	25,881	14,896	18,376	3,359
1972	573,071	351,377	69,670	—	—	27,082	5,913	10,944	4,653	22,354	54,758	17,312	7,968	1,040
1973	951,160	424,876	62,379	—	—	6,691	5,309	11,523	40,441	168,853	28,129	24,211	170,310	8,438
1974	1,224,176	665,552	15,658	—	—	1,968	9,108	29,902	49,343	59,404	18,266	27,162	328,396	19,417
1975	6,561,480	4,696,796	66,049	—	—	8,976	15,620	72,148	156,795	142,502	64,137	121,951	1,198,001	18,505
1976	4,217,586	2,915,051	106,421	—	—	12,606	19,734	102,509	168,318	55,560	63,594	140,107	612,527	21,159
1977	5,823,806	3,955,969	161,044	—	—	56,873	59,003	115,787	239,205	298,350	108,227	188,489	619,958	20,901
1978	4,944,350	2,342,521	690,258	—	—	324,418	44,845	50,265	123,012	394,960	521,265	111,088	301,129	40,589
1979	4,342,978	1,483,824	1,125,337	—	—	267,152	23,656	51,612	94,263	505,189	440,995	100,447	160,847	89,656
1980	6,710,013	3,258,588	1,186,254	—	—	363,615	50,766	124,036	192,745	662,515	302,983	192,749	272,562	103,200
1981	14,240,497	9,347,096	1,562,024	—	—	548,805	100,129	129,305	330,408	821,582	858,819	112,318	373,014	56,997
1982	17,564,520	10,466,459	1,793,796	350,087	649,783	858,513	173,187	157,805	672,208	342,203	453,584	329,893	1,185,430	131,572
1983	24,554,777	16,580,211	2,474,396	265,034	930,886	811,898	137,014	226,912	592,427	311,347	1,077,670	271,460	735,444	140,078
1984	27,119,000	16,990,982	2,534,732	424,036	1,502,072	2,279,930	121,082	277,141	733,901	319,236	962,975	347,255	476,600	149,058
1985	28,565,872	19,525,139	2,743,348	465,001	862,602	1,212,393	173,118	688,536	800,638	450,699	673,091	361,129	445,994	164,18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2-4] 연도별 증여세 부과

(단위 : 명, 백만원)

	인 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1965	8,355	1,531	53	14	8,293	414	8,355	1,131	113	3	—	110
1966	12,390	4,032	76	64	12,291	614	12,390	3,482	522	50	—	471
1967	6,536	3,469	122	414	6,403	320	6,536	3,562	648	164	—	484
1968	6,467	4,391	155	328	6,287	584	6,467	4,135	716	80	—	636
1969	3,702	4,188	159	668	3,450	1,014	3,702	3,841	832	199	—	633
1970	3,652	5,882	146	906	3,379	1,549	3,652	5,239	1,306	306	—	1,000
1971	4,193	7,685	87	476	3,822	1,862	4,193	6,299	1,659	320	—	1,342
1972	3,323	6,564	68	258	2,949	2,077	3,323	4,745	1,102	183	—	919
1973	2,107	6,750	92	1,060	1,839	2,232	2,107	5,578	1,749	153	—	1,237
1974	2,600	8,028	68	395	1,786	2,809	2,600	5,614	1,559	165	—	1,394
1975	8,173	35,077	248	2,206	4,700	6,442	8,173	30,840	11,142	921	—	10,221
1976	6,343	15,971	73	358	4,748	6,455	6,343	9,874	2,682	144	—	2,539
1977	10,929	30,237	137	6,948	7,221	10,261	10,929	26,924	12,105	4,735	—	7,370
1978	14,742	30,544	180	922	7,787	11,369	14,742	20,098	6,414	660	—	5,155
1979	19,536	36,815	64	165	15,175	19,821	19,536	17,160	4,502	193	—	4,309
1980	20,052	37,384	105	1,511	7,279	9,867	20,052	29,027	8,790	948	—	7,841
1981	28,411	77,374	128	2,385	11,520	16,970	28,411	62,790	21,454	1,570	—	19,884
1982	29,489	97,969	110	1,467	16,088	23,182	29,489	76,253	22,122	1,118	—	21,004
1983	38,326	146,292	172	13,693	21,015	42,780	38,326	117,204	40,922	9,946	—	30,976
1984	33,937	137,778	93	16,269	19,256	29,376	33,937	124,672	47,594	12,445	1,317	36,465
1985	27,849	152,395	73	6,894	22,053	29,109	27,849	130,180	46,731	5,749	1,892	42,873
1986	26,156	149,324	152	9,950	19,062	25,892	26,156	133,381	48,931	6,932	1,603	43,602
1987	31,907	164,686	189	22,738	18,838	24,965	31,907	162,459	63,479	12,940	3,764	54,302
1988	22,470	262,584	—	13,191	—	23,959	—	252,180	108,916	8,308	6,624	107,232
1989	22,587	412,327	—	42,214	—	27,389	—	432,152	192,730	38,043	9,318	164,005
1990	29,120	929,625	—	26,894	—	47,731	—	908,788	353,791	28,623	14,514	339,682
1991	28,607	826,056	—	46,344	—	43,805	—	828,595	311,063	41,519	23,806	293,350
1992	28,357	1,266,175	—	123,629	—	119,644	—	1,270,160	478,198	117,616	37,638	398,220
1993	23,630	1,117,118	—	239,842	—	129,559	—	1,227,401	459,236	139,053	50,739	370,922
1994	29,285	1,285,450	—	191,289	—	224,840	—	1,251,899	430,606	120,126	70,993	381,473
1995	35,555	1,748,354	—	223,023	—	405,772	—	1,565,605	486,517	117,839	79,469	448,147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1965	계	8,293	1,502	42	9	8,293	414	8,293	1,096	103	57	2	—	102
1종	10만원이하	5,376	509	8	1	5,376	269	5,376	241	14	8	0	—	14
	10만원초과	1,594	299	13	2	1,594	80	1,594	221	14	16	0	—	14
	20만원초과	614	179	5	1	614	31	614	149	10	7	0	—	10
	30만원초과	414	177	4	1	414	21	414	157	13	10	0	—	13
	50만원초과	140	89	5	1	140	7	140	82	8	5	0	—	8
	70만원초과	65	56	2	0	65	3	65	53	6	3	0	—	6
	100만원초과	57	76	1	0	57	3	57	73	11	4	0	—	11
	200만원초과	28	83	4	3	28	1	28	85	17	4	1	—	16
	500만원초과	3	21	—	—	3	0	3	20	5	—	—	—	5
	천만원초과	2	15	—	—	2	0	2	15	4	—	—	—	4
1965	계	62	28	11	6	—	—	62	34	10	13	1	—	8
2종	5만원이하	11	0	—	—	—	—	11	0	0	—	—	—	0
	5만원초과	7	0	—	—	—	—	7	0	0	—	—	—	0
	10만원초과	17	2	—	—	—	—	17	2	0	1	0	—	0
	20만원초과	10	3	—	—	—	—	10	3	1	1	0	—	1
	50만원초과	7	3	5	2	—	—	7	5	1	5	0	—	1
	100만원초과	10	19	6	4	—	—	10	23	7	6	1	—	6
1966	계	12,309	3,994	75	59	12,291	614	12,309	3,439	510	141	48	—	462
1종	10만원이하	6,517	626	5	0	6,511	326	6,517	301	18	4	0	—	18
	10만원초과	2,373	453	7	1	2,367	118	2,373	335	21	23	0	—	21
	20만원초과	1,111	328	9	2	1,110	56	1,111	274	19	13	0	—	19
	30만원초과	1,058	463	4	1	1,058	53	1,058	411	35	10	0	—	34
	50만원초과	406	254	11	5	405	20	406	239	24	16	0	—	24
	70만원초과	336	293	10	6	336	17	336	282	34	11	1	—	33
	100만원초과	297	422	10	6	295	15	297	413	63	20	2	—	62
	200만원초과	149	423	14	16	147	7	149	432	84	28	7	—	77
	500만원초과	38	276	2	7	38	2	38	282	69	8	8	—	61
	천만원초과	24	457	3	15	24	1	24	470	143	8	30	—	113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66	계	81	221	1	2	—	—	81	43	12	4	2	—	10
2종	5만원이하	7	183	—	—	—	—	7	0	0	1	0	—	0
	5만원초과	14	1	—	—	—	—	14	1	0	—	—	—	0
	10만원초과	17	2	—	—	—	—	17	2	0	1	0	—	0
	20만원초과	21	7	—	—	—	—	21	7	1	—	—	—	1
	50만원초과	13	10	—	—	—	—	13	10	3	—	—	—	3
	100만원초과	9	17	1	2	—	—	9	22	7	2	2	—	5
1967	계	6,422	3,344	121	414	6,043	320	6,419	3,437	671	186	164	—	444
1종	10만원이하	2,182	226	—	—	1,819	109	2,182	117	7	26	0	—	7
	10만원초과	1,215	237	5	0	1,214	61	1,214	177	10	13	0	—	11
	20만원초과	708	209	2	0	707	35	707	174	74	5	0	—	12
	30만원초과	950	421	14	3	948	47	950	376	32	16	0	—	30
	50만원초과	423	269	11	4	423	21	423	253	26	11	0	—	25
	70만원초과	356	315	5	2	353	18	357	299	37	10	0	—	37
	100만원초과	347	499	12	8	345	17	347	490	75	19	2	—	73
	200만원초과	177	470	47	79	173	9	178	541	107	49	14	—	92
	500만원초과	34	186	11	52	34	2	34	237	57	15	16	—	41
	천만원초과	30	511	14	264	27	1	27	774	246	22	131	—	115
1967	계	117	125	1	0	—	—	117	125	38	2	0	—	38
2종	5만원이하	5	0	—	—	—	—	5	0	0	—	—	—	0
	5만원초과	19	1	—	—	—	—	19	1	0	—	—	—	0
	10만원초과	27	4	1	0	—	—	27	5	1	1	0	—	1
	20만원초과	22	7	—	—	—	—	22	7	2	1	0	—	2
	50만원초과	19	14	—	—	—	—	19	14	4	—	—	—	4
	100만원초과	25	97	—	—	—	—	25	97	32	—	—	—	32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68	계	6,467	4,291	155	328	6,287	584	6,467	4,135	716	158	80	—	636
	30만원이하	3,409	724	21	4	3,337	266	3,409	462	34	21	0	—	33
	30만원초과	2,226	1,338	40	15	2,190	215	2,226	1,237	131	42	1	—	130
	100만원초과	736	1,529	61	73	689	88	736	1,514	292	61	13	—	279
	300만원초과	57	284	16	47	37	11	57	320	74	16	9	—	65
	700만원초과	37	347	16	189	32	3	37	533	157	17	57	—	100
	2천만원초과	2	68	1	1	2	1	2	68	28	1	0	—	28
	5천만원초과	—	—	—	—	—	—	—	—	—	—	—	—	—
	2억원초과	—	—	—	—	—	—	—	—	—	—	—	—	—
1969	계	3,702	4,188	159	678	3,450	1,014	3,702	3,841	832	173	199	—	633
	30만원이하	1,613	587	7	1	1,505	355	1,613	233	20	8	0	—	20
	30만원초과	1,313	1,135	25	11	1,242	403	1,313	744	87	29	1	—	86
	100만원초과	569	1,176	66	101	517	180	569	1,088	200	71	13	—	187
	300만원초과	121	532	22	52	107	54	121	530	115	25	10	—	105
	700만원초과	67	491	25	148	61	17	67	622	175	26	42	—	133
	2천만원초과	18	258	13	295	17	4	18	549	197	13	99	—	98
	5천만원초과	1	7	1	70	1	1	1	76	38	1	34	—	4
	2억원초과	—	—	—	—	—	—	—	—	—	—	—	—	—
1971	계	4,193	7,685	87	476	3,822	1,862	4,193	6,299	1,662	224	320	—	1,342
	30만원이하	1,353	837	1	1	1,257	602	1,353	236	23	24	0	—	23
	30만원초과	1,531	1,580	20	13	1,435	703	1,531	891	110	45	1	—	109
	100만원초과	944	1,934	22	22	815	401	944	1,556	259	72	10	—	249
	300만원초과	255	1,137	28	82	225	113	255	1,106	241	49	27	—	214
	700만원초과	83	951	10	127	67	33	83	1,046	326	23	80	—	246
	2천만원초과	20	482	4	133	20	10	20	605	242	8	74	—	167
	5천만원초과	6	552	2	98	3	2	6	648	341	3	128	—	213
	2억원초과	1	211	—	—	—	—	1	211	120	—	—	—	120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72	계	3,323	6,564	68	258	2,949	2,077	3,323	4,745	1,102	—	183	—	1,285
	30만원이하	949	737	1	1	866	571	949	166	17	—	0	—	17
	30만원초과	1,290	1,596	11	8	1,174	831	1,290	773	94	—	1	—	93
	100만원초과	772	1,792	13	16	646	469	772	1,338	221	—	6	—	214
	300만원초과	213	1,015	17	44	184	139	213	920	199	—	15	—	184
	700만원초과	88	897	21	151	72	62	88	987	301	—	42	—	259
	2천만원초과	8	186	2	15	3	2	8	199	78	—	9	—	69
	5천만원초과	3	341	3	24	4	3	3	362	193	—	110	—	83
	2억원초과	—	—	—	—	—	—	—	—	—	—	—	—	—
1973	계	2,107	6,750	92	1,060	1,839	2,231	2,107	5,578	1,749	—	513	—	1,237
	30만원이하	444	564	5	5	406	483	444	85	9	—	1	—	8
	30만원초과	701	1,150	13	17	620	754	701	412	51	—	1	—	50
	100만원초과	587	1,584	25	34	514	631	587	986	159	—	6	—	153
	300만원초과	230	1,154	21	82	196	247	230	990	212	—	26	—	186
	700만원초과	98	1,028	14	84	76	86	98	1,026	306	—	33	—	273
	2천만원초과	26	641	9	202	20	22	26	822	333	—	98	—	235
	5천만원초과	8	550	3	242	5	6	8	787	407	—	129	—	279
	2억원초과	2	40	2	394	2	3	2	431	245	—	219	—	26
	8.3긴급조치	11	40	—	—	—	—	11	40	26	—	—	—	26
1974	계	2,600	7,914	66	395	1,786	2,696	2,600	5,614	1,559	—	165	—	1,394
	30만원이하	610	620	—	—	248	503	610	118	12	—	0	—	12
	30만원초과	911	1,518	3	2	683	982	911	539	67	—	1	—	67
	100만원초과	695	1,946	22	31	539	770	695	1,208	197	—	4	—	193
	300만원초과	240	1,262	26	69	193	270	240	1,061	229	—	18	—	211
	700만원초과	104	1,072	12	99	93	129	104	1,042	306	—	38	—	268
	2천만원초과	28	806	—	—	22	33	28	773	301	—	5	—	296
	5천만원초과	8	471	2	164	7	10	8	625	302	—	88	—	214
	2억원초과	1	214	1	30	1	2	1	243	142	—	12	—	130
	8.3긴급조치	3	5	—	—	—	—	3	5	3	—	—	—	3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1975	계	6,941	32,169	226	2,127	3,624	4,911	6,941	29,386	10,816	—	887	—	9,929
74.12.31	30만원이하	1,386	1,169	4	1	573	822	1,386	347	35	—	0	—	35
이전	30만원초과	2,270	3,032	21	18	1,248	1,681	2,270	1,369	172	—	2	—	170
증여분	100만원초과	1,720	4,306	48	90	1,017	1,360	1,720	3,035	495	—	9	—	486
	300만원초과	818	4,089	53	158	412	543	818	3,704	813	—	29	—	784
	700만원초과	459	5,054	50	390	229	294	459	5,150	1,571	—	108	—	1,464
	2천만원초과	200	6,078	28	538	99	147	200	6,470	2,622	—	209	—	2,413
	5천만원초과	69	5,030	17	739	39	54	69	5,715	2,872	—	323	—	2,549
	2억원초과	10	3,389	5	194	7	11	10	3,572	2,220	—	207	—	2,013
	8.3긴급조치	9	24	—	—	—	—	9	24	16	—	—	—	16
1975	계	1,232	2,907	22	78	1,076	1,531	1,232	1,455	327	—	35	—	292
75.1.1	30만원이하	342	437	—	—	261	371	342	66	7	—	0	—	6
이후	30만원초과	239	399	—	—	211	304	239	95	11	—	0	—	10
증여분	50만원초과	262	546	8	4	248	353	262	197	29	—	1	—	28
	100만원초과	302	910	8	9	283	397	302	522	103	—	5	—	98
	300만원초과	51	248	2	12	41	60	51	200	48	—	3	—	45
	500만원초과	14	101	1	4	13	18	14	87	24	—	1	—	22
	700만원초과	13	126	1	2	11	17	13	112	34	—	2	—	31
	1천만원초과	5	67	—	—	5	8	5	60	20	—	2	—	18
	1,500만원초과	—	—	—	—	—	—	—	—	—	—	—	—	—
	2천만원초과	2	27	1	19	1	2	2	44	18	—	7	—	12
	3천만원초과	2	46	1	28	2	3	2	71	33	—	13	—	21
	5천만원초과	—	—	—	—	—	—	—	—	—	—	—	—	—
	1억원초과	—	—	—	—	—	—	—	—	—	—	—	—	—
	2억원초과	—	—	—	—	—	—	—	—	—	—	—	—	—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76	계	699	2,966	26	151	399	539	699	2,578	805	—	44	—	761
75.12.31	30만원이하	129	92	1	0	42	65	129	27	3	—	0	—	3
이전	30만원초과	196	258	3	1	108	142	196	117	15	—	0	—	14
증여분	100만원초과	192	516	4	3	140	179	192	341	56	—	1	—	55
	300만원초과	90	460	6	19	51	73	90	406	89	—	5	—	83
	700만원초과	62	707	7	66	39	55	62	719	221	—	17	—	204
	2천만원초과	16	427	5	62	13	18	16	471	188	—	21	—	167
	5천만원초과	8	484	—	—	6	9	8	475	221	—	—	—	221
	2억원초과	—	—	—	—	—	—	—	—	—	—	—	—	—
	8.3긴급조치	6	22	—	—	—	—	6	22	14	—	—	—	14
1976	계	5,644	13,006	47	208	4,349	5,917	3,660	7,297	1,877	—	99	—	1,778
76.1.1	30만원이하	1,986	2,009	1	0	1,130	1,636	2	374	37	—	0	—	37
이후	30만원초과	874	1,408	2	3	724	1,059	874	352	40	—	1	—	38
증여분	50만원초과	1,139	2,186	10	1	967	1,366	1,139	822	118	—	4	—	115
	100만원초과	1,144	3,147	9	14	1,077	1,168	1,144	1,993	402	—	11	—	391
	300만원초과	261	1,294	6	16	224	355	261	955	224	—	7	—	217
	500만원초과	88	654	4	17	86	125	88	546	147	—	11	—	137
	700만원초과	76	711	4	15	74	110	76	616	182	—	9	—	173
	1천만원초과	44	508	6	43	40	58	44	493	164	—	11	—	153
	1,500만원초과	11	175	2	33	9	13	11	195	74	—	13	—	61
	2천만원초과	9	244	1	4	8	12	9	236	102	—	5	—	96
	3천만원초과	8	335	—	—	7	11	8	325	158	—	1	—	157
	5천만원초과	2	93	2	60	2	3	2	150	84	—	26	—	58
	1억원초과	2	242	—	—	1	2	2	240	144	—	—	—	144
	2억원초과	—	—	—	—	—	—	—	—	—	—	—	—	—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1977	계	640	2,127	9	45	205	297	640	1,874	674	—	11	—	663
74.12.31	30만원이하	307	122	—	—	25	36	307	86	9	—	0	—	9
이전	30만원초과	120	145	1	0	53	78	120	67	8	—	0	—	8
증여분	100만원초과	94	255	—	—	57	83	94	173	28	—	—	—	28
	300만원초과	61	313	2	3	37	53	61	264	57	—	1	—	56
	700만원초과	38	414	4	17	26	38	38	393	117	—	3	—	114
	2천만원초과	13	340	2	25	7	11	13	354	137	—	7	—	130
	5천만원초과	2	140	—	—	—	—	2	140	68	—	—	—	68
	2억원초과	1	392	—	—	—	—	1	392	246	—	—	—	246
	8.3긴급조치	4	6	—	—	—	—	4	6	4	—	—	—	4
1977	계	10,289	28,110	128	6,903	7,016	9,964	10,289	25,049	11,431	—	4,724	—	6,707
75.1.1	30만원이하	4,064	4,165	5	6	2,135	3,018	4,064	1,154	115	—	1	—	114
이후	30만원초과	1,562	2,274	16	13	1,199	1,668	1,562	620	70	—	2	—	67
증여분	50만원초과	1,834	3,400	12	6	1,470	2,091	1,834	1,315	190	—	5	—	185
	100만원초과	1,815	5,004	26	52	1,467	2,078	1,815	2,978	581	—	20	—	561
	300만원초과	434	2,096	22	51	357	533	434	1,614	380	—	19	—	361
	500만원초과	197	1,366	1	6	142	223	197	1,149	306	—	12	—	294
	700만원초과	141	1,330	9	46	105	152	141	1,225	371	—	18	—	353
	1천만원초과	119	1,477	5	37	81	115	119	1,399	470	—	23	—	447
	1,500만원초과	31	511	3	60	16	25	31	546	208	—	32	—	176
	2천만원초과	34	810	4	23	15	22	34	811	341	—	18	—	323
	3천만원초과	21	661	6	143	11	17	21	787	376	—	66	—	310
	5천만원초과	14	894	2	95	5	7	14	982	540	—	46	—	494
	1억원초과	7	553	4	389	4	6	7	936	571	—	233	—	337
	2억원초과	16	3,570	13	5,976	9	12	16	9,535	6,913	—	4,230	—	2,683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78	계	153	664	—	—	69	100	153	564	222	—	187	—	222
74.12.31	30만원이하	71	35	—	—	16	21	71	15	1	—	—	—	1
이전	30만원초과	14	17	—	—	7	10	14	7	1	—	77	—	1
증여분	100만원초과	33	78	—	—	22	33	33	45	7	—	110	—	7
	300만원초과	21	93	—	—	16	26	21	68	13	—	—	—	13
	700만원초과	10	89	—	—	4	6	10	83	23	—	—	—	23
	2천만원초과	2	46	—	—	2	3	2	44	15	—	—	—	15
	5천만원초과	1	134	—	—	1	2	1	132	71	—	—	—	71
	2억원초과	1	172	—	—	1	2	1	171	91	—	—	—	91
1978	계	14,589	29,880	180	922	7,718	11,269	14,679	19,534	6,192	—	659	—	5,533
75.1.1	30만원이하	7,044	4,057	26	11	1,760	2,507	7,044	1,561	156	—	1	—	155
이후	30만원초과	1,938	2,966	16	9	1,257	2,242	1,938	733	81	—	2	—	79
증여분	50만원초과	2,205	4,100	50	31	1,829	2,563	2,205	1,568	227	—	7	—	220
	100만원초과	2,146	6,086	31	74	1,786	2,435	2,146	3,725	744	—	30	—	714
	300만원초과	687	3,409	14	27	580	818	687	2,618	623	—	29	—	594
	500만원초과	231	1,679	8	34	206	298	321	1,415	384	—	28	—	355
	700만원초과	115	1,088	4	15	109	158	115	945	283	—	18	—	265
	1천만원초과	93	1,120	17	122	87	118	93	1,124	385	—	51	—	334
	1,500만원초과	45	543	5	6	42	38	45	511	197	—	7	—	190
	2천만원초과	31	616	1	15	21	38	31	593	246	—	13	—	232
	3천만원초과	28	953	3	27	25	33	28	948	454	—	29	—	424
	5천만원초과	15	1,058	2	1	12	17	15	1,042	578	—	44	—	534
	1억원초과	9	1,236	2	284	3	5	9	1,516	953	—	192	—	761
	2억원초과	2	968	1	267	1	2	2	1,234	882	—	207	—	675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1979	계	3	9	1	0	2	3	3	6	1	—	—	—	1
74.12.31	30만원이하	—	—	—	—	—	—	—	—	—	—	—	—	—
이전	30만원초과	1	0	—	—			1	0	0	—	—	—	0
증여분	100만원초과	1	4	—	—	1	2	1	3	1	—	—	—	1
	300만원초과	1	4	1	0	1	2	1	3	1	—	—	—	1
	700만원초과	—	—	—	—	—	—	—	—	—	—	—	—	—
	2천만원초과	—	—	—	—	—	—	—	—	—	—	—	—	—
	5천만원초과	—	—	—	—	—	—	—	—	—	—	—	—	—
	2억원초과	—	—	—	—	—	—	—	—	—	—	—	—	—
1979	계	19,533	36,806	63	165	15,172	19,818	19,533	17,153	4,501	—	193	—	4,308
75.1.1	30만원이하	11,184	12,191	8	0	7,883	10,291	11,184	1,901	190	—	1	—	189
이후	30만원초과	2,684	4,037	1	0	2,252	3,005	2,684	1,032	115	—	1	—	114
증여분	50만원초과	2,393	4,247	5	1	1,989	2,562	2,393	1,686	243	—	3	—	240
	100만원초과	2,117	5,799	14	19	1,937	2,428	2,117	3,389	665	—	19	—	646
	300만원초과	586	2,910	10	17	566	781	586	2,146	505	—	20	—	484
	500만원초과	233	1,582	10	34	220	297	233	1,319	351	—	16	—	335
	700만원초과	145	1,374	3	17	142	200	145	1,191	357	—	12	—	345
	1천만원초과	86	1,058	5	25	82	114	86	969	329	—	22	—	307
	1,500만원초과	39	654	4	34	36	50	39	638	242	—	19	—	223
	2천만원초과	32	811	1	11	32	47	32	775	331	—	27	—	303
	3천만원초과	21	822	2	8	20	29	21	801	389	—	33	—	355
	5천만원초과	7	467	—	—	7	9	7	459	253	—	5	—	248
	1억원초과	3	420	—	—	3	5	3	416	255	—	14	—	241
	2억원초과	3	433	—	—	3	3	3	430	279	—	1	—	277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1980	계	7	267	—	—	2	3	7	264	134	—	—	—	134
74.12.31	30만원이하	—	—	—	—	—	—	—	—	—	—	—	—	—
이전	30만원초과	2	0	—	—	—	—	2	0	0	—	—	—	0
증여분	100만원초과	—	—	—	—	—	—	—	—	—	—	—	—	—
	300만원초과	2	9	—	—	—	—	2	9	2	—	—	—	2
	700만원초과	—	—	—	—	—	—	—	—	—	—	—	—	—
	2천만원초과	2	72	—	—	1	2	2	70	29	—	—	—	29
	5천만원초과	1	186	—	—	1	2	1	185	103	—	—	—	103
	2억원초과	—	—	—	—	—	—	—	—	—	—	—	—	—
1980	계	12,139	22,793	77	962	4,478	6,179	12,139	17,576	5,904	—	512	—	5,382
75.1.1	30만원이하	6,224	2,101	—	—	800	1,185	6,224	916	92	—	0	—	91
이후	30만원초과	1,698	1,628	1	0	691	939	1,698	690	78	—	0	—	78
증여분	50만원초과	1,525	2,334	8	6	954	1,258	1,525	1,082	155	—	2	—	154
	100만원초과	1,387	3,596	14	21	1,036	1,406	1,387	2,212	428	—	6	—	422
	300만원초과	519	1,929	2	4	359	490	519	1,444	452	—	9	—	443
	500만원초과	322	2,143	10	39	235	327	322	1,855	491	—	15	—	477
	700만원초과	185	1,748	5	26	171	245	185	1,530	456	—	16	—	440
	1천만원초과	126	1,585	10	92	105	148	126	1,529	519	—	33	—	486
	1,500만원초과	36	654	5	35	30	46	36	642	246	—	15	—	231
	2천만원초과	51	1,251	7	58	44	60	51	1,249	530	—	30	—	499
	3천만원초과	24	1,000	1	26	21	31	24	995	487	—	26	—	461
	5천만원초과	28	1,179	6	154	25	38	28	1,295	640	—	89	—	552
	1억원초과	10	1,030	6	284	7	10	10	1,304	792	—	153	—	629
	2억원초과	4	617	2	217	—	—	4	834	537	—	117	—	421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80	계	7,906	14,323	28	549	2,799	3,685	7,906	11,187	2,752	—	427	—	2,325
80.1.1	50만원이하	5,113	2,543	—	—	1,068	1,296	5,113	1,247	87	—	1	—	86
이후	50만원초과	1,125	1,400	1	0	448	606	1,125	794	65	—	1	—	64
증여분	100만원초과	970	2,383	8	9	642	891	970	1,501	167	—	5	—	162
	300만원초과	294	1,433	1	4	250	333	294	1,105	157	—	7	—	150
	500만원초과	128	904	3	5	124	181	128	729	119	—	6	—	113
	700만원초과	114	1,061	2	7	108	159	114	909	170	—	11	—	159
	1천만원초과	54	701	2	5	53	70	54	636	141	—	11	—	130
	1,300만원초과	42	728	—	—	42	59	42	669	172	—	11	—	161
	1,900만원초과	27	607	3	22	27	37	27	592	174	—	14	—	160
	2,500만원초과	11	303	2	42	11	17	11	329	111	—	21	—	90
	3,500만원초과	15	615	1	19	13	19	15	615	233	—	38	—	195
	5천만원초과	7	377	—	—	7	10	7	367	151	—	7	—	145
	1억원초과	2	178	1	28	2	3	2	203	99	—	17	—	82
	2억원초과	4	1,089	4	407	4	6	4	1,490	905	—	277	—	628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81	계	8,498	30,246	68	525	4,017	5,500	8,498	25,271	12,089	—	234	—	6,855
75.1.1	30만원이하	3,887	2,185	1	0	974	1,349	3,887	836	84	—	0	—	84
이후	30만원초과	1,403	1,494	—	—	766	931	1,403	562	64	—	0	—	63
증여분	50만원초과	1,034	1,677	—	—	663	916	1,034	761	111	—	0	—	111
	100만원초과	1,129	3,043	18	11	792	1,148	1,129	1,906	375	—	1	—	373
	300만원초과	393	1,877	6	14	300	410	393	1,480	350	—	2	—	347
	500만원초과	209	1,414	3	9	158	220	209	1,203	318	—	1	—	317
	700만원초과	154	1,448	10	48	130	189	154	1,307	393	—	15	—	378
	1천만원초과	104	1,390	9	39	84	120	104	1,309	450	—	9	—	441
	1,500만원초과	44	753	8	66	37	49	44	770	292	—	21	—	271
	2천만원초과	44	1,050	7	75	40	57	44	1,068	451	—	23	—	429
	3천만원초과	51	1,985	4	68	42	63	51	1,989	959	—	36	—	924
	5천만원초과	24	1,738	1	44	19	30	24	1,752	964	—	21	—	943
	1억원초과	7	1,052	—	—	5	8	7	1,045	647	—	7	—	640
	2억원초과	15	9,143	1	151	7	10	15	9,284	6,632	—	97	—	1,534
1981	계	19,913	47,128	60	1,860	7,503	11,560	19,913	37,519	9,365	—	1,336	—	8,029
80.1.1	50만원이하	11,276	6,487	1	0	1,631	3,152	11,276	3,335	251	—	2	—	249
이후	50만원초과	3,625	5,018	—	—	1,828	2,373	3,625	2,644	218	—	3	—	215
증여분	100만원초과	2,575	7,164	10	8	1,993	2,781	2,575	4,391	505	—	13	—	491
	300만원초과	1,011	5,124	12	15	875	1,249	1,011	3,890	557	—	19	—	537
	500만원초과	478	3,332	7	18	389	547	478	2,803	463	—	24	—	438
	700만원초과	321	3,031	2	7	287	410	321	2,628	498	—	14	—	484
	1천만원초과	176	2,260	1	7	100	321	176	2,037	448	—	23	—	424
	1,300만원초과	180	3,022	3	13	157	217	180	2,818	717	—	27	—	690
	1,900만원초과	105	2,493	5	28	98	211	105	2,311	681	—	33	—	648
	2,500만원초과	61	1,964	2	35	52	166	61	1,833	617	—	38	—	579
	3,500만원초과	59	2,388	6	103	51	72	59	2,419	927	—	90	—	837
	5천만원초과	30	1,972	7	175	29	42	30	2,105	944	—	113	—	831
	1억원초과	8	917	3	115	8	12	8	1,020	526	—	62	—	464
	2억원초과	8	1,955	1	1,337	5	7	8	3,285	2,015	—	874	—	1,141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82	계	3,585	16,027	24	399	2,259	3,098	3,585	13,328	5,345	—	146,010	—	5,199
77.1.1~	30만원이하	1,106	863	—	—	455	620	1,106	244	24	—	—	—	24
79.12.31	30만원초과	578	647	2	0	324	409	578	239	27	—	26	—	27
증여분	50만원초과	586	970	2	0	416	542	586	428	61	—	49	—	61
	100만원초과	602	1,850	3	4	452	652	602	1,202	246	—	183	—	246
	300만원초과	231	1,137	4	10	205	299	231	848	199	—	1,658	—	197
	500만원초과	134	931	—	—	109	152	134	779	207	—	—	—	207
	700만원초과	98	983	—	—	84	121	98	862	263	—	—	—	263
	1천만원초과	78	1,020	1	9	67	94	78	936	316	—	2,962	—	313
	1,500만원초과	54	923	3	44	42	58	54	908	342	—	14,085	—	327
	2천만원초과	34	911	2	31	29	42	34	899	371	—	4,285	—	367
	3천만원초과	51	2,021	—	—	47	69	51	1,953	937	—	215	—	937
	5천만원초과	16	1,077	4	151	15	22	16	1,206	610	—	49,445	—	561
	1억원초과	14	1,899	3	150	11	16	14	2,033	1,214	—	73,102	—	1,141
	2억원초과	3	796	—	—	3	4	3	792	528	—	—	—	528
1982	계	25,904	81,942	86	1,068	13,829	20,084	25,904	62,925	16,777	—	972	—	15,805
80.1.1~	50만원이하	12,187	8,830	12	1	4,075	5,384	12,187	3,447	241	—	2	—	239
81.12.31	50만원초과	5,019	7,683	6	5	3,125	4,158	5,019	3,530	288	—	4	—	284
증여분	100만원초과	4,482	12,180	14	10	3,374	4,780	4,482	7,411	843	—	22	—	821
	300만원초과	1,645	7,710	6	3	1,364	1,893	1,645	5,820	846	—	25	—	820
	500만원초과	841	5,817	5	14	692	938	841	4,893	806	—	23	—	783
	700만원초과	551	5,099	7	40	467	627	551	4,511	903	—	32	—	870
	1천만원초과	411	5,358	10	48	167	575	411	4,830	1,059	—	37	—	1,022
	1,300만원초과	285	4,600	8	61	159	367	285	4,294	1,077	—	51	—	1,026
	1,900만원초과	160	3,597	3	31	135	195	160	3,433	990	—	39	—	951
	2,500만원초과	135	4,019	3	82	116	156	135	3,946	1,308	—	65	—	1,244
	3,500만원초과	80	3,375	—	—	67	91	80	3,284	1,247	—	39	—	1,208
	5천만원초과	68	5,452	4	145	60	879	68	4,718	2,113	—	189	—	1,923
	1억원초과	29	3,876	8	628	21	33	29	4,472	2,407	—	384	—	2,023
	2억원초과	11	4,345	—	—	7	10	11	4,336	2,649	—	59	—	2,590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83	계	1,258	6,965	33	3,907	717	1,033	1,258	9,839	5,700	—	2,471	—	3,228
79.12.31	30만원이하	663	538	—	—	270	391	663	147	15	—	0	—	15
이전	30만원초과	71	99	—	—	48	68	71	31	4	—	0	—	4
증여분	50만원초과	89	200	—	—	70	99	89	101	17	—	—	—	17
	100만원초과	177	529	1	1	123	169	177	360	74	—	2	—	73
	300만원초과	67	378	—	—	53	79	67	300	69	—	2	—	67
	500만원초과	51	380	1	0	39	58	51	322	88	—	2	—	86
	700만원초과	36	395	2	15	33	49	36	361	90	—	—	—	90
	1천만원초과	22	303	2	11	19	28	22	286	99	—	10	—	90
	1,500만원초과	21	412	—	—	18	27	21	385	149	—	3	—	146
	2천만원초과	15	309	3	55	7	10	15	354	151	—	20	—	131
	3천만원초과	15	493	7	145	11	17	15	621	294	—	63	—	231
	5천만원초과	13	725	5	127	10	15	13	837	434	—	80	—	354
	1억원초과	5	556	2	114	3	5	5	665	405	—	67	—	338
	2억원초과	13	1,648	10	3,440	13	20	13	5,068	3,812	—	2,223	—	1,589
1983	계	37,068	139,327	139	9,785	20,298	41,748	37,068	107,365	35,222	—	7,475	—	27,747
80.1.1~	50만원이하	19,193	34,891	3	2	9,115	26,179	19,193	8,714	610	—	17	—	593
이후	50만원초과	7,320	11,170	6	2	3,793	5,208	7,320	5,963	521	—	33	—	488
증여분	100만원초과	5,578	14,696	13	10	3,125	4,421	5,578	10,286	1,208	—	36	—	1,172
	300만원초과	2,000	10,322	8	26	1,709	2,407	2,000	7,940	1,145	—	53	—	1,092
	500만원초과	917	6,377	11	23	806	1,080	917	5,320	875	—	40	—	835
	700만원초과	670	6,179	10	47	564	799	670	5,428	1,013	—	53	—	960
	1천만원초과	411	5,225	8	40	360	482	411	4,784	1,054	—	51	—	1,003
	1,300만원초과	336	5,777	20	168	302	429	336	5,516	1,433	—	82	—	1,351
	1,900만원초과	173	4,180	10	101	148	209	173	4,071	1,232	—	77	—	1,156
	2,500만원초과	138	4,227	3	48	118	167	138	4,109	1,378	—	75	—	1,303
	3,500만원초과	95	3,950	12	119	73	108	95	3,961	1,512	—	69	—	1,444
	5천만원초과	112	7,396	13	487	85	119	112	7,764	3,484	—	365	—	3,119
	1억원초과	67	7,657	9	1,731	57	83	67	9,305	4,891	—	1,153	—	3,738
	2억원초과	58	17,279	13	6,982	43	59	58	24,202	14,866	—	5,371	—	9,495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84	계	304	2,569	3	11	227	327	304	2,253	1,053	—	6	—	1,047
79.12.31	30만원이하	38	38	—	—	20	29	38	9	1	—	—	—	1
이전	30만원초과	54	97	—	—	53	76	54	21	2	—	—	—	2
증여분	50만원초과	52	87	2	0	34	48	52	39	6	—	—	—	6
	100만원초과	65	203	—	—	50	73	65	130	27	—	—	—	27
	300만원초과	23	107	—	—	16	23	23	84	20	—	—	—	20
	500만원초과	11	72	—	—	5	7	11	65	17	—	—	—	17
	700만원초과	16	142	1	11	12	14	16	139	63	—	6	—	58
	1천만원초과	13	176	—	—	11	21	13	156	53	—	—	—	53
	1,500만원초과	5	93	—	—	4	4	5	89	34	—	—	—	34
	2천만원초과	12	304	—	—	8	12	12	293	124	—	—	—	124
	3천만원초과	7	307	—	—	8	12	7	295	145	—	—	—	145
	5천만원초과	3	225	—	—	2	3	3	222	123	—	—	—	123
	1억원초과	4	498	—	—	4	7	4	491	296	—	—	—	296
	2억원초과	1	219	—	—	—	—	1	219	142	—	—	—	142
1984	계	33,633	135,209	90	16,258	19,029	29,049	33,633	122,418	46,541	—	12,440	1,317	35,418
80.1.1~	50만원이하	18,983	16,362	2	1	8,079	10,234	18,983	6,128	420	—	11	15	425
이후	50만원초과	5,120	9,905	6	2	3,267	6,292	5,120	3,614	295	—	10	12	297
증여분	100만원초과	3,962	12,503	2	3	3,038	5,984	3,962	6,521	741	—	34	28	736
	300만원초과	1,827	9,087	11	13	1,497	2,054	1,827	7,046	1,012	—	34	54	1,031
	500만원초과	1,221	8,843	3	6	1,021	1,450	1,221	7,398	1,236	—	45	53	1,244
	700만원초과	815	7,762	3	20	706	989	815	6,793	1,305	—	48	50	1,307
	1천만원초과	535	6,843	9	48	455	606	535	6,284	1,395	—	63	60	1,392
	1,300만원초과	361	6,360	8	83	321	469	361	5,975	1,557	—	79	71	1,549
	1,900만원초과	231	5,495	5	31	196	283	231	5,244	1,565	—	84	42	1,522
	2,500만원초과	191	5,965	6	73	162	231	191	5,808	1,963	—	134	79	1,909
	3,500만원초과	136	5,243	5	156	117	164	136	5,235	1,927	—	186	44	1,785
	5천만원초과	137	9,753	9	296	120	164	137	9,885	4,491	—	446	110	4,155
	1억원초과	61	8,289	7	696	10	70	61	8,916	4,719	—	686	145	4,178
	2억원초과	53	22,799	14	14,830	40	59	53	37,570	23,915	—	10,580	553	13,888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85	계	22	230	—	—	20	22	22	208	94	—	155	—	94
79.12.31	30만원이하	—	—	—	—	—	—	—	—	—	—	—	—	—
이전	30만원초과	4	6	—	—	4	4	4	2	0	—	—	—	0
증여분	50만원초과	4	7	—	—	4	4	4	3	1	—	32	—	0
	100만원초과	9	25	—	—	8	8	9	17	3	—	123	—	3
	300만원초과	1	6	—	—	1	2	1	5	1	—	—	—	1
	500만원초과	—	—	—	—	—	—	—	—	—	—	—	—	—
	700만원초과	−1	−9	—	—	−1	−2	−1	−8	−2	—	—	—	−2
	1천만원초과	—	—	—	—	—	—	—	—	—	—	—	—	—
	1,500만원초과	—	—	—	—	—	—	—	—	—	—	—	—	—
	2천만원초과	1	22	—	—	1	2	1	20	8	—	—	—	8
	3천만원초과	3	115	—	—	3	5	3	110	52	—	—	—	52
	5천만원초과	1	59	—	—	—	—	1	59	31	—	—	—	31
	1억원초과	—	—	—	—	—	—	—	—	—	—	—	—	—
	2억원초과	—	—	—	—	—	—	—	—	—	—	—	—	—
1985	계	27,827	152,165	73	6,894	22,033	29,087	27,827	129,972	46,636	—	5,749	1,892	42,779
80.1.1~	50만원이하	11,760	14,805	—	—	8,294	10,287	11,760	4,517	316	—	6	10	321
이후	50만원초과	4,790	8,875	1	1	4,011	5,346	4,790	3,530	292	—	10	13	296
증여분	100만원초과	4,877	14,074	4	14	4,165	5,556	4,877	8,532	987	—	28	48	1,008
	300만원초과	2,025	10,259	9	18	1,769	2,603	2,025	7,674	1,094	—	39	64	1,119
	500만원초과	1,142	8,094	4	18	1,006	1,422	1,142	6,690	1,105	—	47	45	1,103
	700만원초과	1,073	10,019	1	8	949	1,293	1,073	8,734	1,650	—	70	71	1,650
	1천만원초과	591	7,499	3	7	494	690	591	6,816	1,496	—	56	48	1,488
	1,300만원초과	525	8,950	2	21	450	613	525	8,358	2,142	—	92	80	2,130
	1,900만원초과	334	7,722	2	28	327	462	334	7,288	2,140	—	115	73	2,097
	2,500만원초과	219	6,928	3	66	179	256	219	6,738	2,289	—	105	75	2,258
	3,500만원초과	173	7,613	8	138	155	226	173	7,525	2,917	—	158	88	2,847
	5천만원초과	183	12,902	10	329	133	184	183	13,047	5,925	—	309	208	5,825
	1억원초과	80	10,402	6	186	58	85	80	10,503	5,451	—	266	236	5,421
	2억원초과	55	24,023	20	6,060	43	64	55	30,019	18,833	—	4,449	832	15,217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86	계	1	42	—	—	1	2	1	41	20	—	—	—	20
79.12.31	30만원이하	—	—	—	—	—	—	—	—	—	—	—	—	—
이전	30만원초과	—	—	—	—	—	—	—	—	—	—	—	—	—
증여분	50만원초과	—	—	—	—	—	—	—	—	—	—	—	—	—
	100만원초과	—	—	—	—	—	—	—	—	—	—	—	—	—
	300만원초과	—	—	—	—	—	—	—	—	—	—	—	—	—
	500만원초과	—	—	—	—	—	—	—	—	—	—	—	—	—
	700만원초과	—	—	—	—	—	—	—	—	—	—	—	—	—
	1천만원초과	—	—	—	—	—	—	—	—	—	—	—	—	—
	1,500만원초과	—	—	—	—	—	—	—	—	—	—	—	—	—
	2천만원초과	—	—	—	—	—	—	—	—	—	—	—	—	—
	3천만원초과	1	42	—	—	1	2	1	41	20	—	—	—	20
	5천만원초과	—	—	—	—	—	—	—	—	—	—	—	—	—
	1억원초과	—	—	—	—	—	—	—	—	—	—	—	—	—
	2억원초과	—	—	—	—	—	—	—	—	—	—	—	—	—
1986	계	26,155	149,282	152	9,950	19,061	25,891	26,155	133,341	48,912	—	6,932	1,603	43,583
80.1.1~	50만원이하	10,419	10,747	4	3	5,543	7,221	10,419	3,529	247	—	5	8	251
이후	50만원초과	4,291	8,043	9	10	3,555	4,751	4,291	3,302	277	—	9	11	279
증여분	100만원초과	4,645	13,982	11	23	3,948	5,529	4,645	8,476	993	—	34	41	1,000
	300만원초과	2,275	11,474	12	39	2,107	2,907	2,275	8,606	1,226	—	54	43	1,215
	500만원초과	1,356	9,909	9	38	1,172	1,638	1,356	8,309	1,396	—	47	50	1,399
	700만원초과	1,060	9,897	10	56	930	1,284	1,060	8,668	1,641	—	85	55	1,611
	1천만원초과	505	6,227	8	60	434	598	505	5,689	1,235	—	63	53	1,225
	1,300만원초과	579	9,623	14	91	515	724	579	8,990	2,278	—	105	100	2,274
	1,900만원초과	309	7,008	8	138	263	375	309	6,770	1,991	—	93	74	1,972
	2,500만원초과	226	6,688	7	131	172	246	226	6,572	2,183	—	109	72	2,145
	3,500만원초과	186	7,738	15	445	158	230	186	7,952	3,064	—	239	112	2,937
	5천만원초과	164	10,259	21	846	136	197	164	10,908	4,863	—	500	212	4,575
	1억원초과	76	9,664	11	752	76	110	76	10,306	5,382	—	574	193	5,002
	2억원초과	64	28,022	13	7,319	52	80	64	35,262	22,137	—	5,017	578	17,698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87	계	31,907	164,678	189	22,735	18,838	24,949	31,907	162,454	63,470	—	12,936	3,759	54,294
80.1.1~	50만원이하	15,520	12,672	—	—	5,232	6,862	15,520	5,810	404	—	7	7	406
이후	50만원초과	4,352	7,504	2	—	3,095	4,225	4,352	3,279	273	—	0	9	282
증여분	100만원초과	5,205	15,210	16	17	4,370	5,911	5,205	9,316	1,085	—	42	42	1,085
	300만원초과	2,258	11,283	9	23	2,042	2,829	2,258	8,477	1,203	—	48	30	1,184
	500만원초과	1,259	8,900	11	52	1,168	1,595	1,259	7,357	1,213	—	56	47	1,204
	700만원초과	962	9,040	11	75	891	1,204	962	7,911	1,501	—	73	56	1,484
	1천만원초과	559	7,139	9	63	498	673	559	6,529	1,440	—	84	45	1,401
	1,300만원초과	644	12,089	11	103	579	480	644	11,712	3,048	—	140	88	2,996
	1,900만원초과	352	7,766	12	184	286	135	352	7,815	2,208	—	137	76	2,147
	2,500만원초과	280	8,223	7	111	236	322	280	8,012	2,642	—	172	101	2,571
	3,500만원초과	154	5,882	11	825	141	281	154	6,426	2,236	—	196	68	2,108
	5천만원초과	160	10,005	23	1,188	126	180	160	11,003	4,950	—	595	181	4,536
	1억원초과	96	10,648	25	2,341	73	145	96	12,844	6,586	—	1,834	989	5,741
	2억원초과	106	38,317	42	17,753	101	107	106	55,963	34,681	—	9,552	2,020	27,149
1988	계	22,470	262,584	272	13,191	18,191	23,595	22,470	252,180	108,916	—	8,308	6,624	107,232
80.1.1~	50만원이하	6,577	6,693	8	4	3,629	4,339	6,577	2,358	165	—	4	4	165
이후	50만원초과	2,663	5,117	5	2	2,685	3,049	2,663	2,070	175	—	7	10	178
증여분	100만원초과	4,173	12,980	19	26	3,737	5,156	4,173	7,850	932	—	39	38	931
	300만원초과	2,131	11,958	14	37	1,963	2,652	2,131	9,343	1,408	—	88	46	1,366
	500만원초과	1,545	11,433	15	38	1,427	1,959	1,545	9,512	1,615	—	87	71	1,599
	700만원초과	1,191	10,691	19	76	1,069	1,462	1,191	9,305	1,759	—	108	85	1,736
	1천만원초과	851	10,045	27	114	773	1,079	851	9,080	1,960	—	118	85	1,927
	1,300만원초과	848	13,491	22	186	777	1,035	848	12,642	3,445	—	187	156	3,414
	1,900만원초과	605	12,977	14	190	534	720	605	12,447	3,663	—	205	176	3,634
	2,500만원초과	624	17,837	18	634	577	778	624	17,693	5,993	—	592	282	5,683
	3,500만원초과	386	15,198	23	503	335	439	386	15,262	5,868	—	422	280	5,726
	5천만원초과	440	30,159	32	1,281	365	506	440	30,934	14,230	—	1,199	718	13,749
	1억원초과	216	28,013	14	702	162	195	216	28,520	15,109	—	563	957	15,503
	2억원초과	220	75,992	42	9,398	158	226	220	85,164	52,594	—	4,689	3,716	51,621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89	계	17,391	334,527	242	45,504	14,879	20,745	17,391	359,286	175,907	—	35,972	8,489	148,424
82.1.1~	50만원이하	3,307	5,284	15	25	2,520	3,401	3,307	1,908	133	—	3	6	136
88.12.31	50만원초과	2,232	4,496	5	11	1,828	2,500	2,232	2,007	176	—	4	8	180
증여분	100만원초과	2,602	9,032	10	40	2,340	3,223	2,602	5,849	721	—	25	41	737
	300만원초과	2,039	11,228	9	41	1,864	2,634	2,039	8,635	1,274	—	45	76	1,305
	500만원초과	1,479	10,749	6	37	1,284	1,790	1,479	8,996	1,507	—	64	106	1,549
	700만원초과	1,268	12,271	14	75	1,178	1,605	1,268	10,741	2,064	—	104	132	2,092
	1천만원초과	976	12,209	6	37	857	1,193	976	11,053	2,404	—	73	129	2,460
	1,300만원초과	774	12,005	10	85	665	924	774	11,166	2,730	—	124	163	2,769
	1,900만원초과	791	17,924	11	186	683	953	791	17,157	5,023	—	273	335	5,085
	2,500만원초과	551	17,176	4	121	505	708	551	16,589	5,587	—	262	255	5,580
	3,500만원초과	427	17,557	33	2,960	353	489	427	20,028	7,950	—	1,627	396	6,719
	5천만원초과	462	33,703	44	800	376	594	462	33,909	15,512	—	905	826	15,433
	1억원초과	256	37,964	25	3,135	226	443	256	40,656	21,810	—	2,534	1,236	20,512
	2억원초과	227	132,929	50	37,951	200	288	227	170,592	109,016	—	29,929	4,780	83,867
1989	계	5,196	77,829	36	1,710	4,641	6,644	5,196	72,866	16,823	—	2,071	829	15,581
89.1.1	300만원이하	1,797	4,041	5	10	1,506	2,149	1,797	1,902	95	—	6	3	92
이후	300만원초과	1,140	6,134	2	8	1,018	1,410	1,140	4,732	377	—	24	10	363
증여분	1천만원초과	1,016	9,725	10	78	950	1,365	1,016	8,438	915	—	63	32	884
	3천만원초과	758	17,089	5	104	715	1,035	758	16,158	2,548	—	196	58	2,410
	6천만원초과	294	16,052	5	111	276	430	294	15,733	3,545	—	285	54	3,314
	1억원초과	132	11,978	4	1,023	120	173	132	12,829	3,756	—	859	612	3,509
	2억원초과	44	7,898	3	83	44	65	44	7,886	3,071	—	310	23	2,784
	3억원초과	15	4,912	2	293	12	17	15	5,188	2,516	—	328	37	2,225

[표 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과세인원	증여가액	3년이내 재차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부과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90	계	4,954	163,446	—	8,666	—	5,267	—	166,845	84,577	—	7,323	5,851	83,105
88.12.31	50만원이하	609	783	—	—	—	614	—	169	12	—	—	1	13
이전	50만원초과	394	625	—		—	337	—	288	24	—	1	2	25
증여분	100만원초과	516	1,590	—		—	488	—	1,102	134	—	4	10	140
	300만원초과	424	2,095	—	1	—	508	—	1,588	225	—	11	19	233
	500만원초과	350	2,325	—	15	—	324	—	2,016	331	—	24	24	331
	700만원초과	464	4,471	—	13	—	539	—	3,945	759	—	65	53	747
	1천만원초과	376	4,807	—	28	—	446	—	4,389	968	—	68	51	951
	1,300만원초과	444	7,259	—	21	—	452	—	6,828	2,216	—	94	83	2,205
	1,900만원초과	318	7,212	—	100	—	382	—	6,930	2,033	—	121	146	2,058
	2,500만원초과	277	8,795	—	248	—	322	—	8,721	2,986	—	144	173	3,015
	3,500만원초과	276	12,349	—	257	—	336	—	12,270	4,791	—	211	253	4,833
	5천만원초과	237	15,881	—	656	—	256	—	16,281	7,322	—	339	462	7,445
	1억원초과	131	15,408	—	1,323	—	138	—	16,593	8,550	—	805	765	8,510
	2억원초과	138	79,846	—	6,004	—	125	—	85,725	54,226	—	5,436	3,809	52,599
1990	계	24,170	766,179	—	18,228	—	42,464	—	741,943	269,214	—	21,300	8,663	256,577
89.1.1	150만원이하	6,397	12,595	—	20	—	5,742	—	6,873	344	—	13	21	352
이후	150만원초과	4,916	22,398	—	61	—	5,810	—	16,649	1,296	—	81	86	1,301
증여분	5백만원초과	4,171	38,349	—	39	—	5,888	—	32,500	3,520	—	220	188	3,488
	1천만원초과	4,408	92,485	—	473	—	6,618	—	86,340	13,631	—	898	445	13,178
	3천만원초과	2,064	100,445	—	590	—	6,030	—	95,005	20,622	—	1,579	734	19,777
	6천만원초과	1,013	92,866	—	1,347	—	6,092	—	88,121	25,296	—	2,047	846	24,095
	1억원초과	622	101,972	—	2,365	—	4,558	—	99,779	37,558	—	3,096	1,555	36,017
	2억원초과	579	305,069	—	13,333	—	1,726	—	316,676	166,947	—	13,366	4,788	158,369

주 : 1965~1967의 1종은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경우(10단계).
1965~1967의 2종은 친족 이외의 자로부터 받은 증여의 경우(6단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2-6] 연도별 증여재산 내역

(단위 : 천원)

		계	토지				축조물		광산		입목, 죽
			전	답	대	기타	건물	기타	권리	설치	
1965	계	1,534,567	104,986	425,482	162,678	7,026	134,985	106	—	—	391
	1종	1,502,316	104,986	424,901	150,899	6,759	132,132	106	—	—	391
	2종	28,321	—	581	11,779	267	2,853	—	—	—	—
1966	계	4,035,993	192,055	699,620	358,625	15,711	325,020	1,968	—	—	4,155
	1종	3,994,277	191,836	699,118	354,094	13,682	322,930	1,968	—	—	4,145
	2종	37,784	219	502	4,531	2,028	2,090	—	—	—	11
1967	계	3,472,712	93,904	285,360	401,719	31,982	312,941	2,101	—	—	5,884
	1종	3,343,761	92,817	285,091	378,119	31,942	304,466	2,101	—	—	5,884
	2종	125,017	1,087	269	23,600	41	8,475	—	—	—	—

		과수목	차량	선박	유가증권과 출자의 가액						
					국채	지방채	사채	산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주권및법인에의출자	기타
1965	계	4,002	—	4,778	526	—	—	—	—	20,009	150
	1종	4,002	—	4,778	526	—	—	—	—	12,053	150
	2종	—	—	—	—	—	—	—	—	7,956	—
1966	계	7,958	1,620	10,398	—	—	—	—	—	524,377	1,759
	1종	6,998	1,620	10,294	—	—	—	—	—	515,692	1,759
	2종	960	—	105	—	—	—	—	—	8,686	—
1967	계	5,884	—	26,164	10,076	—	27	—	—	—	753,409
	1종	5,884	—	25,539	10,076	—	27	—	—	—	718,294
	2종	—	—	625	—	—	—	—	—	—	35,115

[표 2-6] 연도별 증여재산 내역 (계속)

(단위 : 천원)

		통화				채권		
		현금	은행예금	우편예금	기타예금	외상매출금	대부금	기타채권
1965	계	656,025	104	—	1,132	—	—	—
	1종	651,150	104	—	1,132	—	—	—
	2종	4,875	—	—	—	—	—	—
1966	계	1,797,071	39,900	—	—	45	—	716
	1종	1,779,637	39,900	—	—	45	—	716
	2종	17,435	—	—	—	—	—	—
1967	계	1,535,280	1,926	—	—	175	—	—
	1종	1,480,015	1,926	—	—	175	—	—
	2종	55,265	—	—	—	—	—	—

		채무면제	무형재산권	기계기구	상품곡물	생명보험금	우편연금	기타재산
1965	계	801	1,193	469	2,271	—	—	3,524
	1종	801	1,193	469	2,261	—	—	3,524
	2종	—	—	—	10	—	—	—
1966	계	—	2,562	3,961	13,233	—	—	31,306
	1종	—	2,562	3,152	13,168	—	—	30,963
	2종	—	—	810	65	—	—	343
1967	계	375	770	547	4,078	—	315	1,747
	1종	75	770	547	3,838	—	315	1,747
	2종	300	—	—	240	—	—	—

[표 2-7] 연도별 증여세 부과액 계급별 인원수

(단위 : 명)

		계	600원 미만	600원 이상	1,500원 이상	3천원 이상	6천원 이상	1만3천원이상	2만원 이상	3만원 이상	4만원 이상	7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1965	계	8,355	206	1,497	1,771	1,991	1,503	557	293	181	170	63	67	22	14	14	3	3
	1종	8,293	206	1,497	1,767	1,987	1,495	549	285	177	162	61	62	15	12	13	3	2
	2종	62	—	—	4	4	8	8	8	4	8	2	5	7	2	1	—	1
1966	계	12,390	169	1,487	2,307	2,673	2,254	1,002	634	399	553	247	299	142	94	68	28	34
	1종	12,309	169	1,487	2,304	2,671	2,245	992	626	392	539	242	292	131	92	66	27	34
	2종	81	—	—	3	2	9	10	8	7	14	5	7	11	2	2	1	—
1967	계	6,534	58	366	625	1,145	1,183	640	483	386	594	259	356	165	112	96	41	25
	1종	6,421	58	366	624	1,143	1,179	624	472	376	579	252	341	157	108	85	39	18
	2종	113	—	—	1	2	4	16	11	10	15	7	15	8	4	11	2	7

	계	600원 미만	600원 이상	3천원 이상	5천원 이상	1만원 이상	3만원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968	6,467	—	448	693	974	1,447	903	836	743	185	137	83	9	4	5
1969	3,702	—	161	186	403	866	453	574	594	170	153	112	16	12	2
1970	3,652	—	17	28	267	911	486	644	738	220	149	119	30	25	18
1971	4,193	—	4	18	240	915	512	806	888	339	215	170	41	30	15
1972	3,323	—	3	15	136	764	424	666	717	284	147	117	25	19	6
1973	2,107	1	—	6	24	385	218	408	491	216	148	121	44	11	34
1974	2,600	—	2	4	2	574	270	478	619	253	184	121	51	25	17

	계	600원 미만	600원 이상	3천원 이상	5천원 이상	1만원 이상	3만원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975	8,173	6	6	2	92	785	900	1,299	1,805	1,078	1,000	668	173	151	142	30	26	10
1976	6,343	—	—	83	634	1,317	688	971	870	1,143	366	133	83	14	25	13	3	—
1977	10,929	—	—	—	—	4,064	1,075	918	1,834	1,715	628	369	169	79	38	16	7	17
1978	14,742	—	—	—	—	7,115	1,802	1,420	1,550	1,549	675	329	134	69	46	25	22	6
1979	19,536	—	—	—	—	11,184	2,320	1,879	1,649	1,002	794	503	81	78	33	6	4	3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2-8] 연도별 증여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단위 : 건, 백만원)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 세 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65	355	17	338	337	30	172	135	6	18
1966	480	18	462	441	50	257	134	7	39
1967	367	39	328	316	30	183	103	10	51
1968	493	51	442	460	34	292	134	35	33
1969	323	33	290	293	25	170	98	30	30
1970	318	30	288	294	28	193	73	36	24
1971	342	24	318	306	25	191	90	48	36
1972	289	36	253	270	18	223	29	32	19
1973	154	19	135	154	3	110	41	68	—
1974	59	—	59	57	6	25	26	13	2
1975	82	5	77	80	5	46	29	14	2
1976	116	2	114	102	16	60	26	13	14
1977	163	14	149	153	28	68	57	29	10
1978	182	10	172	180	38	76	66	89	2
1979	110	2	108	109	24	57	28	36	1
1980	155	1	154	151	32	55	64	179	4
1981	191	4	187	173	40	86	47	402	18
1982	329	18	311	312	54	161	97	463	17
1983	262	17	245	248	58	131	59	281	14
1984	246	14	232	231	49	137	45	301	15
1985	245	15	230	238	69	149	20	189	7
1986	265	7	258	249	81	150	18	132	16
1987	151	16	135	147	56	82	9	1,069	4
1988	161	4	157	157	44	104	9	127	4
1989	262	4	258	251	56	174	21	2,080	11
1990	205	11	194	195	33	137	25	519	10
1991	254	10	244	242	52	171	19	1,399	12
1992	290	12	278	278	92	157	29	989	12
1993	282	12	270	269	94	154	21	590	13
1994	241	13	228	223	18	167	38	2,270	18
1995	489	18	471	473	67	292	114	3,048	16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2-11] 연도별 증여세 세무소송실적

(단위 : 건)

		처리대상건수			당년도종결건수				계류건수		
		계	전년도이월	당년도제기	계	국가승소	국가패소	기타	계	고등법원	대법원
1967	고등법원	—	—	—	—	—	—	—	—	—	—
	대법원	—	—	—	—	—	—	—	—	—	—
1968	고등법원	6	6	—	—	—	—	—	—	—	—
	대법원	2	2	—	—	—	—	—	—	—	—
1969	고등법원	9	9	—	—	—	—	—	—	—	—
	대법원	4	4	—	—	—	—	—	—	—	—
1970	고등법원	11	11	—	—	—	—	—	—	—	—
	대법원	2	2	—	—	—	—	—	—	—	—
1971	고등법원	6	6	—	—	—	—	—	—	—	—
	대법원	5	5	—	—	—	—	—	—	—	—
1972	고등법원	15	15	—	—	—	—	—	—	—	—
	대법원	5	5	—	—	—	—	—	—	—	—
1973		31	20	11	10	4	2	4	21	—	—
1974		32	21	11	13	4	3	6	19	—	—
1975		23	19	4	10	5	4	1	13	—	—
1976		67	13	54	13	8	4	1	54	—	—
1977		80	54	26	36	6	17	13	44	—	—
1978		68	44	24	38	6	26	6	30	—	—
1979		55	30	25	15	1	12	2	40	—	—
1980		43	40	3	29	5	24	—	14	—	—
1981		25	14	11	6	2	4	—	19	—	—
1982		49	19	30	20	6	13	1	29	—	—
1983		74	29	45	33	12	16	5	41	—	—
1984		123	41	82	40	17	14	9	83	—	—
1985		174	83	91	63	23	35	5	11	—	—
1986		231	111	120	53	17	32	4	178	—	—
1987		323	178	145	151	33	96	22	172	130	42
1988		247	172	75	84	29	33	22	183	81	102
1989		356	183	173	128	62	66	—	228	178	50
1990		483	228	255	134	69	65	—	349	274	75
1991		563	349	214	179	75	104	—	384	268	116
1992		635	368	267	277	97	180	—	358	252	106
1993		559	365	194	288	111	177	—	272	200	72
1994		542	272	270	209	91	118	—	333	296	37
1995		596	333	263	242	114	128	—	354	282	72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2-10] 연도별 증여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단위 : 건, 백만원)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 세 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65	9	—	9	9	1	4	4	1	—
1966	25	—	25	24	—	17	7	1	1
1967	28	1	27	27	1	13	13	13	1
1968	80	1	79	69	11	23	35	29	11
1969	48	11	37	40	10	16	14	8	8
1970	48	8	40	44	9	23	12	15	4
1971	38	4	34	36	7	15	14	5	2
1972	80	2	78	77	11	45	21	73	3
1973	40	3	37	37	6	20	11	14	3
1974	38	3	35	36	—	14	22	77	2
1975	322	2	320	309	10	276	23	202	13
1976	86	13	73	77	3	59	15	11	9
1977	100	9	91	87	5	58	24	26	13
1978	220	13	207	207	14	176	17	25	13
1979	97	13	84	85	4	45	36	65	12
1980	102	12	90	80	6	41	33	218	22
1981	184	22	162	134	14	69	51	241	50
1982	273	50	223	230	16	147	67	480	43
1983	318	43	275	278	28	189	61	206	40
1984	264	40	224	233	15	197	21	141	31
1985	359	31	328	319	61	232	26	591	40
1986	414	40	374	376	33	323	20	96	38
1987	295	38	257	269	31	223	15	116	26
1988	450	26	424	362	26	272	64	4,643	88
1989	672	88	584	612	41	521	50	2,551	60
1990	633	60	573	558	31	487	40	1,849	75
1991	766	75	691	702	43	607	52	3,178	64
1992	707	64	643	638	42	518	78	3,373	69
1993	724	69	655	615	54	523	38	1,644	109
1994	874	109	765	790	33	670	87	2,638	84
1995	874	84	790	773	38	668	67	1,790	10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2-11] 연도별 증여세 세무소송실적

(단위 : 건)

		처리대상건수			당년도종결건수				계류건수		
		계	전년도이월	당년도제기	계	국가승소	국가패소	기타	계	고등법원	대법원
1967	고등법원	—	—	—	—	—	—	—	—	—	—
	대법원	—	—	—	—	—	—	—	—	—	—
1968	고등법원	6	6	—	—	—	—	—	—	—	—
	대법원	2	2	—	—	—	—	—	—	—	—
1969	고등법원	9	9	—	—	—	—	—	—	—	—
	대법원	4	4	—	—	—	—	—	—	—	—
1970	고등법원	11	11	—	—	—	—	—	—	—	—
	대법원	2	2	—	—	—	—	—	—	—	—
1971	고등법원	6	6	—	—	—	—	—	—	—	—
	대법원	5	5	—	—	—	—	—	—	—	—
1972	고등법원	15	15	—	—	—	—	—	—	—	—
	대법원	5	5	—	—	—	—	—	—	—	—
1973		31	20	11	10	4	2	4	21	—	—
1974		32	21	11	13	4	3	6	19	—	—
1975		23	19	4	10	5	4	1	13	—	—
1976		67	13	54	13	8	4	1	54	—	—
1977		80	54	26	36	6	17	13	44	—	—
1978		68	44	24	38	6	26	6	30	—	—
1979		55	30	25	15	1	12	2	40	—	—
1980		43	40	3	29	5	24	—	14	—	—
1981		25	14	11	6	2	4	—	19	—	—
1982		49	19	30	20	6	13	1	29	—	—
1983		74	29	45	33	12	16	5	41	—	—
1984		123	41	82	40	17	14	9	83	—	—
1985		174	83	91	63	23	35	5	11	—	—
1986		231	111	120	53	17	32	4	178	—	—
1987		323	178	145	151	33	96	22	172	130	42
1988		247	172	75	84	29	33	22	183	81	102
1989		356	183	173	128	62	66	—	228	178	50
1990		483	228	255	134	69	65	—	349	274	75
1991		563	349	214	179	75	104	—	384	268	116
1992		635	368	267	277	97	180	—	358	252	106
1993		559	365	194	288	111	177	—	272	200	72
1994		542	272	270	209	91	118	—	333	296	37
1995		596	333	263	242	114	128	—	354	282	72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2-12] 연도별 증여세 감사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건 수	세 액
1968	24	11
1969	1	3
1970	31	139
1971	27	32
1972	26	100
1973	16	70
1974	17	36
1975	12	46
1976	97	53
1977	73	75
1978	153	78
1979	96	49
1980	110	75
1981	124	117
1982	102	290
1983	144	360
1984	77	1,610
1985	96	1,539
1986	117	2,058
1987	97	2,241
1988	132	2,718
1989	164	4,480
1990	160	12,945
1991	258	10,675
1992	186	14,145
1993	192	11,474
1994	156	18,654
1995	189	17,648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토지초과이득세

[표 3-1]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단위 : 명, 백만원, %)

	납세자수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C/A)
1991	23,381	115,500	232,793	190,171	—	42,622	201.6	164.7
1992	4,103	200,000	133,133	121,776	—	11,357	66.6	60.9
1993	94,147	209,800	565,897	322,626	47	243,224	269.7	153.8
1994	—	199,500	70,191	56,085	320	13,786	35.2	28.1
1995	—	19,500	32,919	27,969	10	4,940	168.8	143.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3-2]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1년단위 과세지역(지가급등지역지정)현황

〈지가급등지역지정 읍, 면, 동수〉 (단위 : 개, %)

		전체읍, 면, 동수 (A)	지가급등지역 (B)	비율 (B/A)	해당세무서수	2년연속지정지역
1990	계	4,652	189	4.1	49	—
	서 울	469	74	15.8	15	—
	중 부	931	51	5.5	9	—
	대 전	679	25	3.7	4	—
	광 주	994	13	1.3	4	—
	대 구	736	12	1.6	8	—
	부 산	843	14	1.7	9	—
1991	계	4,652	45	1.0	20	15
	서 울	469	9	1.9	2	5
	중 부	931	15	1.6	4	7
	대 전	679	7	1.0	3	2
	광 주	994	5	0.5	4	0
	대 구	736	3	0.4	3	0
	부 산	843	6	0.7	4	1

〈지가급등지역의 면적〉 (단위 : ㎢, %)

	전국토면적 (A)	지가급등지역 (B)	비율 (B/A)
1990	99,273	2,636	2.7
1991	99,273	852	0.9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2.

[표 3-3]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결정		
		인원	건수	세액
1991	합계	23,381	31,722	462,972
	서울	12,587	16,117	344,741
	중부	7,064	10,842	83,799
	대전	339	469	4,533
	광주	229	342	1,089
	대구	1,450	1,789	14,465
	부산	1,712	2,163	14,345
1992	합계	4,103	5,475	34,160
	서울	670	797	13,147
	중부	1,942	2,793	14,985
	대전	922	1,249	3,281
	광주	312	347	1,118
	대구	18	18	263
	부산	239	271	1,366
1993	합계	94,147	121,806	947,768
	서울	7,433	10,037	175,416
	중부	17,727	25,687	225,592
	경인	32,993	42,200	346,329
	대전	10,885	13,460	57,234
	광주	9,011	11,273	35,977
	대구	3,341	4,096	29,801
	부산	12,757	15,113	77,419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3-4]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단위 : 건, 백만원)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1991	648	—	648	301	—	278	23	152	269
1992	506	269	237	483	—	415	15	413	23
1993	1,205	23	1,182	754	376	355	23	414	451
1994	852	451	401	850	119	693	38	583	2
1995	13	2	11	13	5	7	1	13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3-5]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단위 : 건, 백만원)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 세 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91	1,008	—	1,008	30	—	27	1	6	978
1992	1,803	978	825	1,712	—	1,561	49	646	91
1993	1,871	91	1,780	398	48	340	10	124	1,473
1994	2,919	1,473	1,446	2,840	166	2,447	227	6,107	79
1995	109	79	30	22	18	—	4	204	87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3-6]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세무소송 실적

(단위 : 건)

	처 리 대 상 건 수			당년도종결건수			계 류 건 수		
	계	전년도이월	당년도제기	계	국가승소	국가패소	계	고등법원	대법원
1992	494	2	492	5	—	1	489	455	34
1993	566	498	68	167	—	19	399	131	268
1994	746	399	347	218	92	126	528	389	139
1995	568	528	40	99	44	55	469	364	105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부동산 투기 억제세

[표 4-1]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단위 : 명, 천원, %)

	납세자수	예 산 액 (A)	징수결정액 (B)	부 과 액	수 납 액 (C)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비 율	
								(B/A)	(C/A)
1968	757	40,000	61,722	64,515	44,475	1,740	15,435	154.3	111.2
1969	2,600	49,000	357,629	381,804	284,176	11,689	61,764	729.9	580.0
1970	14,391	61,000	2,917,416	3,307,023	2,432,068	269,946	215,403	4,782.6	3,987.0
1971	13,877	1,100,000	4,030,330	4,381,692	2,502,332	611,546	916,451	366.4	227.5
1972	4,373	1,396,000	1,751,235	2,124,845	806,088	504,700	440,447	125.4	57.7
1973	1,679	1,534,000	822,457	1,109,871	545,167	150,021	127,269	53.6	35.5
1974	1,680	2,119,000	1,581,307	1,892,690	1,424,398	90,440	66,469	74.6	67.2
1975	4,215	1,798,000	2,475,609	3,376,568	2,218,039	156,788	100,782	137.7	123.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월별 징수

(단위 : 천원)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968	44,475	—	—	—	31	3	1,077
1969	284,176	4,029	2,470	7,245	6,596	7,981	25,221
1970	2,432,068	12,380	24,811	37,672	122,014	86,320	266,073
1971	2,502,332	36,064	125,248	88,219	88,376	140,643	271,330
1972	806,088	7,377	44,899	245,372	−51,816	57,147	66,129
1973	545,167	9,382	19,605	16,114	19,667	64,442	21,287
1974	1,424,398	266,245	20,321	26,357	93,831	259,171	96,533
1975	2,218,039	229,356	144,484	145,135	199,745	186,651	194,44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리기
1968	2,678	3,722	2,245	4,100	7,311	23,309	—
1969	17,901	23,195	7,608	15,783	36,063	100,089	29,996
1970	138,287	163,273	185,048	256,372	280,862	649,604	209,352
1971	300,168	348,885	189,377	190,388	279,573	387,722	56,337
1972	11,904	44,945	62,839	76,719	56,191	122,721	61,661
1973	99,984	84,433	60,741	59,110	33,280	49,956	7,166
1974	150,174	190,600	−14,282	129,665	122,007	80,682	3,094
1975	197,750	188,893	248,432	180,663	142,989	167,927	−8,426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3]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시도별 징수

(단위 : 천원)

	합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1971	2,502,332	2,103,235	165,007	117,999	7,085	17,149	2,095	12,376	58,647	12,516	4,453	1,770
1972	806,088	590,443	116,388	49,631	714	4,037	881	9,226	31,541	2,685	542	—
1973	545,167	366,653	114,076	30,045	617	3,628	619	261	24,122	3,582	1,564	—
1974	1,424,398	1,008,779	231,775	41,173	8,844	6,899	1,393	15,526	98,199	5,929	2,361	3,520
1975	2,218,039	1,006,740	522,368	111,517	10,240	46,730	7,863	104,941	262,978	101,111	27,727	15,82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4]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

(단위 : 명, 천원)

		인원	양도당시 시가표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정기예금이자율 및 도매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일정액	양도차익	결정세액
1968	합 계	753	916,745	1,308	4,327	763,758	23,285	124,067	64,515
	대	276	659,509	1,293	1,076	579,351	18,224	59,565	30,934
	전	191	88,303	5	370	67,485	1,908	18,536	9,694
	답	159	111,166	10	818	88,977	2,364	18,996	9,927
	임 야	123	52,981	—	2,051	26,981	761	23,188	11,974
	기타지	4	4,786	—	12	964	28	3,782	1,986
1969	합 계	2,600	4,026,319	43,787	13,261	3,002,765	232,486	734,020	381,804
	대	1,175	2,731,772	41,429	7,269	2,117,138	167,190	398,746	207,515
	전	594	428,996	1,419	2,165	292,099	20,267	113,046	58,843
	답	553	557,021	50	1,869	410,412	29,610	115,080	60,228
	임 야	246	291,385	889	1,930	172,999	14,716	100,851	51,914
	기타지	32	17,144	—	27	10,117	704	6,297	3,303
1970	합 계	14,391	25,398,352	697,500	243,159	16,144,877	1,965,619	6,351,206	3,307,023
	대	7,076	16,017,285	495,173	132,343	10,965,696	1,325,649	3,100,972	1,615,968
	전	2,826	2,860,231	17,794	18,933	1,662,676	200,902	959,926	500,668
	답	3,413	3,286,359	25,038	24,359	2,015,316	254,417	967,861	505,414
	임 야	923	2,988,571	159,334	67,209	1,373,672	168,494	1,220,692	631,713
	기타지	153	245,906	162	315	127,517	16,158	101,754	53,260
1971	합 계	13,877	28,867,474	903,532	156,957	17,042,589	2,381,905	8,382,491	4,381,692
	대	7,070	18,554,887	771,186	114,058	11,757,754	1,656,225	4,255,664	2,226,958
	전	2,753	2,761,033	32,714	12,687	1,361,250	201,264	1,153,118	602,894
	답	2,820	3,263,677	38,138	15,496	1,621,746	270,365	1,317,931	691,077
	임 야	914	2,555,053	29,343	12,335	1,271,075	199,258	1,043,041	543,645
	기타지	320	1,732,826	32,151	2,381	1,030,764	54,792	612,737	317,119
1972	합 계	4,373	11,476,063	173,842	44,651	5,882,832	1,318,464	4,056,274	2,124,845
	대	2,533	8,031,960	140,397	25,605	4,360,459	1,018,654	2,486,845	1,302,021
	전	702	1,031,116	5,167	3,684	414,362	95,284	512,619	269,091
	답	672	913,497	3,273	2,276	362,568	83,729	461,651	242,095
	임 야	335	1,003,019	21,390	12,809	430,111	79,232	459,477	241,146
	기타지	131	496,471	3,615	277	315,332	41,565	135,682	70,492
1973	합 계	1,679	7,283,100	229,242	51,756	3,373,880	1,487,027	2,141,195	1,109,871
	대	1,166	5,448,531	211,099	34,161	2,581,307	1,184,733	1,437,231	745,708
	전	147	498,342	1,424	9,358	194,792	81,771	210,997	108,788
	답	220	552,346	2,308	2,076	217,328	82,967	247,667	129,120
	임 야	92	498,303	7,302	2,238	210,841	113,197	164,725	84,888
	기타지	54	285,578	7,109	3,923	169,612	24,359	80,575	41,367
1974	합 계	1,680	10,262,849	621,051	57,247	4,004,655	1,915,253	3,664,643	1,892,689
	대	1,258	7,483,509	482,575	45,753	3,081,048	1,577,658	2,296,475	1,187,828
	전	111	383,261	2,458	3,080	125,612	47,738	204,373	106,384
	답	172	433,242	8,389	2,868	152,081	67,865	202,039	105,774
	임 야	115	489,610	5,748	2,634	152,640	47,758	280,830	146,523
	기타지	24	1,473,227	121,881	2,912	493,274	174,234	680,926	346,180
1975	합 계	4,215	14,635,803	745,083	55,112	5,174,575	2,205,659	6,455,374	3,376,568
	대	3,320	12,431,703	684,673	48,086	4,509,343	1,964,321	5,225,280	2,731,968
	전	241	627,378	11,553	3,064	186,374	74,877	351,510	183,307
	답	426	871,497	26,082	2,331	251,609	95,639	495,836	260,509
	임 야	145	533,928	12,031	1,500	184,154	58,903	277,340	145,480
	기타지	83	171,297	10,744	131	43,095	11,919	105,408	55,30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5]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국세심사 사무처리실적 : 재조사분

(단위 : 건, 천원)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 세 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68	19	—	19	16	2	14	—	—	3
1969	99	3	96	89	13	63	13	880	10
1970	448	10	438	373	74	232	97	69,691	75
1971	962	75	887	897	98	551	248	99,325	65
1972	559	65	494	535	32	345	158	127,205	24
1973	196	24	172	196	29	114	53	41,941	—
1974	90	—	90	89	9	50	30	29,832	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6]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국세심사 사무처리실적 : 심사분

(단위 : 건, 천원)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 세 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68	5	—	5	4	—	4	—	—	—
1969	31	1	30	27	1	25	1	49	4
1970	88	4	84	59	2	46	11	8,465	29
1971	296	29	267	261	14	203	44	74,093	35
1972	232	35	197	223	15	187	21	17,111	9
1973	84	9	75	80	8	57	15	10,530	4
1974	39	4	35	36	1	26	9	13,177	3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7]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국세심사 사무처리실적 : 재심사분

(단위 : 건, 천원)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 세 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68	2	—	2	—	—	—	—	—	2
1969	13	2	11	11	2	7	2	744	2
1970	22	2	20	22	2	17	3	4,203	—
1971	93	—	93	69	11	43	15	23,263	24
1972	159	24	135	157	15	94	48	114,070	2
1973	58	2	56	57	14	34	9	15,431	1
1974	34	1	33	27	3	14	10	8,473	7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8]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세무소송 실적

(단위 : 건)

		처리대상건수			당 년 도 종 결 건 수				진행건수
		계	전년도이월	당년도제기	계	국가승소	국가패소	기 타	
1969	고등법원	2	—	2	—	—	—	—	—
	대 법 원	2	—	2	—	—	—	—	—
1970	고등법원	1	—	1	—	—	—	—	—
	대 법 원	—	—	—	—	—	—	—	—
1971	고등법원	17	—	17	—	—	—	—	—
	대 법 원	—	—	—	—	—	—	—	—
1972	고등법원	29	—	29	—	—	—	—	—
	대 법 원	9	—	9	—	—	—	—	—
1973		56	38	18	21	10	5	6	35
1974		46	35	11	28	11	14	3	18
1975		—	—	—	—	—	—	—	—
1976		—	—	—	—	—	—	—	—
1977		—	—	—	—	—	—	—	—
1978		11	—	11	8	4	2	2	3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9]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감사실적

(단위 : 건, 천원)

	건 수	세 액
1970	33	73,882
1971	63	182,829
1972	65	145,286
1973	62	106,482
1974	37	71,828
1975	81	115,607
1976	303	338,941
1977	43	29,677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 지방세

가. 지방세 총괄

[표 5-1]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단위 : 천원)

	합 계		취 득 세		재 산 세	
	부 과 액	징 수 액	부 과 액	징 수 액	부 과 액	징 수 액
1962	5,416,096	5,211,475	485,548	432,952	606,472	577,208
1963	7,654,365	7,401,452	663,653	618,254	865,060	827,212
1964	9,101,674	8,823,751	934,587	872,902	751,597	725,824
1965	11,786,220	11,352,471	1,835,979	1,693,436	823,799	791,478
1966	16,816,176	16,152,013	2,732,717	2,550,839	1,078,491	1,043,636
1967	14,654,779	14,099,212	3,889,500	3,705,598	1,198,420	1,166,812
1968	20,239,885	19,356,762	5,522,237	5,183,913	2,420,880	2,356,171
1969	28,013,180	26,583,966	7,822,230	7,210,908	3,117,076	2,986,298
1970	35,219,246	33,232,340	12,044,977	11,056,747	4,172,610	3,980,115
1971	41,990,608	39,811,485	13,718,108	12,723,719	5,217,059	4,951,170
1972	49,572,589	46,607,778	12,953,686	11,782,615	8,318,934	7,879,503
1973	79,267,758	74,134,228	21,285,919	19,866,903	10,071,202	9,624,928
1974	114,775,555	107,986,372	32,583,665	30,451,349	16,748,718	15,856,961
1975	169,041,969	158,789,733	44,688,358	41,820,047	30,485,936	28,436,022
1976	233,731,211	220,566,252	61,989,265	58,399,121	39,537,387	37,798,207
1977	349,447,660	336,574,614	79,075,701	75,462,833	46,666,700	45,316,023
1978	460,341,378	443,251,369	120,336,211	114,554,884	48,501,328	47,073,244
1979	653,641,059	599,198,728	140,207,708	135,036,868	83,729,116	81,592,822
1980	851,837,946	767,690,562	179,491,339	162,951,659	123,119,917	119,412,203
1981	1,002,016,056	914,372,123	189,019,047	179,768,902	157,685,620	152,678,723
1982	1,224,124,124	1,119,205,919	224,591,792	215,508,078	177,611,412	172,786,893
1983	1,537,032,866	1,397,166,537	321,600,461	307,767,471	201,304,649	194,753,432
1984	1,682,698,526	1,508,354,179	352,605,605	337,526,079	216,711,906	210,419,077
1985	1,862,282,122	1,654,635,329	371,903,418	356,321,794	243,616,879	237,289,644
1986	2,027,983,886	1,809,753,251[1]	392,563,939	371,184,705	273,926,413	265,793,348
1987	2,437,864,605	2,192,322,692	471,615,410	452,652,110	293,669,683	285,304,054
1988	3,375,778,024	3,099,969,048	682,609,529	661,494,476	308,347,725	301,046,192
1989	5,278,469,144	4,960,844,053	814,230,252	787,215,449	380,021,546	372,425,966
1990	6,745,350,344	6,367,365,752	1,203,145,983	1,164,926,685	230,972,295	227,165,292
1991	8,534,351,559	8,035,143,125	1,598,721,293	1,525,728,689	280,314,276	275,510,680
1992	10,111,336,581	9,462,217,560	1,835,920,941	1,732,592,469	362,323,308	355,290,512
1993	11,830,546,086	11,026,067,251	2,155,084,597	2,042,961,731	416,350,672	406,612,821
1994	14,297,258,392	13,230,911,237	2,489,661,606	2,344,644,232	494,055,073	480,674,871
1995	16,786,970,432	15,315,965,229	2,887,708,640	2,691,021,647	482,405,711	465,921,989

[표 5-1]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계속)

(단위 : 천원)

	면 허 세		등 록 세		자 동 차 세	
	부 과 액	징 수 액	부 과 액	징 수 액	부 과 액	징 수 액
1962	366,384	321,839	—	—	500,839	494,439
1963	469,704	416,746	—	—	591,293	585,066
1964	421,613	391,363	—	—	736,466	716,130
1965	505,377	469,813	—	—	875,320	845,799
1966	595,876	555,101	—	—	1,101,362	1,080,551
1967	717,744	668,364	—	—	1,577,670	1,555,018
1968	908,297	848,048	—	—	2,541,015	2,487,508
1969	1,122,307	1,045,057	—	—	3,977,054	3,869,259
1970	1,334,538	1,228,057	—	—	5,836,702	5,604,762
1971	1,558,200	1,428,551	—	—	6,683,622	6,392,586
1972	1,519,464	1,351,270	—	—	7,191,846	6,879,604
1973	2,790,976	2,520,622	—	—	8,246,012	7,866,027
1974	4,655,385	4,150,403	—	—	12,926,678	12,015,901
1975	5,449,382	4,865,507	—	—	13,111,075	12,353,485
1976	6,276,905	5,555,199	—	—	14,868,551	14,136,608
1977	10,974,807	10,033,123	66,789,310	66,732,739	19,681,586	18,794,823
1978	18,117,570	15,172,215	91,945,064	91,764,320	26,847,009	25,505,007
1979	18,281,254	17,322,041	92,992,553	92,449,918	51,695,657	48,438,716
1980	19,599,671	18,244,129	125,614,781	122,373,011	61,705,068	56,941,875
1981	21,669,636	19,919,513	157,880,888	156,447,962	64,126,941	61,012,593
1982	26,680,745	24,240,654	246,878,299	245,578,782	71,927,392	67,980,513
1983	31,575,564	28,741,193	341,116,027	338,803,793	88,846,791	83,804,530
1984	33,567,803	30,560,630	335,039,118	331,986,683	110,390,853	103,668,706
1985	23,877,385	21,799,677	363,151,893	361,117,598	126,393,299	118,304,698
1986	25,653,456	23,333,668	397,717,043	395,854,995	150,150,125	139,123,478
1987	28,916,556	26,508,700	552,433,749	550,266,864	182,940,922	167,719,282
1988	34,251,405	31,177,172	797,479,548	794,472,598	236,512,750	218,055,046
1989	41,851,374	37,922,577	1,094,459,747	1,091,125,768	329,207,548	304,680,677
1990	52,953,090	47,999,242	1,381,475,130	1,377,632,152	463,224,723	425,934,259
1991	98,304,927	88,735,645	1,903,169,050	1,894,968,347	688,540,985	634,953,186
1992	120,112,670	108,586,207	2,093,224,140	2,080,451,521	884,564,081	826,234,509
1993	147,574,789	133,997,124	2,560,393,043	2,548,326,715	1,092,673,409	1,027,124,984
1994	182,549,997	168,606,328	3,110,446,356	3,085,663,908	1,385,488,301	1,293,785,738
1995	228,229,290	208,551,158	3,655,019,178	3,632,509,840	1,690,295,073	1,545,231,914

[표 5-1]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계속)

(단위 : 천원)

	주 민 세		농 지 세		도 축 세	
	부 과 액	징 수 액	부 과 액	징 수 액	부 과 액	징 수 액
1962	—	—	2,053,893	2,031,496	118,554	118,428
1963	—	—	3,101,004	3,067,128	138,902	138,885
1964	—	—	3,616,627	3,589,746	188,527	188,509
1965	—	—	4,015,379	3,977,256	171,742	171,729
1966	—	—	5,007,426	4,962,986	190,920	190,691
1967	—	—	3,383,781	3,350,208	178,462	178,431
1968	—	—	3,492,754	3,449,848	166,061	166,039
1969	—	—	4,837,367	4,780,465	199,060	199,048
1970	—	—	3,172,920	3,122,580	235,885	235,842
1971	—	—	4,569,744	4,522,039	214,897	214,876
1972	—	—	5,398,010	5,336,310	227,271	227,266
1973	10,776,318	9,337,415	8,155,912	8,086,684	225,361	225,198
1974	9,422,116	8,560,064	13,979,682	13,866,309	305,284	305,282
1975	16,787,830	15,637,559	21,024,859	20,840,899	548,050	546,142
1976	26,826,803	24,548,063	31,785,422	31,636,878	1,093,811	1,093,432
1977	51,910,161	46,921,283	36,095,946	35,945,398	1,375,444	1,375,434
1978	64,180,031	59,766,391	44,529,331	44,317,512	1,453,752	1,453,704
1979	96,462,833	91,001,792	53,911,509	53,644,024	3,847,158	3,844,384
1980	125,864,685	116,913,289	63,140,610	62,573,402	4,684,425	4,680,463
1981	137,285,716	127,627,599	78,548,324	78,039,313	6,328,806	6,199,929
1982	154,666,425	139,478,116	83,360,409	83,027,893	7,817,660	7,813,953
1983	179,116,564	157,678,687	91,014,469	90,591,843	10,629,013	10,628,925
1984	196,508,095	176,793,111	93,133,265	92,547,119	12,712,686	12,712,567
1985	224,282,672	202,003,379	14,385,164	14,215,088	16,405,524	15,538,107
1986	251,803,205	227,787,435	14,991,276	14,757,477	18,600,542	18,590,189
1987	303,429,327	276,037,236	16,857,545	16,661,233	19,359,972	19,303,668
1988	406,476,239	375,836,476	18,971,649	18,713,540	17,825,053	17,821,988
1989	509,277,358	469,872,355	7,481,528	7,268,021	17,388,530	17,348,290
1990	590,334,958	548,744,749	6,175,025	5,988,519	17,778,571	17,778,181
1991	749,959,090	701,502,146	6,002,641	5,832,252	21,812,673	21,764,203
1992	1,036,094,890	971,007,511	3,222,644	2,986,892	22,537,472	22,528,846
1993	1,182,593,767	1,099,895,970	2,317,098	2,248,633	26,266,420	26,266,384
1994	1,461,179,800	1,360,008,363	2,455,929	2,303,323	30,004,349	29,878,406
1995	1,844,465,161	1,701,441,650	2,151,905	2,066,209	33,956,112	33,911,426

[표 5-1]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계속)

(단위 : 천원)

	사 업 소 세		유 흥 음 식 세		도 시 계 획 세	
	부 과 액	징 수 액	부 과 액	징 수 액	부 과 액	징 수 액
1962	—	—	232,734	221,470	—	—
1963	—	—	352,025	335,152	—	—
1964	—	—	400,563	383,947	1,255	735
1965	—	—	753,065	705,849	14,715	14,314
1966	—	—	1,371,406	1,269,631	69,545	64,974
1967	—	—	1,878,197	1,769,905	219,868	213,952
1968	—	—	3,417,294	3,200,154	1,162,739	1,132,376
1969	—	—	4,734,439	4,400,921	1,553,138	1,467,476
1970	—	—	5,299,146	5,028,927	2,329,454	2,206,295
1971	—	—	6,061,868	5,803,749	2,941,236	2,781,217
1972	—	—	6,871,248	6,452,741	5,841,072	5,490,877
1973	—	—	9,232,268	8,534,560	6,835,017	6,476,075
1974	—	—	13,103,348	12,170,623	8,716,489	8,321,759
1975	—	—	19,470,645	17,511,559	14,010,555	13,404,078
1976	—	—	28,477,198	25,302,131	18,185,517	17,522,398
1977	9,708,347	9,635,535	2,432,233	2,308,629	18,958,413	18,370,067
1978	16,799,908	16,705,619	11,862	10	20,649,353	20,064,960
1979	25,970,413	25,745,754	—	—	35,088,553	34,220,600
1980	31,150,952	30,748,817	—	—	52,464,470	50,965,292
1981	36,496,182	36,084,180	—	—	68,277,314	66,609,343
1982	43,726,371	43,283,872	—	—	82,615,820	80,628,450
1983	50,120,226	49,533,545	—	—	94,699,993	92,187,819
1984	56,122,303	55,534,342	—	—	102,863,086	100,443,491
1985	61,941,135	61,365,437	—	—	117,112,828	114,462,582
1986	68,717,153	68,047,472	—	—	126,631,503	123,863,460
1987	83,119,468	82,390,430	—	—	138,208,661	134,423,511
1988	103,015,597	102,343,807	—	—	152,408,654	149,081,710
1989	127,402,906	126,593,925	—	—	185,065,846	181,382,102
1990	146,681,568	145,589,816	—	—	250,003,716	243,623,924
1991	175,067,818	170,785,967	—	—	314,412,635	307,319,308
1992	213,117,147	211,647,609	—	—	403,265,211	394,490,513
1993	228,433,371	226,705,055	—	—	484,286,708	473,296,721
1994	255,398,143	253,059,211	—	—	582,727,399	563,953,182
1995	299,264,819	296,095,526	—	—	676,870,095	652,729,391

[표 5-1]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계속)

(단위 : 천원)

	소방공동시설세		지 역 개 발 세		(경주)마권세	
	부 과 액	징 수 액	부 과 액	징 수 액	부 과 액	징 수 액
1962	34,669	32,678	—	—	1,391	436
1963	55,423	52,711	—	—	4,171	4,171
1964	96,972	93,729	—	—	4,765	2,625
1965	108,274	104,441	—	—	6,992	6,509
1966	143,525	138,722	—	—	17,321	13,780
1967	162,256	157,839	—	—	23,833	16,742
1968	321,108	313,200	—	—	116,636	97,262
1969	418,625	405,176	—	—	183,443	183,443
1970	542,674	519,212	—	—	248,141	248,141
1971	703,047	670,751	—	—	322,827	322,827
1972	888,369	844,903	—	—	362,689	362,689
1973	1,195,275	1,142,318	—	—	453,498	453,498
1974	1,587,912	1,541,443	—	—	746,278	746,278
1975	2,931,562	2,840,718	—	—	533,717	533,717
1976	4,023,283	3,907,146	—	—	667,069	667,069
1977	4,879,433	4,779,148	—	—	899,579	899,579
1978	5,457,370	5,360,914	—	—	1,512,589	1,512,589
1979	8,701,955	8,569,906	—	—	1,902,321	1,902,321
1980	13,294,196	13,032,316	—	—	2,703,095	2,703,095
1981	17,183,313	16,790,356	—	—	2,856,731	2,856,731
1982	23,507,342	23,022,500	—	—	4,052,113	4,052,113
1983	27,166,993	26,624,815	—	—	7,735,307	4,513,574
1984	35,353,215	34,533,677	—	—	12,331,373	5,427,741
1985	40,188,277	39,275,886	—	—	15,957,136	7,068,361
1986	45,653,154	44,551,256	—	—	9,411,644	9,411,644
1987	51,946,554	50,304,451	—	—	11,821,806	11,821,806
1988	60,616,372	59,119,693	—	—	14,755,251	14,755,251
1989	75,000,012	73,242,197	—	—	19,532,904	19,532,904
1990	87,488,408	86,118,046	—	—	56,472,229	56,472,229
1991	107,136,337	105,457,826	—	—	80,106,314	80,106,314
1992	134,452,575	131,757,389	41,134,858	41,134,773	96,645,744	96,645,744
1993	157,694,465	154,345,268	49,935,240	49,858,541	98,422,988	98,422,988
1994	188,532,631	182,901,292	54,751,047	54,468,772	176,804,507	176,804,507
1995	212,222,193	204,272,332	61,196,842	61,095,409	216,960,422	216,960,422

[표 5-1]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계속)

(단위 : 천원)

	토지과다보유세		종 합 토 지 세		담배소비(판매)세	
	부 과 액	징 수 액	부 과 액	징 수 액	부 과 액	징 수 액
1962	—	—	—	—	—	—
1963	—	—	—	—	—	—
1964	—	—	—	—	—	—
1965	—	—	—	—	—	—
1966	—	—	—	—	—	—
1967	—	—	—	—	—	—
1968	—	—	—	—	—	—
1969	—	—	—	—	—	—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	—	—	—	—	—	—
1977	—	—	—	—	—	—
1978	—	—	—	—	—	—
1979	—	—	—	—	—	—
1980	—	—	—	—	—	—
1981	—	—	—	—	—	—
1982	—	—	—	—	—	—
1983	—	—	—	—	—	—
1984	—	—	—	—	—	—
1985	—	—	—	—	85,348,127	86,208,377
1986	—	—	—	—	89,292,413	89,292,413
1987	—	—	—	—	93,861,182	93,861,182
1988	16,654,314	14,733,837	—	—	309,600,206	309,600,206
1989	27,327,058	24,433,884	—	—	1,412,994,438	1,412,994,438
1990	1,612,040	1,140,141	415,514,193	399,871,471	1,571,811,741	1,571,811,741
1991	—	—	533,290,316	518,178,872	1,646,865,340	1,646,865,340
1992	—	—	696,354,151	675,123,429	1,727,289,035	1,727,289,035
1993	—	—	870,991,580	842,396,380	1,745,427,007	1,745,426,655
1994	—	—	1,072,280,392	1,026,186,714	2,044,974,386	2,044,974,386
1995	—	—	1,318,894,324	1,254,267,442	2,151,851,491	2,151,851,437

[표 5-1]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계속)

(단위 : 천원)

	국세부가세 및 기타		과년도수입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1962	1,015,612	980,529	—	—
1963	1,413,130	1,356,127	—	—
1964	1,948,702	1,858,241	—	—
1965	2,675,578	2,571,847	—	—
1966	4,507,587	4,281,102	—	—
1967	1,425,048	1,316,343	—	—
1968	170,864	122,243	—	—
1969	48,441	35,915	—	—
1970	2,199	1,662	—	—
1971	—	—	—	—
1972	—	—	—	—
1973	—	—	—	—
1974	—	—	—	—
1975	—	—	—	—
1976	—	—	—	—
1977	—	—	—	—
1978	—	—	—	—
1979	—	—	40,850,029	5,429,582
1980	—	—	49,004,737	6,151,011
1981	—	—	64,657,538	10,336,979
1982	—	—	76,688,344	11,804,102
1983	—	—	92,106,809	11,536,910
1984	—	—	125,359,218	16,200,956
1985	—	—	157,718,385	19,664,701
1986	—	—	162,872,020	18,149,772
1987	—	—	189,683,770	25,068,165
1988	—	—	216,253,732	31,717,056
1989	—	—	237,228,097	34,805,500
1990	—	—	269,706,674	46,569,305
1991	—	—	330,647,864	57,434,350
1992	—	—	441,077,714	84,450,601
1993	—	—	612,100,932	148,181,281
1994	—	—	765,948,476	162,998,004
1995	—	—	1,025,479,176	198,037,437

주 : 1) 1986년 징수액의 경우 세목별합계를 구하면 1,809,741,312천원이지만 지방세정연감의 세목별합계항목과 시도별합계항목에는 위와 같이 기록됨.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2] 연도별 지방세 시도별 분포상황

(단위 : 천원, %)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세 액	비중	세 액	비중	세 액	비중	세 액	비중
1962	5,211,475	100.0	1,400,896	26.9	196,002	3.8	—	—
1963	7,401,453	100.0	2,036,166	27.5	483,469	6.5	—	—
1964	8,823,751	100.0	2,464,805	27.9	588,002	6.7	—	—
1965	11,352,471	100.0	3,364,907	29.6	851,585	7.5	—	—
1966	16,152,012	100.0	5,535,394	34.3	1,302,215	8.1	—	—
1967	14,099,212	100.0	5,674,517	40.2	1,199,488	8.5	—	—
1968	19,356,762	100.0	8,784,242	45.4	1,732,604	9.0	—	—
1969	26,583,966	100.0	12,345,331	46.4	2,216,972	8.3	—	—
1970	33,232,340	100.0	17,101,220	51.5	3,201,917	9.6	—	—
1971	39,811,485	100.0	19,481,296	48.9	4,126,475	10.4	—	—
1972	46,607,778	100.0	21,064,136	45.2	5,043,192	10.8	—	—
1973	74,134,228	100.0	32,245,269	43.5	8,112,354	10.9	—	—
1974	107,986,372	100.0	46,001,775	42.6	12,345,613	11.4	—	—
1975	158,789,733	100.0	70,282,066	44.3	15,993,895	10.1	—	—
1976	220,566,252	100.0	97,149,687	44.0	22,106,271	10.0	—	—
1977	336,574,614	100.0	151,528,834	45.0	35,371,329	10.5	—	—
1978	443,251,369	100.0	203,982,180	46.0	45,355,183	10.2	—	—
1979	599,198,728	100.0	251,113,642	41.9	66,770,259	11.1	—	—
1980	767,690,562	100.0	300,431,128	39.1	85,502,968	11.1	—	—
1981	914,372,123	100.0	354,294,657	38.7	96,014,555	10.5	47,090,207	5.2
1982	1,119,205,919	100.0	458,390,834	41.0	113,204,297	10.1	57,790,451	5.2
1983	1,397,166,537	100.0	592,412,094	42.4	129,517,274	9.3	69,102,223	4.9
1984	1,508,354,179	100.0	607,364,418	40.3	144,218,371	9.6	74,988,966	5.0
1985	1,654,635,329	100.0	656,687,709	39.7	153,830,907	9.3	79,415,035	4.8
1986	1,809,753,251	100.0	706,010,083	39.0	168,962,878	9.3	92,140,974	5.1
1987	2,192,322,692	100.0	840,449,138	38.3	215,730,747	9.8	122,026,055	5.6
1988	3,099,969,048	100.0	1,156,135,624	37.3	251,462,054	8.1	146,747,681	4.7
1989	4,960,844,053	100.0	1,757,739,884	35.4	447,405,567	9.0	262,836,223	5.3
1990	6,367,365,752	100.0	2,091,676,362	32.8	547,629,997	8.6	327,267,768	5.1
1991	8,035,143,125	100.0	2,540,753,272	31.6	688,096,296	8.6	408,667,066	5.1
1992	9,462,217,560	100.0	2,907,141,165	30.7	819,874,959	8.7	484,872,966	5.1
1993	11,026,067,251	100.0	3,259,784,113	29.6	953,137,845	8.6	578,199,100	5.2
1994	13,230,911,237	100.0	3,849,973,057	29.1	1,071,900,970	8.1	723,620,653	5.5
1995	15,315,965,229	100.0	4,339,477,169	28.3	1,214,758,820	7.9	814,937,093	5.3

[표 5-2] 연도별 지방세 시도별 분포상황 (계속)

(단위 : 천원, %)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세 액	비중	세 액	비중	세 액	비중	세 액	비중
1962	—	—	—	—	—	—	574,771	11.0
1963	—	—	—	—	—	—	778,717	10.5
1964	—	—	—	—	—	—	948,735	10.8
1965	—	—	—	—	—	—	1,049,152	9.2
1966	—	—	—	—	—	—	1,506,886	9.3
1967	—	—	—	—	—	—	1,271,869	9.0
1968	—	—	—	—	—	—	1,663,646	8.6
1969	—	—	—	—	—	—	2,269,801	8.5
1970	—	—	—	—	—	—	2,595,584	7.8
1971	—	—	—	—	—	—	3,152,316	7.9
1972	—	—	—	—	—	—	4,129,908	8.9
1973	—	—	—	—	—	—	6,612,778	8.9
1974	—	—	—	—	—	—	10,001,923	9.3
1975	—	—	—	—	—	—	15,253,584	9.6
1976	—	—	—	—	—	—	22,050,363	10.0
1977	—	—	—	—	—	—	34,071,061	10.1
1978	—	—	—	—	—	—	50,762,601	11.5
1979	—	—	—	—	—	—	73,180,258	12.2
1980	—	—	—	—	—	—	107,699,735	14.0
1981	37,618,247	4.1	—	—	—	—	89,800,135	9.8
1982	43,870,093	3.9	—	—	—	—	109,920,618	9.8
1983	56,518,921	4.0	—	—	—	—	150,058,246	10.7
1984	67,908,326	4.5	—	—	—	—	171,498,408	11.4
1985	76,409,907	4.6	—	—	—	—	204,947,158	12.4
1986	80,329,653	4.4	5,977,222	0.3	—	—	235,014,068	13.0
1987	96,157,245	4.4	36,531,552	1.7	—	—	287,853,398	13.1
1988	122,247,082	3.9	59,659,760	1.9	—	—	442,598,097	14.3
1989	230,637,366	4.6	108,907,121	2.2	123,910,270	2.5	681,906,414	13.7
1990	315,093,538	4.9	146,883,699	2.3	166,351,937	2.6	997,723,225	15.7
1991	408,685,852	5.1	191,700,182	2.4	231,245,883	2.9	1,283,472,805	16.0
1992	475,757,535	5.0	237,356,999	2.5	273,533,821	2.9	1,572,187,612	16.6
1993	547,764,202	5.0	259,406,635	2.4	351,499,056	3.2	2,060,795,584	18.7
1994	617,049,010	4.7	322,050,276	2.4	410,747,869	3.1	2,607,956,546	19.7
1995	766,353,627	5.0	368,391,828	2.4	443,898,847	2.9	3,152,939,505	20.6

[표 5-2] 연도별 지방세 시도별 분포상황 (계속)

(단위 : 천원, %)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세 액	비중	세 액	비중	세 액	비중	세 액	비중
1962	197,715	3.8	209,428	4.0	452,084	8.7	399,568	7.7
1963	263,772	3.6	288,129	3.9	682,075	9.2	565,816	7.6
1964	309,309	3.5	342,922	3.9	820,188	9.3	679,238	7.7
1965	408,559	3.6	459,630	4.0	951,670	8.4	792,137	7.0
1966	502,849	3.1	584,372	3.6	1,193,797	7.4	982,901	6.1
1967	405,311	2.9	457,194	3.2	993,853	7.0	772,033	5.5
1968	453,627	2.3	561,532	2.9	1,176,933	6.1	865,314	4.5
1969	600,565	2.3	672,378	2.5	1,555,575	5.9	1,207,058	4.5
1970	649,476	2.0	647,817	1.9	1,564,062	4.7	1,269,369	3.8
1971	806,757	2.0	851,662	2.1	1,968,780	4.9	1,630,825	4.1
1972	1,051,273	2.3	1,052,808	2.3	2,346,260	5.0	2,001,665	4.3
1973	1,699,661	2.3	1,733,927	2.3	3,670,668	5.0	3,201,533	4.3
1974	2,334,854	2.2	2,458,909	2.3	5,329,235	4.9	4,753,647	4.4
1975	3,456,880	2.2	3,877,135	2.4	8,403,945	5.3	7,282,207	4.6
1976	4,728,828	2.1	5,506,760	2.5	11,821,229	5.4	10,011,614	4.5
1977	6,359,217	1.9	7,991,691	2.4	17,255,531	5.1	13,884,334	4.1
1978	7,853,004	1.8	9,002,530	2.0	19,952,969	4.5	16,200,409	3.7
1979	11,949,736	2.0	13,090,366	2.2	29,049,965	4.8	22,604,339	3.8
1980	15,923,239	2.1	16,314,011	2.1	39,417,137	5.1	31,566,560	4.1
1981	20,762,662	2.3	20,131,639	2.2	45,448,635	5.0	36,622,476	4.0
1982	25,002,297	2.2	23,280,249	2.1	55,394,558	4.9	42,271,991	3.8
1983	28,851,709	2.1	25,698,054	1.8	65,215,140	4.7	47,492,960	3.4
1984	32,453,457	2.2	30,728,440	2.0	74,302,621	4.9	50,547,467	3.4
1985	37,806,373	2.3	35,454,484	2.1	79,333,580	4.8	47,336,864	2.9
1986	40,410,440	2.2	37,780,418	2.1	87,021,103	4.8	48,517,870	2.7
1987	48,413,872	2.2	42,455,604	1.9	98,676,777	4.5	56,250,967	2.6
1988	76,067,224	2.5	67,244,976	2.2	159,704,583	5.2	89,934,145	2.9
1989	131,377,744	2.6	114,994,224	2.3	132,354,679	2.7	139,609,773	2.8
1990	181,518,660	2.9	150,550,481	2.4	169,576,786	2.7	185,710,087	2.9
1991	215,157,396	2.7	197,811,551	2.5	232,738,524	2.9	238,518,217	3.0
1992	257,017,880	2.7	231,561,434	2.4	267,178,220	2.8	275,801,718	2.9
1993	276,472,242	2.5	275,170,634	2.5	312,417,418	2.8	317,942,702	2.9
1994	341,100,142	2.6	316,782,388	2.4	378,104,972	2.9	378,019,851	2.9
1995	401,600,314	2.6	392,653,065	2.6	466,647,037	3.0	454,512,647	3.0

[표 5-2] 연도별 지방세 시도별 분포상황 (계속)

(단위 : 천원, %)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액	비중	세액	비중	세액	비중	세액	비중
1962	528,567	10.1	625,390	12.0	604,524	11.6	22,530	0.4
1963	703,226	9.5	961,090	13.0	608,874	8.2	30,119	0.4
1964	848,041	9.6	1,132,638	12.8	648,328	7.3	41,545	0.5
1965	1,080,563	9.5	1,489,599	13.1	842,293	7.4	62,376	0.5
1966	1,311,401	8.1	1,979,043	12.3	1,183,190	7.3	69,964	0.4
1967	781,535	5.5	1,617,565	11.5	858,640	6.1	67,207	0.5
1968	936,191	4.8	2,011,572	10.4	1,058,404	5.5	112,697	0.6
1969	1,517,296	5.7	2,594,964	9.8	1,431,818	5.4	172,208	0.6
1970	1,742,556	5.2	2,776,919	8.4	1,425,896	4.3	257,524	0.8
1971	2,074,239	5.2	3,509,096	8.8	1,887,549	4.7	322,490	0.8
1972	2,585,707	5.5	4,394,673	9.4	2,487,191	5.3	450,965	1.0
1973	3,975,353	5.4	8,126,359	11.0	4,038,010	5.4	718,316	1.0
1974	5,697,594	5.3	11,080,215	10.3	6,978,813	6.5	1,003,794	0.9
1975	8,560,904	5.4	15,020,492	9.5	9,208,628	5.8	1,449,997	0.9
1976	12,937,804	5.9	19,574,561	8.9	12,725,016	5.8	1,954,119	0.9
1977	18,658,855	5.5	28,460,315	8.5	20,272,946	6.0	2,720,501	0.8
1978	21,226,875	4.8	38,233,037	8.6	26,787,838	6.0	3,894,743	0.9
1979	32,233,078	5.4	54,747,346	9.1	38,527,125	6.4	5,932,614	1.0
1980	43,416,101	5.7	68,777,341	9.0	50,930,365	6.6	7,711,977	1.0
1981	48,285,795	5.3	45,417,550	5.0	63,715,534	7.0	9,170,031	1.0
1982	56,722,689	5.1	50,608,115	4.5	74,660,034	6.7	8,089,693	0.7
1983	67,599,509	4.8	60,748,881	4.3	91,409,425	6.5	12,542,101	0.9
1984	74,133,599	4.9	67,274,682	4.5	100,334,526	6.7	12,600,898	0.8
1985	77,878,906	4.7	76,618,509	4.6	114,655,556	6.9	14,260,341	0.9
1986	81,491,719	4.5	83,971,268	4.6	127,086,612	7.0	15,038,943	0.8
1987	64,443,924	2.9	101,644,181	4.6	164,121,208	7.5	17,568,024	0.8
1988	99,890,518	3.2	155,096,487	5.0	246,269,966	7.9	26,910,851	0.9
1989	148,683,437	3.0	242,142,352	4.9	392,530,869	7.9	45,808,130	0.9
1990	197,511,398	3.1	316,979,455	5.0	505,621,983	7.9	67,270,376	1.1
1991	240,163,292	3.0	407,807,019	5.1	660,687,284	8.2	89,638,487	1.1
1992	286,568,335	3.0	475,796,537	5.0	787,918,538	8.3	109,649,841	1.2
1993	306,830,656	2.8	538,627,516	4.9	867,134,709	7.9	120,884,839	1.1
1994	346,028,343	2.6	656,206,439	5.0	1,069,002,422	8.1	142,368,299	1.1
1995	411,099,106	2.7	723,593,526	4.7	1,195,510,017	7.8	169,592,628	1.1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3]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

(단위 : %)

	합 계	취득세	재산세	면허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농지세
1962	100.0	8.3	11.1	6.2	—	9.5	—	39.0
1963	100.0	8.4	11.2	5.6	—	7.9	—	41.4
1964	100.0	9.9	8.2	4.4	—	8.1	—	40.7
1965	100.0	14.9	7.0	4.1	—	7.5	—	35.0
1966	100.0	15.8	6.5	3.4	—	6.7	—	30.7
1967	100.0	26.3	8.3	4.7	—	11.0	—	23.8
1968	100.0	26.8	12.2	4.4	—	12.9	—	17.8
1969	100.0	27.1	11.2	3.9	—	14.6	—	18.0
1970	100.0	33.3	12.0	3.7	—	16.9	—	9.4
1971	100.0	32.0	12.4	3.6	—	16.1	—	11.4
1972	100.0	25.3	16.9	2.9	—	14.8	—	11.4
1973	100.0	26.8	13.0	3.4	—	10.6	12.6	10.9
1974	100.0	28.2	14.7	3.8	—	11.1	7.9	12.8
1975	100.0	26.3	17.9	0.3	—	7.8	9.8	13.1
1976	100.0	26.5	17.1	2.5	—	6.4	11.1	14.3
1977	100.0	22.4	13.5	3.0	19.8	5.6	13.9	10.7
1978	100.0	25.8	10.6	3.4	20.7	5.8	13.5	10.0
1979	100.0	22.5	13.6	2.9	15.4	8.1	15.2	9.0
1980	100.0	21.2	15.6	2.4	15.9	7.4	15.2	8.2
1981	100.0	19.7	16.7	2.2	17.1	6.7	14.0	8.5
1982	100.0	19.3	15.4	2.2	21.9	6.1	12.5	7.4
1983	100.0	22.0	13.9	2.1	24.2	6.0	11.3	6.5
1984	100.0	22.4	14.0	2.0	22.0	6.9	11.7	6.1
1985	100.0	21.5	14.3	1.3	21.8	7.1	12.2	0.9
1986	100.0	20.5	14.7	1.3	21.9	7.7	12.6	0.8
1987	100.0	20.6	13.0	1.2	25.1	7.7	12.6	0.8
1988	100.0	21.3	9.7	1.0	25.6	7.0	12.1	0.6
1989	100.0	15.9	7.5	0.8	22.0	6.1	9.5	0.1
1990	100.0	18.3	3.6	0.8	21.6	6.7	8.6	0.1
1991	100.0	19.0	3.4	1.1	23.6	7.9	8.7	0.1
1992	100.0	18.3	3.8	1.1	22.0	8.7	10.3	0.0
1993	100.0	18.5	3.7	1.2	23.1	9.3	10.0	0.0
1994	100.0	17.7	3.6	1.3	23.3	9.8	10.3	0.0
1995	100.0	17.6	3.0	1.4	23.7	10.1	11.1	0.0

[표 5-3]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 (계속)

(단위 : %)

	도축세	사업소세	유흥음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경주)마권세
1962	2.3	—	4.2	—	0.6	—	0.0
1963	1.9	—	4.5	—	0.7	—	0.1
1964	2.1	—	4.4	0.0	1.1	—	0.0
1965	1.5	—	6.2	0.1	0.9	—	0.1
1966	1.2	—	7.9	0.4	0.9	—	0.1
1967	1.3	—	12.6	1.5	1.1	—	0.1
1968	0.9	—	16.5	5.9	1.6	—	0.5
1969	0.7	—	16.6	5.5	1.5	—	0.7
1970	0.7	—	15.1	6.6	1.6	—	0.7
1971	0.5	—	14.6	7.0	1.7	—	0.8
1972	0.5	—	13.8	11.8	1.8	—	0.8
1973	0.3	—	11.5	8.7	1.5	—	0.6
1974	0.3	—	11.3	7.7	1.4	—	0.7
1975	0.3	—	11.0	8.4	1.8	—	3.1
1976	0.5	—	11.5	7.9	1.8	—	0.3
1977	0.4	2.9	0.7	5.5	1.4	—	0.3
1978	0.3	3.8	0.0	4.5	1.2	—	0.3
1979	0.6	4.3	—	5.7	1.4	—	0.3
1980	0.6	4.0	—	6.6	1.7	—	0.4
1981	0.7	3.9	—	7.3	1.8	—	0.3
1982	0.7	3.9	—	7.2	2.1	—	0.4
1983	0.8	3.5	—	6.6	1.9	—	0.3
1984	0.8	3.7	—	6.7	2.3	—	0.4
1985	0.9	3.7	—	6.9	2.4	—	0.4
1986	1.0	3.8	—	6.8	2.5	—	0.5
1987	0.9	3.8	—	6.1	2.3	—	0.5
1988	0.6	3.3	—	4.8	1.9	—	0.5
1989	0.3	2.6	—	3.7	1.5	—	0.4
1990	0.3	2.3	—	3.8	1.4	—	0.9
1991	0.3	2.1	—	3.8	1.3	—	1.0
1992	0.2	2.2	—	4.2	1.4	0.4	1.0
1993	0.2	2.1	—	4.3	1.4	0.5	0.9
1994	0.2	1.9	—	4.3	1.4	0.4	1.3
1995	0.2	1.9	—	4.3	1.3	0.4	1.4

[표 5-3]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 (계속)

(단위 : %)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판매)세	국세부가세 및 기타	과년도수입
1962	—	—	—	18.8	—
1963	—	—	—	18.3	—
1964	—	—	—	21.1	—
1965	—	—	—	22.7	—
1966	—	—	—	26.5	—
1967	—	—	—	9.3	—
1968	—	—	—	0.6	—
1969	—	—	—	0.1	—
1970	—	—	—	0.0	—
1971	—	—	—	—	—
1972	—	—	—	—	—
1973	—	—	—	—	—
1974	—	—	—	—	—
1975	—	—	—	—	—
1976	—	—	—	—	—
1977	—	—	—	—	—
1978	—	—	—	—	—
1979	—	—	—	—	0.9
1980	—	—	—	—	0.8
1981	—	—	—	—	1.1
1982	—	—	—	—	1.1
1983	—	—	—	—	0.8
1984	—	—	—	—	1.1
1985	—	—	5.2	—	1.2
1986	—	—	4.9	—	1.0
1987	—	—	4.3	—	1.1
1988	0.5	—	10.0	—	1.0
1989	0.5	—	28.5	—	0.7
1990	0.0	6.3	24.7	—	0.7
1991	—	6.4	20.5	—	0.7
1992	—	7.1	18.3	—	0.9
1993	—	7.6	15.8	—	1.3
1994	—	7.8	15.5	—	1.2
1995	—	8.2	14.0	—	1.3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4] 연도별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

(단위 : 원)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971	3,329	16,924	2,122	10,724	—	—	—	—	—	—	—	—
1972	3,466	17,810	2,502	12,777	—	—	—	—	—	—	—	—
1973	5,126	26,527	3,915	19,985	—	—	—	—	—	—	—	—
1974	7,032	36,216	5,353	26,822	—	—	—	—	—	—	—	—
1975	10,201	49,818	6,517	31,732	—	—	—	—	—	—	—	—
1976	13,391	68,978	8,588	43,930	—	—	—	—	—	—	—	—
1977	21,322	104,739	12,885	63,839	—	—	—	—	—	—	—	—
1978	26,075	126,766	15,748	76,311	—	—	—	—	—	—	—	—
1979	30,948	105,576	22,003	105,819	—	—	—	—	—	—	—	—
1980	35,159	165,745	27,288	128,760	—	—	—	—	—	—	—	—
1981	42,345	192,097	30,386	139,127	26,486	118,040	34,680	153,788	—	—	—	—
1982	51,409	229,117	33,855	153,962	30,347	131,917	37,191	164,999	—	—	—	—
1983	87,432	380,259	38,147	169,251	35,278	150,476	46,315	200,885	—	—	—	—
1984	63,924	270,469	41,261	179,597	37,270	156,939	52,434	222,802	—	—	—	—
1985	68,080	282,398	43,742	183,330	39,108	158,934	55,071	225,389	—	—	—	—
1986	72,053	290,758	47,212	196,959	44,024	176,580	55,741	226,187	—	—	—	—
1987	84,119	333,759	59,038	244,291	56,338	225,596	62,994	254,832	33,632	149,108	—	—
1988	112,388	434,964	66,720	268,083	65,542	258,359	74,360	292,457	53,459	233,046	—	—
1989	166,188	624,084	115,990	456,896	114,854	444,628	131,464	506,217	93,678	403,668	117,808	508,413
1990	196,812	742,452	144,206	551,376	146,834	548,462	173,291	647,714	128,317	510,048	156,628	634,388
1991	233,726	775,470	178,495	663,561	182,765	638,147	208,086	638,177	162,585	597,400	211,936	751,748
1992	265,010	859,330	210,910	759,670	212,080	730,500	229,770	770,570	195,220	690,230	242,880	845,120
1993	300,070	970,570	245,730	885,670	253,130	872,650	265,140	890,490	213,350	756,540	309,730	1,078,270
1994	352,385	1,114,105	277,089	960,953	312,962	979,465	288,543	881,863	257,915	860,910	344,822	1,129,076
1995	411,559	1,082,107	312,953	1,078,839	329,004	16,847,411	325,914	1,056,944	286,778	972,513	351,123	1,177,698

[표 5-4] 연도별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 (계속)

(단위 : 원)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971	913	4,841	435	2,347	576	3,349	688	4,045	674	3,928	516	3,020
1972	1,158	6,123	564	3,073	698	4,076	808	4,791	819	4,836	634	3,760
1973	1,801	9,541	917	5,003	1,141	6,638	1,255	7,431	1,305	7,696	969	5,740
1974	2,576	13,452	1,251	6,893	1,603	9,254	1,808	10,681	1,923	11,260	1,380	8,127
1975	3,775	18,661	1,856	9,545	2,547	13,801	2,850	15,698	2,964	16,372	2,148	11,672
1976	5,464	27,007	2,541	13,065	3,620	19,616	4,011	22,096	4,078	22,524	3,248	17,649
1977	7,931	39,664	3,540	17,863	5,321	28,542	5,779	32,073	5,704	31,772	4,640	25,525
1978	11,402	56,137	4,238	21,665	6,108	31,833	6,662	36,288	6,750	37,008	5,275	28,622
1979	15,485	74,698	6,479	32,317	9,042	46,455	9,683	52,212	9,570	51,407	8,044	43,205
1980	22,417	102,577	8,900	42,544	11,337	56,852	13,199	69,572	13,700	71,029	11,236	57,979
1981	23,322	106,571	11,589	55,352	14,134	53,667	15,377	77,761	16,010	81,042	12,776	63,051
1982	26,380	120,417	13,814	65,457	16,144	78,581	18,232	92,400	18,258	91,622	14,689	73,118
1983	34,431	151,652	15,815	73,734	18,035	85,015	21,464	106,715	20,626	101,086	17,707	85,764
1984	37,468	163,605	17,867	82,399	21,641	100,150	24,312	119,081	22,086	106,212	19,385	92,731
1985	42,793	176,056	21,903	93,725	25,487	110,267	26,439	121,220	21,495	96,645	20,776	93,325
1986	46,298	188,543	23,082	99,304	27,060	116,710	28,913	130,947	22,133	98,411	23,154	103,843
1987	53,437	215,112	27,645	118,734	30,149	129,678	32,559	145,923	25,756	113,538	23,696	106,538
1988	79,092	311,469	43,944	184,629	48,308	202,545	52,882	231,456	11,578	179,152	36,970	164,294
1989	114,214	445,398	77,189	317,577	81,708	338,661	66,089	282,674	64,713	273,180	55,288	242,089
1990	162,118	616,572	113,983	439,162	106,449	424,375	83,627	354,420	89,722	359,155	78,300	318,725
1991	205,575	680,199	137,577	510,483	143,040	528,310	123,645	467,969	116,465	444,393	102,293	379,383
1992	237,500	768,380	165,280	594,790	164,840	588,220	142,700	521,930	135,900	497,640	125,480	448,040
1993	311,040	1,002,340	177,890	640,440	196,040	700,140	167,000	611,240	156,820	574,570	134,390	479,610
1994	374,068	1,121,911	211,522	763,814	223,337	761,494	203,511	710,534	187,463	661,791	154,991	530,458
1995	405,091	1,266,048	262,838	875,699	272,920	915,403	252,034	847,859	226,617	777,075	188,153	615,267

[표 5-4] 연도별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 (계속)

(단위 : 원)

	경 북		경 남		제 주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971	762	4,106	607	3,419	880	3,879
1972	937	5,084	788	4,480	1,183	5,486
1973	1,699	9,169	1,261	7,121	1,838	8,513
1974	2,271	12,163	2,103	11,796	2,459	11,229
1975	3,091	15,742	2,807	14,646	3,519	15,726
1976	4,031	20,532	3,881	20,251	4,746	21,208
1977	5,754	28,894	6,179	31,826	6,297	27,760
1978	7,710	37,573	8,052	40,852	8,772	38,544
1979	10,990	52,475	11,398	57,195	12,981	56,928
1980	13,769	65,340	15,294	72,500	17,815	77,395
1981	14,262	66,234	19,188	89,265	19,816	86,900
1982	15,931	73,412	21,419	99,113	17,067	113,550
1983	19,416	87,507	25,980	117,148	26,246	111,204
1984	21,816	95,362	28,073	124,362	26,141	109,820
1985	25,431	104,510	32,596	134,729	29,134	120,682
1986	27,664	112,750	36,137	148,901	30,323	124,184
1987	33,406	135,395	46,038	187,858	34,968	142,091
1988	51,204	203,272	68,331	272,423	52,870	211,869
1989	80,506	313,017	106,018	415,252	88,613	350,915
1990	110,612	401,836	137,420	509,894	130,722	512,001
1991	142,003	510,085	175,281	626,268	180,679	633,662
1992	165,590	575,010	204,680	715,340	216,600	746,120
1993	187,530	651,320	225,410	788,350	238,930	822,970
1994	228,144	787,935	273,927	933,367	278,741	929,479
1995	261,290	843,103	302,862	1,012,217	372,163	1,080,169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5] 연도별 지방세 담당공무원 수

(단위 : 명)

	합 계	일 반 직(정규직)[1]									기능직 (고용직)[2]	일용직
		소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983	10,241	9,153	—	—	23	311	2,178	1,597	2,519	2,525	1,088	—
1984	10,391	8,837	—	2	6	308	2,180	1,779	2,707	1,855	833	721
1985	10,460	9,149	—	2	8	307	2,170	1,878	2,986	1,798	793	518
1986	10,803	9,228	1	1	34	325	2,205	2,339	2,893	1,430	824	751
1987	10,803	9,228	1	1	34	325	2,205	2,339	2,893	1,430	824	751
1988	11,949	9,688	1	1	35	340	2,368	2,554	3,038	1,351	1,094	1,167
1989	12,188	9,974	1	2	34	358	2,557	2,766	2,853	1,403	1,003	1,211
1990	13,588	10,342	—	—	12	375	2,575	2,771	2,645	1,964	1,024	2,222
1991	14,710	10,521	—	—	29	400	2,620	2,855	2,469	2,148	1,383	2,806
1992	14,639	11,046	—	—	25	394	2,501	2,727	2,833	2,566	1,404	2,189
1993	15,669	11,246	—	—	3	395	2,458	2,884	2,969	2,537	1,451	2,972
1994	16,270	11,651	—	—	3	383	2,491	3,069	3,215	2,490	1,327	3,292
1995	13,365	12,751	—	—	25	367	2,647	3,344	3,615	2,753	614	—
1996	14,352	13,509	—	—	44	384	2,699	3,365	3,358	3,659	843	—

주 : 1) 1992년까지는 정규직으로 분류됨.
2) 1990년까지는 고용직으로 분류됨.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6]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건, 천원)

	1977		1978		1979		1980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 계	3,596,971	31,615,962	3,589,899	31,375,389	4,171,614	60,935,104	6,681,655	108,393,285
취 득 세	58,373	4,984,913	111,890	10,320,442	225,294	11,120,712	1,111,900	21,740,902
등 록 세	67,702	706,400	84,702	2,528,149	550,926	11,231,576	1,659,066	20,560,963
면 허 세	13,522	220,486	14,947	158,143	21,552	198,239	24,743	212,839
주 민 세	581,300	726,130	515,417	591,280	495,070	2,124,380	665,426	2,700,472
재 산 세	1,960,335	9,486,890	1,984,164	9,283,856	1,994,397	14,400,101	2,012,958	25,629,789
자 동 차 세	16,601	616,183	17,100	649,261	38,431	1,106,076	84,925	1,792,530
농 지 세	438,351	9,825,621	356,503	1,876,335	316,950	4,856,921	435,915	16,464,920
도 축 세	—	—	—	—	—	—	—	—
경 주 마 권 세	—	—	—	—	—	—	—	—
담 배 소 비 세	—	—	—	—	—	—	—	—
지 역 개 발 세	—	—	—	—	—	—	—	—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 합 토 지 세	—	—	—	—	—	—	—	—
도 시 계 획 세	267,853	3,540,828	278,549	4,236,214	252,401	5,512,880	352,876	8,386,742
공 동 시 설 세	190,784	859,654	223,532	874,129	193,142	1,128,748	251,959	1,468,558
사 업 소 세	2,150	648,857	3,095	857,580	83,451	9,255,471	81,887	9,435,569

[표 5-6]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계속)

(단위 : 건, 천원)

	1981		1982		1983		1984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 계	5,691,905	137,942,746	4,859,137	123,994,468	5,357,834	172,657,439	5,040,566	150,583,835
취 득 세	522,981	28,524,969	312,592	30,305,810	624,253	61,981,978	311,160	34,567,111
등 록 세	952,050	22,905,778	337,765	26,204,084	526,885	44,464,645	279,039	30,110,900
면 허 세	29,191	274,919	66,539	545,697	89,163	574,683	80,744	599,731
주 민 세	694,103	7,697,231	581,734	1,250,616	608,284	6,846,675	660,425	1,789,529
재 산 세	2,239,946	29,928,529	2,166,824	28,132,187	2,315,369	34,109,425	2,328,167	42,178,724
자 동 차 세	96,962	2,020,136	77,842	1,607,899	98,789	4,034,287	102,603	4,598,498
농 지 세	274,731	11,169,949	390,230	10,886,671	272,323	7,281,343	256,516	9,914,272
도 축 세	—	—	—	—	18,786	570,052	—	—
경 주 마 권 세	—	—	—	—	—	—	—	—
담 배 소 비 세	—	—	—	—	—	—	—	—
지 역 개 발 세	—	—	—	—	—	—	—	—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 합 토 지 세	—	—	—	—	—	—	—	—
도 시 계 획 세	455,671	14,131,725	481,488	15,692,187	464,034	5,793,710	581,199	13,500,211
공 동 시 설 세	342,287	11,586,126	339,332	3,990,429	236,118	1,595,020	334,475	8,465,978
사 업 소 세	83,983	9,703,384	104,791	5,378,888	103,830	5,405,621	106,238	4,858,881

[표 5-6]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계속)

(단위 : 건, 천원)

	1985		1986		1987		1988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 계	4,495,665	139,992,945	4,239,932	140,805,357	4,254,871	134,577,132	5,631,372	224,476,104
취 득 세	243,033	34,950,258	162,027	43,134,949	190,010	36,505,658	528,629	91,151,555
등 록 세	134,257	29,650,542	92,465	25,227,463	81,151	25,385,528	78,467	42,607,483
면 허 세	87,008	1,145,962	68,151	475,810	71,556	502,643	51,097	366,188
주 민 세	632,246	1,802,072	678,155	1,912,311	609,762	2,069,236	664,714	2,166,071
재 산 세	2,317,450	37,185,011	2,271,453	31,325,093	2,249,800	36,561,611	2,753,319	52,936,046
자 동 차 세	77,749	4,150,101	37,363	727,860	57,753	1,386,890	57,780	3,306,049
농 지 세	130,497	5,679,640	179,135	6,331,522	154,712	2,984,147	151,933	1,435,558
도 축 세	—	—	—	—	—	—	—	—
경 주 마 권 세	—	—	12	9,411,645	12	2,364,361	—	—
담 배 소 비 세	—	—	—	—	—	—	525,512	813,268
지 역 개 발 세	—	—	—	—	—	—	—	—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 합 토 지 세	—	—	—	—	—	—	—	—
도 시 계 획 세	543,094	17,046,111	534,679	15,120,652	610,469	18,537,091	595,596	22,867,173
공 동 시 설 세	222,561	3,276,753	202,861	2,738,809	216,042	3,590,830	214,441	4,087,523
사 업 소 세	107,770	5,106,495	13,631	4,399,243	13,604	4,689,137	9,884	2,739,190

[표 5-6]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계속)

(단위 : 건, 천원)

	1989		1990		1991		1992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 계	6,753,352	399,556,001	10,521,660	402,120,733	11,138,921	543,788,779	13,517,729	1,587,987,708
취 득 세	341,413	107,254,163	509,041	175,261,037	568,472	215,882,298	1,324,231	591,268,684
등 록 세	157,847	158,289,436	365,581	121,165,231	423,559	145,766,273	1,019,006	544,199,123
면 허 세	54,494	501,337	62,399	1,211,223	64,556	725,995	73,148	1,759,219
주 민 세	664,491	1,695,575	662,250	4,229,452	842,406	5,284,375	586,860	4,671,500
재 산 세	2,690,855	51,849,984	827,328	25,950,731	1,013,734	25,604,712	999,598	75,492,483
자 동 차 세	55,274	2,059,714	71,641	6,749,210	86,673	4,282,427	72,906	3,557,449
농 지 세	136,298	753,202	93,366	874,205	92,459	1,773,611	80,528	1,885,326
도 축 세	—	—	—	—	—	—	—	—
경 주 마 권 세	11	19,532,903	—	—	—	—	—	—
담 배 소 비 세	8,287	27,214	—	—	—	—	—	—
지 역 개 발 세	—	—	—	—	—	—	633,784	12,679,620
토지과다보유세	1,907,997	28,770,064	—	—	—	—	—	—
종 합 토 지 세	—	—	6,629,837	35,990,764	6,985,427	95,466,000	7,539,990	310,230,905
도 시 계 획 세	529,028	20,646,444	827,255	14,500,603	764,983	28,756,981	894,649	29,708,353
공 동 시 설 세	198,191	4,351,363	461,126	4,427,975	269,429	4,961,275	278,522	4,954,199
사 업 소 세	9,166	3,824,602	11,836	11,760,302	27,223	15,284,832	14,507	7,580,847

[표 5-6]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계속)

(단위 : 건, 천원)

	1993		1994		1995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 계	15,120,750	1,554,940,230	15,893,687	1,520,638,712	16,031,292	1,488,985,204
취 득 세	1,423,842	556,003,185	1,223,751	574,584,364	1,047,905	507,985,250
등 록 세	1,211,706	589,517,686	992,336	493,564,654	1,005,022	566,459,305
면 허 세	75,611	18,246,029	101,325	4,733,123	108,217	2,017,139
주 민 세	1,323,716	28,936,438	1,295,054	16,616,322	716,511	6,376,881
재 산 세	899,730	46,472,930	901,787	40,148,157	880,078	35,661,516
자 동 차 세	98,535	5,701,147	110,717	69,163,805	119,705	14,922,267
농 지 세	33,621	94,354	8,987	54,791	170	49,219
도 축 세	—	—	—	—	—	—
경 주 마 권 세	—	—	—	—	—	—
담 배 소 비 세	—	—	—	—	—	—
지 역 개 발 세	893,788	17,879,766	40,552	26,410,560	109,728	32,752,961
토지과다보유세	—	—	—	—	—	—
종 합 토 지 세	8,075,964	250,342,016	9,559,742	232,199,771	10,181,201	219,842,470
도 시 계 획 세	853,830	27,619,005	1,389,106	46,612,230	1,531,497	79,617,825
공 동 시 설 세	218,259	5,327,337	255,791	6,518,742	312,426	11,691,877
사 업 소 세	12,148	8,800,337	14,539	10,032,193	18,832	11,608,494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나. 도 세

(1) 취득세

[표 5-7] 연도별 취득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62	485,548	432,952	—	—	89.2
1963	663,653	618,254	—	—	93.2
1964	934,587	872,903	—	—	93.3
1965	1,835,979	1,693,436	—	—	92.2
1966	2,732,716	2,550,839	—	—	93.3
1967	3,889,500	3,705,597	—	—	95.2
1968	5,522,237	5,183,913	—	—	93.8
1969	7,822,230	7,210,909	—	—	92.1
1970	12,044,977	11,056,747	5,329	982,902	91.7
1971	13,718,108	12,723,719	5,646	988,743	92.8
1972	12,953,687	11,782,615	14,183	1,156,889	90.9
1973	21,285,919	19,866,903	16,849	1,402,167	93.3
1974	32,583,665	30,451,349	7,532	2,124,780	93.4
1975	44,688,358	41,820,047	7,137	2,861,174	93.5
1976	61,989,266	58,399,128	42,973	3,547,165	94.2
1977	79,075,701	75,462,833	16,280	3,596,588	95.4
1978	120,336,211	114,554,884	14,000	5,767,327	95.2
1979	140,207,708	135,036,868	20,098	5,150,742	96.3
1980	179,491,339	162,951,659	27,774	16,511,906	90.8
1981	189,019,047	179,768,902	110,925	9,139,220	95.1
1982	224,591,792	215,508,078	81,680	9,002,034	96.0
1983	321,600,461	307,767,471	54,519	13,778,471	95.7
1984	352,605,605	337,526,079	55,730	15,023,796	95.7
1985	371,906,618	356,321,794	82,913	15,501,911	95.8
1986	392,563,939	371,184,705	38,979	21,340,255	94.6
1987	471,615,410	452,652,110	190,665	18,772,635	96.0
1988	682,609,529	661,494,476	238,504	20,876,549	96.9
1989	814,230,252	787,215,449	31,678	26,983,125	96.7
1990	1,203,145,983	1,164,926,685	333,626	37,885,672	96.8
1991	1,598,721,293	1,525,728,689	67,605	72,924,999	95.4
1992	1,835,920,941	1,732,592,469	1,575,198	101,753,274	94.4
1993	2,155,084,597	2,042,961,731	816,957	111,305,909	94.8
1994	2,489,661,606	2,344,644,232	650,315	144,367,059	94.2
1995	2,887,708,640	2,691,021,647	893,864	195,793,129	93.2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8] 연도별 취득세 부과실적

(단위 : 긴, 천원, 명)

	합 계			토 지			건 축 물		
	건 수	세 액	납세인원	건 수	세 액	납세인원	건 수	세 액	납세인원
1962	—	545,880	325,049	—	—	—	—	—	—
1963	—	684,248	405,050	—	—	—	—	—	—
1964	—	960,419	453,160	—	—	—	—	—	—
1965	1,134,484	1,884,221	935,677	—	—	—	—	—	—
1966	1,073,664	2,822,676	907,843	—	—	—	—	—	—
1967	906,530	3,924,546	765,855	—	—	—	—	—	—
1968	1,038,129	5,571,947	860,833	—	—	—	—	—	—
1969	1,033,436	7,960,779	846,671	—	—	—	—	—	—
1970	1,270,549	12,236,592	1,051,385	—	—	—	—	—	—
1971	1,235,782	14,082,197	1,003,128	—	—	—	—	—	—
1972	1,264,080	13,094,770	1,006,603	—	—	—	—	—	—
1973	1,382,469	21,300,761	1,100,486	—	—	—	—	—	—
1974	1,417,695	32,216,979	1,124,503	—	—	—	—	—	—
1975	1,437,887	48,799,689	1,155,719	—	—	—	—	—	—
1976[1]	1,532,738	62,198,489	1,183,094	886,454	20,995,294	665,751	531,902	23,091,463	408,643
1977	1,719,381	80,885,000	1,444,200	916,397	33,608,914	739,966	648,850	36,500,382	555,836
1978	1,990,513	120,288,026	1,681,182	1,026,376	47,158,115	828,053	737,980	53,129,559	640,915
1979	1,714,036	140,047,447	1,448,843	733,903	43,919,298	578,271	598,401	69,889,932	512,037
1980	1,529,725	178,686,272	1,284,282	672,421	65,532,794	529,878	592,078	86,904,205	501,373
1981	1,442,566	187,803,535	1,228,055	633,588	66,121,267	500,267	513,329	92,227,548	445,952
1982	1,672,980	224,501,764	1,439,858	731,861	79,096,991	580,467	563,716	106,141,347	498,174
1983	2,118,178	319,266,380	1,832,752	899,009	117,786,122	716,464	752,283	148,726,501	666,145
1984	2,103,066	351,605,760	1,780,440	865,286	120,633,510	668,794	720,188	171,600,780	609,678
1985	2,012,281	369,027,326	1,721,559	818,329	127,197,507	629,960	641,847	175,963,444	556,617
1986	2,003,539	389,339,693	1,761,810	784,028	129,907,205	626,636	582,764	187,826,807	517,531
1987	2,369,637	469,826,113	2,075,459	949,676	167,934,644	740,750	657,801	213,853,137	593,929
1988	3,211,861	678,856,660	2,801,848	1,344,828	243,211,008	1,041,821	897,386	310,055,433	808,051
1989	3,321,839	806,488,118	2,964,809	1,207,011	281,451,228	953,649	840,727	351,535,532	764,303
1990	3,705,620	1,193,506,430	3,370,815	1,215,574	438,195,033	989,030	881,010	498,011,215	806,691
1991	3,981,540	1,583,582,440	3,637,211	1,198,907	611,221,178	987,726	964,420	649,192,104	867,975
1992	4,159,543	1,801,345,858	3,886,862	1,078,144	675,239,178	903,825	960,246	782,585,332	894,668
1993	4,618,835	2,120,593,378	4,340,957	1,012,509	727,807,044	874,705	1,096,392	983,476,734	1,013,708
1994	5,098,433	2,455,404,246	4,841,568	1,072,726	909,217,115	938,395	1,112,184	1,061,164,112	1,029,016
1995	5,675,375	2,862,219,758	5,328,036[2]	1,307,410	1,139,884,671	1,133,961	1,184,413	1,182,003,174	1,065,179

[표 5-8] 연도별 취득세 부과실적 (계속)

(단위 : 건, 천원, 명)

	차량			기타		
	건수	세액	납세인원	건수	세액	납세인원
1962	—	—	—	—	—	—
1963	—	—	—	—	—	—
1964	—	—	—	—	—	—
1965	—	—	—	—	—	—
1966	—	—	—	—	—	—
1967	—	—	—	—	—	—
1968	—	—	—	—	—	—
1969	—	—	—	—	—	—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1)]	98,405	4,635,591	95,267	15,977	1,205,347	13,433
1977	138,124	8,585,713	134,500	16,010	2,189,991	13,898
1978	205,687	15,338,128	194,807	20,470	4,662,224	17,407
1979	357,039	21,110,203	339,867	24,693	5,128,014	18,668
1980	247,834	19,393,599	237,284	17,392	6,855,674	15,747
1981	276,990	22,164,775	264,955	18,659	7,289,945	16,881
1982	355,148	28,930,050	340,822	22,255	10,333,376	20,395
1983	443,422	39,725,582	428,340	23,464	13,028,175	21,803
1984	493,230	46,251,512	480,321	24,362	13,119,958	21,647
1985	531,325	51,536,406	516,926	20,780	14,329,969	18,056
1986	614,972	58,302,510	598,768	21,775	13,303,171	18,875
1987	738,402	73,995,288	718,725	23,758	14,043,044	22,055
1988	939,859	108,671,428	925,054	29,788	16,918,791	26,922
1989	1,239,030	149,693,247	1,215,484	35,071	23,808,111	31,373
1990	1,559,607	212,837,265	1,530,384	49,429	44,462,917	44,710
1991	1,756,258	263,933,925	1,725,574	61,955	59,235,233	55,936
1992	2,053,582	299,003,695	2,027,874	67,571	44,517,653	60,495
1993	2,445,101	348,508,992	2,394,094	64,833	60,800,608	58,450
1994	2,840,980	408,501,005	2,805,858	72,543	76,522,014	68,299
1995	3,071,931	448,926,476	3,020,456	111,621	91,405,437	107,734

주 : 1) 1976.12.31 시·군의 취득세부가세 폐지. 합계난의 건수, 세액, 납세인원은 도세 및 시세, 군세가 포함된 수치이나 구분별 건수, 세액, 납세인원은 도세만 포함된 수치임.

2) 지방세정연감(1996)에는 위와같이 표기되어 있으나 구분별 실제 합계는 5,327,330천원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9] 연도별 취득세 납액별 인원 현황

(단위 : 명)

1976		1977		1978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3천원미만	116,114	4천원미만	96,997	4천원미만	73,643
3천원이상	86,153	4천원초과	67,716	4천원초과	54,747
4천원이상	86,863	5천원초과	95,419	5천원초과	80,618
5천원이상	110,389	7천원초과	131,932	7천원초과	113,708
7천원이상	124,921	1만원초과	351,260	1만원초과	340,714
1만원이상	261,762	3만원초과	273,139	3만원초과	342,762
3만원이상	159,734	5만원초과	276,686	5만원초과	428,450
5만원이상	150,736	10만원초과	124,371	10만원초과	195,308
10만원이상	70,194	30만원초과	18,644	30만원초과	41,611
30만원이상	11,128	70만원초과	3,492	70만원초과	5,053
70만원이상	2,117	100만원초과	3,062	100만원초과	2,998
100만원이상	1,990	300만원초과	794	300만원초과	907
300만원이상	593	500만원초과	688	500만원초과	663
500만원이상	284				
1천만원이상	166				
합 계	1,183,144	합 계	1,444,200	합 계	1,681,182

[표 5-9] 연도별 취득세 납액별 인원 현황 (계속)

(단위 : 명)

1979		1980		1981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4천원미만	61,590	4천원미만	19,419	7천원미만	41,260
4천원초과	52,747	4천원초과	17,374	7천원초과	67,203
5천원초과	91,778	5천원초과	35,246	1만원초과	205,402
7천원초과	106,654	7천원초과	83,418	3만원초과	200,105
1만원초과	250,758	1만원초과	208,780	5만원초과	305,283
3만원초과	273,083	3만원초과	214,774	10만원초과	285,921
5만원초과	317,059	5만원초과	290,169	30만원초과	91,383
10만원초과	217,641	10만원초과	304,690	70만원초과	19,567
30만원초과	62,243	30만원초과	89,190	100만원초과	7,674
70만원초과	8,472	70만원초과	11,202	300만원초과	2,064
100만원초과	4,529	100만원초과	6,558	500만원초과	2,193
300만원초과	1,221	300만원초과	1,511		
500만원초과	1,068	500만원초과	1,630		
합 계	1,448,843	합 계	1,283,961	합 계	1,228,055

[표 5-9] 연도별 취득세 납액별 인원 현황 (계속)

(단위 : 명)

1982		1983		1984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7천원미만	36,366	4천원미만	5,244	4천원미만	5,110
7천원초과	64,244	4천원초과	7,871	4천원초과	5,951
1만원초과	213,130	5천원초과	24,850	5천원초과	22,733
3만원초과	228,989	7천원초과	71,858	7천원초과	75,293
5만원초과	385,673	1만원초과	250,892	1만원초과	260,919
10만원초과	376,167	3만원초과	255,815	3만원초과	272,982
30만원초과	104,563	5만원초과	435,412	5만원초과	425,152
70만원초과	16,076	10원초과	516,896	10원초과	483,798
100만원초과	9,789	30만초과	196,339	30만초과	169,436
300만원초과	2,571	70만원과	46,504	70만원과	33,469
500만원초과	2,290	100만원초과	19,360	100만원초과	18,509
		300만원초과	3,952	300만원초과	3,951
		500만원초과	2,842	500만원초과	3,137
합 계	1,439,858	합 계	1,837,835	합 계	1,780,440

[표 5-9] 연도별 취득세 납액별 인원 현황 (계속)

(단위 : 명)

1985		1986		1987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4천원미만	4,801	1만원미만	113,979	1만원미만	140,154
4천원초과	4,286	1만원초과	443,098	1만원초과	455,789
5천원초과	19,369	5만원초과	434,527	5만원초과	501,231
7천원초과	68,153	10만원초과	466,464	10만원초과	590,449
1만원초과	263,862	30만원초과	198,051	30만원초과	255,058
3만원초과	264,031	50만원초과	69,296	50만원초과	92,478
5만원초과	398,426	100만원초과	27,885	100만원초과	28,512
10원초과	455,998	300만원초과	4,623	300만원초과	6,013
30만초과	176,998	500만원초과	2,495	500만원초과	3,608
70만원과	37,572	1천만원초과	1,392	1천만원초과	2,167
100만원초과	19,410				
300만원초과	4,822				
500만원초과	3,831				
합 계	1,721,559	합 계	1,761,810	합 계	2,075,459

[표 5-9] 연도별 취득세 납액별 인원 현황 (계속)

(단위 : 명)

1988		1989		1990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1만원미만	155,027	1만원미만	154,852	1만원미만	140,039
1만원초과	584,253	1만원초과	600,238	1만원초과	568,776
5만원초과	666,685	5만원초과	640,353	5만원초과	632,346
10만원초과	842,162	10만원초과	947,358	10만원초과	1,111,561
30만원초과	355,442	30만원초과	389,023	30만원초과	507,112
50만원초과	142,202	50만원초과	161,406	50만원초과	266,674
100만원초과	40,259	100만원초과	50,859	100만원초과	103,555
300만원초과	8,388	300만원초과	10,859	300만원초과	22,909
500만원초과	4,623	500만원초과	5,808	500만원초과	11,509
1천만원초과	2,807	1천만원초과	4,053	1천만원초과	6,334
합 계	2,801,848	합 계	2,964,809	합 계	3,370,815

[표 5-9] 연도별 취득세 납액별 인원 현황 (계속)

(단위 : 명)

1991		1992		1993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1만원미만	71,535	1만원미만	43,653	1만원미만	35,548
1만원이상	346,086	1만원이상	342,083	1만원이상	329,896
3만원이상	389,215	3만원이상	362,427	3만원이상	348,832
5만원이상	556,017	5만원이상	591,457	5만원이상	664,282
10만원이상	1,182,927	10만원이상	1,355,656	10만원이상	1,460,065
30만원이상	547,149	30만원이상	542,040	30만원이상	656,657
50만원이상	348,361	50만원이상	346,478	50만원이상	414,621
100만원이상	142,795	100만원이상	239,526	100만원이상	355,490
300만원이상	28,386	300만원이상	39,052	300만원이상	48,088
500만원이상	14,537	500만원이상	14,903	500만원이상	17,390
1천만원이상	8,339	1천만원이상	7,122	1천만원이상	7,330
5천만원이상	1,864	5천만원이상	2,465	5천만원이상	2,758
합 계	3,637,211	합 계	3,886,862	합 계	4,340,957

[표 5-9] 연도별 취득세 납액별 인원 현황 (계속)

(단위 : 명)

1994		1995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1만원미만	37,400	1만원미만	39,328
1만원이상	323,431	1만원이상	417,662
3만원이상	375,995	3만원이상	445,861
5만원이상	743,725	5만원이상	749,437
10만원이상	1,606,168	10만원이상	1,698,031
30만원이상	763,507	30만원이상	844,278
50만원이상	517,974	50만원이상	600,815
100만원이상	387,668	100만원이상	422,248
300만원이상	55,912	300만원이상	66,113
500만원이상	18,286	500만원이상	27,852
1천만원이상	8,769	1천만원이상	13,006
5천만원이상	2,733	5천만원이상	3,405
합 계	4,841,568	합 계	5,328,036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10] 연도별 취득세 사치성 재산 과세상황

(단위 : 건, 천m², 천원, 명)

	합 계				토 지			
	건수	면 적	세 액	납세인원	건수	면 적	세 액	납세인원
1976	668	—	2,592,824	657	—	—	—	—
1977	1,326	—	2,604,212	927	755	—	1,679,450	389
1978	811	—	2,922,640	745	405	—	1,766,249	351
1979	1,745	—	2,554,042	1,072	1,078	—	1,440,717	448
1980	1,250	—	15,131,909	845	726	—	13,930,783	384
1981	1,172	—	5,587,908	931	656	—	3,606,196	442
1982	954	—	4,803,013	761	466	—	2,576,329	306
1983	2,014	—	6,982,431	1,087	1,357	—	3,735,824	486
1984	1,595	—	10,477,344	689	1,115	—	4,989,464	292
1985	1,080	—	12,409,157	798	638	—	5,412,165	387
1986	1,328	—	15,359,103	1,123	721	—	9,153,685	556
1987	1,197	—	16,727,121	1,011	559	—	10,575,847	438
1988	1,541	—	24,166,250	1,461	566	—	13,255,324	511
1989	2,683	—	32,608,180	2,391	1,424	—	23,147,764	1,160
1990	4,113	—	90,896,596	2,998	2,963	—	78,736,046	1,890
1991	6,335	372,438	125,540,648	4,477	4,123	371,734	101,309,588	2,337
1992	4,670	205,225	135,043,527	3,331	3,185	187,233	103,240,343	2,033
1993	12,959	3,730,419	90,886,415	3,940	12,314	3,640,215	80,742,714	3,337
1994	2,085	1,408,048	145,146,925	1,734	1,662	1,345,956	131,691,686	1,341
1995	651	64,879	70,990,947	621	233	64,048	53,257,228	216

[표 5-10] 연도별 취득세 사치성 재산 과세상황 (계속)

(단위 : 건, 천m², 천원, 명)

	건 축 물				기 타			
	건수	면 적	세 액	납세인원	건수	면 적	세 액	납세인원
1976	—	—	—	—	—	—	—	—
1977	340	—	546,287	307	231	—	378,475	231
1978	172	—	588,527	160	234	—	567,864	234
1979	459	—	566,462	416	208	—	546,863	208
1980	254	—	758,856	191	270	—	442,270	270
1981	369	—	1,660,904	343	147	—	320,808	146
1982	298	—	1,772,808	265	190	—	453,876	190
1983	500	—	2,749,256	444	157	—	497,351	157
1984	326	—	4,699,775	243	154	—	788,105	154
1985	285	—	6,354,738	267	157	—	642,254	144
1986	429	—	5,398,796	400	178	—	806,622	167
1987	346	—	5,209,058	328	292	—	942,216	245
1988	399	—	6,604,580	374	576	—	4,306,346	576
1989	1,030	—	7,005,041	1,003	229	—	2,455,375	228
1990	1,070	—	11,293,482	1,028	80	—	867,068	80
1991	2,089	704	23,086,460	2,018	123	—	1,144,600	122
1992	1,310	17,992	30,346,786	1,129	175	—	1,456,398	169
1993	590	90,204	9,163,045	548	55	—	980,656	55
1994	371	62,092	12,614,019	357	52	—	841,220	36
1995	418	831	17,733,719	405	—	—	—	—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11] 연도별 취득세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과세상황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토 지			건 축 물			차 량			중 기		
	건수	세 액	납세인원	건수	세 액	납세인원	건수	세 액	납세인원	건수	세 액	납세인원	건수	세 액	납세인원
1977	2,378	3,108,763	2,144	768	771,167	693	1,075	2,102,272	940	506	199,740	482	29	35,584	29
1978	2,378	3,345,195	2,087	662	797,051	640	1,046	2,067,122	827	603	340,542	556	67	140,480	64
1979	2,789	4,699,494	2,216	653	1,029,517	572	1,158	2,951,492	942	821	394,749	588	157	323,736	114
1980	2,272	6,126,585	1,963	422	1,291,526	369	799	3,797,647	713	944	571,406	790	107	466,006	91
1981	1,926	5,468,691	1,740	401	977,690	382	772	3,663,608	754	651	578,532	514	102	248,861	90
1982	1,149	3,645,124	991	273	761,122	259	510	2,407,962	445	333	414,392	258	33	61,648	29
1983	865	2,967,114	775	231	801,154	212	421	2,035,295	359	194	98,722	186	19	31,943	18
1984	958	5,767,450	896	102	891,504	91	510	4,601,097	483	264	180,831	252	82	94,018	70
1985	776	4,371,978	721	119	558,743	113	399	3,537,929	359	225	196,301	217	33	79,005	32
1986[1)]	956	7,236,711	950	206	939,280	181	589	5,990,390	544	341	188,375	326	79	118,666	41
1987	1,250	9,147,381	1,300	207	2,075,062	176	806	6,703,744	761	369	244,572	350	83	124,003	78
1988	1,287	10,873,986	1,346	180	2,112,105	173	788	8,367,309	750	372	227,684	337	88	166,888	86
1989	1,261	10,748,438	1,348	218	1,282,057	209	727	8,968,630	702	355	232,445	342	110	265,306	95
1990	1,409	12,274,962	1,425	230	1,886,030	216	923	9,959,155	847	326	238,449	303	81	191,328	79
1991	1,297	16,017,933	1,290	317	2,854,626	303	757	12,492,815	720	431	354,853	394	134	315,639	118
1992	882	18,433,636	890	180	1,977,379	176	637	16,258,177	589	157	97,716	135	20	100,364	20
1993	255	15,233,906	837	159	1,639,918	156	526	13,429,765	368	302	145,514	295	19	18,709	18
1994	384	11,145,841	3,591	109	1,514,868	73	339	8,553,766	295	3,185	969,911	3,184	11	107,296	39
1995	245	6,360,307	173	34	1,922,757	34	134	4,198,267	108	22	63,455	11	55	175,828	20

주 : 1) 1986년이후 합계난의 건수는 공장수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12] 연도별 취득세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77	58,373	4,984,913	27,486	2,232,191	2,398	835,086	9,360	1,074,018	17,511	643,970	1,618	199,648
1978	111,890	10,320,442	39,964	2,320,520	1,222	485,656	44,718	3,449,548	25,525	4,049,620	461	15,098
1979	225,294	11,120,712	44,502	3,238,972	1,189	663,017	68,095	2,792,453	110,543	4,399,194	965	27,076
1980	1,111,900	21,740,902	43,193	5,453,596	867	374,405	166,974	3,669,862	883,934	12,086,877	16,932	156,162
1981	522,981	28,524,969	81,279	12,033,769	887	544,505	102,264	5,532,669	337,961	10,388,005	590	26,021
1982	312,592	30,305,810	122,574	15,518,370	604	891,942	179,996	13,089,104	8,009	695,629	1,409	110,765
1983	624,253	61,981,978	145,877	27,099,550	383	965,715	474,203	33,730,744	3,789	185,868	1	101
1984	311,160	34,567,111	150,309	14,347,538	546	994,917	156,980	17,195,228	1,035	1,984,950	2,290	44,478
1985	243,033	34,950,258	144,657	19,170,313	703	706,430	96,246	10,659,444	1,420	4,413,820	7	251
1986	162,027	43,134,949	100,585	18,216,896	1,206	4,477,475	58,924	18,217,178	1,171	2,204,456	141	18,944
1987	190,010	36,505,658	122,234	18,063,787	988	2,922,992	63,980	13,726,240	2,801	1,792,289	7	350
1988	528,629	91,151,555	418,596	50,604,275	794	2,857,907	105,315	26,541,514	2,008	10,878,003	1,916	269,856
1989	341,413	107,254,163	146,528	39,134,659	766	1,785,998	187,577	59,480,606	2,537	6,203,670	4,005	649,230
1990	509,041	175,261,037	160,730	41,014,057	768	1,670,291	340,333	127,131,985	2,886	4,179,583	4,324	1,265,121
1991	568,472	215,882,298	155,125	66,469,961	462	943,621	396,719	139,487,710	11,908	7,566,624	4,258	1,414,382
1992	1,324,231	591,268,684	335,237	194,731,160	190	471,659	982,051	389,011,020	6,399	6,890,367	354	164,478
1993	1,423,842	556,003,185	397,241	166,867,375	604	224,925	1,021,871	372,899,289	4,126	16,011,596	—	—
1994	1,223,751	574,584,364	378,941	254,483,128	441	102,897	833,222	309,858,983	5,347	9,767,269	5,800	372,087
1995	1,047,905	507,985,250	321,723	221,294,708	21	727,992	723,210	279,133,513	2,897	6,193,458	54	635,579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2) 등록세

[표 5-13] 연도별 등록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77	66,789,310	66,732,739	1	56,570	99.9
1978	91,945,064	91,764,320	—	180,744	99.8
1979	92,992,553	92,449,918	—	542,635	99.4
1980	125,614,781	122,373,011	6,283	3,235,487	97.4
1981	157,880,888	156,447,962	8,876	1,424,050	99.1
1982	246,878,299	245,578,782	10,166	1,289,351	99.5
1983	341,116,027	338,803,793	4,733	2,307,501	99.3
1984	335,039,118	331,986,683	51,966	3,000,469	99.1
1985	363,151,951	361,117,598	9,806	2,024,547	99.4
1986	397,717,043	395,854,995	323	1,861,725	99.5
1987	552,433,749	550,266,864	4,972	2,161,913	99.6
1988	797,479,548	794,472,598	866	3,006,084	99.6
1989	1,094,459,747	1,091,125,768	13,245	3,320,734	99.7
1990	1,381,475,130	1,377,632,152	101,958	3,741,020	99.7
1991	1,903,169,050	1,894,968,347	2,925	8,197,778	99.6
1992	2,093,224,140	2,080,451,521	549,724	12,222,895	99.4
1993	2,560,393,043	2,548,326,715	180,394	11,885,934	99.5
1994	3,110,446,356	3,085,663,908	3,849	24,778,599	99.2
1995	3,655,019,178	3,632,509,840	43,806	22,465,532	99.4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14] 연도별 등록세 부과실적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부동산등기			차 량 등 록		
	건 수	세 액	인 원	건 수	세 액	인 원	건 수	세 액	인 원
1977	2,916,968	66,376,197	2,615,662	2,730,911	61,007,125	2,432,311	—	—	—
1978	3,149,622	91,412,261	2,978,296	2,842,088	82,602,324	2,683,795	—	—	—
1979	2,834,974	92,907,529	2,595,916	2,221,951	74,537,712	2,009,379	112,483	9,825,497	111,252
1980	2,868,623	125,848,643	2,611,106	2,246,769	101,977,023	2,008,553	148,847	9,025,650	147,613
1981	2,964,299	157,375,165	2,668,645	2,308,929	129,044,046	2,058,019	143,887	13,177,709	129,951
1982	3,819,607	247,302,447	3,488,525	3,111,878	195,402,313	2,844,543	234,601	20,412,406	221,197
1983	4,518,503	341,950,215	3,742,064	3,716,954	274,620,625	2,975,992	359,480	32,998,713	344,623
1984	4,027,903	336,645,995	3,698,170	3,166,567	253,536,422	2,902,113	289,439	34,468,937	265,360
1985	4,237,662	353,836,079	3,797,419	3,403,950	268,663,381	2,994,606	352,360	43,065,489	347,904
1986	4,441,844	401,787,018	4,088,468	3,504,597	309,309,185	3,190,680	421,808	54,175,367	417,454
1987	5,292,807	551,944,888	4,923,572	4,124,356	416,484,469	3,800,466	605,046	82,529,893	596,255
1988	6,701,978	796,040,614[2]	6,226,709	5,208,361	598,282,182	4,779,900	880,481	130,184,699	869,546
1989	6,665,411	1,090,081,731	6,280,814[3]	4,877,120	785,195,577	4,528,064	1,229,810	210,110,969	1,218,035
1990	7,438,727	1,377,557,455	6,984,480	5,034,696	972,873,392	4,625,825	1,605,915	289,842,766	1,591,196
1991	8,700,062	1,894,168,944	8,216,993	5,444,000	1,319,529,799	5,017,359	2,737,991	482,980,847	2,691,666
1992	8,952,191	2,088,891,604	8,622,849	5,351,426	1,415,634,538	5,068,414	3,059,311	573,591,111	3,017,663
1993	10,349,213	2,552,547,792	10,068,981	6,269,983	1,762,987,676	5,906,430	3,460,118	673,198,169	3,414,635
1994	11,666,110	3,090,730,778[4]	11,205,755	7,020,140	2,191,682,463	6,572,894	4,031,017	779,481,697	4,024,496
1995[5]	12,747,964	3,640,742,536	12,033,449	7,680,930	2,614,574,933	7,188,928	4,599,930	913,379,360	4,513,123

[표 5-14] 연도별 등록세 부과실적 (계속)

(단위 : 건, 천원, 명)

	법 인 등 기[1]			기 타		
	건 수	세 액	인 원	건 수	세 액	인 원
1977	53,300	4,487,865	51,985	132,757	881,207	131,366
1978	61,752	7,621,817	58,516	245,782	1,188,120	235,985
1979	86,565	6,580,809	82,611	413,975	1,963,511	392,674
1980	82,652	12,321,549	78,837	390,355	2,524,421	376,103
1981	93,652	13,239,068	85,449	417,831	1,914,342	395,226
1982	136,070	25,851,281	127,191	337,058	5,636,447	295,594
1983	123,752	27,009,825	112,449	318,317	7,321,052	309,000
1984	109,195	28,816,803	99,429	462,702	19,823,833	431,268
1985	112,519	29,423,566	105,194	368,833	12,683,643	349,715
1986	183,664	34,170,893	173,634	331,775	4,131,573	306,700
1987	159,291	46,212,909	152,967	404,114	6,717,617	373,884
1988	163,880	56,245,828	153,025	449,256	11,327,920	424,238
1989	147,016	77,825,106	138,848	411,465	16,950,079	390,865
1990	185,919	73,100,751	180,782	612,197	41,740,546	586,677
1991	279,531	87,928,270	272,827	238,540	3,730,028	235,141
1992	270,613	91,840,198	268,013	270,841	7,825,757	268,759
1993	330,975	103,318,158	464,887	288,137	13,043,789	283,029
1994	342,097	104,362,929	337,692	272,856	14,171,967	270,673
1995[5]	323,693	105,079,262	320,207	143,411	7,708,981	11,191

주 : 1) 지방세정연감의 항목 중 선박등기, 항공기등록, 신탁재산등기, 재단등기(공장 및 광업), 상호등기, 광업권등기, 어업권등록, 저작권등록, 출판·공연권의 등록, 특허실용신안·의장권등록, 상표·영업표등록, 무역·무역대리업등록, 군납업의등록, 건설업자면허등록, 동일채권의 2종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이 여기에 포함됨.

2) 지방세정연감(1988)의 합계부분 세액은 796,040,614천원이나 구분별 합계는 796,040,629천원임.

3) 지방세정연감(1989)의 합계부분 인원은 6,280,814천원이나 구분별 합계는 6,275,812천원임.

4) 지방세정연감(1994)의 합계부분 세액은 3,090,730,778천원이나 구분별 합계는 3,089,699,056천원임.

5) 1995년의 경우 차량등록에는 자동차등록과 건설기계등록의 합계액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15] 연도별 등록세 중과현황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공장신증설		
	건 수	세 액	인 원	건 수	세 액	인 원	건 수	세 액	인 원	건 수	세 액	인 원
1977	2,681	1,830,405	2,694	1,782	392,295	1,785	547	1,031,558	553	352	406,552	356
1978	3,845	2,492,200	3,774	2,237	649,045	2,233	1,223	1,315,978	1,203	385	527,177	338
1979	4,463	5,051,790	4,275	2,457	1,076,223	2,430	700	1,983,452	662	1,306	1,992,115	1,183
1980	3,784	6,045,358	3,619	2,660	1,828,128	2,592	416	2,084,738	408	708	2,132,492	619
1981	6,199	7,260,871	6,087	4,900	2,081,387	4,830	348	2,492,196	353	951	2,687,288	904
1982[1]	7,520	17,303,064	7,140	4,631	9,539,110	4,517	748	4,878,635	664	678	2,384,914	600
1983	6,037	14,942,367	7,411	4,778	6,521,383	5,999	830	5,684,357	494	429	2,736,627	918
1984	4,412	17,782,530	4,075	3,550	5,636,675	3,304	342	9,409,698	307	520	2,736,157	464
1985	4,986	17,451,247	4,798	3,720	6,688,652	3,691	465	4,578,341	443	801	6,184,254	664
1986	6,410	19,678,651	6,265	4,324	7,423,436	4,256	1,340	8,050,966	1,335	746	4,204,249	674
1987	19,364	25,070,566	19,274	18,153	12,722,884	18,130	580	9,450,795	576	631	2,896,887	568
1988	20,609	32,140,493	20,470	18,436	15,294,969	18,392	1,451	11,498,688	1,438	722	5,346,836	640
1989	125,667	93,037,555	125,524	21,743	24,644,202	21,703	39,687	40,690,762	39,644	64,237	27,702,591	64,177
1990	6,380	51,087,347	6,106	5,038	25,715,055	4,969	557	17,814,250	431	785	7,558,042	706
1991	12,205	56,151,228	11,130	4,952	14,559,120	4,895	2,311	27,094,310	2,350	4,942	14,497,798	3,885
1992	13,360	49,507,993	8,991	3,802	12,313,774	3,014	996	22,985,691	927	8,562	14,208,528	5,050
1993	9,689	50,622,103	9,424	3,947	20,363,049	3,917	837	22,934,957	800	4,905	7,324,097	4,707
1994	6,684	48,902,268	6,606	4,284	21,559,644	4,317	565	18,194,526	548	1,835	9,148,098	1,741
1995[2]	115,841	77,952,959	112,899	6,329	17,471,292	6,292	3,054	17,521,801	3,003	1,257	3,188,644	1,227

주 : 1) 지방세정연감(1982)의 합계항목의 수치는 위와 같으나 구분별 합계는 건수 : 6,057건; 세액 : 16,802,659천원; 인원 : 5,781명임.
2) 합계에는 1가구 2자동차 등록세 중과세(건수 : 105,201건; 세액 : 39,771,222천원; 인원 : 102,377명)가 포함됨.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16] 연도별 등록세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감면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77	67,702	706,400	49,016	143,778	24	5,259	444	12,211	17,161	522,525	1,057	22,627
1978	84,702	2,528,149	29,561	248,612	19	4,125	18,139	817,179	35,211	1,446,172	1,772	12,061
1979	550,926	11,231,576	22,036	526,343	23	5,588	84,599	7,775,169	442,057	2,631,153	2,211	293,323
1980	1,659,066	20,560,963	12,902	640,028	15	28,807	173,552	9,778,449	1,472,568	10,113,030	29	649
1981	952,050	22,905,778	23,592	1,221,338	592	285,528	210,186	13,063,487	714,549	8,319,985	3,131	15,440
1982	337,765	26,204,084	132,361	5,783,415	26	10,222	193,759	20,142,764	10,331	207,766	1,288	59,917
1983	526,885	44,464,645	134,518	8,390,282	20	64,532	386,023	35,820,103	6,323	189,555	1	253
1984	279,039	30,110,900	122,699	7,503,306	8	443,464	138,853	21,566,302	2,592	415,768	14,887	182,060
1985	134,257	29,650,542	58,715	7,579,427	15	73,539	74,701	20,141,660	822	1,855,676	4	240
1986	92,465	25,227,463	35,171	8,117,637	—	—	55,777	13,496,157	1,512	3,613,044	5	625
1987	81,151	25,385,528	24,441	7,083,410	45	72,130	56,222	15,967,159	436	2,261,954	7	875
1988	78,467	42,607,483	26,697	12,231,826	—	—	49,766	27,169,757	584	2,617,450	1,420	588,450
1989	157,847	158,289,436	36,781	36,576,526	298	543,171	118,560	73,129,634	674	23,580,673	1,534	24,459,432
1990	365,581	121,165,231	59,365	23,758,718	—	—	301,806	91,655,108	1,882	3,977,942	2,528	1,773,463
1991	423,559	145,766,273	58,728	29,232,589	31	421,153	355,779	106,567,351	3,830	7,275,689	5,191	2,269,491
1992	1,019,006	544,199,123	200,605	95,895,606	—	—	816,629	443,039,341	1,273	4,427,949	499	836,227
1993	1,211,706	589,517,686	275,089	132,309,325	—	—	897,140	438,014,649	39,477	19,193,712	—	—
1994	992,336	493,564,654	265,468	121,373,617	435	30,857	718,846	357,179,265	7,585	14,979,729	2	1,186
1995	1,005,022	566,459,305	269,982	209,908,445	—	—	732,950	349,634,354	2,027	6,851,037	63	65,469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3) 경주마권세

[표 5-17] 연도별 경주마권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62	1,391	436	—	—	31.3
1963	4,171	4,171	—	—	100.0
1964	4,765	2,625	—	—	55.1
1965	6,992	6,509	—	—	93.1
1966	17,320	13,780	—	—	79.6
1967	23,833	16,742	—	—	70.2
1968	116,636	97,262	—	—	83.4
1969	183,443	183,443	—	—	100.0
1970	248,141	248,141	—	—	100.0
1971	322,827	322,827	—	—	100.0
1972	362,689	362,689	—	—	100.0
1973	453,498	453,498	—	—	100.0
1974	746,278	746,278	—	—	100.0
1975	533,717	533,717	—	—	100.0
1976	667,069	667,069	—	—	100.0
1977	899,579	899,579	—	—	100.0
1978	1,512,589	1,512,589	—	—	100.0
1979	1,902,321	1,902,321	—	—	100.0
1980	2,703,095	2,703,095	—	—	100.0
1981	2,856,731	2,856,731	—	—	100.0
1982	4,052,113	4,052,113	—	—	100.0
1983	7,735,307	4,513,574	—	3,221,733	58.4
1984	12,331,373	5,427,741	—	6,903,632	44.0
1985	15,957,136	7,068,361	—	8,888,775	44.3
1986	9,411,644	9,411,644	—	—	100.0
1987	11,821,806	11,821,806	—	—	100.0
1988	14,755,251	14,755,251	—	—	100.0
1989	19,532,904	19,532,904	—	—	100.0
1990	56,472,229	56,472,229	—	—	100.0
1991	80,106,314	80,106,314	—	—	100.0
1992	96,645,744	96,645,744	—	—	100.0
1993	98,422,988	98,422,988	—	—	100.0
1994	176,804,507	176,804,507	—	—	100.0
1995	216,960,422	216,960,422	—	—	100.0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18] 연도별 경주마권세 부과실적

(단위 : 천원)

	합 계		단 승 식		복 승 식		연 승 식	
	과세표준	세 액	과세표준	세 액	과세표준	세 액	과세표준	세 액
1962	—	—	—	—	—	—	—	—
1963	41,695	4,171	—	—	—	—	—	—
1964	44,951	4,495	—	—	—	—	—	—
1965	70,012	7,001	—	—	—	—	—	—
1966	169,985	16,998	—	—	—	—	—	—
1967	229,586	22,959	—	—	—	—	—	—
1968	869,458	86,946	—	—	—	—	—	—
1969	1,730,848	173,085	—	—	—	—	—	—
1970	2,230,429	223,043	—	—	—	—	—	—
1971	3,092,379	309,238	—	—	—	—	—	—
1972	3,150,827	315,084	11,216	1,122	942,526	94,253	2,197,085	219,709
1973	4,534,982	453,498	13,637	1,364	1,375,784	137,578	3,145,561	314,556
1974	3,997,738	746,170	10,085	1,839	1,101,070	203,911	2,886,583	540,420
1975	5,394,410	561,634	13,397	1,383	1,486,234	154,903	3,894,779	405,348
1976	6,670,694	667,069	18,491	1,849	1,956,573	195,657	4,695,630	469,563
1977	8,995,791	899,579	23,858	2,386	2,748,867	274,887	6,223,066	622,306
1978	15,125,887	1,512,589	53,408	5,341	4,115,332	411,533	10,957,147	1,095,715
1979	19,023,220	1,902,321	81,005	8,100	16,602,625	1,660,262	2,339,590	233,959
1980	27,030,954	2,703,096	102,839	10,284	26,794,886	2,679,489	133,229	13,323
1981	28,567,310	2,856,731	125,910	12,591	26,623,120	2,662,312	1,818,280	181,828
1982	44,400,230	4,440,023	163,620	16,362	44,081,080	4,408,108	155,530	15,553
1983	44,362,690	4,436,269	131,460	13,146	44,142,650	4,414,265	88,580	8,858
1984	108,554,826	5,427,741	236,550	11,827	108,183,499	5,409,175	134,777	6,739
1985	141,367,220	7,068,361	213,680	10,684	141,042,500	7,052,125	111,040	5,552
1986	188,232,900	9,411,645	295,080	14,754	187,770,340	9,388,517	167,480	8,374
1987	236,436,123	11,821,803	309,193	15,458	235,934,004	11,796,698	192,926	9,647
1988	295,105,025	14,755,251	324,070	16,204	294,597,188	14,729,859	183,767	9,188
1989	390,658,071	19,532,903	470,738	23,537	389,928,562	19,496,427	258,771	12,939
1990	564,722,282	56,472,229	732,654	73,266	563,612,498	56,361,249	377,130	37,714
1991	801,063,142	80,106,224	1,931,590	193,159	798,179,390	79,817,849	952,162	95,216
1992	966,457,441	96,645,744	2,417,037	241,704	962,884,848	96,288,485	1,155,556	115,555
1993	984,229,888	98,422,988	2,695,746	269,575	979,762,915	97,976,291	1,771,227	177,122
1994	1,766,372,120	176,637,211	5,079,493	507,949	1,757,621,182	175,762,118	3,671,445	367,144
1995[1)]	2,207,154,921	216,960,422	—	—	—	—	—	—

주 : 1) 1995년의 경우 경륜이 포함된 수치이며 통계자료의 변경으로 합계액만 나타냈음. 1995년 이전에는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1995년의 자료는 위의 구분없이 장내, 장외로만 구분되어 있음.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19] 연도별 경주마권세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86	12	9,411,645	—	—	—	—	12	9,411,645	—	—	—	—
1987	12	2,364,361	—	—	—	—	12	2,364,361	—	—	—	—
1988	—	—	—	—	—	—	—	—	—	—	—	—
1989	11	19,532,903	—	—	—	—	11	19,532,903	—	—	—	—
1990	—	—	—	—	—	—	—	—	—	—	—	—
1991	—	—	—	—	—	—	—	—	—	—	—	—
1992	—	—	—	—	—	—	—	—	—	—	—	—
1993	—	—	—	—	—	—	—	—	—	—	—	—
1994	—	—	—	—	—	—	—	—	—	—	—	—
1995	—	—	—	—	—	—	—	—	—	—	—	—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4) 면허세

[표 5-20] 연도별 면허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62	366,384	321,839	—	—	87.8
1963	469,704	416,746	—	—	88.7
1964	421,613	391,364	—	—	92.8
1965	505,377	469,813	—	—	93.0
1966	595,876	555,101	—	—	93.1
1967	717,744	668,364	—	—	93.1
1968	908,297	848,047	—	—	93.3
1969	1,122,307	1,045,056	—	—	93.1
1970	1,334,537	1,228,057	4,835	101,644	92.0
1971	1,558,200	1,428,551	4,607	125,042	91.7
1972	1,519,464	1,351,270	6,382	161,812	88.9
1973	2,790,976	2,520,622	8,511	261,843	90.3
1974	4,455,385	3,950,403	17,123	487,859	88.7
1975	5,449,382	4,865,508	4,558	579,316	89.3
1976	6,276,904	5,555,199	6,331	715,374	88.5
1977	10,974,807	10,033,123	4,564	937,120	91.4
1978	18,117,570	15,172,215	26,237	2,919,118	83.7
1979	18,281,254	17,322,041	42,474	916,739	94.8
1980	19,599,671	18,244,129	59,865	1,295,677	93.1
1981	21,669,636	19,919,513	247,467	1,502,656	91.9
1982	26,680,745	24,240,654	271,466	2,168,625	90.9
1983	31,575,564	28,741,193	208,045	2,626,326	91.0
1984	33,567,803	30,560,630	200,441	2,806,732	91.0
1985	23,877,417	21,799,677	176,939	1,900,801	91.3
1986	25,653,456	23,333,668	206,214	2,113,574	91.0
1987	28,916,556	26,508,700	152,750	2,255,106	91.7
1988	34,251,405	31,177,172	172,472	2,901,761	91.0
1989	41,851,374	37,922,577	180,770	3,748,027	90.6
1990	52,953,090	47,999,242	194,309	4,759,539	90.6
1991	98,304,927	88,735,645	371,369	9,197,913	90.3
1992	120,112,670	108,586,207	216,773	11,309,690	90.4
1993	147,574,789	133,997,124	212,283	13,365,382	90.8
1994	182,549,997	168,606,328	70,530	13,873,139	92.4
1995	228,229,290	208,551,158	77,348	19,600,784	91.4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21] 연도별 면허세 부과실적

(단위 : 건, 천원)

	합 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6 종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63	277,069	463,265	4,932	31,486	19,722	92,529	12,780	45,746	80,464	174,806	55,008	68,387	104,163	50,311
1964	276,093	436,100	5,212	32,880	16,573	92,678	13,726	48,980	62,580	128,827	62,269	68,781	115,733	63,954
1965	314,535	502,848	5,884	37,928	20,181	117,561	17,230	60,711	67,006	133,321	71,047	78,611	133,187	74,716
1966	363,445	600,660	6,948	45,127	25,772	156,084	21,021	75,566	76,938	150,804	77,706	85,594	155,060	87,486
1967	411,864	716,223	7,862	52,811	31,554	194,590	25,378	91,058	85,065	164,405	92,210	109,472	169,795	103,888
1968	460,392	914,993	9,954	69,489	41,256	260,613	31,569	116,896	112,990	217,128	105,873	144,339	158,750	106,530
1969	505,739	1,118,245	12,298	87,188	56,556	360,728	41,515	161,789	121,351	236,592	113,638	158,629	160,381	113,319
1970	580,426	1,349,346	13,024	92,327	74,044	479,383	52,430	208,940	126,892	254,819	130,444	180,552	183,592	133,325
1971	644,671	1,607,424	15,127	109,755	90,640	593,904	65,267	273,082	137,774	290,161	142,555	197,135	193,308	143,387
1972	645,864	1,655,038	21,659	168,974	94,443	610,250	66,891	272,818	142,289	290,981	143,469	192,630	177,113	119,386
1973	780,582	2,707,716	16,762	163,764	150,078	355,823	196,970	421,781	117,160	1,073,556	87,287	490,919	212,325	201,873
1974	915,611	4,527,288	13,759	192,388	116,787	1,525,694	117,030	1,019,293	179,405	700,347	234,537	715,960	254,093	373,606
1975	1,104,549	5,478,390	19,455	288,832	135,505	1,759,161	144,343	1,262,226	189,445	869,803	271,247	817,040	344,554	481,328
1976	1,259,237	6,239,746	26,333	401,049	161,120	2,065,633	159,396	1,380,090	183,044	852,384	345,576	1,008,099	383,768	532,491
1977	1,400,796	10,753,493	31,538	727,716	200,348	3,831,118	196,131	2,479,773	183,199	1,260,427	349,359	1,529,173	440,221	925,286
1978	2,091,530	17,987,879	61,799	1,484,492	292,800	5,569,284	303,184	3,728,647	227,293	1,745,641	733,193	4,419,766	473,261	1,040,049
1979	2,035,225	18,245,440	86,354	2,066,203	369,083	6,687,555	472,396	5,191,619	192,162	1,312,885	422,069	1,949,640	493,161	1,037,538
1980	2,126,490	19,395,933	101,833	2,406,236	375,809	6,989,350	542,390	5,829,287	195,695	1,349,217	401,573	1,689,984	509,190	1,131,859
1981	2,356,361	21,427,629	129,155	3,047,665	384,727	7,082,858	642,683	6,830,345	206,345	1,418,116	441,104	1,873,103	552,347	1,175,542
1982	2,737,582	26,284,747	160,414	3,781,727	449,665	8,264,999	883,367	9,587,571	243,971	1,726,689	393,458	1,576,437	606,707	1,347,324
1983	3,050,887	28,092,079	177,208	4,101,494	488,471	8,787,032	932,704	9,854,136	253,973	1,814,469	493,808	1,965,226	704,723	1,569,722
1984	3,471,262	33,695,282	170,210	3,896,109	582,159	10,863,361	1,003,767	11,200,690	404,587	3,388,463	612,936	2,773,151	697,603	1,573,508
1985	3,134,938	23,778,383	94,772	1,945,494	187,397	3,239,715	407,078	5,171,765	876,586	7,385,390	914,067	4,538,024	655,038	1,497,995
1986	3,239,651	25,412,087	103,268	2,087,056	191,832	3,358,159	450,705	5,982,382	982,169	8,222,815	941,686	4,528,445	569,991	1,233,230
1987	3,577,341	29,082,652	113,189	2,313,276	217,244	3,875,655	557,347	7,557,682	1,084,008	9,074,211	1,023,478	4,984,367	582,075	1,277,461
1988	3,934,323	33,002,984	114,072	2,297,404	246,224	4,446,741	734,333	10,102,762	1,204,072	9,952,994	1,034,598	4,913,920	601,024	1,289,163
1989	4,636,134	41,200,439	123,041	2,505,733	322,816	6,025,514	954,121	13,289,305	1,437,063	12,013,483	1,199,470	5,992,520	599,623	1,373,884
1990	5,629,675	52,976,711	154,904	3,215,895	494,016	9,310,081	1,300,735	17,974,705	1,712,035	14,235,665	1,356,711	6,843,758	611,274	1,396,607
1991	5,930,989	98,086,589	151,606	5,297,951	627,717	19,982,303	1,553,782	35,572,967	1,671,177	23,603,346	1,357,766	11,522,429	568,941	2,107,593
1992	7,026,959	118,951,006	178,617	6,259,221	834,432	26,375,846	1,920,433	43,567,401	1,986,485	27,550,126	1,530,413	13,107,257	576,579	2,091,155
1993	8,440,610	144,557,254	182,874	6,261,102	1,068,652	33,264,987	2,480,991	55,291,556	2,447,216	33,648,043	1,651,156	13,878,989	609,721	2,212,577
1994	10,404,331	182,059,458	232,174	8,092,599	1,405,390	43,446,680	3,302,669	72,698,072	2,968,636	40,099,355	1,854,271	15,440,075	641,191	2,282,677
1995	12,201,789	227,839,422	287,975	10,770,313	1,841,211	55,443,479	4,463,371	98,602,320	3,308,944	43,953,329	2,300,288	19,069,981	—	—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22] 연도별 면허세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관한 부과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2	3,719,079	74,653,812	475	20,325	589,676	18,937,177	1,371,664	30,874,599	1,694,916	24,117,276	62,348	704,435
1993	4,767,645	95,575,259	337	14,694	819,448	25,824,097	1,826,046	40,678,900	2,049,302	28,224,364	72,512	833,204
1994	5,661,259	112,704,036	3,576	128,659	1,025,090	32,340,749	2,164,993	47,129,252	2,388,201	32,210,784	79,399	894,592
1995	6,456,355	134,857,123[1]	25,934	1,098,908	1,320,909	40,309,384	2,444,370	52,037,446	2,536,761	34,066,634	128,381	1,401,633

주 : 1) 지방세정연감(1996)에는 세액합계가 위와 같으나 구분별 합계는 128,914,005천원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23] 연도별 면허세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지 방 세 법		외자도입법		특 별 조 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77	13,522	220,486	12,697	207,818	—	—	391	6,034	384	6,461	50	173
1978	14,947	158,143	14,250	151,367	—	—	463	4,996	102	739	132	1,041
1979	21,552	198,239	17,631	163,125	—	—	3,059	22,480	519	6,730	343	5,904
1980	24,743	212,839	22,484	191,433	—	—	2,132	20,500	123	861	4	45
1981	29,191	274,919	27,275	247,355	—	—	1,612	24,229	304	3,335	—	—
1982	66,539	545,697	33,866	255,198	—	—	32,523	289,812	16	95	134	592
1983	89,163	574,683	34,830	304,301	—	—	54,297	270,129	22	181	14	72
1984	80,744	599,731	45,370	358,965	—	—	33,891	219,240	1,478	21,506	5	19
1985	87,008	1,145,962	70,729	991,711	—	—	16,242	153,870	33	362	4	19
1986	68,151	475,810	57,103	370,598	—	—	11,043	105,194	—	—	5	18
1987	71,556	502,643	62,626	428,771	3	26	8,922	73,828	—	—	5	18
1988	51,097	366,188	49,473	348,517	—	—	1,585	17,492	—	—	39	179
1989	54,494	501,337	52,218	475,421	—	—	2,210	25,620	—	—	66	296
1990	62,399	1,211,223	58,914	1,145,008	—	—	3,415	65,963	—	—	70	252
1991	64,556	725,995	61,196	645,684	61	3,527	3,194	76,079	34	184	71	521
1992	73,148	1,759,219	65,569	1,238,368	—	—	7,561	520,515	—	—	18	336
1993	75,611	18,246,029	41,395	807,928	—	—	33,976	17,430,919	240	7,182	—	—
1994	101,325	4,733,123	86,283	2,557,474	—	—	14,917	2,174,594	32	273	93	782
1995	108,217	2,017,139	96,783	1,774,980	—	—	11,434	242,159	—	—	—	—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5) 소방공동시설세

[표 5-24] 연도별 소방공동시설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62	34,669	32,678	—	—	94.3
1963	55,423	52,711	—	—	95.1
1964	96,972	93,729	—	—	96.7
1965	108,274	104,441	—	—	96.5
1966	143,525	138,722	—	—	96.7
1967	162,256	157,839	—	—	97.3
1968	321,108	313,201	—	—	97.5
1969	418,625	405,176	—	—	96.8
1970	542,674	519,212	173	23,289	95.7
1971	703,047	670,751	216	32,080	95.4
1972	888,369	844,903	804	42,662	95.1
1973	1,195,275	1,142,317	758	52,200	95.6
1974	1,587,912	1,541,444	245	46,223	97.1
1975	2,931,563	2,840,718	449	90,396	96.9
1976	4,023,283	3,907,146	307	115,830	97.1
1977	4,879,433	4,779,148	384	99,901	97.9
1978	5,457,370	5,360,914	1,071	95,385	98.2
1979	8,701,955	8,569,906	646	131,403	98.5
1980	13,294,196	13,032,316	3,280	258,600	98.0
1981	17,183,313	16,790,356	3,675	389,282	97.7
1982	23,507,342	23,022,500	5,121	479,721	97.9
1983	27,166,783	26,624,815	3,179	538,789	98.0
1984	35,333,215	34,533,677	3,067	796,471	97.7
1985	40,201,544	39,275,886	3,582	922,076	97.7
1986	45,653,154	44,551,256	3,128	1,098,770	97.6
1987	51,946,554	50,304,451	1,246	1,640,857	96.8
1988	60,616,372	59,119,693	9,509	1,487,170	97.5
1989	75,000,012	73,242,197	2,090	1,755,725	97.7
1990	87,488,408	86,118,046	6,829	1,363,533	98.4
1991	107,136,337	105,457,826	5,112	1,673,399	98.4
1992	134,452,575	131,757,389	33,753	2,661,433	98.0
1993	157,694,465	154,345,268	69,365	3,279,832	97.9
1994	188,532,631	182,901,292	39,334	5,592,005	97.0
1995	212,222,193	204,272,332	93,425	7,856,436	96.3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25] 연도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실적

(단위 : 천원,명)

	합 계		건 축 물		선 박	
	세 액	납세인원	세 액	납세인원	세 액	납세인원
1962	—	—	—	—	—	—
1963	55,910	1,559,693	—	—	—	—
1964	96,581	1,649,878	—	—	—	—
1965	106,029	1,752,948	—	—	—	—
1966	143,404	1,989,117	—	—	—	—
1967	161,679	2,067,378	—	—	—	—
1968	322,526	2,130,128	—	—	—	—
1969	417,828	2,218,355	—	—	—	—
1970	536,843	2,342,997	—	—	—	—
1971	700,805	2,483,549	—	—	—	—
1972	886,826	2,603,062	—	—	—	—
1973	1,197,669	2,802,982	1,148,033	2,800,582	49,636	2,400
1974	1,588,380	2,845,373	1,565,562	2,843,006	22,818	2,367
1975	2,900,491	2,990,157	2,872,286	2,987,256	28,205	2,901
1976	4,012,363	3,188,123	3,974,707	3,185,243	37,656	2,880
1977	4,772,527	3,180,050	4,736,249	3,176,079	36,278	3,971
1978	5,426,235	3,358,830	5,370,484	3,354,909	55,751	3,921
1979	8,661,356	3,703,188	8,590,801	3,698,714	70,555	4,474
1980	13,237,470	3,836,892	13,097,449	3,831,406	140,021	5,486
1981	17,037,573	3,925,601	16,866,040	3,919,521	171,533	6,080
1982	23,402,724	4,197,957	22,854,766	4,191,442	547,958	6,515
1983	27,051,730	4,389,070	26,580,582	4,382,404	471,148	6,666
1984	35,033,572	4,595,751	34,366,490	4,589,011	667,082	6,740
1985	39,995,548	4,807,129	39,575,797	4,802,779	419,751	4,350
1986	47,880,351	5,104,601	47,431,052	5,100,340	449,299	4,261
1987	52,266,986	5,295,130	51,784,689	5,290,503	482,297	4,627
1988	59,886,134	5,514,924	59,432,062	5,509,854	454,072	5,070
1989	74,925,646	5,916,282	74,454,191	5,911,019	471,455	5,263
1990	87,121,416	6,071,307	86,595,603	6,065,954	525,813	5,353
1991	106,619,828	6,182,813	106,010,974	6,177,210	608,854	5,603
1992	133,501,966	6,431,289	132,623,682	6,424,609	878,284	6,680
1993	161,927,747	6,999,485	161,041,168	6,994,499	886,579	4,986
1994	211,993,315	7,494,082	210,764,057	7,487,432	1,229,258	6,650
1995	212,142,968	7,730,357	210,973,914	7,724,288	1,169,054	6,069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26] 연도별 소방공동시설세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지 방 세 법		외자도입법		특 별 조 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77	190,784	859,654	149,889	752,505	67	7,634	36,343	39,731	1,472	58,986	3,013	798
1978	223,532	874,129	209,820	742,360	42	10,191	12,237	53,847	1,377	67,716	56	15
1979	193,142	1,128,748	175,778	1,017,035	65	4,524	12,899	12,556	4,394	94,628	6	5
1980	251,959	1,468,558	228,932	1,347,379	143	30,626	14,489	31,964	8,242	57,330	153	1,259
1981	342,287	11,586,126	322,036	11,126,386	4	210	12,388	83,466	7,810	374,636	49	1,428
1982	339,332	3,990,429	324,357	3,666,038	237	147,867	12,795	116,190	1,718	54,778	225	5,556
1983	236,118	1,595,020	233,757	1,560,750	4	17,607	2,266	15,546	91	1,117	—	—
1984	334,475	8,465,978	314,369	8,345,228	13	723	16,407	33,154	674	84,655	3,012	2,218
1985	222,561	3,276,753	214,060	3,238,238	15	1,054	7,794	31,713	692	5,748	—	—
1986	202,861	2,738,809	192,945	2,696,558	—	—	9,916	42,251	—	—	—	—
1987	216,042	3,590,830	183,613	3,223,816	14	1,618	32,162	364,464	253	932	—	—
1988	214,441	4,087,523	198,455	3,985,791	—	—	14,270	94,275	—	—	1,716	7,457
1989	198,191	4,351,363	188,010	4,119,274	53	52,818	9,222	173,461	13	5,108	893	702
1990	461,126	4,427,975	447,566	4,017,111	—	—	12,685	408,852	—	—	875	2,012
1991	269,429	4,961,275	256,347	4,594,570	42	248,478	11,751	111,276	1,019	6,324	270	627
1992	278,522	4,954,199	268,812	4,804,883	—	—	9,685	149,235	—	—	25	81
1993	218,259	5,327,337	196,593	3,871,382	—	—	21,463	1,454,372	203	1,583	—	—
1994	255,791	6,518,742	241,021	5,700,882	2	1,503	14,330	812,024	438	4,333	—	—
1995	312,426	11,691,877	278,592	10,841,321	—	—	33,834	850,556	—	—	—	—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6) 지역개발세

[표 5-27] 연도별 지역개발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92	41,134,858	41,134,773	—	85	100.0
1993	49,935,240	49,858,541	—	76,699	99.8
1994	54,751,047	54,468,772	—	282,275	99.5
1995	61,196,842	61,095,409	90	101,343	99.8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28] 연도별 지역개발세 부과실적

(단위 : 천원)

	합 계 세 액	과세분세액	비과세분세액
1992	53,764,425	41,079,453	12,684,972
1993	67,774,180	49,894,414	17,879,766
1994	81,164,552	54,750,815	26,413,737
1995	93,949,803	61,196,842	32,752,961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29] 연도별 지역개발세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지 방 세 법		외자도입법		특 별 조 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2	633,784	12,679,620	2	3,880	—	—	633,782	12,675,740	—	—	—	—
1993	893,788	17,879,766	27	4,546	—	—	893,761	17,875,220	—	—	—	—
1994	40,552	26,410,560	40,552	26,410,560	—	—	—	—	—	—	—	—
1995	109,728	32,752,961	109,728	32,752,961	—	—	—	—	—	—	—	—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다. 시·군세

(1) 주민세

[표 5-30] 연도별 주민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73	10,776,318	9,337,415	73,437	1,365,466	86.6
1974	9,422,116	8,560,064	27,003	835,049	90.9
1975	16,787,830	15,637,559	60,998	1,089,273	93.1
1976	26,826,802	24,548,063	47,375	2,231,364	91.5
1977	51,910,161	46,921,283	88,668	4,900,210	90.4
1978	65,180,031	60,766,391	156,352	4,257,288	93.2
1979	96,462,833	91,001,792	275,169	5,185,872	94.3
1980	125,864,685	116,913,289	537,750	8,413,646	92.9
1981	137,285,716	127,627,599	644,549	9,013,568	93.0
1982	154,666,425	139,478,116	1,103,234	14,085,075	90.2
1983	179,116,564	157,678,687	856,327	20,581,550	88.0
1984	196,508,095	176,793,111	2,630,157	17,084,827	90.0
1985	224,281,538	202,003,379	5,315,397	16,962,762	90.1
1986	251,803,205	227,789,250	6,858,891	17,155,064	90.5
1987	303,429,327	276,037,236	7,524,890	19,867,201	91.0
1988	406,476,239	375,836,476	4,909,607	25,730,156	92.5
1989	509,277,358	469,872,355	11,850,588	27,554,415	92.3
1990	590,334,958	548,744,749	4,033,413	37,556,796	93.0
1991	749,959,090	701,502,146	2,801,993	45,654,951	93.5
1992	1,036,094,890	971,007,511	955,379	64,132,000	93.7
1993	1,182,593,767	1,099,895,970	1,744,248	80,953,549	93.0
1994	1,461,179,800	1,360,008,363	1,062,084	100,109,353	93.1
1995	1,844,465,161	1,701,441,650	2,907,399	140,116,112	92.2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31] 연도별 주민세 부과실적

(단위 : 천원, 명)

	합 계		균 등 할			소 득 할	
						소 계	
	세 액	과세인원	세 액	과세인원	비과세인원	세 액	인 원
1973	7,700,186	10,975,630	2,918,474	5,174,878	—	4,781,712	5,800,752
1974	9,276,180	12,329,820	—	—	—	9,276,180	12,329,820
1975	16,622,676	14,471,091	4,270,877	5,156,413	—	12,351,799	9,314,678
1976	26,476,223	15,217,110	5,027,877	5,786,994	—	21,448,346	9,430,116
1977	51,480,263	14,985,777	8,311,506	6,008,321	—	43,168,757	8,977,456
1978	64,595,187	16,870,543	8,826,260	6,316,147	—	55,768,927	10,554,396
1979	96,740,490	17,263,608	9,670,418	6,751,446	—	87,070,072	10,512,162
1980	125,933,340	29,044,990	17,870,565	7,015,847	616,411	108,062,775	22,029,143
1981	138,389,048	18,940,711	19,116,205	7,314,727	623,391	119,272,843	11,625,984
1982	157,324,525	23,967,021	21,048,967	7,673,555	677,989	136,275,558	16,293,466
1983	183,331,842	22,986,550	22,375,721	8,034,534	658,679	160,956,121	14,952,016
1984	196,132,968	22,415,123	23,381,205	8,412,933	726,985	172,751,763	14,002,190
1985	225,229,119	37,151,222	25,148,830	8,792,177	692,517	200,080,289	28,359,045
1986	250,156,680	21,580,901	25,703,645	8,937,173	721,856	224,453,035	12,643,728
1987	300,190,353	17,377,812	28,511,592	9,660,552	682,298	271,678,761	7,717,260
1988	411,364,527	17,294,011	31,820,348	10,062,032	647,452	379,544,179	7,231,979
1989	506,883,634	29,377,276	32,323,224	10,520,634	698,437	474,560,410	18,856,642
1990	590,724,457	20,144,349	36,183,811	11,561,752	760,770	554,540,646	8,582,597
1991	748,246,395	15,833,073	39,087,013	12,093,455	774,729	709,159,382	3,739,618
1992	1,037,351,115	17,976,835	61,771,002	12,602,703	742,769	975,580,113	5,374,132
1993	1,186,678,746	19,316,833	66,758,582	13,137,307	4,667,102	1,119,920,164	6,179,526
1994	1,453,514,750	20,154,424	73,993,276	13,702,656	1,154,633	1,379,521,474	6,451,768
1995	1,844,589,939	20,696,246	86,632,314	14,240,072	716,459	1,757,957,625	6,456,174

[표 5-31] 연도별 주민세 부과실적 (계속)

(단위 : 천원, 명)

	소 득 할					
	소 득 세 할		법 인 세 할		농 지 세 할	
	세 액	인 원	세 액	인 원	세 액	인 원
1973	1,724,774	450,424	1,787,185	11,812	54,365	795,203
1974	6,219,502	11,103,830	2,649,847	13,517	406,831	1,212,473
1975	7,576,517	8,284,067	4,096,688	14,373	678,594	1,016,238
1976	13,874,740	8,482,323	6,517,122	19,495	1,056,484	928,298
1977	19,196,640	7,929,995	21,597,359	50,938	2,374,758	996,523
1978	32,063,248	9,505,266	20,952,250	28,130	2,753,429	1,021,000
1979	48,317,383	8,864,266	33,478,125	30,572	5,274,564	1,617,324
1980	53,101,755	21,072,841	50,648,707	48,982	4,312,313	907,320
1981	67,465,017	10,547,504	46,126,574	41,803	5,681,252	1,036,677
1982	79,019,330	15,146,866	50,644,263	38,065	6,611,965	1,108,535
1983	89,598,556	13,812,989	64,769,703	46,318	6,587,862	1,092,709
1984	95,044,257	12,856,881	71,053,737	45,486	6,653,769	1,099,823
1985	115,348,800	27,830,698	81,921,044	43,503	2,810,445	484,844
1986	135,759,447	12,309,175	87,528,150	69,412	1,165,438	265,141
1987	164,377,787	7,381,544	106,011,414	47,738	1,289,560	287,978
1988	230,256,479	6,854,345	147,908,780	72,203	1,378,920	305,431
1989	283,154,085	18,665,586	190,681,922	61,470	724,403	129,586
1990	333,593,287	8,377,732	220,449,580	119,399	497,779	85,466
1991	442,658,367	3,574,451	266,025,214	76,493	475,801	88,674
1992	569,758,419	5,189,656	405,539,978	142,653	281,716	41,823
1993	682,008,425	5,969,111	437,740,882	192,131	170,857	18,284
1994	850,484,901	6,277,837	528,828,358	151,288	208,215	22,643
1995	1,161,000,611	6,297,805	596,785,241	138,833	171,773	19,536

주 : 소득할은 보통징수+특별징수 기준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32] 연도별 주민세 세액규모별 납세인원

(단위 : 명)

1973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257,439	450,424	11,812	795,203
1,000원 이하	871,487	183,585	785	687,117
1,000원 초과	148,534	83,099	321	65,114
2,000원 초과	104,499	76,679	622	27,198
5,000원 초과	47,484	40,747	534	6,203
8,000원 초과	25,305	22,016	552	2,737
1만원 초과	22,104	18,510	1,171	2,423
2만원 초과	20,813	15,737	1,659	3,417
5만원 초과	83,958	81,420	1,715	823
10만원 초과	3,346	1,304	1,872	170
30만원 초과	1,305	200	1,104	1
50만원 초과	949	84	865	—
100만원 초과	590	38	552	—
500만원 초과	54	4	50	—
1천만원 초과	10	1	9	—
5천만원 초과	—	—	—	—
1억원 초과	1	—	1	—

1974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225,535	206,515	13,517	1,005,503
1,000원 이하	925,934	59,503	816	865,615
1,000원 초과	113,869	27,960	512	85,397
2,000원 초과	72,325	34,259	884	37,182
5,000원 초과	34,972	24,889	781	9,302
8,000원 초과	18,968	14,289	728	3,951
1만원 초과	20,573	16,804	1,417	2,352
2만원 초과	18,909	15,527	1,873	1,509
5만원 초과	10,677	8,720	1,786	171
10만원 초과	5,232	3,306	1,907	19
30만원 초과	1,968	729	1,238	1
50만원 초과	1,256	408	845	3
100만원 초과	755	117	637	1
500만원 초과	76	1	75	—
1천만원 초과	17	2	15	—
5천만원 초과	3	1	2	—
1억원 초과	1	—	1	—

[표 5-32] 연도별 주민세 세액규모별 납세인원 (계속)

(단위 : 명)

1975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026,564	104,874	3,315	918,375
1,000원 이하	756,905	34,819	292	721,794
1,000원 초과	146,722	17,814	188	128,720
2,000원 초과	68,219	19,110	277	48,832
5,000원 초과	21,389	10,097	246	11,046
8,000원 초과	10,173	5,480	226	4,467
1만원 초과	10,826	8,000	401	2,425
2만원 초과	7,455	6,082	511	862
5만원 초과	2,687	2,143	379	165
10만원 초과	1,478	1,033	389	56
30만원 초과	349	192	151	6
50만원 초과	215	89	124	2
100만원 초과	112	14	98	—
500만원 초과	16	1	15	—
1천만원 초과	16	—	16	—
5천만원 초과	2	—	2	—
1억원 초과	—	—	—	—

1976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900,921	95,683	4,641	800,597
1,000원 이하	585,894	35,673	639	549,582
1,000원 초과	236,518	28,474	696	207,348
2,000원 초과	—	—	—	—
5,000원 초과	50,694	16,258	511	33,925
8,000원 초과	—	—	—	—
1만원 초과	22,195	12,290	1,223	8,682
2만원 초과	25	—	—	25
5만원 초과	3,039	1,931	575	533
10만원 초과	1,806	639	687	480
30만원 초과	323	322	—	1
50만원 초과	259	69	170	20
100만원 초과	122	27	94	1
500만원 초과	28	—	28	—
1천만원 초과	14	—	14	—
5천만원 초과	3	—	3	—
1억원 초과	1	—	1	—

[표 5-32] 연도별 주민세 세액규모별 납세인원 (계속)

(단위 : 명)

1977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254,429	323,533	31,958	898,938
400원 이하	104,150	13,512	137	90,501
400원 초과	89,354	11,972	193	77,189
500원 초과	126,412	17,189	420	108,803
700원 초과	164,346	27,908	648	135,790
1,000원 초과	443,100	81,768	2,994	358,338
5,000원 초과	158,537	60,351	4,195	93,991
1만원 초과	104,707	65,274	6,417	33,016
5만원 초과	37,565	30,570	5,890	1,105
10만원 초과	16,962	10,589	6,192	181
50만원 초과	5,077	2,719	2,337	21
100만원 초과	2,762	1,262	1,497	3
500만원 초과	1,115	309	806	—
1천만원 초과	330	110	220	—
1억원 초과	12	—	12	—

1978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363,677	432,421	27,806	903,450
400원 이하	89,120	15,479	439	73,202
400원 초과	86,196	17,140	254	68,802
500원 초과	123,516	25,884	344	97,288
700원 초과	168,213	34,606	479	133,128
1,000원 초과	490,915	112,784	2,030	376,101
5,000원 초과	203,021	87,794	2,630	112,597
1만원 초과	133,427	88,213	5,325	39,889
5만원 초과	38,835	32,049	4,669	2,117
10만원 초과	22,227	15,492	6,417	318
50만원 초과	4,338	2,023	2,310	5
100만원 초과	2,885	853	2,029	3
500만원 초과	618	84	534	—
1천만원 초과	355	20	335	—
1억원 초과	11	—	11	—

[표 5-32] 연도별 주민세 세액규모별 납세인원 (계속)

(단위 : 명)

1979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2,316,639	778,519	30,203	1,507,917
400원 이하	119,110	19,294	215	99,601
400원 초과	119,805	24,446	149	95,210
500원 초과	193,366	40,058	287	153,021
700원 초과	289,461	67,091	379	221,991
1,000원 초과	816,044	196,232	1,772	618,040
5,000원 초과	401,930	176,705	2,591	222,634
1만원 초과	255,998	158,491	5,473	92,034
5만원 초과	73,011	63,237	4,991	4,783
10만원 초과	35,743	27,975	7,196	572
50만원 초과	6,956	3,349	3,581	26
100만원 초과	4,014	1,432	2,577	5
500만원 초과	666	160	506	—
1천만원 초과	511	46	465	—
1억원 초과	24	3	21	—

1980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510,100	635,531	40,652	833,917
700원 이하	144,000	36,523	350	107,127
700원 초과	176,572	51,820	393	124,359
1,000원 초과	483,607	154,710	2,527	326,370
5,000원 초과	322,951	138,891	3,284	180,776
1만원 초과	234,923	140,638	7,088	87,197
5만원 초과	82,356	68,891	6,585	6,880
10만원 초과	44,196	33,112	9,925	1,159
50만원 초과	13,319	8,286	4,986	47
100만원 초과	6,302	2,306	3,994	2
500만원 초과	1,124	281	843	—
1천만원 초과	661	68	593	—
1억원 초과	89	5	84	—

[표 5-32] 연도별 주민세 세액규모별 납세인원 (계속)

(단위 : 명)

1981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932,190	924,265	40,916	967,009
700원 이하	193,920	97,694	905	95,321
700원 초과	224,734	87,578	872	136,284
1,000원 초과	593,831	215,238	3,087	375,506
5,000원 초과	416,452	196,298	3,931	216,223
1만원 초과	316,422	183,889	7,199	125,334
5만원 초과	114,320	90,877	6,878	16,565
10만원 초과	51,175	40,790	8,770	1,615
50만원 초과	13,342	8,926	4,262	154
100만원 초과	6,144	2,571	3,566	7
500만원 초과	1,062	286	776	—
1천만원 초과	747	117	630	—
1억원 초과	41	1	40	—

1982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991,523	916,993	37,715	1,036,815
700원 이하	157,155	59,205	629	97,321
700원 초과	204,006	62,403	576	141,027
1,000원 초과	592,530	204,255	2,411	385,864
5,000원 초과	444,358	202,203	3,401	238,754
1만원 초과	374,908	207,896	6,906	160,106
5만원 초과	128,022	110,947	6,126	10,949
10만원 초과	64,700	53,615	8,607	2,478
50만원 초과	15,719	11,424	4,019	276
100만원 초과	7,595	4,071	3,486	38
500만원 초과	1,603	724	877	2
1천만원 초과	734	242	492	—
1억원 초과	193	8	185	—

[표 5-32] 연도별 주민세 세액규모별 납세인원 (계속)

(단위 : 명)

1983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849,526	778,256	45,838	1,025,432
700원 이하	122,019	38,289	399	83,331
700원 초과	175,365	51,525	495	123,345
1,000원 초과	550,693	163,852	2,692	384,149
5,000원 초과	420,123	165,112	3,485	251,526
1만원 초과	355,606	181,655	8,558	165,393
5만원 초과	120,973	96,948	8,737	15,288
10만원 초과	71,459	58,684	10,448	2,327
50만원 초과	20,751	16,406	4,286	59
100만원 초과	8,008	4,089	3,906	13
500만원 초과	3,426	1,679	1,746	1
1천만원 초과	1,003	17	986	—
1억원 초과	100		100	—

1984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950,064	866,996	42,951	1,040,117
700원 이하	120,462	35,731	324	84,407
700원 초과	176,251	49,778	536	125,937
1,000원 초과	571,779	181,064	2,315	388,400
5,000원 초과	466,242	206,411	3,356	256,475
1만원 초과	379,960	207,410	7,789	164,761
5만원 초과	138,440	114,925	7,761	15,754
10만원 초과	71,954	57,182	10,471	4,301
50만원 초과	14,395	9,819	4,517	59
100만원 초과	7,629	3,973	3,634	22
500만원 초과	1,806	540	1,265	1
1천만원 초과	1,059	163	896	—
1억원 초과	87	—	87	—

[표 5-32] 연도별 주민세 세액규모별 납세인원 (계속)

(단위 : 명)

1985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347,234	820,652	41,880	484,702
700원 이하	71,522	27,649	282	43,591
700원 초과	107,158	48,043	466	58,649
1,000원 초과	370,846	181,134	2,375	187,337
5,000원 초과	303,582	180,601	3,535	119,446
1만원 초과	275,648	198,820	8,081	68,747
5만원 초과	110,132	97,415	6,883	5,834
10만원 초과	75,027	64,237	9,810	980
50만원 초과	19,429	15,159	4,186	84
100만원 초과	9,749	5,926	3,789	34
500만원 초과	2,591	1,243	1,348	—
1천만원 초과	1,450	422	1,028	—
1억원 초과	100	3	97	—

1986[1)]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179,503	866,403	48,260	264,840
500원 미만	8,272	—	—	—
500원 초과	58,388	—	—	—
700원 초과	90,865	—	—	—
1,000원 초과	299,619	—	—	—
5,000원 초과	250,254	—	—	—
1만원 초과	253,963	—	—	—
5만원 초과	122,578	—	—	—
10만원 초과	68,218	—	—	—
50만원 초과	14,865	—	—	—
100만원 초과	9,133	—	—	—
500만원 초과	1,822	—	—	—
1천만원 초과	1,409	—	—	—
1억원 초과	117	—	—	—

[표 5-32] 연도별 주민세 세액규모별 납세인원 (계속)

(단위 : 명)

1987[1]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197,619	861,903	47,738	287,978
500원 이상	66,022	—	—	—
700원 초과	100,116	—	—	—
1,000원 초과	330,040	—	—	—
5,000원 초과	243,983	—	—	—
1만원 초과	229,402	—	—	—
5만원 초과	113,031	—	—	—
10만원 초과	76,870	—	—	—
50만원 초과	21,630	—	—	—
100만원 초과	12,267	—	—	—
500만원 초과	2,428	—	—	—
1천만원 초과	1,701	—	—	—
1억원 초과	129	—	—	—

1988[1]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219,270	860,285	53,554	305,431
500원 미만	933	—	—	—
500원 초과	59,927	—	—	—
700원 초과	83,635	—	—	—
1,000원 초과	298,659	—	—	—
5,000원 초과	231,811	—	—	—
1만원 초과	253,727	—	—	—
5만원 초과	145,798	—	—	—
10만원 초과	97,605	—	—	—
50만원 초과	27,344	—	—	—
100만원 초과	14,148	—	—	—
500만원 초과	3,292	—	—	—
1천만원 초과	2,194	—	—	—
1억원 초과	197	—	—	—

[표 5-32] 연도별 주민세 세액규모별 납세인원 (계속)

(단위 : 명)

1989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198,459	1,008,136	60,739	129,584
500원 미만	20,104	16,195	215	3,694
500원 초과	37,242	26,159	481	10,602
700원 초과	59,211	41,952	641	16,618
1,000원 초과	239,860	177,970	2,728	59,162
5,000원 초과	214,452	184,513	4,224	25,715
1만원 초과	268,713	249,244	8,573	10,896
5만원 초과	168,607	156,751	9,668	2,188
10만원 초과	128,778	113,645	14,498	635
50만원 초과	35,786	27,775	7,963	48
100만원 초과	18,366	11,242	7,099	25
500만원 초과	4,341	2,023	2,317	1
1천만원 초과	2,756	651	2,105	—
1억원 초과	243	16	227	—

1990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046,315	886,921	73,931	85,463
500원 이상	36,323	21,496	875	13,952
1,000원 초과	177,030	130,477	4,833	41,720
5,000원 초과	193,530	170,294	4,803	18,433
1만원 초과	248,180	229,802	9,357	9,021
5만원 초과	170,870	159,859	9,367	1,644
10만원 초과	143,435	124,511	18,301	623
50만원 초과	43,084	32,048	10,980	56
100만원 초과	25,145	14,868	10,265	12
500만원 초과	4,958	2,499	2,457	2
1천만원 초과	3,437	1,046	2,391	—
1억원 초과	333	21	312	—

[표 5-32] 연도별 주민세 세액규모별 납세인원 (계속)

(단위 : 명)

1991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117,663	953,840	75,152	88,671
500원 이상	33,929	18,545	502	14,882
1,000원 초과	167,404	118,950	2,385	46,069
5,000원 초과	169,826	149,013	3,414	17,399
1만원 초과	269,074	252,899	8,735	7,440
5만원 초과	189,514	178,001	9,710	1,803
10만원 초과	191,414	169,892	20,790	732
50만원 초과	53,917	41,608	12,016	293
100만원 초과	31,175	20,435	10,704	36
500만원 초과	6,801	3,144	3,645	12
1천만원 초과	4,145	1,236	2,904	5
1억원 초과	474	127	347	—

1992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211,114	1,080,273	89,042	41,799
500원 이상	38,031	27,294	787	9,950
1,000원 초과	144,394	121,741	3,015	19,638
5,000원 초과	184,222	173,741	3,572	6,909
1만원 초과	268,738	254,465	10,681	3,592
5만원 초과	212,059	199,576	11,291	1,192
10만원 초과	236,888	213,042	23,440	406
50만원 초과	73,027	59,521	13,453	53
100만원 초과	39,635	25,355	14,231	49
500만원 초과	8,591	3,885	4,700	6
1천만원 초과	4,980	1,590	3,386	4
1억원 초과	549	63	486	—

[표 5-32] 연도별 주민세 세액규모별 납세인원 (계속)

(단위 : 명)

1993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841,757	1,713,470	110,135	18,152
500원 이상	53,743	48,501	1,239	4,003
1,000원 초과	212,094	199,602	4,242	8,250
5,000원 초과	290,525	283,076	4,220	3,229
1만원 초과	430,438	418,663	9,914	1,861
5만원 초과	353,556	338,088	14,877	591
10만원 초과	327,507	297,516	29,816	175
50만원 초과	105,239	86,373	18,842	24
100만원 초과	52,056	34,043	17,998	15
500만원 초과	9,851	5,137	4,713	1
1천만원 초과	6,223	2,419	3,801	3
1억원 초과	525	52	473	—

1994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1,610,390	1,482,259	105,546	22,585
500원 이상	58,702	53,005	677	5,020
1,000원 초과	170,984	157,426	2,398	11,160
5,000원 초과	217,935	209,523	5,179	3,233
1만원 초과	388,763	376,776	10,026	1,961
5만원 초과	313,474	297,606	14,994	874
10만원 초과	285,123	255,377	29,465	281
50만원 초과	107,955	89,526	18,400	29
100만원 초과	50,580	35,359	15,199	22
500만원 초과	7,193	5,202	1,987	4
1천만원 초과	6,206	2,398	3,807	1
1억원 초과	475	61	414	—

[표 5-32] 연도별 주민세 세액규모별 납세인원 (계속)

(단위 : 명)

	1995[2]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6,456,174	6,297,805	138,833	19,536
500원 이상	626,311	623,324	360	2,627
1,000원 초과	919,857	906,324	2,705	10,828
5,000원 초과	874,062	866,059	4,374	3,629
1만원 초과	1,430,221	1,416,656	11,825	1,740
5만원 초과	977,807	961,087	16,237	483
10만원 초과	943,652	906,031	37,438	183
50만원 초과	401,799	376,709	25,066	24
100만원 초과	210,407	186,524	23,866	17
500만원 초과	51,285	42,182	9,098	5
1천만원 초과	19,854	12,758	7,096	—
1억원 초과	919	151	768	—

주 : 1) 1986, 1987, 1988년도의 경우 지방세정연감에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의 세액규모별 인원은 없고 총인원만 나타나 있음.
2) 1973~1994년의 세액규모별 인원은 소득할 보통징수 기준이나 1995년은 소득할 보통징수+소득할 특별징수 기준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33] 연도별 주민세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지 방 세 법		외자도입법		특 별 조 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77	581,300	726,130	581,281	692,622	2	541	—	—	17	32,967	—	—
1978	515,417	591,280	515,101	586,763	—	—	—	—	316	4,517	—	—
1979	495,070	2,124,380	494,917	2,088,687	1	210	—	—	94	33,830	58	1,653
1980	665,426	2,700,472	664,551	2,621,366	—	—	—	—	362	73,683	513	5,423
1981	694,103	7,697,231	693,776	7,313,872	—	—	—	—	327	383,359	—	—
1982	581,734	1,250,616	581,471	1,244,500	—	—	74	274	2	4	187	5,838
1983	608,284	6,846,675	607,880	6,846,026	—	—	239	517	165	132	—	—
1984	660,425	1,789,529	659,806	1,781,351	—	—	447	1,360	134	6,788	38	30
1985	632,246	1,802,072	630,764	1,793,050	—	—	1,443	8,977	1	15	38	30
1986	678,155	1,912,311	676,519	1,910,821	—	—	1,598	1,460	—	—	38	30
1987	609,762	2,069,236	608,421	2,067,997	—	—	938	885	358	318	45	36
1988	664,714	2,166,071	654,651	2,058,586	—	—	10,008	107,441	—	—	55	44
1989	664,491	1,695,575	661,427	1,688,874	—	—	3,019	6,665	—	—	45	36
1990	662,250	4,229,452	660,224	4,224,245	—	—	2,026	5,207	—	—	—	—
1991	842,406	5,284,375	842,349	5,283,571	—	—	12	768	—	—	45	36
1992	586,860	4,671,500	586,846	4,669,266	—	—	14	2,234	—	—	—	—
1993	1,323,716	28,936,438	1,322,966	28,421,946	—	—	739	490,792	11	23,700	—	—
1994	1,295,054	16,616,322	1,289,972	16,210,516	—	—	4,990	404,889	—	—	92	917
1995	716,511	6,376,881	716,468	6,371,968	—	—	43	4,913	—	—	—	—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2) 재산세

[표 5-34] 연도별 재산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62	606,472	577,208	—	—	95.2
1963	865,060	827,212	—	—	95.7
1964	751,597	725,824	—	—	96.5
1965	823,799	791,478	—	—	96.0
1966	1,078,491	1,043,636	—	—	96.7
1967	1,198,420	1,166,812	—	—	97.3
1968	2,420,880	2,356,171	—	—	97.3
1969	3,117,076	2,986,297	—	—	95.8
1970	4,172,610	3,980,115	2,313	190,181	95.3
1971	5,217,059	4,951,170	2,892	262,998	94.9
1972	8,318,934	7,879,503	8,107	431,325	94.7
1973	10,071,202	9,624,928	9,271	437,003	95.6
1974	16,748,718	15,856,961	3,337	888,420	94.7
1975	30,485,936	28,436,023	5,255	2,044,659	93.2
1976	39,537,387	37,798,207	2,104	1,737,076	95.6
1977	46,666,700	45,316,023	5,685	1,344,992	97.1
1978	48,501,328	47,073,244	16,812	1,411,272	97.1
1979	83,729,116	81,592,822	13,587	2,122,707	97.4
1980	123,119,917	119,412,203	24,965	3,682,749	96.9
1981	157,685,620	152,678,723	45,954	4,960,943	96.8
1982	177,611,412	172,786,893	39,929	4,784,590	97.3
1983	201,504,649	194,753,432	20,059	6,731,158	96.6
1984	216,711,906	210,419,077	32,422	6,260,407	97.1
1985	243,446,657	237,289,644	43,738	6,113,275	97.5
1986	273,926,413	265,793,348	53,890	8,079,175	97.0
1987	293,669,683	285,304,054	17,479	8,348,150	97.1
1988	308,347,725	301,046,192	87,994	7,213,539	97.6
1989	380,021,546	372,425,966	23,898	7,571,682	98.0
1990	230,972,295	227,165,292	46,237	3,760,766	98.4
1991	280,314,276	275,510,680	6,235	4,797,361	98.3
1992	362,323,308	355,290,512	27,823	7,004,973	98.1
1993	416,350,672	406,612,821	127,021	9,610,830	97.7
1994	494,055,073	480,674,871	60,876	13,319,326	97.3
1995	482,405,711	465,921,989	198,948	16,284,774	96.6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35] 연도별 재산세 부과실적

(단위 : 천원, 명)

	합 계			과 세 분			비 과 세 분		
	과세표준액	세 액	납세인원	과세표준액	세 액	납세인원	과세표준액	세 액	납세인원
1962	—	679,539	3,300,663	—	—	—	—	—	—
1963	—	873,845	3,359,037	—	—	—	—	—	—
1964	—	752,761	3,219,303	—	—	—	—	—	—
1965	—	805,468	3,306,416	—	—	—	—	—	—
1966	—	1,079,828	3,589,683	—	—	—	—	—	—
1967	—	1,202,236	3,760,640	—	—	—	—	—	—
1968	—	2,417,016	4,035,577	—	—	—	—	—	—
1969	—	3,125,856	4,322,220	—	—	—	—	—	—
1970	—	4,175,456	4,599,239	—	—	—	—	—	—
1971	—	5,192,337	4,872,720	—	—	—	—	—	—
1972	—	8,384,723	5,525,997	—	—	—	—	—	—
1973	—	10,143,082	5,976,709	—	—	—	—	—	—
1974	—	17,468,434	5,788,327	—	—	—	—	—	—
1975	—	31,345,072	6,624,752	—	—	—	—	—	—
1976	—	41,090,223	7,173,245	—	—	—	—	—	—
1977	—	58,157,991	12,429,114	—	47,379,401	10,348,306	—	10,778,590	2,080,808
1978	—	59,412,070	12,835,100	—	48,951,492	10,869,033	—	10,460,578	1,966,067
1979	—	98,922,149	14,335,739	—	83,686,168	11,909,999	—	15,235,981	2,425,740
1980	—	145,137,896	14,545,361	—	122,793,512	12,470,679	—	22,344,384	2,074,682
1981	—	187,170,516	14,768,532	—	156,951,091	12,713,793	—	30,219,425	2,054,739
1982	—	205,176,091	15,203,931	—	177,017,387	13,163,346	—	28,158,704	2,040,585
1983	—	234,860,922	15,158,151	—	201,793,196	13,150,945	—	33,067,726	2,007,206
1984	—	249,183,270	16,224,337	—	217,081,608	14,222,921	—	32,101,662	2,001,416
1985	—	276,377,587	16,857,934	—	242,898,212	14,807,858	—	33,479,375	2,050,076
1986	104,293,870,966	309,927,942	16,974,056	89,871,053,456	273,493,673	14,863,301	14,422,817,510	36,434,269	2,110,755
1987	110,324,360,457	330,557,807	18,022,650	95,753,368,282	294,218,756	15,920,791	14,570,992,175	36,339,051	2,101,859
1988	121,631,354,450	349,867,073	18,913,007	104,572,921,522	305,964,903	16,700,503	17,058,432,928	43,902,170	2,212,504
1989	143,581,552,763	430,082,695	19,683,404	124,479,519,934	379,258,002	17,474,911	19,102,032,829	50,824,693	2,208,493
1990	66,943,906,447	247,901,658	7,856,362	60,718,436,319	229,177,393	7,004,318	6,225,470,128	18,724,265	852,044
1991	82,357,323,872	301,153,206	7,916,706	75,076,059,986	279,578,556	7,063,250	7,281,263,886	21,574,650	853,456
1992	100,706,061,081	387,148,534	8,350,063	91,971,595,406	361,084,239	7,481,489	8,734,465,675	26,064,295	868,574
1993	114,599,770,976	445,112,862	8,713,633	104,167,498,726	413,033,416	7,883,274	10,432,272,250	32,079,446	830,359
1994	135,410,895,944	525,164,387	9,355,997	125,149,214,138	492,513,487	8,600,344	10,261,681,806	32,650,900	755,653
1995	144,386,298,586	514,614,400	10,023,930	134,541,759,656	482,481,790	9,304,555	9,844,538,930	32,132,610	719,375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36] 연도별 재산세 중과세 상황

(단위 : 천m², 천원, 명)

	합계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면적	세액	납세인원	면적	세액	납세인원	면적	세액	납세인원	면적	세액	납세인원
1986	127,515	38,730,713	39,467	30,929	2,081,302	77	10,657	384,171	1,925	1,181	7,382,469	4,774
1987	155,301	38,867,412	42,419	27,742	2,552,237	92	1,640	421,631	1,995	1,240	7,565,049	4,762
1988	94,839	29,868,843	39,037	31,218	3,212,924	93	2,077	473,305	2,033	1,256	8,698,483	4,994
1989	107,130	31,070,296	47,653	45,873	4,965,491	106	2,377	659,785	2,387	1,572	11,387,595	5,763
1990	18,339	18,604,411	29,394	329	1,480,769	68	707	534,994	1,453	1,290	8,597,213	3,685
1991	560,981	48,562,514	30,165	14,314	1,784,187	92	20,285	772,562	1,792	1,299	10,344,001	3,643
1992	209,026	24,850,190	29,806	29,247	2,267,448	61	10,112	929,307	1,797	1,295	12,050,242	4,428
1993	155,264	26,666,892	28,295	4,718	3,288,932	206	12,433	956,116	1,776	75,850	13,347,844	4,472
1994	1,291,310	39,250,910	28,179	28,299	4,211,972	92	15,112	839,720	1,657	505,102	19,940,298	4,814
1995	13,880	37,819,366	28,508	373	4,978,650	96	234	1,192,332	1,887	2,408	22,522,683	5,911

	주거지역내 공장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기타[1]		
	면적	세액	납세인원	면적	세액	납세인원	면적	세액	납세인원
1986	19,569	5,730,581	21,502	4,934	2,864,676	2,858	60,245	20,287,514	8,331
1987	58,654	6,578,718	23,934	6,911	3,138,348	4,049	59,114	18,611,429	7,587
1988	50,911	13,902,966	27,770	9,377	3,581,165	4,147	—	—	—
1989	48,805	9,638,815	34,952	8,503	4,418,610	4,445	—	—	—
1990	11,712	4,309,005	21,247	4,301	3,682,430	2,941	—	—	—
1991	215,824	31,727,408	21,136	309,259	3,934,356	3,502	—	—	—
1992	11,588	4,806,789	19,730	156,784	4,796,404	3,790	—	—	—
1993	19,073	5,494,037	19,851	43,190	3,579,963	1,990	—	—	—
1994	707,915	11,384,745	19,968	34,882	2,874,175	1,648	—	—	—
1995	9,999	6,972,165	18,948	866	2,153,536	1,666	—	—	—

주 : 1) 토지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공한지의 합계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37] 연도별 재산세 소액 부징수분 과세상황

(단위 : 천원, 명)

	합 계		토 지		건 물		중 기		광 구		선 박	
	과세표준액	인 원	과세표준액	인 원	과세표준액	인 원	과세표준액	인 원	과세표준액	인 원	과세표준액	인 원
1974	106,715,441	1,518,641	62,341,373	1,114,123	43,588,019	392,700	—	—	76,170	720	709,879	11,098
1975	86,299,335	1,133,526	45,072,332	770,568	40,823,436	351,712	—	—	—	502	403,567	10,744
1976	71,107,995	937,348	37,438,495	605,411	32,909,883	319,206	—	—	—	310	759,617	12,421
1977	389,479,669	2,109,147	328,263,173	1,576,938	60,015,801	512,154	—	—	—	161	1,200,695	19,894
1978	382,883,525	2,058,417	285,086,528	1,535,071	96,689,766	505,496	—	—	—	94	1,107,231	17,756
1979	559,254,832	1,697,211	477,633,496	1,314,968	79,754,683	353,940	—	—	—	50	1,866,653	28,253
1980	311,033,014	1,534,922	215,917,472	1,025,934	91,917,120	488,611	—	—	—	55	3,198,422	20,322
1981	342,543,285	1,338,283	210,567,718	733,574	129,081,275	587,478	—	—	—	50	2,894,292	17,181
1982	339,547,810	1,367,420	193,314,393	744,876	142,610,613	602,051	—	—	—	311	3,622,804	20,182
1983	550,573,279	1,341,413	269,575,292	691,406	276,939,287	626,103	—	—	—	719	4,058,700	23,185
1984	431,517,093	1,336,574	204,765,981	706,646	222,340,934	606,333	—	—	—	15	4,410,178	23,580
1985	338,872,526	1,381,493	189,707,286	693,526	145,236,154	673,684	—	—	270	18	3,928,816	14,265
1986	1,046,764,840	1,356,373	456,510,590	710,519	557,723,945	625,338	—	—	—	9	32,530,305	20,507
1987	498,844,435	1,385,673	361,447,421	727,724	130,251,378	628,246	—	—	—	22	7,145,636	29,681
1988	270,781,387	1,340,139[1]	144,321,162	671,312	124,379,815	645,927	—	—	—	—	2,080,410	22,845
1989	277,402,762	1,229,651	143,924,033	624,490	129,266,456	590,270	—	—	—	51	4,212,273	14,840
1990	159,348,448	766,120	—	—	155,891,987	751,925	—	—	—	—	3,456,461	14,195
1991	364,768,169	753,125	—	—	360,198,774	740,896	11,891	64	—	—	4,557,504	12,165
1992	612,459,272	807,906	—	—	609,042,482	797,360	9,744	56	—	—	3,407,046	10,490
1993	615,891,858	819,608	—	—	612,073,808	810,433	774,458	1,160	—	—	3,043,592	8,015
1994	307,687,991	969,683	—	—	304,804,274	961,623	789,440	1,020	—	—	2,094,277	7,040
1995	698,890,018[2]	708,088[2]	—	—	694,828,588	686,648	—	—	—	—	1,801,372	5,238

주 : 1) 지방세정연감(1989)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으나 구분별 합계는 1,340,084천원임.
2) 지방세정연감(1996)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으나 구분별 합계는 과표 : 696,629,960천원, 인원 : 691,886명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38] 연도별 재산세 납액별 인원현황

(단위 : 명)

1976				1977			
	합 계	토 지	건 물		합 계	토 지	건 물
400원 이하	842,663	455,423	387,240	400원 이하	651,877	454,591	197,286
400원 초과	519,073	228,718	290,355	400원 초과	2,453,474	1,452,455	1,001,019
500원 초과	639,610	248,797	390,813	1천원 초과	3,429,478	2,030,183	1,399,295
700원 초과	687,122	237,630	449,492	3천원 초과	2,481,006	1,611,846	869,160
900원 초과	1,302,467	421,844	880,623	1만원 초과	741,982	433,443	308,539
2000원 초과	1,315,787	533,506	782,281	2만원 초과	294,568	148,898	145,670
5000원 초과	911,438	447,574	463,864	3만원 초과	167,722	82,539	85,183
1만원 초과	431,298	255,197	176,101	5만원 초과	63,710	32,266	31,444
2만원 초과	222,636	122,753	99,883	10만원 초과	28,669	15,726	12,943
3만원 초과	105,858	58,821	47,037	50만원 초과	5,292	3,209	2,083
5만원 초과	60,844	32,337	28,507	100만원 초과	1,796	1,021	775
10만원 초과	27,222	14,382	12,840	300만원 초과	430	264	166
50만원 초과	5,302	2,944	2,358	500만원 초과	237	136	101
100만원 초과	1,802	1,191	611	1천만원 초과	78	48	30
300만원 초과	386	213	173	2천만원 초과	18	16	2
500만원 초과	184	107	77	5천만원 초과	12	9	3
1천만원 초과	79	46	33	1억원 초과	1	1	—
3천만원 초과	17	9	8				
5천만원 초과	6	4	2				
합 계	7,073,794	3,061,496	4,012,298	합 계	10,320,350	6,266,651	4,053,699

[표 5-38] 연도별 재산세 납액별 인원현황 (계속)

(단위 : 명)

1978				1979			
	합 계	토 지	건 물		합 계	토 지	건 물
400원 이하	662,509	478,587	183,922	400원 이하	545,953	421,548	124,405
400원 초과	2,558,174	1,542,261	1,015,913	400원 초과	2,171,458	1,390,792	780,666
1천원 초과	3,661,945	2,161,649	1,500,296	1천원 초과	3,752,468	2,159,561	1,592,907
3천원 초과	2,564,877	1,561,779	1,003,098	3천원 초과	3,335,528	2,006,143	1,329,385
1만원 초과	773,025	470,205	302,820	1만원 초과	1,117,268	698,733	418,535
2만원 초과	354,398	216,335	138,063	2만원 초과	524,045	304,247	219,798
3만원 초과	161,394	83,484	77,910	3만원 초과	247,566	139,810	107,756
5만원 초과	64,041	28,751	35,290	5만원 초과	111,864	69,009	42,855
10만원 초과	26,653	15,406	11,247	10만원 초과	48,365	27,978	20,387
50만원 초과	4,591	2,294	2,297	50만원 초과	6,086	3,513	2,573
100만원 초과	2,686	1,191	1,495	100만원 초과	3,409	2,102	1,307
300만원 초과	568	244	324	300만원 초과	777	490	287
500만원 초과	310	145	165	500만원 초과	425	273	152
1천만원 초과	101	49	52	1천만원 초과	182	98	84
3천만원 초과	23	17	6	2천만원 초과	56	32	24
5천만원 초과	8	6	2	5천만원 초과	15	12	3
1억원 초과	—	—	—	1억원 초과	2	1	1
합 계	10,835,303	6,562,403	4,272,900	합 계	11,865,467	7,224,342	4,641,125

[표 5-38] 연도별 재산세 납액별 인원현황 (계속)

(단위 : 명)

1980				1981			
	합 계	토 지	건 물		합 계	토 지	건 물
400원 이하	292,815	271,900	20,915	400원 이하	387,284	371,271	16,013
400원 초과	1,436,850	1,110,163	326,687	400원 초과	1,333,427	1,055,548	277,879
1천원 초과	3,483,241	2,093,633	1,389,608	1천원 초과	3,432,065	2,037,998	1,394,067
3천원 초과	4,111,206	2,415,693	1,695,513	3천원 초과	4,025,592	2,363,304	1,662,288
1만원 초과	1,651,879	1,022,713	629,166	1만원 초과	1,782,405	1,093,372	689,033
2만원 초과	729,019	416,889	312,130	2만원 초과	779,856	457,788	322,068
3만원 초과	391,021	205,682	185,339	3만원 초과	502,804	295,093	207,711
5만원 초과	226,262	134,722	91,540	5만원 초과	246,095	130,164	115,931
10만원 초과	79,196	46,954	32,242	10만원 초과	114,783	65,694	49,089
50만원 초과	13,485	8,351	5,134	50만원 초과	17,026	9,303	7,723
100만원 초과	5,988	4,008	1,980	100만원 초과	6,766	4,410	2,356
300만원 초과	1,780	1,353	427	300만원 초과	2,124	1,482	642
500만원 초과	779	517	262	500만원 초과	1,210	786	424
1천만원 초과	308	201	107	1만원 초과	503	296	207
2천만원 초과	117	74	43	2천만원 초과	164	86	78
5천만원 초과	23	17	6	5천만원 초과	50	32	18
1억원 초과	5	4	1	1억원 초과	11	8	3
합 계	12,423,974	7,732,874	4,691,100	합 계	12,618,218[1]	7,886,635	4,745,530

[표 5-38] 연도별 재산세 납액별 인원현황 (계속)

(단위 : 명)

1982				1983			
	합 계	토 지	건 물		합 계	토 지	건 물
400원 이하	209,718	209,718	—	400원 이하	270,104	245,489	24,615
400원 초과	1,117,563	765,061	352,502	400원 초과	973,745	773,565	200,180
1천원 초과	3,614,930	2,306,016	1,308,914	1천원 초과	3,161,034	1,831,083	1,329,951
3천원 초과	4,335,624	2,615,784	1,719,840	3천원 초과	4,533,326	2,641,123	1,892,203
1만원 초과	1,922,742	1,207,927	714,815	1만원 초과	2,004,644	1,211,825	792,819
2만원 초과	868,598	526,227	342,371	2만원 초과	920,925	513,805	407,120
3만원 초과	565,504	326,522	238,982	3만원 초과	714,758	390,943	323,815
5만원 초과	268,400	141,235	127,165	5만원 초과	336,212	177,023	159,189
10만원 초과	130,283	73,178	57,105	10만원 초과	149,831	82,618	67,213
50만원 초과	18,761	10,046	8,715	50만원 초과	19,008	11,090	7,918
100만원 초과	7,333	4,452	2,881	100만원 초과	8,877	5,204	3,673
300만원 초과	2,103	1,357	746	300만원 초과	2,328	1,432	896
500만원 초과	1,180	711	469	500만원 초과	1,341	779	562
1만원 초과	558	283	275	1만원 초과	639	323	316
2천만원 초과	190	97	93	2천만원 초과	240	119	121
5천만원 초과	52	28	24	5천만원 초과	69	33	36
1억원 초과	17	7	10	1억원 초과	20	8	12
합 계	13,063,556	8,188,649	4,874,907	합 계	13,104,051[2]	7,886,462	5,210,639

[표 5-38] 연도별 재산세 납액별 인원현황 (계속)

(단위 : 명)

1984				1985			
	합 계	토 지	건 물		합 계	토 지	건 물
400원 이하	295,603	266,608	28,995	400원 이하	213,174	156,587	56,587
400원 초과	1,021,134	829,432	191,702	400원 초과	868,727	673,054	195,673
1천원 초과	3,314,637	2,057,147	1,257,490	1천원 초과	3,058,765	1,884,135	1,174,630
3천원 초과	5,064,896	3,050,010	2,014,886	3천원 초과	4,825,607	2,895,403	1,930,204
1만원 초과	2,287,842	1,379,814	908,028	1만원 초과	2,494,483	1,471,490	1,022,993
2만원 초과	911,602	503,702	407,900	2만원 초과	1,117,468	621,360	496,108
3만원 초과	693,917	371,905	322,012	3만원 초과	762,292	410,149	352,143
5만원 초과	385,156	195,825	189,331	5만원 초과	445,724	223,459	222,265
10만원 초과	167,119	87,080	80,039	10만원 초과	199,799	103,515	96,284
50만원 초과	20,296	11,071	9,225	50만원 초과	34,372	20,143	14,229
100만원 초과	10,181	5,584	4,597	100만원 초과	11,349	6,584	4,765
300만원 초과	2,365	1,469	896	300만원 초과	3,223	1,996	1,227
500만원 초과	1,554	859	695	500만원 초과	1,648	995	653
1만원 초과	679	354	325	1만원 초과	756	398	358
2천만원 초과	249	129	120	2천만원 초과	315	152	163
5천만원 초과	62	32	30	5천만원 초과	73	34	39
1억원 초과	17	12	5	1억원 초과	15	10	5
합 계	14,177,309	8,761,033	5,416,276	합 계	14,037,790	8,469,464	5,568,326

[표 5-38] 연도별 재산세 납액별 인원현황 (계속)

(단위 : 명)

1986				1987			
	합 계	토 지	건 물		합 계	토 지	건 물
1천원 이하	1,094,749	822,823	271,926	1천원 이하	991,687	766,098	225,589
1천원 초과	4,300,914	2,526,903	1,774,011	1천원 초과	4,124,602	2,604,604	1,519,998
5천원 초과	4,581,237	2,836,599	1,744,638	5천원 초과	5,293,296	3,382,760	1,910,536
1만원 초과	4,053,745	2,420,293	1,633,452	1만원 초과	4,626,654	2,532,114	2,094,540
5만원 초과	541,389	270,249	271,140	5만원 초과	567,785	268,304	299,481
10만원 초과	231,923	117,384	114,539	10만원 초과	255,646	122,301	133,345
50만원 초과	25,805	14,716	11,089	50만원 초과	29,522	16,104	13,418
100만원 초과	15,171	9,383	5,788	100만원 초과	16,756	9,808	6,948
500만원 초과	5,610	1,082	4,528	500만원 초과	2,025	1,149	876
1천만원 초과	1,666	572	1,094	1천만원 초과	1,303	678	625
5천만원 초과	78	43	35	5천만원 초과	91	50	41
1억원 초과	30	11	19	1억원 초과	38	17	21
합 계	14,852,317	9,020,058	5,832,259	합 계	15,909,405	9,703,987	6,205,418

[표 5-38] 연도별 재산세 납액별 인원현황 (계속)

(단위 : 명)

1988				1989			
	합 계	토 지	건 물		합 계	토 지	건 물
1천원 이하	2,160,698	1,806,161	354,537	1천원 이하	1,416,602	1,126,178	290,424
1천원 초과	4,064,543	2,492,640	1,571,903	1천원 초과	4,444,013	2,809,488	1,634,525
5천원 초과	4,504,881	2,710,561	1,794,320	5천원 초과	4,864,860	2,825,022	2,039,838
1만원 초과	4,793,568	2,532,784	2,260,784	1만원 초과	5,060,445	2,891,128	2,169,317
5만원 초과	768,164	427,546	340,618	5만원 초과	1,117,378	564,514	552,864
10만원 초과	342,127	159,916	182,211	10만원 초과	485,552	229,878	255,674
50만원 초과	33,873	16,336	17,537	50만원 초과	49,931	20,108	29,823
100만원 초과	17,179	8,613	8,566	100만원 초과	20,258	9,388	10,870
500만원 초과	1,959	987	972	500만원 초과	2,302	1,118	1,184
1천만원 초과	1,283	588	695	1천만원 초과	1,337	579	758
5천만원 초과	100	46	54	5천만원 초과	116	49	67
1억원 초과	52	20	32	1억원 초과	79	22	57
합 계	16,688,427	10,156,198	6,532,229	합 계	17,462,873	10,477,472	6,985,401

[표 5-38] 연도별 재산세 납액별 인원현황 (계속)

(단위 : 명)

1990		1991		1992		1993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1천원 이하	280,627	1천원 초과	1,629,809	1천원 초과	1,470,258	1천원 이상	1,311,306
1천원 초과	1,527,220	5천원 초과	1,691,331	5천원 초과	1,590,792	5천원 초과	1,641,938
5천원 초과	1,778,525	1만원 초과	2,602,658	1만원 초과	3,235,485	1만원 초과	3,479,883
1만원 초과	2,441,239	5만원 초과	652,572	5만원 초과	583,044	5만원 초과	742,562
5만원 초과	618,941	10만원 초과	332,965	10만원 초과	428,907	10만원 초과	483,414
10만원 초과	295,341	50만원 초과	45,343	50만원 초과	54,401	50만원 초과	83,554
50만원 초과	33,794	100만원 초과	18,545	100만원 초과	26,706	100만원 초과	32,052
100만원 초과	14,443	500만원 초과	1,571	500만원 초과	1,833	500만원 초과	3,302
500만원 초과	1,311	1천만원 초과	1,067	1천만원 초과	1,928	1천만원 초과	1,534
1천만원 초과	879	5천만원 초과	118	5천만원 초과	163	5천만원 초과	207
5천만원 초과	106	1억원 초과	46	1억원 초과	73	1억원 초과	51
1억원 초과	43						
합 계	6,992,469	합 계	6,976,025	합 계	7,393,590	합 계	7,779,803

[표 5-38] 연도별 재산세 납액별 인원현황 (계속)

(단위 : 명)

1994		1995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1천원 이상	1,261,968	1천원 이상	1,439,208
5천원 초과	1,599,730	5천원 초과	5,150,454
1만원 초과	3,610,965	5만원 초과	1,709,342
5만원 초과	1,163,818	10만원 초과	733,002
10만원 초과	649,452	50만원 초과	205,331
50만원 초과	171,332	100만원 초과	53,177
100만원 초과	39,472	1천만원 초과	3,501
500만원 초과	8,047	5천만원 초과	616
1천만원 초과	2,338	1억원 초과	156
5천만원 초과	413		
1억원 초과	63		
합 계	8,507,598	합 계	9,294,787

주 : 1) 지방세정연감(1982)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으나 구분별 합계는 12,632,165명임.
2) 지방세정연감(1984)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으나 구분별 합계는 13,097,101명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39] 연도별 재산세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77	1,960,335	9,486,890	1,774,688	8,083,042	3,116	286,124	129,718	391,965	46,646	642,284	6,167	83,475
1978	1,984,164	9,283,856	1,881,806	8,186,095	1,643	249,829	48,268	175,301	52,358	670,226	89	2,405
1979	1,994,397	14,400,101	1,840,877	12,246,107	1,859	436,562	95,842	717,901	52,544	989,862	3,275	9,669
1980	2,012,958	25,629,789	1,853,460	20,344,813	2,203	639,479	83,666	828,944	72,585	3,807,939	1,044	8,614
1981	2,239,946	29,928,529	2,085,027	24,497,052	975	828,392	106,198	1,443,206	47,716	3,159,789	30	90
1982	2,166,824	28,132,187	2,039,352	24,273,137	1,463	1,247,715	112,389	2,098,023	4,684	433,804	8,936	79,508
1983	2,315,369	34,109,425	2,191,651	28,651,417	1,208	1,477,150	118,803	3,593,878	3,707	386,980	—	—
1984	2,328,167	42,178,724	2,205,306	37,615,632	1,136	1,068,894	101,802	3,226,614	3,390	258,360	16,533	9,224
1985	2,317,450	37,185,011	2,199,329	33,435,055	1,092	692,835	111,747	2,977,134	5,282	79,987	—	—
1986	2,271,453	31,325,093	2,165,891	29,126,124	1,383	788,369	95,299	1,368,250	8,880	42,350	—	—
1987	2,249,800	36,561,611	2,120,000	33,494,612	1,296	875,507	111,579	2,076,733	10,925	114,759	—	—
1988	2,753,319	52,936,046	2,586,970	48,292,661	1,249	1,116,304	142,508	2,878,618	11,847	167,159	10,745	481,304
1989	2,690,855	51,849,984	2,487,593	45,899,953	878	2,456,590	186,589	3,170,008	10,706	292,067	5,089	31,366
1990	827,328	25,950,731	763,982	20,567,379	585	861,299	55,447	4,257,594	7,012	263,185	302	1,274
1991	1,013,734	25,604,712	949,822	21,578,436	555	630,432	57,775	3,047,713	4,789	342,610	793	5,521
1992	999,598	75,492,483	916,864	68,735,665	287	3,154,148	80,337	3,189,782	1,881	402,154	229	10,734
1993	899,730	46,472,930	804,393	40,603,693	249	375,473	92,947	5,043,128	2,141	450,636	—	—
1994	901,787	40,148,157	768,970	34,434,247	223	219,643	126,072	5,105,359	6,468	387,854	54	1,054
1995	880,078	35,661,516	677,065	30,807,452	145	46,806	198,530	4,294,907	4,338	512,351	—	—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3) 자동차세

[표 5-40]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62	500,839	494,439	—	—	98.7
1963	591,293	585,066	—	—	98.9
1964	736,466	716,130	—	—	97.2
1965	875,320	845,799	—	—	96.6
1966	1,101,364	1,080,551	—	—	98.1
1967	1,577,670	1,555,018	—	—	98.6
1968	2,541,015	2,487,508	—	—	97.9
1969	3,977,054	3,869,259	—	—	97.3
1970	5,836,702	5,604,762	1,027	230,913	96.0
1971	6,683,623	6,392,587	3,275	287,761	95.6
1972	7,191,846	6,879,604	6,269	305,973	95.7
1973	8,246,012	7,866,028	4,868	375,116	95.4
1974	12,926,678	12,015,901	6,394	904,383	93.0
1975	13,111,075	12,353,486	5,151	752,438	94.2
1976	14,868,551	14,136,608	5,625	726,318	95.1
1977	19,681,586	18,794,823	2,051	884,712	95.5
1978	26,847,009	25,505,007	16,478	1,325,524	95.0
1979	51,695,657	48,438,716	31,648	3,225,293	93.7
1980	61,705,068	56,941,875	87,238	4,675,955	92.3
1981	64,126,941	61,012,593	166,149	2,948,199	95.1
1982	71,927,392	67,980,513	103,556	3,843,323	94.5
1983	88,846,791	83,804,529	100,124	4,942,138	94.3
1984	110,390,853	103,668,706	126,275	6,595,872	93.9
1985	126,351,391	118,304,698	81,456	7,965,237	93.6
1986	150,150,125	139,133,068	72,621	10,944,436	92.7
1987	182,940,922	167,719,282	68,485	15,153,155	91.7
1988	236,512,750	218,055,046	113,883	18,343,821	92.2
1989	329,207,548	304,680,677	107,754	24,419,117	92.5
1990	463,224,723	425,934,259	253,617	37,036,847	91.9
1991	688,540,985	634,953,186	285,957	53,301,842	92.2
1992	884,564,081	826,234,509	111,955	58,217,617	93.4
1993	1,092,673,409	1,027,124,984	233,042	65,315,383	94.0
1994	1,385,488,301	1,293,785,738	86,816	91,615,747	93.4
1995	1,690,295,073	1,545,231,914	156,930	144,906,229	91.4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41] 연도별 자동차세 부과실적

(단위 : 대, 천원)

	합 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 수	세 액	대 수	세 액	대 수	세 액
1963	122,403	586,511	91,131	318,997	31,272	267,514
1964	134,407	718,704	98,022	365,051	36,385	353,653
1965	152,661	880,644	102,981	372,231	49,680	508,413
1966	178,381	1,120,966	116,015	435,582	62,366	685,384
1967	215,885	1,600,601	142,459	581,447	73,426	1,019,154
1968	276,420	2,544,599	183,762	816,980	92,658	1,727,619
1969	372,533	4,005,017	232,768	1,070,906	139,765	2,934,111
1970	479,071	5,853,214	288,026	1,360,174	191,045	4,493,040
1971	549,698	6,707,498	314,211	1,469,692	235,487	5,237,806
1972	590,926	7,247,327	318,207	1,444,037	272,719	5,803,290
1973	661,000	8,718,320	329,331	1,468,805	331,669	7,249,515
1974	716,767	13,171,682	339,388	1,546,321	377,379	11,625,361
1975	775,095	13,144,914	348,260	1,482,525	426,835	11,662,389
1976	862,241	14,922,435	364,408	1,531,221	497,833	13,391,214
1977	987,465	19,529,630	372,679	2,088,065	614,786	17,441,565
1978	1,307,402	26,512,647	439,964	2,613,062	867,438	23,899,585
1979	2,196,815	51,415,919	512,338	2,957,725	1,684,477	48,458,194
1980	2,665,828	60,865,912	535,664	3,245,682	2,130,164	57,620,230
1981	2,953,464	64,832,420	569,759	3,380,419	2,383,705	61,452,001
1982	3,471,006	70,654,520	649,516	3,981,506	2,821,490	66,673,014
1983	4,415,156	87,696,414	705,020	4,302,305	3,710,136	83,394,109
1984	5,245,989	110,510,749	778,061	4,975,214	4,467,928	105,535,535
1985	4,109,315	126,443,081	827,511	5,617,676	3,281,804	120,825,405
1986	2,969,832	172,769,335	557,350	4,205,185	2,412,482	168,564,150
1987	3,505,760	158,495,330	598,376	4,407,847	2,907,384	154,087,483
1988	7,232,896	295,099,458	1,059,645	6,796,618	6,173,251	288,302,840
1989	9,481,641	326,562,979	1,187,472	7,447,061	8,294,169	319,115,918
1990	12,344,257	461,215,820	1,341,439	8,468,880	11,002,818	452,746,940
1991	15,615,376	868,079,526	1,479,455	12,391,674	14,135,921	855,687,852
1992	19,109,395	1,114,958,888	1,579,582	14,381,586	17,529,813	1,100,577,302
1993	21,461,707	1,367,349,362	1,358,629	15,426,563	20,103,078	1,351,922,799
1994	24,819,338	1,760,583,921	1,388,953	17,302,365	23,430,385	1,743,281,556
1995	14,592,501	1,681,486,223	740,532	17,804,813	13,851,969	1,663,681,410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42] 연도별 자동차세 승용자동차 과세상황

(단위 : 대, 천원)

	합 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 수	세 액	대 수	세 액	대 수	세 액
1964	49,475	497,320	34,216	197,209	15,259	300,111
1965	59,341	631,344	36,130	192,022	23,211	439,322
1966	70,050	817,908	40,133	219,707	29,917	598,201
1967	91,594	1,245,735	51,699	320,452	39,895	925,283
1968	111,610	2,029,329	58,443	419,819	53,167	1,609,510
1969	165,948	3,343,605	83,388	594,178	82,560	2,749,427
1970	225,229	5,061,447	109,116	797,190	116,113	4,264,257
1971	260,100	5,827,279	122,908	876,483	137,192	4,950,796
1972	277,718	6,303,242	122,582	834,480	155,136	5,468,762
1973	317,164	7,695,312	126,864	850,106	190,300	6,845,206
1974	319,496	11,891,617	118,734	830,465	200,762	11,061,152
1975	334,161	11,778,082	117,651	763,967	216,510	11,014,115
1976	377,187	13,353,828	122,850	755,464	254,337	12,598,364
1977	444,784	15,488,616	127,259	731,698	317,525	14,756,918
1978	616,209	20,916,980	171,149	1,007,946	445,060	19,909,034
1979	875,459	43,732,133	230,244	1,442,012	645,215	42,290,121
1980	998,860	50,734,393	246,639	1,725,120	752,221	49,009,273
1981	1,044,358	53,307,031	268,688	1,763,375	775,670	51,543,656
1982	1,121,386	57,237,830	271,102	1,778,937	850,284	55,458,893
1983	1,383,813	71,155,099	298,034	1,932,977	1,085,779	69,222,122
1984	1,700,091	90,599,078	343,055	2,258,097	1,357,036	88,340,981
1985	2,041,702	109,592,783	373,577	2,756,546	1,668,125	106,836,237
1986	2,416,859	166,555,799	407,593	2,735,229	2,009,266	163,820,570
1987	2,836,874	150,740,880	450,190	2,907,768	2,386,684	147,833,112
1988	3,915,186	269,020,160	489,771	3,237,904	3,425,415	265,782,256
1989	5,309,073	294,162,446	539,223	3,456,139	4,769,850	290,706,307
1990	7,406,768	423,425,438	625,250	4,271,796	6,781,518	419,153,642
1991	9,543,343	796,188,325	664,292	5,290,915	8,879,051	790,897,410
1992	12,070,483	1,026,086,263	701,527	6,282,988	11,368,956	1,019,803,275
1993	14,337,810	1,260,361,588	547,396	6,777,908	13,790,414	1,253,583,680
1994	17,811,172	1,588,645,122	639,570	7,501,552	17,171,602	1,581,143,570
1995	11,156,231	2,044,928,551	339,949	7,776,692	10,816,282	2,037,151,859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43] 연도별 자동차세 기타자동차 과세상황

(단위 : 대, 천원)

	합 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 수	세 액	대 수	세 액	대 수	세 액
1964	84,932	221,384	63,806	167,842	21,126	53,542
1965	93,320	249,300	66,851	180,209	26,469	69,091
1966	108,331	303,058	75,882	215,875	32,449	87,183
1967	124,291	354,866	90,760	260,995	33,531	93,871
1968	164,810	515,270	125,319	397,161	39,491	118,109
1969	206,585	661,412	149,380	476,728	57,205	184,684
1970	253,842	791,767	178,910	562,984	74,932	228,783
1971	289,598	880,219	191,303	593,209	98,295	287,010
1972	313,208	944,085	195,625	609,557	117,583	334,528
1973	343,836	1,023,008	202,467	618,699	141,369	404,309
1974	397,271	1,280,065	220,654	715,856	176,617	564,209
1975	440,934	1,366,832	230,609	718,558	210,325	648,274
1976	485,054	1,568,607	241,558	775,757	243,496	792,850
1977	542,681	4,041,014	245,420	1,356,367	297,261	2,684,647
1978	691,193	5,595,667	268,815	1,605,116	422,378	3,990,551
1979	1,321,356	7,683,786	282,094	1,515,713	1,039,262	6,168,073
1980	1,666,968	10,131,519	289,025	1,520,562	1,377,943	8,610,957
1981	1,909,106	11,525,389	301,071	1,617,044	1,608,035	9,908,345
1982	2,349,620	13,416,690	378,414	2,202,569	1,971,206	11,214,121
1983	3,031,343	16,541,315	406,986	2,369,328	2,624,357	14,171,987
1984	3,545,898	19,911,671	435,006	2,717,117	3,110,892	17,194,554
1985	2,067,613	16,850,298	453,934	2,861,130	1,613,679	13,989,168
1986	552,973	6,213,536	149,757	1,469,956	403,216	4,743,580
1987	668,886	7,754,450	148,186	1,500,079	520,700	6,254,371
1988	3,317,710	26,079,298	569,874	3,558,714	2,747,836	22,520,584
1989	4,172,568	32,400,533	648,249	3,990,922	3,524,319	28,409,611
1990	4,937,489	37,790,382	716,189	4,197,084	4,221,300	33,593,298
1991	6,072,033	71,891,201	815,163	7,100,759	5,256,870	64,790,442
1992	7,038,912	88,872,625	878,055	8,098,598	6,160,857	80,774,027
1993	7,123,897	106,987,774	811,233	8,648,655	6,312,664	98,339,119
1994	7,008,166	171,938,799	749,383	9,800,813	6,258,783	162,137,986
1995	3,436,270	102,218,122	400,583	10,028,121	3,035,687	92,190,001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44] 연도별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77	16,601	643,183	14,281	460,952	295	41,005	1,687	119,292	326	21,793	12	141
1978	17,100	649,261	14,884	525,575	108	7,255	1,531	112,155	47	2,727	530	1,549
1979	38,431	1,106,076	33,135	834,890	—	—	4,595	213,534	52	3,727	649	53,925
1980	84,925	1,792,530	80,195	1,669,747	—	—	2,530	106,395	256	3,216	1,944	13,172
1981	96,962	2,020,136	92,074	1,848,415	3	416	4,069	162,995	811	8,286	5	24
1982	77,842	1,607,899	44,239	1,275,000	4	485	33,329	311,345	38	273	232	20,796
1983	98,789	4,034,287	42,480	2,940,579	5	597	55,880	1,088,248	368	4,326	56	519
1984	102,603	4,598,498	60,362	3,394,837	4	225	41,887	1,078,247	157	5,604	193	119,585
1985	77,749	4,150,101	71,283	3,090,142	2	112	6,185	970,257	152	5,802	127	83,788
1986	37,363	727,860	35,344	626,266	—	—	1,997	100,484	—	—	22	1,110
1987	57,753	1,386,890	52,610	1,178,840	8	272	4,449	195,113	578	9,822	108	2,843
1988	57,780	3,306,049	54,214	3,148,627	—	—	3,414	152,104	—	—	152	5,318
1989	55,274	2,059,714	50,098	1,741,595	4	131	4,838	303,551	60	3,534	274	10,903
1990	71,641	6,749,210	59,609	1,857,099	—	—	11,767	4,884,099	—	—	265	8,012
1991	86,673	4,282,427	66,503	2,867,790	66	3,717	19,106	1,284,485	692	91,675	306	34,760
1992	72,906	3,557,449	47,799	1,636,932	—	—	24,727	1,865,250	—	—	380	55,267
1993	98,535	5,701,147	39,339	1,666,677	—	—	58,224	3,905,710	972	128,760	—	—
1994	110,717	69,163,805	53,134	17,598,041	—	—	57,227	51,543,148	60	7,287	296	15,329
1995	119,705	14,922,267	39,533	3,413,017	—	—	80,172	11,509,250	—	—	—	—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4) 농지세

[표 5-45] 연도별 농지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62	2,053,893	2,031,496	—	—	98.9
1963	3,101,004	3,067,129	—	—	98.9
1964	3,616,627	3,589,745	—	—	99.3
1965	4,015,379	3,977,256	—	—	99.1
1966	5,007,426	4,962,986	—	—	99.1
1967	3,383,781	3,350,208	—	—	99.0
1968	3,492,754	3,449,848	—	—	98.8
1969	4,837,367	4,780,465	—	—	98.8
1970	3,172,920	3,122,581	291	50,048	98.4
1971	4,569,744	4,522,039	754	46,951	99.0
1972	5,398,010	5,336,307	1,038	60,665	98.9
1973	8,155,912	8,086,684	854	68,374	99.2
1974	13,979,682	13,866,309	869	112,504	99.2
1975	21,024,859	20,840,899	1,083	182,877	99.1
1976	31,785,422	31,636,878	103	148,441	99.5
1977	36,095,946	35,945,398	256	150,292	99.6
1978	44,529,331	44,317,512	2,204	209,615	99.5
1979	53,911,509	53,644,024	3,090	264,395	99.5
1980	63,140,610	62,573,402	7,312	559,896	99.1
1981	78,548,324	78,039,313	3,914	505,097	99.4
1982	83,360,409	83,027,893	1,281	331,235	99.6
1983	91,014,469	90,591,843	1,888	420,738	99.5
1984	93,133,265	92,547,119	5,679	580,467	99.4
1985	14,387,276	14,215,088	477	171,711	98.8
1986	14,991,276	14,758,011	14,081	219,184	98.4
1987	16,857,545	16,661,233	1,228	195,084	98.8
1988	18,971,649	18,713,540	553	257,556	98.6
1989	7,481,528	7,268,021	36	213,471	97.1
1990	6,175,025	5,988,519	20	186,486	97.0
1991	6,002,641	5,832,252	339	170,050	97.2
1992	3,222,644	2,986,892	—	235,752	92.7
1993	2,317,098	2,248,633	—	68,465	97.0
1994	2,455,929	2,303,323	408	152,198	93.8
1995	2,151,905	2,066,209	78	85,618	96.0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46] 연도별 농지세 부과실적

(단위 : 천원, 명)

	세 액	인 원
1962	2,290,199	2,015,615
1963	3,093,790	1,985,772
1964	3,919,976	1,952,143
1965	4,023,602	1,897,686
1966	5,503,749	2,124,901
1967	3,379,805	841,661
1968	3,460,890	767,224
1969	4,854,200	822,841
1970	3,423,216	850,229
1971	4,534,000	902,260
1972	5,362,588	952,652
1973	8,147,199	1,324,790
1974	13,859,212	1,609,015
1975	20,983,163	1,190,146
1976	31,916,365	1,395,606
1977	35,880,770	1,312,685
1978	44,452,344	1,463,392
1979	53,819,703	1,253,629
1980	63,014,657	1,210,950
1981	77,810,192	1,271,629
1982	83,128,847	1,265,851
1983	91,013,587	1,353,174
1984	89,880,126	1,350,818
1985	14,167,337	275,374
1986	14,949,500	289,147
1987	16,822,789	322,414
1988	18,802,041	340,665
1989	7,129,550	101,536
1990	5,707,739	79,187
1991	5,811,724	95,586
1992	3,169,275	36,275
1993	2,250,271	18,575
1994	2,365,628	23,674
1995	2,151,905	22,592

주 : 인원은 비과세인원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47] 연도별 농지세 세액별 납세인원

(단위 : 명)

1968				1969				1970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2]		갑류농지세[3]		을류농지세	
합계	579,768[1]	합계	187,456[1]	합계	657,509[2]	합계	165,332	합계	692,316	합계	157,913
2.5kl 이상	164,156	6백원 이상	77,926	2.5kl 이상	172,977	6백원 이상	—	2.5kl 이상	—	6백원 미만	30,930
3kl 이상	164,099	1천2백원 이상	28,950	3kl 이상	187,626	1천2백원 이상	—	3kl 이상	—	6백원 이상	28,890
4kl 이상	88,528	1천8백원 이상	18,465	4kl 이상	110,007	1천8백원 이상	—	4kl 이상	—	1천2백원 이상	23,300
5kl 이상	56,045	2천1백원 이상	29,514	5kl 이상	66,099	2천1백원 이상	—	5kl 이상	—	1천8백원 이상	12,821
6kl 이상	54,169	3천6백원 이상	9,740	6kl 이상	60,028	3천6백원 이상	—	6kl 이상	—	2천원 이상	19,767
8kl 이상	24,078	4천원 이상	11,433	8kl 이상	33,452	4천원 이상	—	8kl 이상	—	3천원 이상	14,816
10kl 이상	13,684	6천원 이상	4,284	10kl 이상	16,694	6천원 이상	—	10kl 이상	—	4천원 이상	10,588
13kl 이상	4,168	8천원 이상	2,351	13kl 이상	5,140	8천원 이상	—	13kl 이상	—	6천원 이상	2,759
15kl 이상	3,383	1만원 이상	1,024	15kl 이상	4,116	1만원 이상	—	15kl 이상	—	8천원 이상	3,004
20kl 이상	1,051	1만2천원 이상	718	20kl 이상	1,527	1만2천원 이상	—	20kl 이상	—	1만원 이상	2,600
		1만4천원 이상	609			1만4천원 이상	—			1만2천원 이상	957
		1만6천원 이상	401			1만6천원 이상	—			1만4천원 이상	1,534
		1만8천원 이상	625			1만8천원 이상	—			1만6천원 이상	541
		2만4천원 이상	616			2만4천원 이상	—			1만8천원 이상	1,467
		2만8천원 이상	599			2만8천원 이상	—			2만원 이상	1,103
		4만원 이상	401			4만원 이상	—			3만원 이상	1,184
		6만원 이상	338			6만원 이상	—			4만원 이상	846
		8만원 이상	312			8만원 이상	—			6만원 이상	320
										8만원 이상	486

[표 5-47] 연도별 농지세 세액별 납세인원 (계속)

(단위 : 명)

1971				1972				1973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합계	691,886	합계	210,374	합계	687,423	합계	265,047	합계	797,281	합계	527,509
2.5kl 이상	269,171	6백원 미만	50,997	2.5kl 이상	242,849	6백원 미만	54,759	2.5kl 이상	294,115	6백원 미만	135,831
3kl 이상	143,837	6백원 이상	37,364	3kl 이상	166,314	6백원 이상	41,492	3kl 이상	171,818	6백원 이상	91,746
4kl 이상	92,951	1천2백원 이상	24,821	4kl 이상	91,382	1천2백원 이상	31,249	4kl 이상	106,510	1천2백원 이상	56,731
5kl 이상	67,408	1천8백원 이상	14,991	5kl 이상	68,295	1천8백원 이상	19,746	5kl 이상	72,461	1천8백원 이상	35,579
6kl 이상	59,973	2천원 이상	22,966	6kl 이상	56,515	2천원 이상	28,473	6kl 이상	55,518	2천원 이상	47,492
8kl 이상	25,254	3천원 이상	20,176	8kl 이상	27,887	3천원 이상	25,792	8kl 이상	36,949	3천원 이상	40,101
10kl 이상	14,392	4천원 이상	11,885	10kl 이상	14,920	4천원 이상	20,986	10kl 이상	33,137	4천원 이상	38,976
13kl 이상	5,879	6천원 이상	7,989	13kl 이상	6,388	6천원 이상	10,460	13kl 이상	9,535	6천원 이상	21,449
15kl 이상	7,876	8천원 이상	5,573	15kl 이상	5,132	8천원 이상	8,301	15kl 이상	9,040	8천원 이상	14,674
20kl 이상	5,145	1만원 이상	3,715	20kl 이상	7,741	1만원 이상	7,859	20kl 이상	8,198	1만원 이상	9,999
		1만2천원 이상	1,313			1만2천원 이상	2,897			1만2천원 이상	7,017
		1만4천원 이상	1,943			1만4천원 이상	2,562			1만4천원 이상	5,511
		1만6천원 이상	674			1만6천원 이상	2,057			1만6천원 이상	3,831
		1만8천원 이상	1,759			1만8천원 이상	1,583			1만8천원 이상	3,860
		2만원 이상	969			2만원 이상	1,996			2만원 이상	4,937
		3만원 이상	1,415			3만원 이상	1,459			3만원 이상	2,898
		4만원 이상	809			4만원 이상	1,391			4만원 이상	2,496
		6만원 이상	402			6만원 이상	797			6만원 이상	2,311
		8만원 이상	613			8만원 이상	1,188			8만원 이상	2,070

[표 5-47] 연도별 농지세 세액별 납세인원 (계속)

(단위 : 명)

1974				1975				1976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합계	987,300	합계	621,715	합계	762,669	합계	427,477	합계	962,060[4]	합계	433,546
2.5kl 이상	301,189	6백원 미만	154,838	3,000kg 이하	320,609	5백원 미만	44,761	3,000kg 이하	484,889	5백원 미만	31,512
3kl 이상	219,769	6백원 이상	112,323	4,000kg 이하	178,927	5백원 이상	50,507	4,000kg 이하	202,422	5백원 이상	43,451
4kl 이상	146,025	1천2백원 이상	73,412	5,000kg 이하	109,372	1천원 이상	59,575	5,000kg 이하	111,516	1천원 이상	59,135
5kl 이상	100,118	1천8백원 이상	44,067	6,000kg 이하	61,826	2천원 이상	51,619	6,000kg 이하	63,658	2천원 이상	55,395
6kl 이상	73,912	2천원 이상	55,072	7,000kg 이하	35,298	3천원 이상	43,474	7,000kg 이하	37,492	3천원 이상	45,514
7kl 이상	54,166	3천원 이상	44,255	9,000kg 이하	27,851	4천원 이상	64,960	9,000kg 이하	29,246	4천원 이상	62,923
9kl 이상	35,780	4천원 이상	43,325	11,000kg 이하	13,733	8천원 이상	40,407	11,000kg 이하	13,939	8천원 이상	43,690
11kl 이상	20,328	6천원 이상	21,164	13,000kg 이하	7,064	1만2천원 이상	25,482	13,000kg 이하	7,193	1만2천원 이상	31,903
13kl 이상	12,778	8천원 이상	16,049	15,000kg 이하	4,137	1만5천원 이상	14,126	15,000kg 이하	4,120	1만5천원 이상	17,642
15kl 이상	11,150	1만원 이상	12,098	15,000kg 초과	3,852	2만원 이상	11,341	15,000kg 초과	3,944	2만원 이상	16,185
20kl 이상	12,085	1만2천원 이상	9,150			3만원 이상	6,239			3만원 이상	9,034
		1만4천원 이상	7,328			3만7천5백원 이상	5,081			3만7천5백원 이상	5,886
		1만6천원 이상	5,463			5만5천원 이상	2,934			5만5천원 이상	3,562
		1만8천원 이상	5,295			7만원 이상	2,307			7만원 이상	1,945
		2만원 이상	6,158			8만원 이상	2,163			8만원 이상	2,071
		3만원 이상	3,983			10만원 이상	1,580			10만원 이상	2,397
		4만원 이상	2,846			20만원 이상	706			20만원 이상	884
		6만원 이상	2,036			50만원 이상	91			50만원 이상	249
		8만원 이상	2,853			70만원 이상	59			70만원 이상	60
						100만원 이상	22			100만원 이상	32
						120만원 이상	43			120만원 이상	76

[표 5-47] 연도별 농지세 세액별 납세인원 (계속)

(단위 : 명)

1977				1978				1979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합계	927,427	합계	385,258	합계	1,055,127[5]	합계	408,265[1]	합계	856,029	합계	397,600
3,000kg 이하	470,766	5백원 미만	19,327	3,000kg 이하	564,431	5백원 미만	10,909	3,000kg 이하	341,110	5백원 미만	7,355
4,000kg 이하	192,832	5백원 이상	35,205	4,000kg 이하	209,347	5백원 이상	27,090	4,000kg 이하	213,566	5백원 이상	18,914
5,000kg 이하	108,541	1천원 이상	75,555	5,000kg 이하	112,882	1천원 이상	70,035	5,000kg 이하	123,133	1천원 이상	51,690
6,000kg 이하	60,030	3천원 이상	66,382	6,000kg 이하	65,560	3천원 이상	67,353	6,000kg 이하	68,490	3천원 이상	51,227
7,000kg 이하	35,170	5천원 이상	67,950	7,000kg 이하	38,265	5천원 이상	76,453	7,000kg 이하	40,235	5천원 이상	69,536
8,000kg 이하	20,777	1만원 이상	60,356	8,000kg 이하	23,025	1만원 이상	67,450	8,000kg 이하	23,250	1만원 이상	67,335
9,000kg 이하	15,193	2만원 이상	25,663	9,000kg 이하	16,438	2만원 이상	33,102	9,000kg 이하	17,260	2만원 이상	45,121
10,000kg 이하	11,345	3만원 이상	11,203	10,000kg 이하	12,086	3만원 이상	17,549	10,000kg 이하	11,896	3만원 이상	28,731
15,000kg 이하	9,068	4만원 이상	7,242	15,000kg 이하	8,813	4만원 이상	10,352	15,000kg 이하	10,348	4만원 이상	17,367
20,000kg 이하	2,985	5만원 이상	5,463	20,000kg 이하	3,425	5만원 이상	8,697	20,000kg 이하	3,827	5만원 이상	13,268
20,000kg 초과	720	7만원 이상	3,247	20,000kg 초과	836	7만원 이상	5,619	20,000kg 초과	2,914	7만원 이상	6,857
		8만원 이상	2,791			8만원 이상	5,029			8만원 이상	6,051
		10만원 이상	2,939			10만원 이상	5,509			10만원 이상	8,203
		20만원 이상	1,432			20만원 이상	3,054			20만원 이상	4,134
		50만원 이상	247			50만원 이상	536			50만원 이상	1,017
		70만원 이상	106			70만원 이상	214			70만원 이상	421
		100만원 이상	96			100만원 이상	131			100만원 이상	195
		150만원 이상	21			150만원 이상	44			150만원 이상	97
		200만원 이상	33			200만원 이상	40			200만원 이상	81

[표 5-47] 연도별 농지세 세액별 납세인원 (계속)

(단위 : 명)

1980				1981				1982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합계	784,259[6]	합계	426,691[6]	합계	821,113[7]	합계	450,516[7]	합계	846,965	합계	418,886
3,000kg 이하	367,725	5백원 미만	2,820	3,000kg 이하	271,420	5백원 이상	13,804	3,000kg 이하	305,751	5백원 이상	9,428
4,000kg 이하	157,155	5백원 이상	16,725	4,000kg 이하	215,551	1천원 이상	46,945	4,000kg 이하	216,050	1천원 이상	41,283
5,000kg 이하	97,796	1천원 이상	49,152	5,000kg 이하	130,780	3천원 이상	52,098	5,000kg 이하	127,582	3천원 이상	47,361
6,000kg 이하	58,075	3천원 이상	52,654	6,000kg 이하	75,793	5천원 이상	74,025	6,000kg 이하	74,038	5천원 이상	70,692
7,000kg 이하	34,740	5천원 이상	67,928	7,000kg 이하	47,918	1만원 이상	74,440	7,000kg 이하	45,543	1만원 이상	73,242
8,000kg 이하	22,573	1만원 이상	69,412	8,000kg 이하	27,879	2만원 이상	52,259	8,000kg 이하	27,237	2만원 이상	49,177
9,000kg 이하	16,008	2만원 이상	44,719	9,000kg 이하	19,065	3만원 이상	39,358	9,000kg 이하	18,117	3만원 이상	38,815
10,000kg 이하	12,970	3만원 이상	36,898	10,000kg 이하	13,681	4만원 이상	26,337	10,000kg 이하	12,940	4만원 이상	23,930
15,000kg 이하	11,163	4만원 이상	23,476	15,000kg 이하	13,242	5만원 이상	22,762	15,000kg 이하	14,368	5만원 이상	23,182
20,000kg 이하	3,544	5만원 이상	21,344	20,000kg 이하	3,810	7만원 이상	12,924	20,000kg 이하	3,402	7만원 이상	11,530
20,000kg 초과	3,008	7만원 이상	10,959	20,000kg 초과	2,013	8만원 이상	11,996	20,000kg 초과	1,937	8만원 이상	10,882
		8만원 이상	11,435			10만원 이상	14,025			10만원 이상	12,269
		10만원 이상	12,870			20만원 이상	7,043			20만원 이상	5,240
		20만원 이상	6,692			50만원 이상	1,409			50만원 이상	906
		50만원 이상	1,244			70만원 이상	519			70만원 이상	367
		70만원 이상	620			100만원 이상	384			100만원 이상	298
		100만원 이상	311			150만원 이상	128			150만원 이상	139
		150만원 이상	117			200만원 이상	103			200만원 이상	145
		200만원 이상	135								

[표 5-47] 연도별 농지세 세액별 납세인원(계속)

(단위 : 명)

1983				1984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합계	933,991	합계	419,183	합계	957,523	합계	393,295
3,000kg 이하	328,701	5백원 이상	11,404	3,000kg 이하	367,678	5백원 이상	9,604
4,000kg 이하	241,489	1천원 이상	43,541	4,000kg 이하	249,619	1천원 이상	35,859
5,000kg 이하	141,293	3천원 이상	49,934	5,000kg 이하	139,487	3천원 이상	44,137
6,000kg 이하	85,219	5천원 이상	75,002	6,000kg 이하	78,058	5천원 이상	65,334
7,000kg 이하	50,556	1만원 이상	71,321	7,000kg 이하	46,044	1만원 이상	66,912
8,000kg 이하	29,687	2만원 이상	45,914	8,000kg 이하	27,239	2만원 이상	44,442
9,000kg 이하	19,319	3만원 이상	34,164	9,000kg 이하	17,978	3만원 이상	34,501
10,000kg 이하	15,257	4만원 이상	21,214	10,000kg 이하	11,924	4만원 이상	22,153
15,000kg 이하	16,878	5만원 이상	21,834	15,000kg 이하	14,512	5만원 이상	22,041
20,000kg 이하	3,808	7만원 이상	10,630	20,000kg 이하	3,213	7만원 이상	11,925
20,000kg 초과	1,784	8만원 이상	10,562	20,000kg 초과	1,771	8만원 이상	12,006
		10만원 이상	14,047			10만원 이상	14,704
		20만원 이상	6,880			20만원 이상	6,795
		50만원 이상	1,346			50만원 이상	1,363
		70만원 이상	731			70만원 이상	698
		100만원 이상	300			100만원 이상	355
		150만원 이상	168			150만원 이상	215
		200만원 이상	191			200만원 이상	251

[표 5-47] 연도별 농지세 세액별 납세인원(계속)

(단위 : 명)

	1985[8)]	1986	1987	1988	1989	1990
합 계	275,374	289,147	322,414	340,665	101,536	79,187
5백원 이상	4,578	5,297	4,885	5,504	1,607	688
1천원 이상	13,133	13,363	14,205	14,321	4,488	2,966
3천원 이상	17,249	17,586	18,573	18,719	5,586	3,366
5천원 이상	33,596	37,344	38,629	37,884	11,655	8,037
1만원 이상	52,926	54,711	58,139	59,153	17,137	14,058
2만원 이상	40,489	43,247	47,702	52,083	14,238	11,945
3만원 이상	45,459	47,189	54,552	60,776	16,140	13,995
5만원 이상	42,188	44,200	54,258	56,892	17,808	14,392
10만원 이상	16,504	17,582	21,537	24,302	7,960	6,056
20만원 이상	7,034	6,480	7,694	8,705	3,398	2,665
50만원 이상	1,488	1,325	1,541	1,639	930	621
1백만원 이상	470	503	429	479	406	259
2백만원 이상	125	125	97	88	75	64
3백만원 이상	81	104	101	55	55	37
5백만원 이상	36	56	48	39	26	22
1천만원 이상	18	35	24	26	27	16

[표 5-47] 연도별 농지세 세액별 납세인원(계속)

(단위 : 명)

	1991	1992	1993	1994	1995
합 계	95,586	36,275	18,575	23,673	22,592
1천원 이상	4,350	1,311	569	395	721
3천원 이상	5,756	1,974	1,058	834	883
5천원 이상	12,419	4,789	3,031	3,318	3,584
1만원 이상	19,404	8,672	4,217	7,096	7,040
2만원 이상	15,219	5,709	2,171	3,469	2,748
3만원 이상	16,047	5,520	2,734	3,279	2,532
5만원 이상	14,235	4,771	2,788	2,902	2,720
10만원 이상	4,684	1,993	1,048	1,260	1,131
20만원 이상	2,157	844	531	577	661
50만원 이상	901	412	212	281	314
1백만원 이상	242	152	102	143	126
2백만원 이상	98	48	30	43	59
3백만원 이상	36	41	34	40	34
5백만원 이상	17	18	26	15	21
1천만원 이상	21	21	24	21	18

주 : 1) 지방세정연감(1969)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으나 구분별 합계는 갑류 : 573,361명; 을류 : 188,306명임.
2) 지방세정연감(1970)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으나 구분별 합계는 657,666명이며, 을류농지세의 경우 세액별 인원이 일부 기입되어 있지 않음.
3) 1970년의 갑류농지세의 경우 세액별 인원이 일부 기입되어 있지 않음.
4) 지방세정연감(1977)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으나 구분별 합계는 958.419명임.
5) 지방세정연감(1979)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으나 구분별 합계는 1,055,108명임.
6) 지방세정연감(1981)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으나 구분별 합계는 갑류 : 784,757명; 을류 : 429,511명임.
7) 지방세정연감(1982)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으나 구분별 합계는 갑류 : 821,152명; 을류 : 450,559명임.
8) 1984년 세법개정시 갑류농지세와 을류농지세를 통합.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48] 연도별 농지세 과표 단계별 납세인원

(단위 : 천원, 명)

		1985	1986	1987	1988
합 계	과 표	196,882,047[1]	214,071,437	245,193,997	270,781,714
	세 액	14,167,237	14,949,500	16,822,789	18,802,041
	인 원	275,373	289,147	322,414	340,665
180만원 이하	과 표	122,538,902	132,762,956	154,749,566	168,604,993
	세 액	7,688,489	7,788,150	9,164,213	10,009,864
	인 원	251,692	260,954	290,626	305,410
250만원 이하	과 표	26,040,512	27,955,209	34,209,590	37,345,252
	세 액	1,682,171	1,712,027	2,104,694	2,334,337
	인 원	13,324	14,793	17,734	18,978
350만원 이하	과 표	15,920,909	19,638,703	22,671,245	25,221,443
	세 액	1,230,210	1,349,577	1,621,237	1,797,860
	인 원	5,606	7,506	8,089	8,924
480만원 이하	과 표	10,107,629	12,598,858	12,781,833	15,956,662
	세 액	904,787	986,735	1,005,067	1,338,090
	인 원	2,558	3,339	3,302	4,094
630만원 이하	과 표	5,917,890	6,606,049	7,516,493	9,383,878
	세 액	599,859	621,255	696,118	913,215
	인 원	1,086	1,232	1,415	1,828
800만원 이하	과 표	3,181,334	3,543,888	3,771,714	4,769,744
	세 액	374,159	382,034	409,030	526,388
	인 원	448	524	547	703
1,000만원 이하	과 표	2,502,167	3,467,577	2,883,110	3,577,018
	세 액	333,456	465,475	363,377	471,824
	인 원	290	365	332	405
1,250만원 이하	과 표	1,584,967	1,895,924	1,537,742	1,420,136
	세 액	242,816	279,463	224,080	211,881
	인 원	139	172	138	133
1,550만원 이하	과 표	1,229,890	1,515,595	1,054,788	993,300
	세 액	213,022	255,238	177,626	176,901
	인 원	91	111	75	71
1,900만원 이하	과 표	823,739	973,248	891,014	786,328
	세 액	157,972	183,504	166,859	168,060
	인 원	51	58	53	43
2,300만원 이하	과 표	698,510	745,256	750,816	431,593
	세 액	149,187	157,046	157,767	95,288
	인 원	34	36	37	23
2,900만원 이하	과 표	612,982	531,434	569,423	484,256
	세 액	143,542	129,591	136,051	113,602
	인 원	25	21	23	19
3,700만원 이하	과 표	421,925	324,245	598,307	488,719
	세 액	118,314	85,292	159,222	128,283
	인 원	13	10	19	15
4,700만원 이하	과 표	241,447	586,074	453,569	305,380
	세 액	67,503	178,507	149,372	99,120
	인 원	6	14	11	7
6,000만원 이하	과 표	314,840	363,049	267,470	144,944
	세 액	111,226	118,871	81,603	49,249
	인 원	6	7	5	3
6,000만원 초과	과 표	377,783	563,372	487,317	868,068
	세 액	150,524	256,735	206,473	368,079
	인 원	4	5	8	9

[표 5-48] 연도별 농지세 과 표 단계별 납세인원(계속)

(단위 : 천원, 명)

		1989	1990
합 계	과 표	110,069,078	88,960,119
	세 액	7,129,550	5,707,739[2]
	인 원	101,536	79,187
250만원 이하	과 표	73,203,748	57,643,226
	세 액	3,668,930	2,804,882
	인 원	92,831	71,987
500만원 이하	과 표	21,679,174	18,282,039
	세 액	1,333,562	1,173,763
	인 원	6,870	5,692
800만원 이하	과 표	7,087,348	5,861,226
	세 액	632,337	519,930
	인 원	1,225	941
1,200만원 이하	과 표	3,848,630	3,613,805
	세 액	488,953	432,864
	인 원	423	388
1,700만원 이하	과 표	1,113,459	1,357,422
	세 액	167,849	202,998
	인 원	82	102
2,300만원 이하	과 표	1,078,982	854,713
	세 액	205,557	168,778
	인 원	55	45
5,000만원 이하	과 표	1,314,427	928,972
	세 액	365,685	257,206
	인 원	39	25
5,000만원 초과	과 표	743,310	418,716
	세 액	266,677	147,044
	인 원	11	7

[표 5-48] 연도별 농지세 과 표 단계별 납세인원(계속)

(단위 : 천원, 명)

		1991	1992	1993	1994	1995
합 계	과 표	145,678,305	53,650,604	39,821,755	37,564,723	31,895,221[3]
	세 액	5,811,724	3,169,275	2,250,271	2,365,628	2,151,905
	인 원	95,586	36,275	18,575	23,674	22,592
400만원 이하	과 표	110,067,005	37,122,994	26,587,498	23,564,038	19,669,230
	세 액	2,800,533	1,126,174	772,492	709,913	592,716
	인 원	89,909	33,280	17,234	21,900	21,208
1,000만원 이하	과 표	27,798,168	11,247,763	6,094,447	8,786,194	6,221,265
	세 액	1,585,156	779,758	400,734	589,281	502,704
	인 원	5,290	2,689	1,146	1,536	1,126
2,500만원 이하	과 표	5,005,487	2,830,281	2,427,901	3,262,956	2,877,222
	세 액	567,689	364,911	396,686	405,145	362,730
	인 원	341	257	147	204	201
5,000만원 이하	과 표	903,786	979,588	1,179,409	851,992	1,167,303
	세 액	206,924	279,417	264,727	351,977	187,909
	인 원	27	34	36	19	35
5,000만원 초과	과 표	1,903,859	1,469,978	3,532,500	1,099,543	2,068,516
	세 액	651,422	619,015	415,632	309,312	505,846
	인 원	19	15	12	15	12

주 : 1) 지방세정연감(1986)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으나 구분별 실제 합계는 192,515,426천원임.
2) 지방세정연감(1991)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으나 구분별 실제 합계는 5,707,465천원임.
3) 지방세정연감(1996)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으나 구분별 실제 합계는 32,003,536천원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49] 연도별 농지세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77	438,351	9,825,621	435,982	9,766,682	—	—	534	6,935	1,364	51,334	471	670
1978	356,503	1,876,335	355,561	1,862,443	1	83	269	1,043	626	12,065	46	701
1979	316,950	4,856,921	314,933	4,735,358	—	—	1,523	34,084	231	16,469	263	71,010
1980	435,915	16,464,920	431,776	15,737,711	38	895	1,458	61,316	2,640	664,857	3	141
1981	274,731	11,169,949	272,137	10,574,243	11	1,736	2,367	69,205	210	524,520	6	245
1982	390,230	10,886,671	387,409	10,801,141	—	—	2,218	69,833	587	12,401	16	3,296
1983	272,323	7,281,343	269,898	7,177,702	—	—	1,740	79,478	685	24,163	—	—
1984	256,516	9,914,272	254,151	9,877,941	—	—	2,275	35,268	45	290	45	773
1985	130,497	5,679,640	130,465	5,677,446	—	—	30	2,088	—	—	2	106
1986	179,135	6,331,522	179,135	6,331,522	—	—	—	—	—	—	—	—
1987	154,712	2,984,147	154,585	2,982,057	—	—	22	2	105	2,088	—	—
1988	151,933	1,435,558	151,907	1,434,958	—	—	26	600	—	—	—	—
1989	136,298	753,202	136,298	753,202	—	—	—	—	—	—	—	—
1990	93,366	874,205	93,318	864,231	—	—	—	—	—	—	48	9,974
1991	92,459	1,773,611	92,402	1,762,917	—	—	9	468	—	—	48	10,226
1992	80,528	1,885,326	80,528	1,885,326	—	—	—	—	—	—	—	—
1993	33,621	94,354	33,597	92,424	—	—	11	1,640	—	—	13	290
1994	8,987	54,791	8,959	54,332	—	—	—	—	—	—	28	459
1995	170	49,219	161	48,944	—	—	—	—	—	—	9	275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5) 도축세

[표 5-50] 연도별 도축세 및 동부가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62	118,554	118,428	—	—	99.9
1963	138,902	138,884	—	—	100.0
1964	188,527	188,509	—	—	100.0
1965	171,743	171,728	—	—	100.0
1966	190,920	190,691	—	—	99.9
1967	178,462	178,431	—	—	100.0
1968	166,061	166,039	—	—	100.0
1969	199,060	199,047	—	—	100.0
1970	235,885	235,842	—	43	100.0
1971	214,897	214,876	—	21	100.0
1972	227,271	227,266	—	6	100.0
1973	225,361	225,198	1	162	99.9
1974	305,284	305,282	—	2	100.0
1975	548,050	546,142	—	1,908	99.7
1976	1,093,811	1,093,432	—	379	100.0
1977	1,375,444	1,375,434	—	10	100.0
1978	1,453,752	1,453,704	—	48	100.0
1979	3,847,158	3,844,384	—	2,774	99.9
1980	4,684,425	4,680,463	—	3,962	99.9
1981	6,328,806	6,199,928	—	128,878	98.0
1982	7,817,660	7,813,953	—	3,707	100.0
1983	10,629,013	10,628,925	—	88	100.0
1984	12,712,686	12,712,567	—	119	100.0
1985	15,546,181	15,538,107	—	8,074	99.9
1986	18,600,542	18,590,189	—	10,353	99.9
1987	19,359,972	19,303,668	—	56,304	99.7
1988	17,825,053	17,821,988	—	3,065	100.0
1989	17,388,530	17,348,290	—	40,240	99.8
1990	17,778,571	17,778,181	—	390	100.0
1991	21,812,673	21,764,203	—	48,470	99.8
1992	22,537,472	22,528,846	—	8,626	100.0
1993	26,266,420	26,266,384	—	36	100.0
1994	30,004,349	29,878,406	—	125,943	99.6
1995	33,956,112	33,911,426	—	44,686	99.9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51] 연도별 도축세 및 동부가세 부과실적

(단위 : 두, 천원)

	합 계		소		돼 지		말	
	두 수	세 액	두 수	세 액	두 수	세 액	두 수	세 액
1967	630,295	178,359	250,326	125,163	379,940	53,192	29	4
1968	630,727	166,078	216,046	108,023	414,636	58,049	45	6
1969	861,085	198,958	217,793	108,897	643,244	90,054	48	7
1970	924,470	231,873	284,566	142,283	639,740	89,567	164	23
1971	814,753	214,550	278,759	139,370	535,848	75,159	146	21
1972	1,025,387	222,296	218,337	109,169	806,596	113,063	454	64
1973	959,698	223,691	248,148	124,074	710,933	99,531	617	86
1974	1,352,550	301,169	310,589	155,294	1,041,956	145,874	5	1
1975	1,577,107	547,408	479,783	368,756	1,097,324	178,652	—	—
1976	1,419,862	1,092,581	403,370	632,140	1,016,492	460,441	—	—
1977	1,867,973	1,366,763	337,821	600,403	1,530,152	766,360	—	—
1978	1,442,273	1,439,757	269,570	635,173	1,172,703	804,584	—	—
1979	2,102,746	3,776,895	425,564	2,103,094	1,677,182	1,673,801	—	—
1980	2,633,440	4,688,734	541,717	3,263,446	2,091,723	1,425,288	—	—
1981	2,263,426	6,389,866	425,894	3,395,396	1,837,532	2,994,470	—	—
1982	2,715,155	7,940,851	304,832	3,477,058	2,410,323	4,463,793	—	—
1983	3,835,360	10,515,747	308,326	4,544,731	3,527,034	5,971,016	—	—
1984	5,563,341	12,649,894	439,732	6,748,316	5,123,609	5,901,578	—	—
1985	5,824,344	15,500,329	730,638	9,198,725	5,093,706	6,301,604	—	—
1986	6,059,143	18,483,155	1,064,093	10,809,383	4,995,050	7,673,772	—	—
1987	7,331,576	19,226,233	1,015,420	10,183,807	6,316,156	9,042,426	—	—
1988	8,691,213	17,752,183	871,376	9,486,830	7,819,837	8,265,353	—	—
1989	9,714,034	17,217,977	654,190	8,232,669	9,059,844	8,985,308	—	—
1990	9,228,392	17,562,571	599,799	9,346,750	8,628,593	8,215,821	—	—
1991	8,921,761	21,568,848	542,773	9,997,030	8,378,988	11,571,818	—	—
1992	9,960,807	22,279,804	532,969	10,853,293	9,427,838	11,426,511	—	—
1993	9,196,724	25,987,749	713,000	14,071,300	8,483,724	11,916,449	—	—
1994	11,544,029	30,004,693	784,701	16,505,597	10,759,328	13,499,096	—	—
1995	11,824,632	33,956,112	778,659	18,653,478	11,045,973	15,302,634	—	—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52] 연도별 도축세 및 동부가세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83	18,786	570,052	18,738	543,426	18	26,305	30	321	—	—	—	—
1984	—	—	—	—	—	—	—	—	—	—	—	—
1985	—	—	—	—	—	—	—	—	—	—	—	—
1986	—	—	—	—	—	—	—	—	—	—	—	—
1987	—	—	—	—	—	—	—	—	—	—	—	—
1988	—	—	—	—	—	—	—	—	—	—	—	—
1989	—	—	—	—	—	—	—	—	—	—	—	—
1990	—	—	—	—	—	—	—	—	—	—	—	—
1991	—	—	—	—	—	—	—	—	—	—	—	—
1992	—	—	—	—	—	—	—	—	—	—	—	—
1993	—	—	—	—	—	—	—	—	—	—	—	—
1994	—	—	—	—	—	—	—	—	—	—	—	—
1995	—	—	—	—	—	—	—	—	—	—	—	—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6) 담배소비세

[표 5-53] 연도별 담배소비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85	86,208,377	86,208,377	—	—	100.0
1986	89,292,413	89,292,413	—	—	100.0
1987	93,861,182	93,861,182	—	—	100.0
1988	309,600,206	309,600,206	—	—	100.0
1989	1,412,994,438	1,412,994,438	—	—	100.0
1990	1,571,811,741	1,571,811,741	—	—	100.0
1991	1,646,865,340	1,646,865,340	—	—	100.0
1992	1,727,289,035	1,727,289,035	—	—	100.0
1993	1,745,427,007	1,745,426,655	—	352	100.0
1994	2,044,974,386	2,044,974,386	—	—	100.0
1995	2,151,851,491	2,151,851,437	—	54	100.0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54] 연도별 담배소비세 부과실적

(단위 : 천갑, 천원)

	수 량	세 액
1985	—	84,679,226
1986	—	88,682,840
1987	—	93,256,192
1988	—	308,998,753
1989	4,303,193	1,409,236,728
1990	4,699,592	1,571,426,396
1991	4,831,130	1,645,188,301
1992	5,043,762	1,724,059,453
1993	4,987,239	1,736,124,352
1994	4,716,193	2,043,340,207
1995	4,905,114	2,151,851,491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55] 연도별 담배소비세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88	525,512	813,268	507,442	808,754	—	—	—	—	—	—	18,070	4,514
1989	8,287	27,214	8,287	27,214	—	—	—	—	—	—	—	—
1990	—	—	—	—	—	—	—	—	—	—	—	—
1991	—	—	—	—	—	—	—	—	—	—	—	—
1992	—	—	—	—	—	—	—	—	—	—	—	—
1993	—	—	—	—	—	—	—	—	—	—	—	—
1994	—	—	—	—	—	—	—	—	—	—	—	—
1995	—	—	—	—	—	—	—	—	—	—	—	—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7) 종합토지세

[표 5-56] 연도별 종합토지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90	415,514,193	399,871,471	13,735	15,628,987	96.2
1991	533,290,316	518,178,872	49,109	15,062,335	97.2
1992	403,265,211	394,490,513	20,372	8,754,326	97.8
1993	870,991,580	842,396,380	64,621	28,530,579	96.7
1994	1,072,280,392	1,026,186,714	31,062	46,062,616	95.7
1995	1,318,894,324	1,254,267,442	251,190	64,375,692	95.1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57] 연도별 종합토지세 부과실적

(단위 : 명, 건, 천m^2, 백만원, 천원)

	납세인원	물 건 수	면 적	과세표준액	세 액
1990	11,773,457	27,224,864	65,559,871	107,751,021	447,667,185
1991	11,459,013	27,492,816	65,132,973	135,232,056	531,441,928
1992	11,730,137	28,073,044	66,081,601	171,373,579	695,118,738
1993	11,887,481	28,679,163	66,056,027	206,824,480	891,145,002
1994	12,557,536	29,550,717	66,914,160	251,964,274	1,074,831,933
1995	12,803,365	31,396,886	69,807,306	295,118,542	1,329,952,220

주 : 과세표준액의 단위는 백만원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58] 연도별 종합토지세 개인에 대한 과세상황

(단위 : 명, 건, 천m^2, 백만원, 천원)

	납세인원	물 건 수	면 적	과세표준액	세 액
1990	11,596,332	26,318,172	28,695,871	88,518,947	246,680,967
1991	11,262,614	26,210,844	57,203,943	109,161,823	306,692,744
1992	11,351,861	26,670,355	58,039,600	137,127,417	409,281,003
1993	11,641,928	27,183,899	57,745,155	165,327,388	584,957,135
1994	12,311,830	27,715,036	56,774,983	199,379,873	679,846,309
1995	12,498,651	29,542,391	60,127,508	231,994,391	769,861,275

주 : 과세표준액의 단위는 백만원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59] 연도별 종합토지세 법인에 대한 과세상황

(단위 : 명, 건, 천m², 백만원, 천원)

	납세인원	물 건 수	면 적	과세표준액	세 액
1990	52,288	315,223	2,591,884	15,559,170	165,728,476
1991	61,331	418,347	2,620,336	21,110,528	191,807,748
1992	66,348	495,235	2,824,725	25,972,335	239,501,225
1993	98,563	541,623	2,821,601	32,142,627	243,492,379
1994	84,498	619,544	3,334,409	39,470,833	329,624,279
1995	108,317	668,927	3,400,850	47,556,251	457,224,227

주 : 과세표준액의 단위는 백만원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60] 연도별 종합토지세 기타단체에 대한 과세상황

(단위 : 명, 건, 천m², 백만원, 천원)

	납세인원	물 건 수	면 적	과세표준액	세 액
1990	124,837	591,469	4,272,116	3,672,904	35,257,742
1991	135,068	863,625	5,308,694	4,959,705	32,941,436
1992	131,928	907,454	5,217,276	8,273,827	46,336,510
1993	146,990	953,641	5,489,271	9,354,465	62,695,488
1994	161,208	1,216,137	6,804,768	13,112,968	65,361,345
1995	196,397	1,185,568	6,278,948	15,567,900	102,866,718

주 : 과세표준액의 단위는 백만원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61] 연도별 종합토지세 형태별 과세상황

(단위 : 건, 천m², 백만원)

	합 계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 리 과 세		
	물건수	면 적	과 표	물건수	면 적	과 표	물건수	면 적	과 표	물건수	면 적	과 표
1990	27,224,864	65,559,871	107,751,021	12,448,387	29,500,136	57,106,457	685,782	143,765	19,588,112	14,090,695	35,915,970	31,056,452
1991	27,492,816	65,132,973	135,232,056	12,419,097	25,767,345	69,851,183	861,349	470,934	25,838,092	14,212,370	38,894,694	39,542,781
1992	28,073,044	66,081,601	171,373,579	12,962,714	26,107,870	86,793,928	931,463	485,258	35,732,974	14,178,867	39,488,473	48,846,677
1993	28,679,163	66,056,027	206,824,480	13,663,506	26,107,160	106,541,312	1,016,375	562,040	43,871,230	13,999,282	39,386,827	56,411,938
1994	29,550,717	66,914,160	251,964,275	14,497,928	27,357,565	128,361,730	1,090,921	571,267	56,543,986	13,961,868	38,985,328	67,058,559
1995	31,396,886	69,807,306	295,118,542	15,358,074	28,317,458	152,222,180	1,133,028	594,953	68,394,409	14,905,784	40,894,895	74,501,953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62] 연도별 종합토지세 지목별 과세상황

(단위 : 건, 천m², 백만원)

	합계			전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1990	12,006,104	28,068,701	55,914,028	935,827	1,109,524	2,000,996
1991	27,492,816	64,132,973	135,232,056	6,561,184	8,064,326	9,548,653
1992	28,073,044	66,081,601	171,373,579	6,544,827	7,962,172	11,459,999
1993	28,679,163	66,056,027	206,824,480	6,437,947	8,173,169	14,005,405
1994	29,550,717	66,914,160	251,962,274	6,554,355	8,219,617	16,015,929
1995	31,396,886	69,807,306	295,118,546	7,202,970	9,473,546	18,877,852

	답			과수원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1990	892,778	1,246,872	2,372,390	31,263	78,915	143,294
1991	8,046,621	11,175,518	18,510,922	211,725	490,774	843,097
1992	8,015,863	12,152,503	20,894,074	215,858	488,028	1,016,520
1993	8,117,137	12,504,458	23,897,011	219,184	509,021	1,371,554
1994	8,077,322	12,466,523	26,979,626	243,567	551,414	1,663,611
1995	8,503,166	13,517,294	29,291,609	337,587	714,173	2,075,385

	목작용지			임야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1990	11,132	117,954	68,982	2,483,620	23,469,533	4,965,227
1991	46,707	477,514	288,384	3,524,536	40,619,632	8,919,629
1992	67,019	570,559	381,915	3,580,251	41,233,634	12,698,676
1993	46,780	444,131	424,123	3,611,514	40,529,782	14,764,759
1994	58,508	526,282	590,940	3,688,106	41,080,779	17,235,709
1995	59,534	556,065	616,227	3,771,515	41,045,975	23,915,360

	대지			공장용지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1990	7,458,979	1,634,659	43,379,077	40,032	52,085	1,997,223
1991	8,713,656	2,396,259	82,583,980	146,987	359,889	11,377,501
1992	9,226,115	2,549,220	109,747,940	198,797	586,884	12,200,616
1993	9,680,328	2,704,087	128,948,576	255,272	619,832	16,802,067
1994	10,280,724	2,432,372	164,915,574	277,587	630,057	19,557,269
1995	11,038,154	3,108,371	193,331,436	174,233	722,470	21,701,738

	잡종지			기타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1990	139,170	210,789	825,024	13,303	148,370	161,815
1991	176,287	331,614	1,706,350	65,113	217,447	1,453,540
1992	191,569	310,445	2,350,222	32,745	228,156	623,617
1993	261,188	335,408	4,547,386	49,813	236,139	2,063,599
1994	268,743	382,657	3,436,281	101,805	624,459	1,567,335
1995	244,900	342,208	3,668,625	64,827	327,204	1,640,314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63]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표단계별 과세상황 : 종합합산

(단위 : 명, 천m²)

	합 계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1990	7,549,332	29,500,136	7,063,073	22,306,307	366,573	3,195,376	79,147	1,449,001	33,419	1,328,129
1991	7,397,430	25,767,345	6,682,946	19,419,816	553,926	3,127,012	121,487	1,406,702	28,315	862,449
1992	7,710,126	26,107,870	6,711,078	18,984,875	780,575	3,489,525	140,514	1,479,879	61,940	1,117,434
1993	7,946,021	26,107,160	6,665,692	18,305,176	985,163	3,706,096	184,944	1,575,480	88,697	1,248,034
1994	8,493,360	27,357,565	6,898,975	18,299,398	1,204,024	4,277,865	245,769	1,693,805	112,327	1,373,286
1995	8,679,069	28,317,458	6,562,084	18,837,931	1,595,195	4,609,560	360,200	1,964,260	129,721	1,594,055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1990	3,844	426,107	2,058	352,907	967	280,591	133	85,851	118	75,867
1991	6,968	381,613	2,100	252,866	1,356	179,774	248	76,017	84	61,096
1992	10,735	403,926	3,395	238,309	1,442	245,834	299	59,907	148	88,181
1993	14,363	561,570	4,597	252,677	1,827	237,182	434	112,009	304	108,936
1994	22,712	495,716	6,667	279,589	2,202	708,357	462	111,346	222	118,203
1995	22,254	483,663	6,366	323,048	2,522	263,757	481	100,164	246	141,020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64]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표단계별 과세상황 : 별도합산

(단위 : 명, 천m²)

	합 계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1990	478,364	143,765	444,422	91,474	29,999	28,237	2,429	6,986	1,163	8,596
1991	536,766	470,934	491,152	400,055	40,039	36,677	3,442	9,466	1,660	10,990
1992	565,708	485,258	500,172	389,899	57,023	47,015	5,212	12,711	2,578	15,941
1993	609,566	562,040	524,506	352,988	72,863	100,874	7,210	30,644	3,845	46,030
1994	663,908	571,267	558,157	439,578	87,714	71,064	10,768	18,088	5,493	19,332
1995	775,488	594,953	228,004	77,097	108,003	58,100	321,756	277,942	52,107	26,638

	5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1990	179	4,073	113	2,126	55	2,138	2	33	2	102
1991	230	6,387	157	4,462	69	2,215	15	579	2	103
1992	364	5,667	228	7,624	110	5,208	9	540	12	653
1993	648	7,870	308	14,886	149	6,941	24	1,208	13	599
1994	1,144	6,777	418	8,628	174	4,509	26	2,193	14	1,098
1995	49,467	68,033	10,043	40,020	4,801	25,919	658	6,559	649	14,645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65]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표단계별 과세상황 : 분리과세

(단위 : 명, 천m²)

	합 계		1,000분의 1		1,000분의 3		1,000분의 50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1990	3,745,761	35,915,970	3,690,804	35,414,583	38,319	433,477	16,638	67,910
1991	3,524,817	38,894,694	3,427,211	35,723,744	79,796	3,046,321	17,810	124,629
1992	3,498,098	39,488,473	3,403,295	36,941,428	77,435	2,402,415	17,368	144,630
1993	3,449,568	39,386,827	3,338,964	32,669,230	88,376	5,601,287	22,228	1,116,310
1994	3,559,317	38,985,328	3,428,431	36,929,417	110,256	1,797,077	20,630	258,834
1995	3,348,808	40,894,895	3,230,523	38,941,200	95,288	1,705,072	22,997	248,623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66] 연도별 종합토지세 세액단계별 납세인원 상황

(단위 : 명)

	합 계	1천원 이하	5천원 이하	1만원 이하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990	9,733,991	1,410,197	2,757,660	1,960,165	2,935,765	333,324	264,317	35,580
1991	11,461,004	896,492	3,636,417	2,583,369	3,227,370	572,706	368,378	121,031
1992	11,732,129	—	4,390,484	2,414,428	3,524,600	728,130	489,971	116,919
1993	12,848,241[1]	960,760	3,553,507	2,450,163	4,045,761	961,460	638,477	157,043
1994	12,557,536	461,495	3,221,589	2,260,882	4,267,845	1,193,572	810,346	228,009
1995	12,803,365	648,643	2,574,982	2,271,262	4,581,439	1,327,216	1,011,825	252,283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990	27,973	3,456	2,862	372	320	7	3	—
1991	39,997	8,518	3,368	922	379	15	50	1
1992	49,603	9,869	4,653	977	455	33	15	—
1993	60,959	12,289	5,940	1,206	606	42	28	—
1994	81,001	21,920	7,890	2,120	730	46	89	2
1995	100,832	22,802	9,040	1,919	947	84	90	1

주 : 1) 부과실적의 인원 합계는 11,887,481명(1993)이나 세액단계별 인원 합계는 12,848,241명(1993)으로 수치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67] 연도별 종합토지세 비과세 감면 상황 : 총괄

(단위 : 건, 천m², 백만원)

	합 계			개 인		
	물 건 수	면 적	과 표	물 건 수	면 적	과 표
1990	10,211,174	31,238,694	31,992,644	3,001,743	2,920,936	3,091,616
1991	9,546,176	31,223,986	55,532,872	2,444,452	3,231,243	6,646,326
1992	9,694,399	31,283,580	67,205,528	2,562,789	2,455,326	6,858,712
1993	9,250,810	29,820,978	72,689,438	2,560,100	2,104,854	8,658,194
1994	10,573,635	32,518,416	63,291,042	2,814,823	2,937,426	7,277,972
1995	10,181,201	32,279,782	67,393,893	2,953,731	3,029,186	8,861,332

	법 인			기 타 단 체		
	물 건 수	면 적	과 표	물 건 수	면 적	과 표
1990	315,007	1,799,496	3,851,616	6,894,424	26,518,262	25,049,412
1991	1,192,725	6,021,339	15,087,402	5,908,999	21,971,404	33,799,144
1992	1,402,972	6,640,508	21,035,012	5,728,638	22,187,746	39,311,804
1993	1,220,411	6,718,502	20,725,954	5,470,299	20,997,622	43,305,290
1994	2,167,264	11,842,909	18,768,135	5,591,548	17,738,081	37,244,935
1995	2,111,857	12,359,689	18,479,410	5,115,613	16,890,907	40,053,151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68] 연도별 종합토지세 내역별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m², 백만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 계	물건수	10,211,174	9,546,176	9,694,399	9,250,810	10,573,635	10,181,201
	면 적	31,238,694	31,223,986	31,283,580	29,820,978	32,518,416	32,279,782
	과 표	31,992,644	55,532,872	67,205,528	72,689,438	63,291,042	67,393,893
국등에 대한 비과세	물건수	5,764,221	5,266,187	5,695,669	4,896,097	6,135,056	5,784,264
	면 적	25,208,065	24,020,015	25,323,231	24,519,281	25,329,699	25,521,350
	과 표	21,617,765	36,904,673	43,738,311	47,157,340	36,659,075	38,991,208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물건수	3,215,640	3,504,907	3,128,151	3,500,665	3,228,707	3,212,700
	면 적	4,966,550	6,336,811	5,076,743	4,275,476	5,007,802	5,067,277
	과 표	6,305,231	12,768,637	15,000,050	17,124,575	14,502,694	14,675,253
과세면제대상 법인	물건수	308,536	270,733	323,831	332,264	306,401	335,084
	면 적	343,896	365,967	419,991	408,645	532,440	475,580
	과 표	495,640	954,496	1,186,532	1,418,993	1,795,640	2,078,122
과세면제대상 토지	물건수	59,482	58,869	66,386	64,377	111,285	93,660
	면 적	80,849	119,079	109,410	130,044	317,988	243,853
	과 표	1,215,184	1,535,485	2,097,156	1,995,550	2,631,093	2,786,770
세액감면대상 법인	물건수	5,953	11,709	5,121	9,221	71,476	54,854
	면 적	16,125	28,349	18,253	76,105	235,472	185,021
	과 표	121,253	262,393	316,978	395,284	1,088,504	900,752
세액감면대상 토지	물건수	39,308	47,402	47,823	56,958	112,757	186,850
	면 적	50,145	117,550	103,358	69,667	343,342	164,429
	과 표	589,380	1,241,760	1,894,297	2,141,925	3,109,447	3,615,301
창업중소기업 감면	물건수	1,500	3,881	2,597	2,988	14,612	9,142
	면 적	3,340	43,533	46,608	42,517	88,877	140,436
	과 표	18,028	68,793	292,263	120,734	193,281	120,825
근로자 주거안정 감면	물건수	8,411	9,168	10,870	6,069	10,641	4,122
	면 적	1,389	2,679	2,866	973	3,427	12,463
	과 표	45,875	79,865	81,223	49,737	42,121	34,742
외국인 투자기업 면제	물건수	1,380	1,592	771	577	3,530	600
	면 적	2,988	4,876	3,932	2,887	5,199	1,063
	과 표	92,039	153,308	130,541	139,667	122,067	89,629
해저광물탐사 면제	물건수	62,969	2,770	136	75	59	18
	면 적	14,505	1,037	275	113	98	33
	과 표	75,720	1,750	982	1,313	136	81
특별감면조례 감면	물건수	743,774	368,958	413,044	381,519	579,111	499,907
	면 적	550,842	184,090	178,913	295,270	654,072	468,277
	과 표	1,416,529	1,561,712	2,467,195	2,144,320	3,146,984	4,101,210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69] 연도별 종합토지세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감면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0	6,629,837	35,990,764	6,270,160	32,087,474	663	829,815	347,051	2,493,822	10,887	279,112	1,076	300,541
1991	6,985,427	95,466,000	6,664,001	90,933,663	837	361,371	302,439	3,849,103	17,588	315,535	562	6,328
1992	7,539,990	310,230,905	7,175,881	294,454,475	456	460,454	360,623	14,976,194	2,041	319,907	989	19,875
1993	8,075,964	250,342,016	7,497,150	213,279,409	339	293,318	551,160	36,437,575	27,315	331,714	–	–
1994	9,559,742	232,199,771	8,665,255	191,244,157	335	798,770	879,583	39,360,653	14,569	796,191	–	–
1995	10,181,201	219,842,470	9,549,604	190,400,199	282	125,373	561,859	28,568,552	69,456	748,346	–	–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8) 도시계획세

[표 5-70] 연도별 도시계획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62	—	—	—	—	—
1963	—	—	—	—	—
1964	1,255	734	—	—	58.5
1965	14,715	14,314	—	—	97.3
1966	68,545	64,974	—	—	94.8
1967	219,868	213,952	—	—	97.3
1968	1,162,739	1,132,375	—	—	97.4
1969	1,553,137	1,467,477	—	—	94.5
1970	2,329,455	2,206,294	697	122,464	94.7
1971	2,941,236	2,781,217	969	159,050	94.6
1972	5,841,072	5,490,877	4,336	345,859	94.0
1973	6,835,017	6,476,076	6,560	352,381	94.7
1974	8,716,489	8,321,759	2,914	391,816	95.5
1975	14,010,556	13,404,078	1,995	604,483	95.7
1976	18,185,516	17,522,398	950	662,168	96.4
1977	18,958,413	18,370,067	1,881	586,465	96.9
1978	20,649,353	20,064,960	7,197	577,196	97.2
1979	35,088,553	34,220,600	4,220	863,733	97.5
1980	52,464,470	50,965,292	13,474	1,485,704	97.1
1981	68,277,314	66,609,343	14,063	1,653,908	97.6
1982	82,615,820	80,628,450	15,307	1,972,063	97.6
1983	94,699,993	92,187,819	4,736	2,507,438	97.3
1984	102,863,087	100,443,491	4,589	2,415,007	97.6
1985	117,100,289	114,462,582	11,564	2,626,143	97.7
1986	126,631,503	123,863,460	26,504	2,741,539	97.8
1987	138,208,661	134,423,511	7,322	3,777,828	97.3
1988	152,408,654	149,081,710	43,974	3,282,970	97.8
1989	185,065,846	181,382,102	11,841	3,671,903	98.0
1990	250,003,716	243,623,924	16,928	6,362,864	97.4
1991	314,412,635	307,319,308	6,084	7,087,243	97.7
1992	403,265,211	394,490,513	20,372	8,754,326	97.8
1993	484,286,708	473,296,721	56,825	10,933,162	97.7
1994	582,727,399	563,953,182	24,495	18,749,722	96.8
1995	676,870,095	652,729,391	74,898	24,065,806	96.4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71] 연도별 도시계획세 부과실적

(단위 : 천원, 명)

	합 계		토 지		건 축 물	
	세 액	인 원	세 액	인 원	세 액	인 원
1967	221,924	287,730	—	—	—	—
1968	656,253	642,084	439,876	335,302	216,377	306,782
1969	811,471	694,529	559,303	373,362	252,168	321,167
1970	2,220,824	1,712,239	1,476,475	807,557	744,349	904,682
1971	2,947,553	2,041,077	1,804,721	960,132	1,142,832	1,080,945
1972	5,909,373	2,270,548	3,871,607	1,113,277	2,037,766	1,157,271
1973	6,779,991	2,583,365	4,336,060	1,242,716	2,443,931	1,340,649
1974	8,754,575	2,834,640	5,429,168	1,383,623	3,325,407	1,451,017
1975	14,102,281	3,254,189	8,017,942	1,607,161	6,084,339	1,647,028
1976	18,269,027	3,738,564	9,992,426	1,860,916	8,276,601	1,877,648
1977	18,252,396	3,765,119	9,867,526	1,883,293	8,384,870	1,881,826
1978	20,622,657	4,323,275	10,758,403	2,192,386	9,864,254	2,130,889
1979	35,006,503	4,994,797	19,588,688	2,529,302	15,417,815	2,465,495
1980	52,308,473	5,304,508	29,448,606	2,635,522	22,859,867	2,668,986
1981	67,897,049	5,742,759	38,903,698	2,872,610	28,993,351	2,870,149
1982	82,024,249	6,106,171	45,408,411	3,061,295	36,615,838	3,044,876
1983	94,359,189	6,567,322	51,915,067	3,291,747	42,444,122	3,275,575
1984	102,461,924	7,028,333	54,978,818	3,524,930	47,483,106	3,503,403
1985	116,712,787	7,421,006	63,096,393	3,737,677	53,616,394	3,683,329
1986	126,396,851	7,839,117	65,855,761	3,936,814	60,541,090	3,902,303
1987	137,694,516	8,305,379	71,045,677	4,136,931	66,648,839	4,168,448
1988	150,758,155	8,703,977	75,513,171	4,334,030	75,244,984	4,369,947
1989	184,758,393	9,377,387	91,054,376	4,672,189	93,704,017	4,705,198
1990	253,320,238	9,561,198	145,679,287	4,669,516	107,640,951	4,891,682
1991	313,022,833	10,161,200	181,653,055	4,886,888	131,369,778	5,274,312
1992	401,251,347	10,810,352	243,898,092	5,233,657	157,353,255	5,576,695
1993	481,596,740	11,822,100	297,935,953	5,766,821	183,660,787	6,055,279
1994	582,190,178	13,108,621	355,910,516	6,407,068	226,279,662	6,701,553
1995	678,748,861	13,684,715	433,242,070	6,693,490	245,506,791	6,991,225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72] 연도별 도시계획세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77	267,853	3,540,828	173,726	3,077,939	6,138	37,275	81,274	219,186	1,660	160,576	5,055	45,852
1978	278,549	4,236,214	262,265	3,950,693	146	19,851	14,758	94,650	1,324	170,909	56	111
1979	252,401	5,512,880	233,880	5,285,055	72	10,787	12,158	36,228	6,133	178,785	158	2,025
1980	352,876	8,386,742	318,003	7,710,699	200	180,977	23,941	152,209	10,646	341,841	86	1,016
1981	455,671	14,131,725	393,904	11,441,552	12	1,462	15,626	205,152	8,118	467,267	38,011	2,016,292
1982	481,488	15,692,187	431,387	12,382,908	224	484,208	14,805	382,838	1,965	178,920	33,107	2,263,313
1983	464,034	5,793,710	452,220	5,713,699	2	240	11,413	73,485	399	6,286	—	—
1984	581,199	13,500,211	566,880	13,292,927	15	2,049	13,057	85,682	914	118,766	333	787
1985	543,094	17,046,111	516,796	16,217,578	13	2,010	25,557	807,953	728	18,570	—	—
1986	534,679	15,120,652	516,380	14,867,642	—	—	18,299	253,010	—	—	—	—
1987	610,469	18,537,091	540,764	18,000,611	12	1,884	68,420	514,844	1,273	19,752	—	—
1988	595,596	22,867,173	546,618	22,377,462	—	—	46,952	412,416	—	—	2,026	77,295
1989	529,028	20,646,444	498,764	19,990,034	426	168,078	27,208	458,585	2,630	29,747	—	—
1990	827,255	14,500,603	793,976	12,986,045	—	—	32,323	1,504,124	—	—	956	10,434
1991	764,983	28,756,981	683,534	26,984,670	85	165,098	76,976	1,559,968	4,032	42,916	356	4,329
1992	894,649	29,708,353	785,472	26,995,290	—	—	109,093	2,711,304	—	—	84	1,759
1993	853,830	27,619,005	725,661	20,529,848	4	1,593	127,962	7,081,066	203	6,498	—	—
1994	1,389,106	46,612,230	1,269,432	36,625,867	37	8,663	118,640	9,939,336	997	38,364	—	—
1995	1,531,497	79,617,825	1,385,407	69,061,968	—	—	146,090	10,555,857	—	—	—	—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9) 사업소세

[표 5-73] 연도별 사업소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77	9,708,347	9,635,535	6	72,806	99.3
1978	16,799,908	16,705,619	592	93,697	99.4
1979	25,970,413	25,745,754	3,345	221,314	99.1
1980	31,150,952	30,748,817	8,969	393,166	98.7
1981	36,496,182	36,084,180	4,607	407,395	98.9
1982	43,726,371	43,283,872	18,506	423,993	99.0
1983	50,120,226	49,533,545	6,956	579,725	98.8
1984	56,122,303	55,534,342	10,640	577,321	99.0
1985	61,940,630	61,365,437	13,129	562,064	99.1
1986	68,717,153	68,047,472	5,345	664,336	99.0
1987	83,119,468	82,390,430	3,452	725,586	99.1
1988	103,015,597	102,343,807	4,829	666,961	99.3
1989	127,402,906	126,593,925	3,666	805,315	99.4
1990	146,681,568	145,589,816	11,782	1,079,970	99.3
1991	175,067,818	170,785,967	3,230	4,278,621	97.6
1992	213,117,147	211,647,609	15,414	1,454,124	99.3
1993	228,433,371	226,705,055	18,119	1,710,197	99.2
1994	255,398,143	253,059,211	6,474	2,332,458	99.1
1995	299,264,819	296,095,526	8,994	3,160,299	98.9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74] 연도별 사업소세 부과실적

(단위 : 명, 천원)

	합 계		종업원할		재산할(총괄)		재산할중과세	
	인 원	세 액	인 원	세 액	인 원	세 액	인 원	세 액
1977	68,302	9,665,295	53,162	5,130,720	15,140	4,534,575	—	—
1978	109,487	16,782,046	92,848	11,616,740	16,639	5,165,306	—	—
1979	131,730	25,774,559	108,890	18,084,390	22,840	7,690,169	—	—
1980	139,705	30,879,033	114,972	22,351,564	24,733	8,527,469	—	—
1981	151,057	36,136,947	124,207	26,906,105	26,850	9,230,842	—	—
1982	161,280	43,453,139	130,383	33,388,868	30,897	10,064,271	—	—
1983	175,671	49,882,806	141,183	38,898,238	34,488	10,984,568	—	—
1984	185,333	55,895,280	148,312	44,338,896	37,021	11,556,384	—	—
1985	195,952	61,638,238	155,986	49,110,138	39,966	12,528,100	—	—
1986	202,131	68,570,401	159,416	54,840,503	42,715	13,729,898	—	—
1987	230,739	81,736,368	184,458	66,170,976	46,281	15,565,392	—	—
1988	231,359	102,459,496	180,950	85,338,871	50,409	17,120,625	—	—
1989	259,634	126,105,068	204,481	105,996,549	55,153	20,108,519	—	—
1990	264,660	145,656,408	200,286	123,562,907	64,374	22,093,501	—	—
1991	282,561	174,264,758	205,043	148,085,072	77,518	26,179,686	—	—
1992	294,833	211,524,557	213,694	167,197,364	81,139	44,327,193	255	152,215
1993	297,260	226,839,881	211,909	178,446,509	85,351	48,393,372	74	27,350
1994	297,128	253,800,036	200,302	200,413,094	96,826	53,386,942	733	456,848
1995	301,196	298,911,859	195,784	239,392,571	105,412	59,519,288	804	471,953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75] 연도별 사업소세 납액별 인원 현황

(단위 : 명)

	합 계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이상	30만원이상	50만원이상	7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200만원이상	300만원이상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상
1977[1]	68,239	45,893	11,194	4,073	3,191	1,408	970	906	255	211	83	55
1978	109,487	71,004	18,596	6,586	5,638	2,451	1,902	1,955	502	463	265	125
1979	131,730	81,625	24,225	10,393	7,061	3,008	2,204	2,087	510	321	211	85
1980	139,705	77,781	29,400	12,436	8,552	3,937	2,879	2,934	864	456	380	86
1981	151,057	79,965	33,693	13,913	10,111	4,765	3,284	3,346	1,052	493	287	148
1982	161,280	75,606	39,799	16,984	12,646	6,328	3,657	4,088	1,156	532	317	167
1983	175,671	74,484	47,271	19,966	15,107	6,682	4,743	4,850	1,420	626	367	155
1984	185,333	73,291	52,307	22,520	16,520	7,011	5,040	5,309	1,625	880	539	291
1985	195,952	68,825	56,212	25,581	17,987	9,501	5,828	8,629	1,582	1,011	548	248
1986	202,131	66,131	58,595	33,530	17,556	9,219	6,640	6,235	2,028	1,171	719	307
1987	230,739	73,282	66,138	33,368	25,460	11,568	8,527	7,518	2,274	1,412	869	323
1988	231,359	63,217	65,944	32,897	28,898	13,018	10,202	9,471	3,730	2,294	1,246	442
1989	259,634	63,442	71,818	40,319	35,436	17,774	12,220	9,838	3,765	2,769	1,529	724
1990	264,660	59,616	76,117	39,046	34,085	16,988	15,488	10,508	5,223	3,961	2,209	1,419
1991	282,561	58,692	70,856	45,911	40,896	21,677	15,555	15,037	5,794	4,165	2,599	1,379
1992	294,833	45,722	74,115	51,446	46,656	25,197	18,038	17,714	6,827	4,804	2,877	1,437
1993	297,260	34,403	66,423	56,453	53,116	29,086	20,783	18,983	7,218	5,212	3,627	1,956
1994	297,138	35,094	62,588	52,885	54,307	31,082	22,306	20,269	7,649	5,209	3,385	2,364
1995	301,196	32,201	61,681	50,585	52,168	32,471	25,039	23,108	10,276	6,774	4,502	2,391

주 : 1) 1977년의 납액별 인원현황 합계와 [표 5-74]의 부과실적의 인원 합계(68,302명)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76] 연도별 사업소세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지 방 세 법		외자도입법		특 별 조 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77	2,150	648,857	2,150	648,857	—	—	—	—	—	—	—	—
1978	3,095	857,580	3,095	857,580	—	—	—	—	—	—	—	—
1979	83,451	9,255,471	60,478	2,712,625	1	210	21,732	6,256,684	575	172,377	665	113,575
1980	81,887	9,435,569	60,184	2,909,993	1	241	20,453	6,157,977	562	155,019	687	212,339
1981	83,983	9,703,384	61,517	2,982,666	1	325	21,173	6,318,838	571	180,723	721	220,832
1982	104,791	5,378,888	76,967	4,084,441	4	336	25,930	786,869	694	198,345	1,196	308,897
1983	103,830	5,399,941	76,104	4,135,064	1	325	26,121	781,997	712	199,935	892	282,620
1984	106,238	4,858,881	78,337	3,860,416	—	—	27,137	794,138	764	204,327	—	—
1985	107,770	5,106,495	80,199	4,306,147	—	—	27,570	800,339	1	9	—	—
1986	13,631	4,399,243	13,625	4,398,528	—	—	6	715	—	—	—	—
1987	13,604	4,689,137	13,590	4,685,254	11	926	2	2,507	1	450	—	—
1988	9,884	2,739,190	9,883	2,739,115	—	—	—	—	—	—	1	75
1989	9,166	3,824,602	9,157	3,404,584	—	—	9	420,018	—	—	—	—
1990	11,836	11,760,302	11,833	11,114,872	—	—	3	645,430	—	—	—	—
1991	27,223	15,284,832	27,061	15,261,727	146	18,911	16	4,194	—	—	—	—
1992	14,507	7,580,847	14,453	7,470,912	—	—	46	86,964	—	—	8	22,971
1993	12,148	8,800,337	11,391	6,402,391	—	—	328	1,549,771	429	848,175	—	—
1994	14,539	10,032,193	14,035	9,522,154	—	—	504	510,039	—	—	—	—
1995	18,832	11,608,494	18,368	10,935,089	—	—	464	673,405	—	—	—	—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라. 폐지된 세목

(1) 유흥음식세

[표 5-77] 연도별 유흥음식세 및 동부가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62	232,735	221,470	—	—	95.2
1963	352,025	335,152	—	—	95.2
1964	400,563	383,947	—	—	95.9
1965	753,065	705,849	—	—	93.7
1966	1,371,406	1,269,631	—	—	92.6
1967	1,878,197	1,769,905	—	—	94.2
1968	3,417,294	3,200,154	—	—	93.6
1969	4,734,439	4,400,921	—	—	93.0
1970	5,299,146	5,028,927	15,218	255,001	94.9
1971	6,061,868	5,803,750	9,112	249,006	95.7
1972	6,871,248	6,452,741	35,644	382,863	93.9
1973	9,232,268	8,534,559	38,830	658,879	92.4
1974	13,103,348	12,170,623	21,340	911,385	92.9
1975	19,470,645	17,511,560	11,795	1,947,290	89.9
1976	28,477,198	25,302,131	10,168	3,164,899	88.9
1977	2,432,233	2,308,629	1,953	121,651	94.9
1978	11,862	10	11,852	—	0.1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78] 연도별 유흥음식세 및 동부가세 부과실적

(단위 : 천원, 명)

	합 계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과세표준	세 액	인원	과세표준	세 액	인원	과세표준	세 액	인원	과세표준	세 액	인원
1963	5,062,564	344,475	224,292	432,953	86,588	9,016	1,338,000	133,795	45,563	3,291,611	124,092	169,713
1964	5,134,912	392,961	162,758	599,125	119,825	8,368	898,688	89,806	17,560	3,637,099	183,330	136,830
1965	9,145,936	738,355	186,163	1,321,001	264,200	8,199	1,654,495	165,447	21,862	6,170,440	308,708	156,102
1966	15,660,840	1,309,113	228,800	2,736,599	547,355	10,290	2,307,521	230,883	22,967	10,616,720	530,875	195,543
1967	22,058,069	1,884,222	250,420	3,290,662	699,870	8,545	3,311,557	354,655	24,284	15,455,850	829,697	217,591
1968	39,169,101	3,364,447	285,076	4,770,100	1,048,508	7,844	8,138,685	883,340	25,753	26,260,316	1,432,599	251,479
1969	56,174,982	4,551,906	343,123	5,819,585	1,258,277	9,291	10,991,837	1,161,162	29,875	39,363,560	2,132,467	303,957
1970	71,580,872	5,296,319	407,815	5,515,751	1,278,813	8,997	11,543,566	1,249,996	28,874	54,521,555	2,767,510	369,944
1971	79,335,486	5,894,011	451,633	5,448,418	1,150,338	8,674	12,426,093	1,433,237	31,015	61,460,975	3,310,436	411,944
1972	92,963,528	6,788,064	543,434	6,545,758	1,380,735	9,628	13,848,988	1,482,787	35,318	72,568,782	3,924,542	498,488
1973	121,218,435	8,479,585	669,934	8,894,161	1,778,863	10,355	20,888,489	2,088,938	42,326	91,435,785	4,611,784	617,253
1974[1]	155,173,238	12,104,214	774,148	8,288,825	2,367,282	11,095	29,419,587	3,787,751	51,078	117,464,826	5,949,181	711,975
1975	—	18,891,845	820,748	—	4,620,529	13,255	—	5,773,713	55,326	—	8,497,603	752,167
1976	—	27,875,065	934,191	—	8,208,395	26,707	—	6,751,869	41,717	—	12,914,801	865,767

주 : 1) 1974년부터 『지방세정연감』에는 인원이 건수로 표기되어 있음.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2) 토지과다 보유세

[표 5-79] 연도별 토지과다 보유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88	16,654,314	14,733,837	1,817	1,918,660	88.5
1989	27,327,058	24,433,884	25,535	2,867,639	89.4
1990	1,612,040	1,140,141	—	471,899	70.7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80]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실적

(단위 : 필, 천m^2, 천원, 명)

	필 지 수	면 적	과세표준액	인 원	세 액
1988	234,718	297,010	2,301,930,983	81,373	16,584,032
1989	268,130	366,644	4,219,971,605	162,359	28,048,595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81]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과표단계별 과세상황

(단위 : 건, 천m², 천원)

	합 계			3,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건 수	면 적	세 액	건 수	면 적	세 액	건 수	면 적	세 액	건 수	면 적	세 액
1988	81,373	297,010	16,584,032	59,988	133,670	1,914,886	11,482	25,646	1,159,932	6,933	27,772	2,277,758
1989	162,359	366,644	28,048,595	135,237	163,383	4,313,769	13,601	29,268	2,392,964	9,114	37,051	4,330,205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7억원 이하		
	건 수	면 적	세 액	건 수	면 적	세 액	건 수	면 적	세 액	건 수	면 적	세 액
1988	2,075	33,260	2,713,659	473	13,064	1,663,013	247	15,633	1,853,141	82	8,473	1,087,923
1989	2,909	28,596	4,701,567	651	19,247	2,573,844	548	19,105	2,932,761	167	7,470	1,412,392

	10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건 수	면 적	세 액	건 수	면 적	세 액	건 수	면 적	세 액
1988	45	4,802	965,487	22	10,540	788,383	26	24,150	2,159,850
1989	70	16,922	1,544,176	30	7,335	1,075,902	32	38,267	2,771,015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82]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면적별 과세상황

(단위 : 건, 천m^2, 천원)

	합 계			330평방미터 이하			660평방미터 이하			1,650평방미터 이하		
	인 원	면 적	세 액	인 원	면 적	세 액	인 원	면 적	세 액	인 원	면 적	세 액
1988	81,373	297,010	16,584,032	12,196	14,630	939,186	31,717	15,832	2,256,237	19,706	21,112	2,284,323
1989	162,359	366,644	28,048,595	76,417	18,768	2,901,013	37,168	17,868	5,275,798	24,891	26,846	4,422,228

	2,310평방미터 이하			3,300평방미터 이하			16,500평방미터 이하			33,000평방미터 이하		
	인 원	면 적	세 액	인 원	면 적	세 액	인 원	면 적	세 액	인 원	면 적	세 액
1988	5,489	10,625	984,513	4,132	11,566	1,112,870	6,691	43,639	4,542,878	709	15,733	982,393
1989	7,129	13,819	1,634,345	5,971	17,553	1,980,646	8,964	58,107	5,517,014	927	20,830	1,763,397

	33,000평방미터 초과		
	인 원	면 적	세 액
1988	733	163,873	3,481,632
1989	892	192,853	4,554,154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83]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지목별 과세상황

(단위 : 필, 천m²)

	합 계		대 지		공장용지		잡종지		전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1988	234,718	297,010	145,317	45,094	2,872	8,319	10,357	11,490	35,101	36,588
1989	268,130	366,644	154,752	48,449	3,184	9,479	11,360	13,579	39,410	40,818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 야		기 타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1988	26,061	32,691	1,580	6,081	1,405	35,493	11,661	119,473	364	1,781
1989	38,761	44,970	1,918	8,353	1,577	40,922	16,273	156,616	895	3,458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84]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납액별 인원현황

(단위 : 명)

	계	1천원이하	5천원이하	1만원이하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1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1988	81,373	2,237	14,347	12,041	32,332	7,036	8,529	2,280	2,108	246	191	19	7
1989	162,359	823	19,045	22,127	78,661	15,995	17,490	4,064	3,449	410	263	25	7

자료 : 내무부,『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5-85]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비과세 감면상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지 방 세 법		외자도입법		특 별 조 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89	1,907,997	28,770,064	377,173	10,400,880	—	—	198	1,677	2	19	1,530,624	18,367,488

자료 : 내무부,『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韓國 租稅政策 50年』 關聯 所藏資料 目錄

經濟科學審議會議, 『附加價値稅制의 改善』, 1979. 8.
곽상수, 『한국조세연구』, 한국연구도서관, 1961.
國稅廳, 『국세통계연보』, 1966～1995.
_____, 『附加價値稅施行後 價格指導指針』, 1977. 7.
_____, 『國稅廳 二十年史』, 1986.
_____, 『國稅廳 三十年史』, 1996.
_____, 『稅政 100年·略史』, 1996.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연도별 예산심의 개요』, 1974.
吉益宣(譯), 『南北經濟實情』, 駐韓經濟協助處 編纂, 1949.
김만기, 『조세개론』, 대한재무협회, 단기 4284.
김옥근, 『日帝下 朝鮮財政史論攷』, 일조각, 1994.
內務部, 『地方行政十年史』, 단기 4291.
_____, 『지방세통계연보』, 1971.
_____, 『지방세통계』, 1972～1975.
_____, 『지방세정연감』, 1978～1995.
_____, 『地方稅沿革集(上, 下)』, 1996.
內務部 地方局, 『지방세무통계연보』, 1964～1967.
_____, 『지방세통계연보』, 1968～1970.
內務部 地方財政局, 『지방재정연감』, 1970～1993, 1995.
_____, 『지방세통계』, 1976～1977.
內務部 治安局, 『美軍政法令集(군정법령총목록)』, 단기 4289.
대한교원공제회, 『敎員共濟會 二十年史』, 1992. 10.
大韓民國史編纂委員會, 『大韓民國史』, 1988. 6.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내국세제도의 변천과 전망』, 1979.
大韓서울商工會議所, 『韓國經濟 20年의 回顧와 反省』, 1982.
백과사전출판사, 『조선강점시기 일제의 조세수탈』, 1988.
法制處, 『法制處 四十年史』, 1988.
三陟稅務署, 『三陟稅務署 五十七年史』, 1991.
稅務大學 租稅問題硏究所, 『特別消費稅 課稅物品의 分類體系에 CCCN 및 H·S 分類體系의 導入을 위한 檢討』, 1983. 11.

_____, 『國民租稅意識의 調査硏究』, 1983. 12.
_____, 『多國籍企業의 移轉價格操作과 租稅條約에 관한 硏究(移轉價格決定原理, 各國의 規制 및 우리나라 稅法上의 改善方案)』, 1986. 12.
稅制局, 『附加價値稅 課稅標準 및 稅率推計 報告書』, 1976. 7.
신상준, 『韓國財務行政의 近代化過程(甲午改革~韓日合併期: 1894~1910年)』, 신조문화사, 1970.
張炳淳, 『韓國稅政史』, 普成社, 1973.
財務部, 『財政金融의 回顧 -建國十周年業績-』, 단기 4291.
_____, 『附加價値稅 -어떤 세금인가-』, 1977.
_____, 『附加價値稅法解說』, 1977.
_____, 『稅法制定 및 改正(案)』, 1977. 7.
_____, 『附加價値稅 行政 調査 報告書(佛蘭西, 西獨)』, 1978. 3.
_____, 『韓國稅制史(上, 下)』, 1979. 12.
_____, 『1980年代의 韓國稅制에 關한 IMF 報告書 - Alan A. Tait, Angelo G. Faria, Peter S. Heller -』, 1980. 1.
_____, 『1980年代의 韓國稅制에 關한 IMF 報告書(要約)』, 1980. 3.
_____, 『附加價値稅 實態調査結果 및 改善方向』, 1980. 4.
_____, 『韓國稅制改編에 관한 IMF 硏究 報告書』, 1985. 6.
_____, 『韓國의 租稅負擔에 관한 IMF 硏究 報告書 - Peter S. Heller -』, 1986. 6.
_____, 『韓國附加價値稅制史』, 1990. 12.
_____, 『'92 간추린 改正稅法』, 1993.
_____, 『'93 간추린 改正稅法』, 1994.
_____, 『韓國의 財政統計 1994』, 1994.
財務部 司稅局, 『대한민국 세무통계서』, 1958.
_____, 『세무통계연보』, 1959~1962, 1964, 1965.
_____, 『韓國의 經濟開發을 爲한 歲入政策 - R. A. Musgrave』, 1965. 9.
財務部 司稅局(譯), 『韓國의 經濟開發을 爲한 歲入政策』, 1965. 9.
財務部 稅制局, 『附加價値稅制度 調査 報告書』, 1974. 9.
_____, 『西獨의 附加價値稅制度(附錄: VAT의 一般的 特性)』, 1974. 7.
_____, 『韓國의 稅收 推計』, 1970. 5.
_____, 『韓國財政構造에 對한 考察(第3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과 關聯하여)』, 1971.
_____, 『韓國의 租稅制度에 對한 建議』, 1973. 7.

財務部 稅制局(譯),『稅制改革을 爲한 建議』, 1967. 3.
財政經濟院,『'94 간추린 改正稅法』, 1995.
_____,『'95 간추린 改正稅法』, 1996.
_____,『'96 간추린 改正稅法』, 1997.
全國經濟人聯合會,『稅制改編方向에 관한 意見』, 1985. 9.
_____,『韓國經濟政策 四十年史』, 1986. 3.
崔 洸,『財政統計 資料集』, 韓國開發硏究院, 1983. 4.
崔震培,『韓國의 附加價値稅』, 圖書出版 三文, 1984.
韓國開發硏究院,『韓國經濟 半世紀 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硏究院 財政政策室,『財政統計 資料集 1991』, 1991.
_____,『財政統計 資料集 1994』, 1994.
韓國經營者總協會,『勞動經濟 40年史』, 1989. 2.
한국경제개발협회,『한국의 국내소비세에 관한 연구보고서(물품세, 주세, 석유류세 및 전매익금제도의 문제점과 건의)』, 1966. 6.
韓國經濟硏究所,『稅法體系의 整備와 改善에 관한 硏究』, 1982. 9.
_____,『財政機能의 再調整과 行政機能 官僚制度의 改編方向 硏究』, 1982. 10.
_____,『所得稅體系 合理化를 위한 基礎課題 硏究』, 1982. 10.
_____,『企業稅制 合理化의 基礎硏究 －課稅所得의 算定體系와 企業內部留保의 充實化－』, 1983. 10.
韓國關稅硏究所,『關稅法 沿革』, 1994. 6.
韓國產業銀行 企劃調査部,『네이산報告 －韓國經濟再建計劃－(上, 下)』, 1954. 3.
韓國財政40年史編纂委員會,『韓國財政 40年史』, 韓國開發硏究院, 1990. 6.
第1卷 豫算資料(1948～1967)
第2卷 豫算資料(1968～1987)
第3卷 財政關聯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第4卷 財政統計(1)
第5卷 財政統計(2)
第6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第7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韓國租稅硏究院,『改正稅法 總覽(Ⅰ)(간추린 改正稅法 74～82)』, 1994. 10.
_____,『改正稅法 總覽(Ⅱ)(간추린 改正稅法 83～89)』, 1994. 10.
_____,『改正稅法 總覽(Ⅲ)(간추린 改正稅法 90～93)』, 1994. 10.

韓國地方行政研究院,『韓國地方行政史(1948～1986)(上, 下)』, 1987. 12.

溝口敏行·敏村又次,『旧日本植民地經濟統計 － 推計と分析』, 東洋經濟新報社, 1988.

小田忠夫,「併合初期に於ける朝鮮總督府財政の發達」,『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 第十册』, 昭和十三年.

水田直昌 監修,『總督府時代の財政 － 朝鮮近代財政の確立』, 財團法人 友邦協會, 昭和四十九年.

鈴木武雄,「李朝末期に於ける朝鮮の財政」,『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 第二册』, 明治四十三年.

財政經濟學會,『明治大正財政史 第十八卷 1』, 東京, 昭和十四年.

朝鮮總督府,『施政三十年史 前篇』, 昭和十五年.

_____,『施政三十年史 後篇』, 昭和十五年.

朝鮮總督府 內務局,『朝鮮ニ於ヶル稅制定理經過概要』, 昭和十年.

_____,『朝鮮ニ於ヶル地方稅制定理經過概要』, 昭和十年.

朝鮮總督府 財務局,『朝鮮ニ於ヶル國稅及地方的租稅負擔額調』, 大正十三年.

_____,『朝鮮ニ於ヶル租稅負擔額調』, 昭和四年.

朝鮮總督府 財務局(編),『朝鮮稅務法規提要』, 朝鮮財務協會, 昭和十一年.

_____,『朝鮮稅務法規提要 1』, 朝鮮財務協會, 昭和十九年.

_____,『朝鮮稅務法規提要 2』, 朝鮮財務協會, 昭和十九年.

統監府,『韓國財政施設綱要』, 明治四十三年.

賀田直治,『朝鮮產業政策研究要綱』, 1927.

Balassa, B., *The Korean Tariff Reform of 1971 ; An Evaluation*, September 1971.

_____, *Proposal for Reform of the Tariff, Export Subsidy, and Foreign Exchange System in Korea*, December 1996.

Johnson, R. H., *Review of Korean Tax Reform of 1967*, 1968. 3.

_____, *Quarterly Report: for Period Ended December 31, 1968*, 1969. 1.

_____, *Quarterly Report: for Quarter Ended March 31, 1969*, 1969. 4.

_____, *Quarterly Report: for Quarter Ended June 30, 1969*, 1969. 7.

_____, *The Role of Fiscal Policies in the Third Five－Year Development Plan: Final Report*, 1969. 8.

_____, *A Survey of Korea's Fiscal System in Relation to the Thir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70.

Ministry of Finance, *Introduction of Value Added Tax into the Republic of Korea*,

1977. 11.

Musgrave, P. B., *Trade Targets and Policies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1965. 8.

Musgrave, R. A., *Suggestion for the 1967 Tax Reform*, 1967. 3.

_____, *Tax Reform*, 1967. 7.

Sedjo, R. A., *The Turning Point for Korean Economy*, 1971.

Sheahan, J. B., *Issues Involve in the Proposed Tariff Reform*, August 1971.

Tait, A. A., *A Report on the Possible Korean Value-Added Tax(Vat)*, 1975.

_____, *A Report on the Proposed Korean Value-Added Tax,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ffects on the Retail Price Index and on Household Expenditures*, IMF, 1976. 7.

Tait, A. A., Faria, A. G. and Heller, P. S. *Korea : Taxes in the 1980s*, IMF, 1979. 7.